

---

# 과태료 제도의 합리적인 정비를 위한 입법모델 연구

---

김현희 · 강문수 · 나채준



연구보고 2017-12

# 과태료 제도의 합리적인 정비를 위한 입법모델 연구

김 현 희 · 강 문 수 · 나 채 준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과태료 제도의 합리적인 정비를 위한 입법모델 연구

A Legislative Model for a Rational Administrative Fine System

연구자 : 김현희(연구위원)

Kim, Hyun-Hee

강문수(선임연구위원)

Kang, Mun-Soo

나채준(연구위원)

Na, Chae-Joon

2017. 10. 31.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요약문

### I. 배경 및 목적

- ▶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과태료 제도의 역할과 기능, 법적 근거로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개별 법령의 과태료 규정을 분석함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 10년을 맞아 과태료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법체계적 지위와 과태료의 제도적 기능을 확인함
- ▶ 개별 법령상 과태료 규정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의 관계 속에서 또는 독자적으로 어떻게 기능하고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입법모델 분석을 통하여 과태료 제도의 합리적 정비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함

### II. 주요 내용

- ▶ 과태료 제도 일반론
  - 개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상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

- 유사개념 : 과료, 과징금, 범칙금, 이행강제금 등과 구별
- 성격 :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공법상의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질서벌로서 행정형벌과 구별
- 법적 근거 :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존재하며, 개별적인 부과권자와 부과기준 및 과태료 금액 등은 개별 법령에서 정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한계
  - 체계적 한계 :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법으로서의 성격 및 형법총칙 체계와의 유사성
  - 내용적 한계 : 질서위반행위 및 과태료 개념의 미비, 과태료 부과기준의 통일성·체계성 부족, 과태료 부과·징수의 실효성 부족, 과태료 재판의 국민권의 보호 미비, 체납절차에 있어서의 법치주의 침해 위험성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개선방향 : 과태료의 법적 지위 확립, 형법총칙적 체계 지양, 과태료, 질서위반행위, 당사자 등의 개념 재정비, 부과기준의 체계적 유형화, 차수제도의 원칙 설계, 과태료 산정방식의 검토 및 상한액의 설정, 가중 및 감경의 원칙과 기준 설정, 과태료 재판에 있어서의 방어권 보호, 체납절차에 있어서의 비례원칙 등 명문화, 소위 ‘과태료심의위원회’의 설치를 통한 제도적 정비 추진, 소위 ‘과태료징수전문공무원’의 양성을 통한 징수율 제고 등

#### ▶ 주요 외국의 과태료 제도

-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의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제도에 대한 입법 사례 조사를 통하여 시사점 도출

- 미국 : 민사금전벌제도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과태료 제도와 과징금 제도를 모두 포함하는 제도임. 연방과 주차원에서 광범위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연방 항공법 등 개별법에서 민사금전벌을 규정
- 독일 : 행정적 제재수단으로 과태료라는 금전적 제재수단이 존재하고, 질서위반 행위법이 일반법으로서 기능. 다만, 독일은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와 행정형벌인 형사벌금간의 절차가 동일하여 우리나라의 과태료제도와는 구별됨
- 영국 : 일반법이 존재하지 않고, 각 분야의 개별 법률 차원에서 해당 분야의 고유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정적 과태료제도를 광범위하게 활용. 각 분야별로 과태료 부과 행위 유형을 구체화하여 질서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제
- 프랑스 : 형벌적 벌금과 행정적 벌금을 일괄적으로 벌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그 부과근거에 따라 구별. 개별법에서 벌금 및 과태료와 유사 제재들을 모두 행정상 제재의 하나로써 금전적 제재로 포함
- 일본 : 금전적 제재수단인 과료(過料)가 있으며 형법상의 벌금과 명확하게 구별. 과료에 대한 일반법은 존재하지 않고, 개별 법률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으며, 비송 사건수속법(非訟事件手続法)과 지방자치법(地方自治法)에서 규정
- 중국 : 행정처벌의 일종으로 행정상 제재 등 행정처벌과 관련한 일반법인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법체계상 형사적 처벌과 행정적 제재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혼용되고 있음
- 과태료와 같은 행정적 제재수단은 각국의 입법 현실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다양한 행정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 일반법과 개별법체계로 구분되며, 부과 법적 근거, 부과권자, 부과기준 및 산정, 부과 및 징수 절차,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강제징수절차 등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 과태료 제도의 입법모델 정비방안

- 현행 법령에서 규정되고 있는 과태료 규정의 입법형식과 규정내용 개선을 위한 정비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있어 입법기술상 “명확성의 원칙”을 적용, 실무상 담당자의 편의성과 관계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여 종국적으로 과태료 제도운영에 있어서의 합리성을 제고함
- 현행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는 5개 부처 소관법률 및 하위법령 등 총 272개 법률을 우선 조사 및 분석대상으로 함
  - 국토교통부 소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 93개 법률, 행정안전부 소관 「개인정보보호법」 등 41개 법률, 환경부 소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9개 법률, 보건복지부 소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58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31개 법률

### Ⅲ. 기대효과

- ▶ 과태료의 개념을 비롯하여 과태료의 기능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단순한 행정형벌의 보충적 수단이 아닌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의 고유한 성격을 부각시킴으로써 과태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음
- ▶ 과태료에 관한 법적 근거로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개별 법령상의 과태료 규정에 대한 입법의 유형을 분석하고 실무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입법모델을 도출하는 것은 과태료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법제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음
- ▶ 주제어 : 행정질서법, 과태료, 질서위반행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입법모델

## Abstract

### I. Backgrounds and Purposes

- ▶ Analyze the role and function of administrative fines as a means of administrative enforcement and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and administrative fine-related provisions in other laws and regulation affording the legal basis for their imposition.
- ▶ Verify the status of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within the Korean legal system, as a general law on administrative fines, at the 10th anniversary of its enactment, and the function of the administrative fine system as a system and an institution.
- ▶ Examine how administrative fine provisions in various laws and statutes regulate related practices, both on their own and together with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and suggest ways to improve the administrative fine system as a whole, for greater rationality and efficiency, through the analysis of legislative models.

## II. Major Content

### ▶ General Discussion of the Administrative Fine System

- Concept: An administrative fine is a financial penalty imposed by a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 agency for certain violations of public order.
- Similar concepts: An administrative fine is distinct from minor fines, restitutive fine, punitive fine, and enforcement fine.
- Characteristics: An administrative fine is an administrative order penalty, used as a means to indirectly enforce the performance of public law obligations, which is in that sense distinct from an administrative criminal penalty.
- Legal basis: General rules on the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administrative fines are laid down in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while details such as entities authorized to impose administrative fines, criteria of their imposition and amounts thereof are stipulated in various different laws specific to given administrative fields.
- Limitations of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 Limitations as a system of rules: Close in nature to a procedural law for the assessment and collection of administrative fines, while being also similar to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Criminal Act>.

- Limitations at the level of contents: What constitutes a violation of public order, as well as the concept of administrative fine, is not sufficiently clearly established; The inconsistency of criteria for the imposition of administrative fines; The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civil penalties lack enforceability; No real mechanism is in place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itizens during administrative fine trials, and collection procedures for fines in arrears risk infringing upon the basic and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rule of law.
- Proposed improvements: Clearly establish the legal status of administrative fines; Revise rules in a manner to make them distinct from the general provision of the <Criminal Act>; Redefine the basic concepts including “administrative fine,” “violation of public order” and “party”; Group criteria for the imposition of administrative fines into coherent categories; Establish the principles of numeral system; Review the method for the calculation of administrative fines and set a maximum amount of imposition; Establish rules and criteria for the increase and reduction of fines; Protect defendants’ right to defense during trials; Clearly stipulate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with regard to the collection procedure for fines in arrears; Establish the “Administrative Fine Deliberation Committee” (tentative name) to enhance the system and train “administrative fine collection officers” to improve the collection rate, etc.

## ▶ Administrative Fine Systems in Major Countries

- Examine administrative fine systems used in the U.S., Germany, U.K., France, Japan and China as a mechanism for punishing violations of public order to derive implications.
- Research into legislative examples related to the administrative fine system (administrative order penalty system) from the U.S., Germany, U.K., France, Japan and China to derive implications.
- U.S.: The civil money penalty (CMP) system is a system that covers both financial penalties known in Korea as administrative fines and restitutive fines. Civil money penalties are imposed at the federal level, as well as at the state level, and are provided for in various laws including the <Federal Aviation Act>.
- Germany: Monetary sanctions are also used in Germany, as a means of administrative enforcement. The <Administrative Offences Act (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en, OWiG)> is the general law regulating financial sanctions. However, in Germany, administrative order penalties (Geldbuße) are imposed and collected following the same procedure as administrative criminal penalties (Geldstrafe); which makes the German system distinct from the Korean administrative fine system.
- U. K.: In the U. K., there is no general law regulating administrative fines. However, administrative penalties are widely used in various administrative fields, as provided for in laws specific to each field. A coherent system for punishing violations of public

order is in place, with clearly established types of offenses subject to administrative penalties.

- France: In France, both criminal fines and administrative fines (amendes administratives) are known as “amendes,” although they are distinguished according to their basis of imposition. Under individual laws, punitive fines, administrative fines and other similar fines are all considered a form of sanctions patrimoniales or sanctions pécuniaires, used as a means of administrative enforcement.
- Japan: Karyo, the monetary enforcement means used in Japan, is distinct from punitive fines under criminal law. No general law exists on administrative fines, which are provided for by individual laws, including the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s Act> and the <Local Autonomy Act>.
- China: Administrative fines are regulated by the <Administrative Punishment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 general law providing for administrative sanctions and punishments. In the Chinese legal system, there is no clear boundary between criminal punishments and administrative sanctions.
- Administrative fines and other means used for administrative enforcement vary depending on the country, due to their specific legislative situation. Notwithstanding, administrative fines are widely used in many administrative fields across the world. Administrative fines may be regulated by a general law or individual laws. No matter what their type, these laws usually stipulate the legal

basis for the imposition of administrative fines, entities authorized to impose them, criteria for imposition, method for calculating their amounts, procedures for their assessment and collection, procedures for contesting a fine and procedures for forcible collection of fines.

### ► Suggested Improvements for the Legislative Model for Administrative Fines

- Identify ways to overhaul the current laws (the laws and the Appendix Tables in their associated regulations) in a manner to improve the legislative approach in administrative fine-related provisions and the content thereof. Achieve greater compliance with the principle of clarity in legal provisions so as to guarantee the predictability of these laws for citizens and make their application more convenient for officials in charge to ultimately enhance the rationality and efficiency of the overall administrative fine system.
- Review and analysis of 272 laws and regulations on administrative fines, proposed and implemented by five cabinet ministries, which are currently in effect.
  - 93 laws and regulations including the <Restitution of Development Gains Act>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41 laws and regulations including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by the Ministry of Interior and Safety, 49 laws and regulations including the <Act on the Management and Use of Livestock Excreta>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58 laws and regulations including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Act>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31 laws and regulations including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Game Industry>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III. Expected Effects

- ▶ The theoretical discussion of administrative fines with regard to both the concept and function can help underscore their unique role as an administrative enforcement means, beyond being simple complements to administrative criminal penalties, which can, in turn, contribute to an increased effectiveness of the administrative fine system.
- ▶ Analyzing legislative approaches used in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and individual laws that provide legal basis for the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administrative fines and designing a new legislative model by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input of those practically involved in their imposition and collection are likely to contribute to a more rational and efficient operation of the administrative fine system.
- ▶ **Key Words** : Administrative order penalties, administrative fines, violations of public order, <*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legislative models.



# 목차

과태료 제도의 합리적인 준비를  
위한 입법모델 연구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요 약 문 .....	3
Abstract .....	7

## 제1장 서론 / 1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1
제2절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	23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6

## 제2장 과태료 제도 일반론 / 29

제1절 과태료의 의의 .....	31
I. 개념 .....	31
II. 유사 개념와의 구별 .....	34
III. 유형 .....	39
IV. 성격 .....	41
제2절 과태료의 法源 .....	50
I. 개 설 .....	50
II.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51
III. 개별 법령 .....	72
IV.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한계 및 개선방향 .....	73

## 제3장 주요 외국의 과태료 제도 / 89

제1절 개 설 .....	91
제2절 미 국 .....	92

I. 행정상 금전적 제재수단의 입법 동향 .....	92
II. 민사금전벌의 부과징수 .....	97
III. 소 결 .....	99
제3절 독 일 .....	100
I. 행정상 금전적 제재수단의 입법 동향 .....	100
II. 과태료의 부과징수 .....	103
III. 소 결 .....	108
제4절 영 국 .....	109
I. 행정상 금전적 제재수단의 입법 동향 .....	109
II. 과태료의 부과징수 .....	111
III. 소 결 .....	115
제5절 프랑스 .....	116
I. 행정상 금전적 제재수단의 입법 동향 .....	116
II. 행정상 금전적 제재의 부과징수 .....	117
III. 소 결 .....	121
제6절 일 본 .....	122
I. 행정상 금전적 제재수단의 입법 동향 .....	122
II. 과료의 부과징수 .....	124
III. 소 결 .....	128
제7절 중 국 .....	129
I. 행정상 금전적 제재수단의 입법 동향 .....	129
II. 행정처벌의 부과징수 .....	132
III. 소 결 .....	136
제8절 평가 및 시사점 .....	136
I. 과태료 금액 산정과 관련하여 .....	137
II. 과태료 부과 절차와 관련하여 .....	138
III. 과태료 징수를 제고와 관련하여 .....	139

## 제4장 과태료 제도의 입법체계 정비방안 / 142

제1절 입법체계 정비의 필요성과 정비방향 .....	144
I. 정비필요성의 배경 .....	144
II. 정비 방향 .....	145
제2절 현행 과태료 관련 법령상 명확성원칙의 정립 .....	148
I. 법률 상 명확성의 원칙 .....	148
II. 행정입법 시 명확성 원칙의 적용 .....	150
제3절 현행 과태료 관련 법령상 입법현황 검토 .....	153
I. 소관부처별 법령 분석 틀 마련 .....	153
II. 소관부처별 법령 분석 현황 .....	161
III. 소관 부처별 법령 분석 현황 종합 .....	301
제4절 과태료 제도 운영현황을 위한 설문조사 .....	323
I. 개 관 .....	323
II. 과태료 입법체계 정비관련 설문주요내용 .....	333
제5절 정비방안 도출 .....	341
I. 법률상 명확성원칙 적용목적에 충실한 규정체계 마련 .....	341
II. 행정입법에 있어 “구체적으로 범위설정에 충실한” 규정체계 마련 .....	343

## 제5장 결론 : 과태료 제도의 합리적 준비를 위한 개선방안 / 352

I. 과태료의 법적 지위 확립 .....	354
II.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개선방향 .....	355
III. 과태료 제도의 입법체계 정비방안 .....	357
참 고 문 헌 .....	360

목차

과태료 제도의 합리적인 정비를  
위한 입법모델 연구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부 록》

과태료 제도 운영모습 파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조사 ..... 372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私人간의 법률관계는 대등한 주체로서 권리와 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있고,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사법부의 재판에 기하여서만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반면에 공법상의 법률관계는 행정주체에게 공익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일정한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고,<sup>1)</sup> 그러한 공익목적의 달성을 위해 국가 등 행정주체에게 스스로 법률상 그 의무이행을 강제하거나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수단이 부여되는데<sup>2)</sup> 이러한 수단을 일반적으로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의무이행확보수단)”이라 한다.<sup>3)</sup>

오래전부터 제도적으로 인정되어 왔던 전통적인 실효성 확보수단으로는 의무의 이행을 직접 강제하는 “행정강제”와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행정벌” 이 있다. 행정강제로서 대집행은 「행정대집행법」이라는 일반법에 근거하여 행해지고 있고, 강제징수는 개별법에 의하여 행해지지만 개별법은 「국세징수법」을 준용하고 있는 경우가 통례여서 「국세징수법」이 일반법의 역할을 하고 있다. 강제금이나 직접강제도 개별법에 의하여 한정적으로만 인정되고 있고 즉시강제도 마찬가지이다. 이렇듯 현행 법제는 금전급부의무나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그 이행을 강제

1) 김유환, 「현대 행정법강의」, 법문사, 2016, 219면.

2) 김남철, 「행정법강론」, 박영사, 2015, 405면.

3) 이러한 의미에서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은 사실상 「권한부여와 권한통제」라는 행정법의 이중적 임무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박정훈, “협의의 행정벌과 광의의 행정벌 - 행정상 제재수단과 법치주의적 안전장치-”, 「법학」, 서울대학교, 제41권제4호, 2001, 278면.

할 수 있는 강제징수나 대집행을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강제금 등은 한정적으로만 인정하고 있어 그들이 수단이 되는 비대체적 작위의무, 수인의무 및 부작위의무는 그 불이행이 있다 하더라도 항상 그 의무이행을 확보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sup>4)</sup> 이러한 행정집행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마련된 것이 “행정벌”로서, 행정벌은 의무자의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행정청이 행정집행을 통하여 직접 의무를 이행하기 보다는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법원이 벌칙을 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강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행정벌은 다시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구분되며, 과태료는 곧 행정질서벌을 의미하는 것이다.

과태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상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서, 행정법규에 대한 위반이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이나 사회공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보고·자료제출 등 간접적으로 행정목적 달성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정도의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단순한 의무태만에 해당한다.<sup>5)</sup>

과태료에 관한 법적 규율은 일반법의 형식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법률 제8725호, 2007.12.21 제정)이 존재하며, 이 법은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불복·집행 절차 및 귀책사유, 소멸시효, 과태료의 실효성 제고 수단(가산금, 증가산금)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과태료의 개념이나 성격, 유형, 부과·징수 등을 규명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지만, 법이 제정된 후로 많은 부분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체계가 정립되었으며 입법에 있어서도 개별 법령들이 과태료와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자 부과절차·징수에 관한 개별 규정을 자제하고 부과요건과 부과권자 등에 관한 특정한 고려가 필요한 규정들만 남기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정비되어 오고 있다. 또한, 개별 법령상 각각의 입법목적·규

4) 때문에 의무의 불이행은 존재하지만 현행 행정집행 시스템에서는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집행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집행부전(조태제, “행정질서벌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토지공법연구』, 2005, 538면) 내지 행정형벌 과잉화(이호용·박수희,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의 이유와 기준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 제19권제3집, 2008, 10, 365면) 현상이 있는 것이다.

5) 박윤훈·정형근, 『최신행정법강의(상)』, 박영사, 2009, 558면.

유희성 등에 맞게 과태료가 규율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행정해석에 의존하거나 내부지침을 통하여 규율되는 등의 문제점은 발견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제적 보완도 계속되고 있는 중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된 지 10년을 맞는 2017년, 과태료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이 법의 법체계적 지위와 함께 무엇보다도 과태료의 제도적 기능을 되짚어 봄으로써 과태료 제도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이 법에 대한 문제점 내지 한계를 파악하며 개선안을 도출할 만한 시기가 되었다. 또한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매우 다양한 개별 법령들의 관점에 있어서도 이들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의 관계 속에서 또는 독자적으로 어떻게 기능하고 운영되고 있는지 이론적·실무적으로 그리고 입법적으로 살펴보고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과태료에 관한 제도 일반을 규율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한 검토 분석과 함께, 과태료 제도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개별 법령에서 두고 있는 다양한 과태료 규정에 대한 이론적·실무적 현황 분석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개별 법령 상호간의 관계의 분석을 통하여 과태료 제도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도출하고자 한다.

과태료 제도에 대한 이러한 다각적 관점에서의 연구는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다소 빈번하게 체감하는 과태료에 관한 제도적 이해를 도모하고 일선 행정 실무차원에서 제기될 수 있는 규범적 불명확성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법치주의에 기반하는 과태료 제도의 합리적인 운용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제2절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과태료는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중 “간접적” 제재라는 점에서 행정청 스스로가 직접 자력으로 집행할 수 있는 행정강제와 다르다. 또한 질서위반행위의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라는 점에서 행정형벌과 다르지만, 형벌의 비범죄화 논의와 연계되어 그 경계에 있어

서는 모호한 측면이 없지 않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과태료 제도는 여러 분야에서 매력이 있는 주제로서 그 개념과 성격, 유형 등에 관하여 누적된 연구가 많은 분야이기도 하다.

과태료에 관한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보면, 우선 그것을 크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 전”과 “제정 후”의 연구로 구별할 수 있으며, 양자는 연구의 대상과 내용을 달리함을 알 수 있다. 즉,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 전의 연구는 대부분 행정형벌(특히 벌금형)과의 차이를 근거로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의 개념과 성격, 그 유형을 명확히 하고, 개별 법령에 규정된 과태료 규정 및 부과절차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특히 단일법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이러한 단일법을 제정하게 되는 경우 그 체계에 대하여 제안하면서 참고입법례로서 외국, 특히 독일의 질서위반법과 미국의 민사금전벌 등을 소개하면서 비교분석하였다.<sup>6)</sup>

1997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면서 과태료에 대한 연구는 보다 실질적인 논의로 심화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이는데, 첫째, 일반법으로서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어 현실적으로 개별 법령의 정비에 따라 전체 법령의 체계 정비 측면에서 연구를 시도하거나, 둘째, 과태료의 산정기준의 불명확성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거나, 셋째,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특히 과태료 징수를 제고를 위한 효율적 내지 실효적 징수방안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sup>7)</sup>

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 이전의 주요 선행연구로는 (연도순) 민동기, “현행 과태료 제도에 관한 소고”, 「입법연구논문집(상)», 국회사무처, 1984; 조병신, 「질서위반법」, 형사정책연구원, 1991; 조정찬, “과태료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법제개선자료 법제연구총서」, 법제처, 1993; 박상희·김명연, 「과태료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1994; 진선희,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금전적 제재수단의 법적 검토”, 국회사무처, 1997; 박정훈, “협의를 행정벌과 광의의 행정벌 - 행정상 제재수단과 법치주의적 안전장치-”, 「법학」, 서울대학교, 제41권제4호, 2001; 이승호,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체계의 정비를 위한 일 고찰”, 법조, 2004; 조태제, “행정질서벌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토지공법연구」, 2005; 최무현·이종한, “과태료 제도의 집행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2005. 등이 있다.

7)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 이후의 주요 선행연구로는 (연도순) 김종천, “최근에 제정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 「법학논문집」, 제32집제2호, 2008; 박정일, “행정질서벌에 대한 재고”, 「원광법학」, 제25권제4호, 2009; 정형근, “과태료의 실효성 제고수단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제21권제3호, 2010; 최진식·이종한·이화진, 「과태료의 효율적 징수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10; 정 훈, “한국의 행정제재 현황과 문제점”,

한편,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에 관한 논의와 주요 외국의 과태료 유사제도에 관한 입법례 연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 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쟁점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방법론으로서 꾸준히 계속되고 있는 분야로서 특징이 있다.<sup>8)</sup>

기존의 과태료에 관한 연구는 주로 행정실무적 활용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개별 법령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법제 정비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별적 개정사항을 도출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과태료 제도의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규율과 원칙들이 각 개별 법령 등에서 제대로 적용 내지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토대로 이를 검증하고 불비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집중한 것이었다.

다만, 기존 연구와 같이 개별 법령의 측면에서 과태료 제도의 기능과 역할을 살펴보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이번 연구는 과태료 제도에 관한 일반법적 위치에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개별 법령상의 과태료 제도 간의 상호연결을 통한 제도적 개선안이 함께 제시되도록 하는 데에 차별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본 연구는 ① 「질서위반행위규제법」가 설계하고 있는 과태료 제도 자체에 대한 평가와, ② 개별 법령이 구체화하고 있는 과태료 제도의 법제 및 실무현황의 분석을 통하여, ③ 이 두 접근 관점의 상호연결성을 확보함으로써 과태료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검토 및 분석의 방법론으로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취하였던 문헌연구를 종합하고, 현행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는 개별 법령의 입법유형을 분석하며, 현장 중심적 연구

「법학논총」, 제33집제3호, 2013; 최무현·강병준·조운애, “과태료의 적정수준 설정을 위한 실태조사와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정책개발연구」, 제13권제2호, 2013; 박종수,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절차 마련을 위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방안」, 법무부 연구용역보고서, 2013; 정세중, “무인단속에 따른 경찰의 교통과태료 제도 합리화방안”,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1권제1호, 2014; 주운현, 「과태료 징수를 제고를 위한 부과·징수 제도 개선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16; 박종준, “과태료 관련 법제의 법적 문제에 관한 법적 고찰”, 「법조」, 제720호, 2016. 등이 있다.

8) 주요 외국의 과태료 유사제도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로는 오영근·진희권, 「벌금형의 과태료 전환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7; 이호용·박수희,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의 이유와 기준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 통권 제24집, 2008; 법무부, 「과태료 제도 현황과 각국의 입법례 연구」, 2012; 이기세·신형석, “행정형벌의 행정질서벌화 경향에 대한 소고”, 「한국범죄심리연구」, 제11권제3호, 2015. 등이 있다.

방법론, 즉 과태료 부과 실무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과태료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과태료 제도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법이론적으로 그리고 법체계적으로 고유한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기 위한 입법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과태료 제도의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개별 법령의 과태료 규정에 대한 다각적 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우선, 과태료에 관한 일반적 논의(제2장)로서 개념적 징표를 통하여 유사제도와 차이를 살펴보고 과태료의 성격 내지 기능에 관하여 대략적으로 살펴본다. 이러한 과태료 제도의 일반론에 대하여는 이미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기에 그러한 연구 결과 중에서 현재의 시점에서 의미가 있는 부분을 위주로 간단히 살펴볼 것이다. 또한 과태료에 관한 일반법의 지위에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관하여 이 법의 성격과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 개념으로서의 질서위반행위 및 과태료에 대한 개념과 성격,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절차, 다양한 과태료의 실효성 확보수단 등 다양한 쟁점에 관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의 과태료 제도와 비교하여 외국의 유사제도에 관하여 비교법 연구를 추진하고자 한다(제3장). 사실 우리와 똑같은 과태료 제도를 가진 국가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유사한 취지, 즉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금전적 제재로서 어떠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그 규범적 근거는 어떠한 입법적 체계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 과태료 제도에서 보완할 수 있는 문제점 내지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에 참고하기로 한다.

제4장에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응하여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령의 측면에서 이들 개별 과태료 규정의 입법적 특징과 주요 입법유형의 분석을 시도하며, 특히 과태료 제도의 현실적 운영에 대한 실무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시한 과태료 실무자

설문조사를 통한 결론으로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개별 법령상의 과태료 규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실무적 문제에 대한 파악은 과태료 제도 관련 법적 불명확성이나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제 정비기준 제시하는 데에 매우 실증적인 근거자료로서 활용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일반법과 개별법의 양 측면에서 이론적, 법체계적 분석과 실무(현장) 조사를 병행함으로써 종합적 분석과 함께 결론으로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에 조사하고 분석해야 할 대상과 범위가 매우 넓다. 때문에 모든 과태료 관련 개별 입법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전부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으며 추후 후속연구를 통하여 이를 보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밝힌다.

한편, 이 연구는 다양한 쟁점에 관하여 많은 학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자문단의 정기적인 자문회의를 거쳐 현안에 대한 심도있고 전문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7차에 걸친 워크숍 및 전문가회의는 다양한 관점에서 과태료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협력적 논의의 장이 되었다.

#### 〈 전문가회의 개최실적 및 주요 논의사항 〉

회	일자	외부참석자	주제 및 의견
1	02.03	장교식, 오준근, 김용섭, 박종수, 오승규, 장선희, 전 훈, 조병선	<b>&lt;착수연심회 및 과제수행 방향&gt;</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부각 필요</li> <li>• “입법모델연구”의 실천적 의미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령정비의 기준, 체계화의 원칙 등</li> </ul> </li> <li>• 과태료 제도 실태의 법제 반영 방식</li> <li>• 과태료의 경제, 사회, 문화적 맥락이해</li> </ul>
2	03.31	오준근, 김남철, 김용섭, 장선희, 곽관훈, 전 훈, 조병선, 박준환, 양은영	<b>&lt;현행 과태료 규정 법률 형식 및 관련 법률 상 주요내용&gt;</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문조사의 필요성 및 설문사항 검토</li> <li>• 법률 전수조사의 필요성 재검토</li> <li>• 부과기준 및 금액의 양정기준 목록화</li> <li>• 부과·징수 입법모델 개발의 범위</li> </ul>

회	일자	외부참석자	주제 및 의견
3	04.07	김재광, 김영진, 김용훈, 강기홍, 김원중, 한상돈, 정관선	<과태료 제도의 취지와 유사 해외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민사금전벌제도와의 차이</li> <li>• 영국 징수담당관 제도의 도입 가능성</li> <li>• 일본 과료제도와의 차이, 부과·징수 절차</li> </ul>
4	05.26	오준근, 김재광, 오승규, 정소영, 조병선, 황창근	<설문조사 및 법령 전수조사의 방향과 주요 내용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의 타당성 검토</li> <li>• 조사대상 조정: 민생분야로 한정 필요</li> <li>• 객관식 조사의 한계, 주관식 활용</li> <li>• 질서법과의 정합성, 연계성 강조</li> </ul>
5	08.30	김영진, 김용훈, 서보국, 김원중, 한상돈, 정관선	<해외 입법례 및 시사점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민사금전벌의 화해 및 타협절차 검토</li> <li>• 미국 연방법상 인플레이션조정제도 검토</li> <li>• 영국 과태료 부과대상 개별화 및 절차 다원화 제도 검토</li> </ul>
6	09.27	김용섭, 이천현, 김원중, 이원상, 김용훈, 주현경, 김슬기, 정소영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서법총칙과 형법총칙의 입법유사성</li> <li>• 위반자의 2중처벌 체감 개선방안</li> <li>• 감경 또는 면제제도의 활용방안</li> <li>• 기타의 실효성확보수단에 대한 검토</li> </ul>
7	10.27.	오준근, 임 현, 김영미, 김봉철, 강기홍, 강지은 도중진, 계인국, 김기태, 이기춘, 김현귀, 길준규, 김남철, 이순자, 오주연, 이지은, 박준환, 김재광, 정영철, 양은영	<과태료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의 실효성 확보방안의 의미, 체계</li> <li>• 금전적 행정제재상 과태료 제도의 법리적 의미와 성격</li> <li>•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과태료</li> <li>•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의 필요성과 주요내용</li> <li>• 과태료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입법체계 정비 방안</li> </ul>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제2장

# 과태료 제도 일반론

제1절 과태료의 의의

제2절 과태료의 法源(법적 근거)



## 제2장

# 과태료 제도 일반론

## 제1절 과태료의 의의

### I. 개념

과태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상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이다. 이는 강학적 정의이며, 과태료의 개념을 정의하는 법적 규정은 없다.

#### 1. 부과주체 : 행정청

과태료에 관한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한 논의가 존재하였다. 당시에는 우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입법모델이 되었던 독일의 질서위반법이 과태료부과·징수의 주체를 행정청으로 규정<sup>9)</sup>하고 있음을 근거로 하여 “행정청”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리하여 행정청이란 조직적 의미에서만 아니라 기능적 의미까지 포함하여 “행정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이러한 행정의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모든 기관”으로 이해하였다.<sup>10)</sup> 이는 곧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행정청”, 즉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의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으로 명문화되었다(제2조제2호).

9) Göhler, *Ordnungswidrigkeitengesetz*, 10 Aufl., 1992, S. 264.

10) 박상희·김명연, 「과태료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1994, 13면.

“국가”는 개별법상 중앙행정청이 원칙이지만, 특별지방행정청도 가능하다. 특별지방행정청이 부과주체가 되는 경우로 「출입국관리법」에서의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제100조제4항), 「관세법」에서의 “세관장”(제277조제6항)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청이 정부, 관할청, 허가청 등 막연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사립학교법」에서의 “관할청”(제74조제3항)이 대표적이다. 또한 이례적으로 “법원”이 과태료의 부과주체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청탁금지법」제23조제7항의 경우 “소속기관장은 …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하여 법원이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의 일반적인 원칙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제27조(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관할 구역 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에 따라 “(감사 도는 조사를 위하여) …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그 부과절차는 제27조를 따르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징수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모두 부과주체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의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제99조), 「도시개발법」에서의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제85조제3항) 등이 그러하며, 최근 이러한 과태료 부과주체의 확대는 점차 보편화되고 있는 입법현상 중의 하나이다.

## 2. 부과대상 : 질서위반행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에 의하면, 과태료의 부과대상인 “질서위반행위”는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포함)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질서위반행위라는 개념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다양한 학설과 판례에 따라 약간씩 차이를 보였으나, 주로 행정형벌처럼 행정목적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라, 신고·등록·장부비치의무 등을 태만히 하는 경우처럼 간접적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에 장애를 미칠 위험성이 있는 정도의 단순한 의무태만의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sup>11)</sup> 이는 독일 질서위반법의 경우 제1조가 “질서위반행위”를 위법하고도 비난받을 행위로서 과태료의 처벌을 허용하고 있거나 법률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행위로 명시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입장이다.

우리의 경우 행정목적을 “직접” 침해한다는 것과, “간접적으로” 침해한다는 것의 차이 및 구별기준이 모호하고, 대부분의 판례 또한 “어떤 행정법규위반의 행위에 대하여 이렇단지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음에 불과한 경우로 보아 행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인 과태료를 과할 것인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행정목적과 공익을 침해한 행위로 보아 행정형벌을 과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입법권자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로 파악하고 있어<sup>12)</sup> 질서위반행위의 실제적인 내용으로 개념 정의를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 3. 부과내용 : 금전적 제재(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의 개념을 적극적인 방식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과태료가 부과되는 원인(요건)으로서의 “질서위반행위”를 결부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효과(제재)라고 판단될 수 있을 뿐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1) 대법원 1969.7.29. 69마400. 박윤훈·정형근, 앞의 책, 620면.

12) 헌법재판소 1998.5.28. 96헌바83. 김철용, 「행정법」, 고시계사, 2017, 36면.

제정 이전에는 “금전벌”로 이해되기도 하였지만,<sup>13)</sup> 과태료의 성격을 “罰”로 이해하는 것은 행정형벌과의 관계를 모호하게 하고, 무엇보다도 각 개별 법령의 벌칙에서 행정형벌인 벌칙의 경우 벌금에 “처한다”는 표현을 취하는 반면에, 과태료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여 금전벌이 아닌 금전적 제재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또한 “과태료 처분”(제3조제1항)이라 하여 형벌이 아닌 행정적 제재로 본다.

과태료 부과에 법적인 성질은 과태료가 법원의 재판에 의해 부과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행위는 사법행위의 성질을 가지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부과되고 다루어지는 반면에, 과태료가 행정청에 의해 부과되는 경우에 과태료 부과행위는 행정행위이다.<sup>14)</sup>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이 경우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제20조제2항) ‘이의제기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행정행위’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sup>15)</sup>

## II. 유사 개념과의 구별

과태료는 행정법상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이다. 그런데 우리 법제에 있어서 금전적 제재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들 간의 차이와 규범적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전적 제재”라는 점에 근거하여 본다면 현행법상 형사벌인 벌금, 과료 및 범칙금의 대상과 과태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그 성질상 본질적인 구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실질이 ‘입법정책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명백히 형벌에 처해져야 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질서벌로서 과태료로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한다.<sup>16)</sup> 나아가 단일화의 방법으로는 법규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범칙금으로, 경한 경우에는

13) 박상희·김명연, 앞의 보고서, 14면.

14)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15, 565면.

15) 박정훈, 앞의 논문, 296면.

16) 이호용·박수희, 앞의 논문, 363면.

과태료로 상호 결합할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sup>17)</sup> 그러나 벌금, 과료, 범칙금과 과태료는 본질적으로 법적 근거와 체계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특히 행정상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는 형법상 범죄행위에 대하여 과하여지는 형벌과는 명백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현행 체계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 구별이 필요하다면 행정적 제재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다양한 실효성 확보수단, 즉 “과징금”, “가산금”, “변상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과의 구별이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

## 1. 과료

과료(料料)는 형사벌로서 벌금과 같이 財産刑의 일종으로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형벌”이다. 과료는 벌금에 비해 금액이 적고 또한 비교적 경미한 범죄의 경우 부과된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범죄는 형법의 경우 예외적으로 규정되어 있고(폭행죄, 협박죄, 공연음란죄, 도박죄, 과실치상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주로 경범죄처벌법이나 기타 단행법규에 많이 규정되어 있다.<sup>18)</sup>

과료는 재산형의 일종이나, 과태료 또는 범칙금은 행정법상의 제재라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과료는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으로 한다(형법 제47조).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sup>19)</sup>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제 69조). 과료의 일부만 납입한 때에는 과료액과 유치기간의 일수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상당한 일수를 공제해야 한다(제71조).

## 2. 과징금

과징금이란 행정법규의 위반이나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으로 경제상의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 해당 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그 이익액에 따라 행정기관

17) 최무현·이종한, “과태료 제도의 집행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2005, 269면.

18) 김일수·서보학, 「형법총론」, 박영사, 2005, 742면.

19) 노역장 유치는 과료선고와 동시에 금 얼마를 1일로 환산한 기간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선고해야 한다(형법 제70조).

이 과하는 행정상 제재금을 말한다.<sup>20)</sup>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 도입되었는 바, 주로 경제법 분야에서 의무를 위반한 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위반행위로 인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저해 효과가 중대하거나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중 Ⅲ. 과징금 부과여부의 결정 1. 일반원칙)에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그 이익액에 따라 과하는 행정제재이다.

과징금은 과태료와 같이 “행정적” 제재이며, “금전적” 제재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① 과태료는 행정상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질서벌이고, 과징금은 행정상 의무위반에 대하여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상의 수단이라는 점, ② 과태료로서 부과될 금전의 한도액은 가벌성의 정도에 따라서 정하여지나, 과징금은 의무위반상태 하에서 영업수익의 예상치 내에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다르다.<sup>21)</sup>

### 3. 범칙금

범칙금이란 행정형벌의 특별절차인 통고처분절차로서, 일정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고 그 통고를 받은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지만,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대량적인 실정법 위반 사건을 신속·간이하게 처리함으로써 사법부의 부담을 줄이고 행정목적은 효율적으로 달성하며, 형사벌의 과벌 절차와 관련된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22)</sup>

범칙금은 금전을 제재수단으로 한다는 점에서 과태료와 동일하지만, 그 원인에 있어서 다르다. 즉,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행정질서벌이지만, 범칙금은 범칙행위

20) 박균성, 앞의 책, 568면.

21) 박상희·김명연, 앞의 보고서, 37-38면.

22) 박상희·김명연, 앞의 보고서, 39면.

에 대한 형사벌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근본적으로 성격을 달리하며, 다만 범칙금의 경우 형벌적 제재를 유보하고 행정적 조치를 선행시킨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형벌(벌금·과료)과도 차이가 있다.<sup>23)</sup>

#### 4.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이란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그 의무를 간접적으로 강제 이행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안에 의무이행이 없을 때에는 일정한 금전적 강제를 부과할 것을 계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이 없는 경우 그 금액을 부과하는 것을 말하며, “집행벌”이라고도 불린다.<sup>24)</sup> 이행강제금에 대한 일반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대표적인 개별 법률로서 건축법 제80조의 이행강제금을 들 수 있다. 즉, (건축) 허가권자는 위법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로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 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일정한 금전적인 부담이 과해진다는 것을 통지하여 “간접적”으로 강제한다는 점에서 과태료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행강제금은 애초에 장래 행위를 강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무자에게 요구된 행위가 이행되었거나 의무자 관여가 없이도 결과가 실현되는 경우에는 소멸된다는 점에 과태료와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성격으로 이행강제금은 동일한 사건에 있어서 과태료 또는 형사벌과도 병과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반복하거나 증액이 될 수 있고 다른 징계수단을 대체할 수도 있다.<sup>25)</sup>

23) 석종현, 「도로교통법상의 범칙금론」, 삼영사, 1994, 84면.

24) 박균성, 앞의 책, 525면.

25) 박상희·김명연, 앞의 보고서, 38-39면.

< 현행 법령상 금전벌 및 금전적 제재 >

구분	내 용	근거법령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벌 : 5만 원 이상.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 원 미만</li> <li>• 미납 시 노역 대체 가능</li> <li>•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에 따라 공개</li> </ul>	형법 제41조제6호
과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벌 : 2천 원 이상 5만원 미만</li> <li>• 경미한 범죄</li> <li>• 미납 시 1일 이상 30일 미만의 노역장 유치</li> </ul>	형법 제41조제7호, 제47조
범칙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형벌 : 경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 등의 통고처분절차</li> <li>• 불이행시 즉결심판절차에 회부되어 벌금, 구료, 과료 선고</li> </ul>	경범죄처벌법 제163조, 도로교통법,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손해배상보장법, 출입국관리법
추징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사부가형 : 불법적으로 취득한 금원을 환수하는 것</li> </ul>	형법 제48조제2항
과태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법상 질서위반행위에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li> <li>• 법률상 의무위반, 직무상 의무위반, 의무불이행</li> </ul>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과징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금전상 제재(세법상 금전제재는 제외)</li> </ul>	공정거래법
이행 강제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대체적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의 불이행시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금전납부를 강제하는 수단</li> </ul>	건축법, 농지법
가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li> </ul>	국세기본법 제2조제4호
가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세징수법」에 따라 고지세액(告知稅額)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li> </ul>	국세기본법 제2조제5호
부담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li> </ul>	부담금관리기본법

자료 : 길준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의 필요성과 주요내용”,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2017. 10. 27, 39면.

### III. 유형

우리 법령에서 2016년 6월 현재 “과태료”라는 조문 제목을 가진 규정의 수는 무려 1695개에 이른다.<sup>26)</sup> 다만, 이 모든 과태료가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다양한 과태료의 성격에 따라 어떻게 유형화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논의의 실익이 있었다.<sup>27)</sup> 즉, 당시에는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 조례에 의한 과태료, 소송법상의 과태료, 징계벌로서의 과태료, 집행벌로서의 과태료 등으로 분류하고 그들의 성격과 근거규정을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sup>28)</sup>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기존의 과태료 유형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하여 일정한 과태료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명문으로 제외하고 있어 전형적인 유형인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와 그 밖의 과태료를 구분한다. 즉, 개념적 징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는 “행정청이 법률 또는 조례상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서, 이와 다른 개념적 요소를 포함하는 과태료, 즉 사법(私法)상·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부과하는 과태료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는 본 연구의 대상이어서 이하에서 계속적으로 논의가 될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다른 유형의 과태료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26)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자치법규(조문제목)>과태료 검색결과(2017년10월31일 최종접속).

27) 박상희·김명연, 앞의 보고서, 제11-12면은 “모든 유형에 타당한 과태료의 개념을 정립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유형의 과태료에 타당한 과태료 개념을 정립할 실익도 없다. 이러한 각각의 과태료가 지니는 법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에 공통한 개념 정의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만약 모든 과태료에 대하여 타당한 과태료의 개념을 정의한다면 “법령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에 위반한 데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징수되는 금전”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

28) 박상희·김명연, 앞의 보고서, 15-18면 참조.

## 1. 사법(私法)상·소송법상의 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私法)상·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란 「민법」<sup>29)</sup> 「상법」<sup>30)</sup> 등 사인(私人)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 또는 「민사소송법」<sup>31)</sup> 「가사소송법」<sup>32)</sup> 「민사집행법」<sup>33)</sup> 「형사소송법」<sup>34)</sup> 「민사조정법」<sup>35)</sup> 등 분쟁 해결에 관한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령 제2조제1항).

이는 소송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소송절차 중 발생하는 의무에 대하여 해당 법원이나 법관에 의하여 부과된다는 점에서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와 구별된다.<sup>36)</sup> 독일의 경우 이러한 성격의 과태료를 질서금(Ordnungsgeld)이라고 하여 질서위반금(Bußgeld)과 용어를 구별하고 있다.

- 
- 29) 제97조(벌칙)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2.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기재를 한 때
  3. 제37조, 제95조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4.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제76조와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79조, 제9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7. 제88조, 제93조에 정한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 30) 제28조(상호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제86조의9(과태료), 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 제636조(등기전의 회사 명의의 영업 등), 제637조의2(과태료의 부과·징수).
- 31) 제301조(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제31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제360조(대소용문서의 제출절차), 제363조(문서성립의 부인에 대한 제재), 제366조(검증의 절차 등), 제370조(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 32) 제48조의3(재산조회), 제66조(불출석에 대한 제재), 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제67조의2(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 제67조의3(재산목록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제재), 제67조의4(거짓 자료 제출 등에 대한 제재), 제69조(과태료 사건의 절차).
- 33) 제48조의3(재산조회), 제66조(불출석에 대한 제재), 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제67조의2(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 제67조의3(재산목록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제재), 제67조의4(거짓 자료 제출 등에 대한 제재), 제69조(과태료 사건의 절차).
- 34) 제100조의2(출석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제102조(보석조건의 변경과 취소 등), 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제161조(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제416조(준항고), 제477조(재산형 등의 집행).
- 35) 제42조(조정 전의 처분 위반자에 대한 제재).
- 36) 박상희·김명연, 앞의 보고서, 16면.

## 2. 징계별로서의 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란 「공증인법」,<sup>37)</sup> 「법무사법」,<sup>38)</sup> 「변리사법」,<sup>39)</sup> 「변호사법」<sup>40)</sup> 등 기관·단체 등이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구성원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령 제2조제2항).

징계별로서의 과태료는 특정 조직이나 집단 내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부과되는 의무에 대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에 특별신분관계의 작용으로 과하여지는 과태료로서 그 조직의 구성원에 대하여만 부과된다는 점에 특징이 있으며,<sup>41)</sup> 과태료와는 명백하게 구별된다.

## IV. 성격

### 1.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 (1) “공법상” 의무이행의 강제

私人간의 법률관계는 대등한 주체로서 권리와 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법부의 재판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반면에 공법상의 법률관계는 행정주체에게 공익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일정한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고, 그러한 공익목적의 달성을 위해 국가 등 행정주체가 스스로 법률상 그 이행을 확보하거나 위반 상태를 시정할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집행수단이 인정되는데,<sup>42)</sup> 이러한 수단을 일반적으로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이라 한다.

37) 제57조의2(선서인증), 제83조(징계의 종류), 제85조의5(과태료의 집행), 제90조(과태료).

38) 제48조(징계처분).

39) 제17조(징계), 제27조(과태료).

40) 제90조(징계의 종류), 제98조의5(징계의 집행), 제117조(과태료).

41) 박상희·김명연, 앞의 보고서, 17면.

42) 김유환, 앞의 책, 219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은 오래전부터 제도적으로 인정되어 왔던 “전통적인” 수단으로, 직접적 강제로서 “행정강제”와 간접적 강제로서 “행정벌”이 대표적이다. “행정강제”로는 행정상 강제집행(대집행, 직접강제, 이행강제금-집행벌, 행정상 강제징수)과 행정상 즉시강제가 있으며, “행정벌”로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 있다. 과태료는 대표적인 행정질서벌이다.

한편, 직접적으로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널리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효력 제한”이나 “수익적 행정행위의 거부” 등도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되기도 한다.<sup>43)</sup>

또한 이러한 전통적인 수단 외에 소위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서 과징금, 공급거부, 범위반사실의 공표, 허가사업의 제한 등이 도입되어 있다.

<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의 체계 >

	전통적 수단	새로운 수단
직접적 강제 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정상 강제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집행</li> <li>강제금(집행벌)</li> <li>직접강제</li> <li>행정상 강제징수</li> </ul> </li> <li>행정상 즉시강제</li> <li>행정조사</li> </ul>	.

43) 김동희, 「행정법 I」, 박영사, 2015, 463면.

	전통적 수단	새로운 수단
간접적 강제 수단	행정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형벌</li> <li>└ 행정질서벌</li> </ul>	금전적 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징금·부과금</li> <li>└ 가산금·가산세</li> </ul> 비금전적 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급거부</li> <li>└ 공표</li> <li>└ 관허사업의 제한</li> <li>└ 제재적 행정처분</li> </ul>

출처 : 김남철, 앞의 책, 406면.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의 집행은 대부분 강제력이 동원되기 때문에 일정한 목적과 절차를 법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데, 실효성 확보수단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행정강제에 대한 일반법은 없고, 행정대집행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법」이라는 일반법이 존재하며, 이행강제금이나 직접강제에 대해서도 일반법은 없고, 행정상 강제징수에 대하여도 일반법은 없으나 「국세징수법」이 사실상 폭넓게 준용되고 있다. 또한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해서도 일반법은 존재하지 않고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이를 정하고 있다. 행정벌에 대하여도 행정질서벌의 경우에 한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어 있다.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은 행정의 목적적 타당성과 정당성에는 부합하지만 법적 기반이 취약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남용되기 쉬운 수단이 적지 않다.<sup>44)</sup> 때문에 행정집행 전반에 통용되는 일반법의 제정 필요성이 언급되기도 하지만,<sup>45)</sup> 각각의 실효성 확보수단의 성격과 집행방식에는 큰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한 통합적인 규범이 제정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44) 박균성, 앞의 책, 567면. 때문에 박정훈, 앞의 논문, 284-285면은 「형벌→행정형벌→행정질서벌→허가취소·정지→새로운 제재수단」의 단계구조에 따라 법치주의적 안전장치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45) 김유환, 앞의 책, 219면. 김남철, 앞의 책, 405면은 독일의 경우 1953년부터 행정강제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행정집행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같은 행정의 실효성 확보에 관한 일반법이 없으므로 이를 체계화하는 것은 학설과 판례의 몫이라고 한다.

## (2) “간접적” 강제수단

전통적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인 “행정강제”와 “행정벌”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양자의 차이는 행정강제는 행정주체가 “직접”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함으로써 의무이행을 실현하지만, 행정벌은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강제한다는 점에 있다. 이렇게 행정벌은 전통적인 실효성 확보수단이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이 있어 법에 의해 엄격히 규율되고 있고 그 실행절차도 엄격하여 효과적으로 실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등장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간접적 강제수단으로서 행정벌은 다시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나눌 수 있는데, 이들은 의무자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거나 권유함으로써 행정법규의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의무자가 행정법규 위반상태를 스스로 시정하도록 하는 기능을 갖는다.<sup>46)</sup> 과태료는 이 중 행정질서벌에 해당하며, “새로운”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 등장한 과징금·부과금·가산금·가산세 또는 공급거부·명단공표·관허사업제한 등과 같이 간접적 강제라는 점에서 자주 비교되기도 한다.

## 2. 행정질서벌

### (1) 행정형벌과의 차이

#### ① 구별기준

행정벌은 일반적으로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형법상 刑名이 있는 9개 형벌(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을 과하는 “행정형벌”과, 과태료가 과하여지는 “행정질서벌”로 구분된다.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차이에 대하여는 종래부터 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 내용은 주로 윤리·도덕과의 관계 차이에 근거

46) 박균성, 앞의 책, 567면.

하여 행정형벌은 형사사범으로서 그 행위가 기본적으로 법규의 규정 여하를 기다리지 않고도 그 자체가 반도덕성·반사회성을 가지고 있는 데 대하여,<sup>47)</sup> 행정질서벌은 당해 행위가 그 자체로서 당연히 반사회성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형사벌과의 차이)과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에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행정형벌과의 차이)에서 강조되며<sup>48)</sup> 이러한 근거로 양자를 구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구별론과는 달리, 양자 모두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하여 형식적으로 형벌을 제재로 과한다는 점에서 질적 차이는 없고 양적인 차이 밖에 없다는 견해도 있으며,<sup>49)</sup> 성문법 체계에서 양자의 구별은 상대적이고 유동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sup>50)</sup>

판례의 경우, “... 어떤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를 단지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음에 불과한 경우(단순한 의무태만 내지 의무위반)로 보아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과할 것인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행정목적과 공익을 침해한 행위로 행정형벌을 과할 것인가, 그리고 행정형벌을 과할 경우 그 법정형의 형종과 형량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당해 위반행위가 위외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법적 판단을 그르친 것이 아닌 한 그 처벌내용은 기본적으로 입법권자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이다”라고 하여 기본적으로 입법권자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라고 보았으며,<sup>51)</sup> “... 과태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도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로 보았다.<sup>52)</sup>

47)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15, 599면.

48) 류지태, “행정질서벌의 체계”, 「법조」, vol. 555, 2002. 12, 55면.

49) 박근성, 앞의 책, 562면. 이는 주로 형법 분야에서 논의되는데 형법과 질서위반법을 그 규율의 대상과 방법, 제재의 종류 등을 함께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구별하는 견해이다. 즉, 양자를 질적 또는 양적 표지에 따라 구별하며, 질서위반법도 입법자가 사회에서 보호해야 할 가치 있는 질서를 위해 제재수단을 동원하는 만큼 법익에 대한 고려가 없지 않고, 법익보호를 목적으로 삼는 점에서는 형법과 질서위반법이 질적으로 같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실질적 견해 중에서도 양자를 양적 표지에 따라 구별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즉 질서위반법의 규율대상은 법익에 대한 위협의 정도에서 범죄행위보다 본질적으로 작다는 점, 위반자의 심정이나 태도 등에 기초한 책임비난의 정도가 범죄행위에 비해 작다는 점 및 처벌이 갖는 사회윤리적 비난성도 형벌에 비해 양하다는 점에서 양적으로 구별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김일수·서보학, 앞의 책, 4-5면. 이에 따르면, 오히려 경범죄처벌법의 일부 경찰단속규정을 질서위반법으로 편입시키도록 하는 것을 제안한다.

50) 최근의 일반적인 견해이기도 하다. 김동희, 앞의 책, 514면; 김중권, 「행정법」, 법문사, 2016, 558면.

51) 헌법재판소 1997. 8. 21, 93헌바51.

52) 헌법재판소 1998. 5. 28, 96헌바83 전원재판부.

## ② 양자의 관계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구별 실익은 두 법체계의 관계 및 일사부재리 또는 이중처벌 금지원칙과의 관계 등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예컨대, 벌금과 과태료의 병과가 이중처벌이냐 아니냐의 문제에 관한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과벌 절차는 다르지만 양자 모두 행정벌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 또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따라 양자를 병과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고,<sup>53)</sup> 동일인이라도 그 대상행위가 다른 경우에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을 각각 부과하는 것은 그 보호법익과 목적에서 차이를 가지게 되므로 이것이 이중처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sup>54)</sup>도 있다.

판례의 경우, 이러한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구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유지를 위한 행정질서벌에 해당할 뿐 형벌이라고 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으며,<sup>55)</sup> 대법원 또한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의 부과처분과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sup>56)</sup>

이렇게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구별 내지 관계에 대해서 학설이나 판례가 의견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는 이유는 우선, 우리 법질서 내에서 형벌과 질서벌의 구별이 그리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즉, 법 위반에 대한 불법 및 책임비난의 정도가 높아 제재의 종류도 사형이나 징역처럼 비교적 무거운 형벌을 예정하고 있는 법체계가 「형법」이고, 위반에 대한 불법 및 책임비난의 정도가 낮아 과태료를 주로 예정하고 있는 법체계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고 이해하더라도, 현실에 있어서는 벌금보

53) 김남진·김연태, 「행정법 I」, 상원서적, 2014, 542면; 박윤흔·정형근, 앞의 책, 646면.

54) 류지태·박종수, 「행정법신론」, 박영사, 2016, 394면.

55) 헌법재판소 1997. 8. 21, 93헌바51.

56) 대판 1996. 04. 12, 96도158; 2000. 10. 27, 2000도3874 등.

다 높은 금액의 과태료가 종종 부과되고 있으며, 법적으로 보아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형법 총칙의 적용을 원칙적인 선에서 같이하고 있다는 점은 두 체계간의 경계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주기 때문이다.<sup>57)</sup> 그리고 이러한 원인에는 과태료의 부과근거인 질서위반행위가 통일적이거나 체계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전혀 다른 법체계에 근거한 것으로서 과벌 절차가 다르다. 그러나 이 둘은 같은 “행정벌”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위반사실에 관해서는 병과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sup>58)</sup> 즉, 판례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확정재판이 있을 때에 발생하는 것인데 과태료는 행정법상 질서벌에 불과하므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한 후 행정형벌을 받는다 하여 일사부재리 내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sup>59)</sup> 이러한 판례는 종래 행정질서벌이 행정형벌과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일 뿐 사실상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차이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이론적으로도 양자의 구별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sup>60)</sup> 적어도 위반사실의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잠재적 심판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중 일부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형벌·행정질서벌·형사벌 중 어느 하나가 확정되면 나머지 두 개는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sup>61)</sup>

또한, 현실에 있어서 벌금을 받은 영업자들이 과태료 처분까지 받는 경우 분명 이중처벌을 받았다는 저항과 반감을 지울 수 없게 되고, 그 위반행위가 사회적 영향력이나 비난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경우라면 이중처벌로 여겨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제재의 중복은 행정목적과 제재수단의 선택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sup>62)</sup> 수범자에 대한 입장에서는 동일한 행정상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특히, 기타 의무이행

57) 김일수·서보학, 앞의 책, 4-5면.

58) 박정훈, 앞의 논문, 297면.

59) 대법원 1986. 6. 13 선고 88도1983.

60) 박정훈, 앞의 논문, 297면. 홍정선, 앞의 책, 419면; 박균성, 앞의 책(상), 532면.

61) 박정훈, 앞의 논문, 298면.

62) 이호용·박수희, 앞의 논문, 367면.

확보수단인 영업취소 및 정지, 운전면허취소 및 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행정형벌의 과벌보다 더욱 심각한 권익침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행정벌과 형사벌의 구분을 불문하고 의무위반행위와 제재 사이에는 적절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죄형의 균형과 책임주의 실현을 감안하여 양자의 병과는 분명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sup>63)</sup>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최근 개별 과태료 입법례에서는 형벌과 행정처분의 한 유형인 과징금과의 혼용을 자제하는 형태의 규정이 등장하고 있는데 적절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8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6조, 「식품위생법」 제102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5조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라고 하여 “제〇〇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〇〇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하도록 입법적으로 환기하고 있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102조단서는 “제〇〇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처분과 과태료 중 행정처분만을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sup>64)</sup>

## (2) 행정형벌의 행정질서벌화

### ① 의의

거의 모든 개별 법령들은 규정의 마지막 부분에 “벌칙”으로 행정형벌과 과태료를 두고 있으며, 대부분은 행정형벌(징역과 벌금) 위주로 입법이 되어 있다. 오늘날과 같이 행정법 규가 끝없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벌칙도 계속 증가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행정법의 위반에 형사벌칙이 예외 없이 적용된다면 자칫 대부분의 국민이 범죄대상자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배려가 요구된다. 더욱이 행정형벌의 경우 본래의 행정의무를 과하는 기관은 각 주무관청인데 대하여, 그에 대한 제재로서의 행정벌을 과하는 기관은 사법경찰관·검사 및 법원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종국적으로 행정법상의 의무 실현이 행

63) 이기세·신형석, “행정형벌의 행정질서벌화 경향에 대한 소고 - 행정형벌의 비범죄화·비형벌화를 중심으로”, 「한국범죄심리연구」, 제11권제3호, 2015, 230면.

64) 이호용·박수희, 앞의 논문, 368면.

정관청의 손을 떠나 제3의 기관에 맡겨진 결과가 되어 행정목적은 관철시키기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한 결과 행정형벌이 행정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됨은 물론이고 처벌을 받거나 받지 않는 국민 사이에 법적용의 형평을 잃게 되며 결국 국민의 준법정신을 흐리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sup>65)</sup>

궁극적으로 행정목적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제재수단도 단기의 징역형이나 벌금형과 같은 형벌적 수단(행정형벌)이 아닌 행정적 수단(행정질서벌)에 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근거로 행정형벌의 남발로 국민 대다수가 전과자가 되지 않게 하자는 “행정형벌의 행정질서벌화”에 관한 논의이며,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sup>66)</sup>

행정법의 비중이 일반 형사법의 경우에 비하여 현저히 많은 우리 현실에서 행정법의 비범죄화 문제는 “비범죄화”의 핵심을 이룬다고 할 수 있으며, 그동안 우리 행정법제가 꾸준히 법령을 정비하여 왔던 목적과 내용이기도 하다.

## ② 한계

문제는 형벌로부터 전환되거나 새로이 부과되는 과태료의 입법이 현저하게 증가하면서 과태료의 액수가 벌금액에 상응하거나 이를 훨씬 상회하여 심지어 억대에 이르고 있고, 과태료 대상이 되는 행위도 「행정목적에 대한 간접적 침해위험성」에만 한정되지 않고 행정목적 직접 침해하는 행위로 확대되면서, 과연 행정목적 침해의 직접성과 간접성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준으로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을 실질적으로 구별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된다.

65) 조병선, 「질서위반법」, 형사정책연구원, 1991, 231면. 예컨대 무허가영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행정형벌이 적용되며 예외적으로만 영업장 폐쇄와 같은 직접강제가 적용되는데, 형벌을 이용한 의무이행의 확보는 형벌을 받고도 무허가营业을 계속하는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반복하여 벌할 수 없고 무허가 영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이 벌금액보다 현저히 많은 경우 강제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무엇보다도 허가영업자에 대하여는 의무위반에 대해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재하는데 비해, 무허가영업자에 대해서는 형사벌로 처벌하는 것 외에 다른 제재수단이 없어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법을 지키는 사람보다 유리한’ 경우가 발생하여 합리적인 제재수단이 되지 못한다. 이호용·박수희, 앞의 논문, 365면.

66) 김남철, 앞의 책, 459면.

우리 법제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라는 2분적 구분을 전제하고 하고, 그 실질적 구별기준은 행정목적 침해의 직접성-간접성으로 삼되, 개별적인 법률의 입법목적과 행정현실에 대한 평가가 주요 판단기준이 되기는 하지만,<sup>67)</sup> 사실 그 실질적 구별기준은 획일적으로 확정할 수는 없고 결국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맡기고 있다.<sup>68)</sup> 그런데 그 입법자의 재량이라는 것이 일정한 기준이나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양자를 구별함으로써 실천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sup>69)</sup> 더욱이 근본적으로는 “행정목적”이라는 것조차 무엇인가를 명확히 규명하기 어렵다. 지극히 추상적이고 다의적인 개념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내용의 설정도 행정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될 수 있는 것이어서 구분기준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sup>70)</sup> 요컨대, 행정목적의 실체가 정확히 무엇이고, 다양한 행정목적 중에서 어느 것이 보다 우월하고 보다 엄한 제재수단으로 대처해야만 하는지는 시기와 상황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sup>71)</sup>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에 있어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타당한 과별 체계를 정립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 제2절 과태료의 法源

### I. 개 설

과태료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 제도의 총칙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다. 예컨대, 형법 제1편 “총칙”의 기능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담당하는 한편,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의 요건과 그 효과로서의 처벌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형법 제2편 “각칙”의 기능을 개별 법률상의 과태료 규정들이 담당하는 구조이다. 이에

67) 류지태, 앞의 논문, 55면.

68) 박정훈, 앞의 논문, 292면.

69) 류지태, 앞의 논문, 55면. 이에 관련된 판례는 56-57면 참조.

70) 이호용·박수희, 앞의 논문, 362면.

71) 김수현, 「행정법규 처벌규정의 법정형 합리화 방안」, 정책보고서 Vol. 18, 국회입법조사처, 2012. 10. 17, 4면.

따라 개별 법률상의 과태료 규정들은 질서위반행위의 개별적인 내용과 구체적인 금액, 기타 부과권자 등에 대한 사항만을 정하는 정도로 그 규정내용을 최소화하고 있다.<sup>72)</sup>

그렇기에 과태료에 대한 개념과 일반적인 적용원칙, 절차 등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위주로 살펴보고,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주체와 과태료 대상인 질서위반행위의 개별적 태양 및 과태료 금액 등은 개별 행정법의 별칙에 존재하는 과태료 규정을 각각 살펴보아야 한다.

이하에서는 과태료에 대한 총칙적 성격에 해당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II.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1. 제·개정 배경

연혁적으로 볼 때, 과태료 제도는 그 역사가 상당히 오래된 제도로서 일제 강점기에는 過料라는 이름으로 존재하였으나,<sup>73)</sup> 현행 민법이 제정될 때, 형벌인 科料와 구별하기 위하여 현재의 명칭인 과태료로 변경되었다.<sup>74)</sup> 과태료는 미군정 하에서 제정된 법령에서도 존재하였으며, 정부수립 후에는 1949년의 지방자치법 등에서도 존재하였다. 다만, 오랫동안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수단으로 대부분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었기에, 과태료는 거의 예외적인 처벌수단으로서 활용도는 상당히 낮았다고 한다.<sup>75)</sup>

2007년에 이르러서야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개별 법령에서 통일되지 못하고 있던 과태료의 부

72) 박종준, “과태료 관련 법제의 법적 문제에 관한 법적 고찰”, 「법조」, 제720호, 2016, 297면.

73) 현행 일본의 住民基本台帳法은 동법에서 정하는 신고의무위반에 대하여 過料를 부과하고 있다(제45조). 또한 지방자치단체도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료를 과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5조제2항·제228조제2항·제244조의2제7항). 鹽野 宏(서원우·오세탁 공역), 「일본행정법론」, 법문사, 1996, 196면.

74) 과태료 제도의 연혁에 대해서는 김재광, “과태료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조」, 제577호, 2004, 163~164면 참조.

75) 김재광, “우리나라 과태료 제도의 연혁과 현황,” 한국법제연구원 전문가회의 자료집, 2017. 4. 7. 11면.

과·징수 절차를 일원화하며, 행정청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되도록 하는 등 과태료 재판과 집행절차를 개선·보완함으로써 과태료가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는 일반법이 제정되었다.<sup>76)</sup> 그러나 이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정부에서는 1983년부터 법무부와 법제처가 중심이 되어 우선적으로 형벌을 두고 있는 모든 법률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원칙과 기준을 정한 지침에 따라 벌금(단기자유형 포함)의 과태료 전환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러한 지침은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2분적 체계가 유지되는 한 정비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주요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 벌금의 과태료 전환 기준(1983)77) 〉

#### 1. 기본방침

- (1) 행정목적위반에 지장이 적은 경미·빈발하는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지나친 형사벌의 과별을 지양하며 과잉규칙을 완화하는 동시에 다수 국민의 전과자화를 막고,
  - (2) 동일 또는 유사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법질서의 합리화를 기함
  - (3) 과태료의 확대는 다수 국민이 불의에 전과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행정상의 의무이행 확보면에서는 위반자에게 주는 심리적 압박의 정도가 약화될 우려가 있는 바, 이는 과태료를 행정절차에 의하여 부과하여 집행의 철저를 기함으로써 해결함
2. 행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적을 것으로 보이는 의무위반유형(행정질서벌 대상) : 13개 유형
  3. 위2의 유형에 속하더라도 형벌로 존치하도록 함
  4. 현행 법률 검토 원칙
    - (1)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법률은 검토하지 아니함
    - (2) 다른 법률로 목적달성이 가능하거나 사법행위에 가까운 사항은 벌칙조항을 삭제함
    - (3) 형량의 불균형문제는 검토 외로 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벌금과 같은 금액의 과태료로 함(개별법률 개정시 검토하기로 함)
    - (4) 성장발전을 위한 제도개선과제로 법무부 및 총무처에서 조사한 과태료 전환사항은 그에 따름

76) 법제처 > 법령정보센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정이유(2017년10월31일 최종접속)

77) 조정찬, “과태료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법제개선자료 법제연구총서』, 법제처, 1993, 129-132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2007년에 제정된 후, 현재까지 두 차례에 걸쳐 개정이 있었는데, 2011년 첫 개정에서는 사생활의 보호 및 행정비용의 감축을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 집행의 실효성 등을 위하여 당사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며, 과태료 재판의 집행결과를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에 통보하도록 하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례규정을 마련하였다.<sup>78)</sup>

2017년 제2차 개정에서는 과태료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실제 납부업무수행에 있어 혼선이 있었던 것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마련하고, 또한 현행법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일시 해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들의 생계 곤란에 대한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과태료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산금을 100분의5에서 100분의3으로 인하하며, 과태료에 대한 분할납부와 납부연기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다.<sup>79)</sup>

## 2. 주요내용

### (1) 질서위반행위의 규제

#### 1) 목적

이 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78) 법제처 > 법령정보센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정이유 > 2011.4.5.일부개정(2017년10월31일 최종접속)

79) 법제처 > 법령정보센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정이유 > 2016.12.02.일부개정(2017년10월31일 최종접속)

##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제2조).

우선,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私法)상·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와,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제1호).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의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제2호).

마지막으로, “당사자”란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제3호).

## 3) 적용범위

이 법의 적용범위는 크게 시간적 적용범위와 장소적 적용범위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시간적 범위와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제3조).

한편, 장소적 범위에 있어서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하며,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적용한다. 또한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제4조).

####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5조). 예컨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과태료의 부과절차에 속하는 것으로 이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으며 이 규정에 따르게 된다. 따라서 이의제기 기간을 이 법은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제20조제1항)로 정하고 있는데, 개별 법령에서 30일 등으로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위 제5조에 따라 이 법이 적용된다.<sup>80)</sup> 다수의 개별 법령이 이의제기 기간을 30일로 규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의 권익보호의 측면과 법률 간 정합성 유지를 위한 측면에서 60일로 통일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개별 법령에서 당사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개별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상당할 것인데, 예컨대 질서위반행위법에서 정한 감경률이 20%인데, 각 개별 법령에서 이보다 큰 감경률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것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sup>81)</sup>

### (2)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 1) 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

과태료에 대하여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그 절차 등이 「비송사건절차법」 등을 따르고 있었고, 그 부과는 각 개별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되었다. 이러한 과태료 전반에 통용되는 부과 및 징수의 절차에 대하여 일반법 부재로 인하여 제도의 통일성을 기할 수 없었고 법령에서 과태료에 대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아 혼란을 초래하였다. 그리하여 과태료에 관한 일반법 부재에 대한 단점을 해소하고 명확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과태료에 대하여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서의 질서위반행위를 법규로 정하도록 “질서위반행위 법정주

80) 법무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 동광문화사, 2015. 1, 156면.

81) 법무부, 앞의 해설집, 159면.

의”를 천명한 것이다. 즉,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제6조).

## 2) 질서위반행위자

질서위반행위의 주체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다. 이는 제2조에서 “당사자”로 표현되어 있으며,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자연인의 경우, 14세 이상이어야 한다(제9조).

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제11조제1항). 종래 종업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수범자인 법인에 과태료를 부과하던 실무에 대하여 논란이 있어 왔던 것에 대해 법인 처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sup>82)</sup>

다만, 「도로교통법」상 차가 일부 규정<sup>83)</sup>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나 위반행위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주등<sup>84)</sup>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이 있는데(제160조제3항), 고용주등은 사실상 직접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개별화의 입장에서 질서위반행위자의 고용주까지 처벌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이렇게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고의·과실, 위법성의 착오, 책임연령, 심신장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

82) 법무부, 앞의 해설집, 31면.

83) 제5조, 제13조제1항·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23조, 제25조제1항·제2항·제5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9조제4항 또는 제60조제1항.

84) “고용주등”이란 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운전자나 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동차를 대여한 사람으로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운전자가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운전자에게 자동차등을 운전하도록 시켜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56조).

니한다고 정하고 있다(제11조제2항).

### 3) 고의·과실, 위법성 착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제7조).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위법성의 착오)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제8조).

법 제정 이전에는 질서위반행위에 고의·과실이 필요한지에 대한 명백한 논리가 없어 일부 학설과 판례는 고의·과실이 ‘필요하다’ 또는 ‘필요하지 않다’에 관하여 여러 견해가 나뉘어 있었다. 당시 대부분 판례는 행정질서벌은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과하여지는 것으로 보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지만,<sup>85)</sup> 위반자에게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sup>86)</sup>는 기준이 적용되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 및 제6조와 제7조의 존재로 그동안 과태료에 관한 일부 판례는 입법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행위자의 고의나 과실과 같은 주관적인 요건과 관계없이 단순히 객관적인 법규위반 사실이 발생하면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결과책임을 묻게 되어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게 되므로 이 법은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에 고의 또는 과실을 요한다고 규정한 것이다.<sup>87)</sup>

한편, 제8조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한다. 일반적으로는 질서위반행위에 속하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질서위반행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다.<sup>88)</sup> 판례는 “정당한 이유”를 행정

85) 대법원 1994. 08. 26, 94누6949 등.

86) 대법원 2000. 05. 26, 98두5672 등.

87) 법무부, 앞의 해설집, 176면.

청 등의 결정, 회신, 답변, 공문 등을 받고 그에 따라 행위하는 경우로 제한적으로 본다.<sup>89)</sup>

#### 4) 책임연령

자연인의 경우, 14세를 책임연령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제9조). 또한, 심신(心神) 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감경한다.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일으킨 경우, 즉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경우는 질서위반행위자에 대하여 면제 또는 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0조).

#### 5) 법인의 질서위반행위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제11조). 이에 따라 법인이나 개인에게 업무상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해당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위반한 때에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 6) 공범 - 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

질서위반행위에 2인 이상이 가담한 경우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 신분에 의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기중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분의 효과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제12조).

88) 법무부, 앞의 해설집, 179면.

89) 대법원 1995. 7. 11. 94도1814; 대법원 1995. 8. 25. 95도717; 대법원 2005. 8. 19. 2005도1697 등

### 7) 경합범 - 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다른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13조).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이른바 상상적 경합의 경우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며,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실제적 경합의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다.<sup>90)</sup>

동종의 질서위반행위를 일정기간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경우, 즉 동종의 법률상 의무위반을 수회 반복하는 경우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단일한 의사에 따른 행위의사의 단일성과 침해된 법률상 명령 규범 위반행위의 동일성에 따른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포괄하여 하나의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므로(포괄일죄) 1개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1개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sup>91)</sup>

### 8) 과태료의 산정

행정청 및 법원이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 ① 질서위반행위의 동기·목적·방법·결과, ②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당사자의 태도와 정황, ③ 질서위반행위자의 연령·재산상태·환경, ④ 그 밖에 과태료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고려하여야 한다(제14조).

### 9) 시효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한다(제15조).

90) 법무부, 앞의 해설집, 203면.

91) 법무부, 앞의 해설집, 205-206면.

### (3) 과태료의 부과

#### 1) 사전통지·의견제출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 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 포함)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법 제16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①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② 과태료 부과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③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④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⑤ 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⑥ 제2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⑦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령 제3조제1항).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 포함, 령 제3조제2항)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법 제16조제2항),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법 제16조제3항).

#### 2) 과태료 부과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법 제17조제1항). 이러한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는 ①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② 과태료 부과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법령, ③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④ 과태료 납부 기한, 납부 방법 및 수납 기관, ⑤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일정한”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요건, ⑥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 ⑦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령 제4조).

위에서 언급한 일정한 불이익이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를 말한다(령 제4조제5호).

### 3) 과태료의 납부

당사자는 과태료,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증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대행기관(금융결제원 또는 행정청이 지정하는 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낼 수 있다(제17조의2제1항).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과태료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데(제3항), 이 경우 납부대행기관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과태료(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증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 금액의 1천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청이 승인한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령 제4조의2제2항).

한편,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령 제5조)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제18조제1항). 당사자가 위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제18조제2항).

### 4) 과태료 부과기간 - 제척기간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다만, 행정청은 제36조(재판) 또는 제44조(약식재판)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과태료를 정정부과 하는 등 해당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제19조).

### 5) 이의제기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한 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재판으로 이관된다(법 제20조제1항).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제2항). 제2항의 존재로 과태료의 부과는 행정행위의 형식으로 부과되지만 공정력 및 자기집행력이 인정되지 않고 당사자의 이의제기만으로 실효된다는 의미에서 ‘이의제기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행정행위’로 이해되는 것이다.<sup>92)</sup> 여기서의 재판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정당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인지, 부과한다면 과태료 금액을 얼마로 하여 부과하여야 하는 것인지 등 과태료에 대한 판단을 법원이 하는 것이다.<sup>93)</sup>

당사자의 이의제기 없이 과태료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과태료 부과처분 자체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당사자가 과태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압류 등 체납절차로 전이된 경우에는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sup>94)</sup>

## 6) 법원에의 통보

당사자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①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②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청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수인 가운데 1인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행정청이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21조).

92) 박정훈, 앞의 논문, 296면.

93) 법무부, 앞의 해설집, 345면.

94) 법무부, 앞의 해설집, 329면.

## 7) 질서위반행위의 조사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령 제6조제1항) ①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의 청취, ② 당사자에 대한 보고 명령 또는 자료 제출의 명령을 할 수 있으며(법 제22조제1항),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당사자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제22조제2항).

제2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고자 하는 행정청 소속 직원은 당사자에게 검사 개시 7일 전까지 ①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② 검사 기간 및 장소, ③ 검사 대상 및 이유, ④ 그 밖에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령 제6조제2항)을 통지하여야 하며(제22조제3항), 검사 시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제22조제4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또는 검사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제22조제5항).

## 8) 자료제공의 요청

행정청은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으로 지정된 기관의 장에게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제23조).

## 9) 가산금·증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그리고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 즉 “증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이 경우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

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행정청의 과태료 결손처분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86조를 준용한다(제24조).

### 10) 상속·합병 및 집행

상속의 경우, 과태료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제24조의2제1항).

한편, 법인에 대한 과태료는 법인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후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제24조의2제2항).

### 11) 과태료의 징수유예

행정청은 당사자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sup>95)</sup> 과태료(체납된 과태료와 가산금, 증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이하 “징수유예등”)를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당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행정청에 신청할 수 있다(제24조의3제1항).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하는 경우 그 유예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이나 제공된 담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밖에 담보보전에 필요한 명령을 할

95) 법 제24조의3에 따른 과태료 징수유예의 대상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 절차개시결정자, 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과태료를 일시에 내면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령 제7조의2)가 있는 경우.

수 있으나(제24조의3제3항), 징수유예등의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과태료 징수금에 대하여 가산금, 증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교부청구는 제외)을 할 수 없다(제24조의3제4항).

행정청은 징수유예등에 대하여 ① 과태료 징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담보의 제공이나 변경, 그 밖에 담보보전에 필요한 행정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③ 3.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④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유예한 기한까지 과태료 징수금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징수유예등을 취소하고, 유예된 과태료 징수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24조의3제5항).

#### (4) 과태료 재판

##### 1) 관할 법원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하며(제25조), 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는 행정청이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한 때를 표준으로 정한다(제26조). 법원이 과태료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 법원으로 이송하며, 당사자 또는 검사는 이송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27조).

과태료 재판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조(관할법원)부터 제4조(관할법원의 지정)까지, 제6조(대리인), 제7조(대리권의 증명), 제10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인증과 감정을 제외한다) 및 제24조(비용부담)부터 제26조(관계인에 대한 비용부담명령)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제28조), 법원 직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제29조).

법원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의 통보가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30조).

##### 2) 심문 등

법원은 심문기일을 통지하고 심문기일을 열어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검사의 의견을 구하여야 하고, 검사는 심문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법원은 당사자 및 검사에게 심문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제31조). 행정청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행정청으로 하여금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는데, 행정청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제32조).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에 따른다(제33조). 반면에, 사실탐지·소환 및 고지에 관한 행위는 촉탁할 수 있다(제34조).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심문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고, 그 밖의 심문에 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서를 작성한다(제35조).

### 3) 재판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한다. 결정서의 원본에는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하지만,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서 또는 조서에 재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판사가 이에 서명날인함으로써 원본에 갈음할 수 있다. 결정서의 정본과 등본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고, 정본에는 법원인을 찍어야 한다. 서명날인은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제36조).

결정은 당사자와 검사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결정의 고지는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지만,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야 한다(제37조).

### 4) 항고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즉시항고 여부에 대한 행정

청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제38조).

항고법원의 과태료 재판에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제39조). 항고의 절차 또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40조).

과태료 재판절차의 비용은 과태료에 처하는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고의 경우, 항고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인정하는 과태료 재판을 한 때에는 항고절차의 비용과 전심에서 당사자의 부담이 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제41조).

### 5) 과태료 재판의 집행

과태료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집행한다. 이 경우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과태료 재판의 집행절차는 「민사집행법」에 따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다만, 「민사집행법」에 따를 경우에는 집행을 하기 전에 과태료 재판의 송달은 하지 아니한다. 과태료 재판의 집행에 대하여는 제24조(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등) 및 제24조의2(상속재산 등에 대한 집행)를 준용한다. 검사는 과태료 재판을 집행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제42조).

한편, 검사는 과태료를 최초 부과한 행정청에 대하여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위탁”할 수 있고, 위탁을 받은 행정청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집행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한 금원(金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제43조).

### 6) 약식재판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심문 없이 “약식으로”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있다(제44조). 이 경우 당사자와 검사는 약식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7일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하지만, 당사자와 검사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1항의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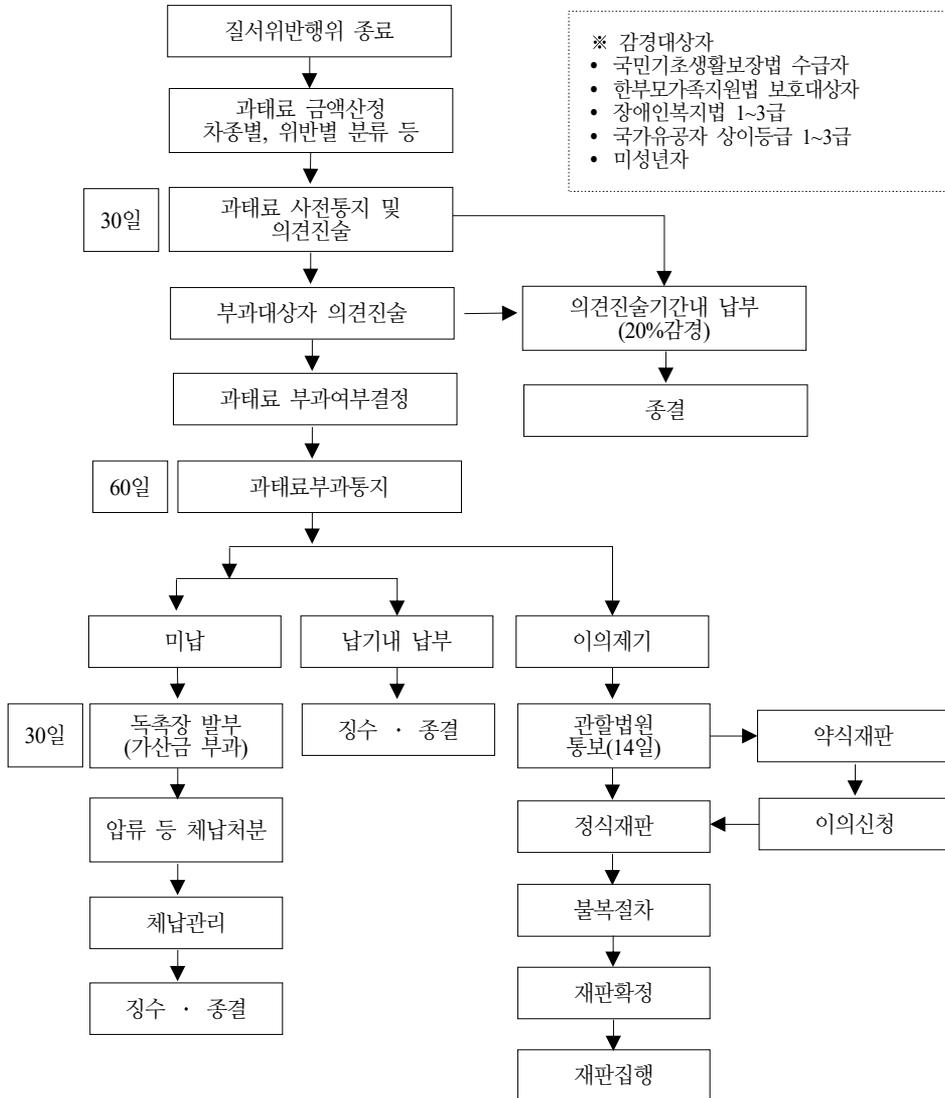
대하여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제45조).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를 제44조에 따른 약식재판을 한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하는데(제46조제1항),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 또는 검사는 정식재판 절차에 따른 결정을 고지받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할 수 있다(제47조제1항). 법원은 이의신청 또는 이의신청취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 또는 이의신청서취하서의 부분을 그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제46조제2항, 제47조제2항). 이의신청이 법령상 방식에 어긋나거나 이의신청권이 소멸된 뒤의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그 흠을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의신청 각하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48조).

약식재판은 ① 제45조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②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③ 당사자 또는 검사가 이의신청을 취하한 때 확정된다(제49조).

이에 반하여, 법원이 이의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약식재판은 그 효력을 잃고, 이의신청에 따른 정식재판절차로 이행하게 된다. 이 경우 법원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심문을 거쳐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제50조).

〈 과태료 부과·징수 및 재판 절차 〉



출처 : 김원중, “행정질서법인 과태료에 관한 일반적 검토”, 한국법제연구원 전문가회의 자료집, 2017. 4, 128면 일부 수정.

### (5) 과태료 집행의 실효성 확보

과태료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두고 있는 확보수단으로는 관허사업의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과태료 관련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과태료 납부증명서의 제출이 있다.

#### 1) 관허사업의 제한

행정청은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제52조제1항). 즉, ①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 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인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3회, 령 제11조제1항)와 금액(500만원, 령 제11조제1항) 이상을 체납한 자로서 ②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중대한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sup>96)</sup> 없이 과태료를 체납한 자은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는다. 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당해 주무관청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제52조제2항), 행정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제52조제4항).

관허사업은 새로운 형태의 불이익처분으로서 사전적으로는 과태료의 체납을 방지할 뿐 아니라 사후적으로 과태료 체납자에게 과태료의 납부를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다. 그러나 과태료 체납 자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의 불이익을 가한다는 점에서 비례성에 반하거나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률이 정하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 최후 수단으로서 보충적으로 사용될 필요가 있다.<sup>97)</sup>

96) 시행령 제11조제2항 “대통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 1. 체납자가 천재지변, 전쟁, 화재, 그 밖의 중대한 재해로 인하여 과태료를 내기 곤란한 경우, 2.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중한 질병으로 인하여 과태료를 내기 곤란한 경우, 3. 체납자가 그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의 경제적 손실로 과태료를 내기 곤란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과태료 체납에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97) 법무부, 앞의 해설집, 375면.

## 2) 신용정보의 제공 등

행정청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에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7조의2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제53조제1항).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하며(제53조제2항),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게 그 제공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제53조제3항).

## 3)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법원은 ①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3회, 령 제13조제1항)와 금액(1천만 원, 령 제13조제1항) 이상을 체납한 경우로서 ②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체납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다(제54조제1항).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제54조제3항), 감치에 처하여진 과태료 체납자는 동일한 체납사실로 인하여 재차 감치되지 아니한다(제54조제4항).

행정청은 과태료 체납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제54조제2항).

## 4)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행정청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관리 등에 관한 질서위반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서위반행위로 부과 받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

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제55조제1항). 영치는 세 가지, 즉 ① 당사자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발생일부터 60일을 넘어 체납하였을 것, ② 제1호의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30만 원 이상일 것, ③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해당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 소유일 것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령 제14조제2항).

자동차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이 아닌 행정청이 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청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당사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경우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내주고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다. 그 밖의 다른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행정청은 영치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제55조제3항).

### 5) 자동차 관련 과태료 납부증명서의 제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그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 등록된 경우 그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려는 자는 압류등록의 원인이 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 포함한다)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56조).

## III. 개별 법령

“법률” 상 과태료 규정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2004년에 594건이었던 것이<sup>98)</sup> 2017년 10월 현재 총 970건으로 파악된다.<sup>99)</sup> 이들 규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됨에 따

98) 김재광, 앞의 논문 167면.

99)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자치법규(조문제목)>법령종류(법률)>과태료 검색 결과(2017년6월28일 최종

라 부과권자, 부과기준, 부과금액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각 개별법의 제정 취지와 행정목적에 맞게 개별화, 다양화되어 있다. 따라서 과태료의 구체적인 운용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각 개별 법령간의 입법형식과 내용의 정합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개별 법령의 과태료 규정 및 운영 현황에 관하여는 아래의 제4장 및 제5장에서 입법모델에 대한 유형화와 전문가 설문조사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 IV.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한계 및 개선방향

제정된 지 10년이 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 관련 법제의 핵심적인 법적 기반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다. 즉, 과태료와 관련된 중요한 기본원칙, 즉 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 고의와 과실이나 위법성의 착오 등 주관적 책임요소의 도입, 과태료의 산정원칙, 시효 등을 명시하여 과태료에 관한 법리적인 기초를 확립한 점, 과태료 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과태료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당사자의 절차권을 보장하는 데에 기여한 점, 질서위반행위의 재판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과태료에 대한 불복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립한 점 등은 이 법이 이루어낸 의미 있는 법적 성과라고 할 수 있다.<sup>100)</sup> 무엇보다도 과태료에 관한 일반법이 존재함으로써 그것을 보다 실효성 있는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법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된 것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일반법이 존재하지 않는 다른 의무이행 확보수단들의 경우 그 실제 적용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법적 쟁점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입법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은데 비하여, 과태료의 경우 대부분의 법적 문제들을 입법적 테두리 내에서 해결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 것이다.<sup>101)</sup>

접속). 자치법규의 경우 총 4,744건으로 조사된다.

100) 조태제, 앞의 논문, 553-554면.

101) 박종준, 앞의 논문, 278-279면.

그러나 이러한 법 제정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하여는 다양한 한계 내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성격과 체계적 기능(실효성), 내용에 있어서의 미비점, 무엇보다도 이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과태료” 자체의 성격 등에 관하여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아니한 채 남아있다. 그리하여 아래에서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개선안을 도출하여 보고자 한다.

## 1. 체계적 한계

### (1) 과태료의 법적 지위

과태료는 행정의무위반에 대하여 금전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행정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함과 동시에, 이를 통해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의무자의 행정법상의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는,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의 성격과 함께 장래 행정상의 의무이행의 확보라는 2중적 성격을 가진다. 다만, 지금까지 징벌적 의미를 가지는 제재 보다는 상대적으로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이라는 측면으로서 강조되어 왔으며,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있어 엄격한 법치주의 적용보다는 행정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관점에서 강조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sup>102)</sup> 그래서 과태료의 고유한 역할과 기능 보다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여겨지는 “행정형벌”이 선호되어 왔으며, 과태료는 단지 그러한 행정형벌에 부수하거나 형식적으로 납부가 강제되는 금전 정도로 인식이 되면서 위반자로서 하여금 납부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의문을 가지게 하고 결국 이는 징수를 저하에 대한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행정형벌 제도는 형벌을 동원하는 범죄에 대한 벌로서 이러한 행정형벌은 원칙적으로 행정명령에 대한 의무확보에 있어서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후적”이고 “보충적”인 수단으로서 사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명령에 대한 위반에 있어서까지 형벌이 다른 제재수단과 중복 내지 병렬적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고,<sup>103)</sup> 현행 각 행정법규

102) 조태제, 앞의 논문, 527면 및 553-554면.

에 있어 행정명령 위반의 제재로서 대부분의 개별 법률이 형벌을 채택하고 있으며 더 많은 구성요건을 두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비판적 시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행정상의 의무이행 확보는 행정목적 실현을 위한 것이므로 그 제재수단도 가능하다면 형벌이 아닌 행정적인 것이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sup>104)</sup> 따라서 현행 행정법규 상 행정형벌 규정의 정비 및 개선의 방향으로 행정형벌로서의 단기자유형이나 (과태료 금액에 상응하는 정도의) 소액의 벌금은 가급적 행정질서벌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행정형벌을 행정질서벌로 전환하는 데에 있어서 양자의 차이와 특성을 단순히 이동적인 개념으로 파악하여 입법재량의 문제로만 이해한다면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간 체계 정립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남게 될 것이다. 따라서 종국적으로 입법자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목적과 기능에 따른 영역을 체계적으로 구분하기 위한 실천적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행정목적의 실효성 확보와 규율의 편의만을 위한 ‘행정상 의무위반행위’ = ‘범죄행위’라는 곡해된 시각을 가급적 지양하고, ‘행정상 의무위반행위’ = ‘질서위반행위’라는 정확한 이해에 근거해서<sup>105)</sup> 과태료 제도가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관계에 대한 논의의 연장선에서 과태료의 체계에 관하여는 다양한 입법적 설계가 가능할 것이다. 즉, ① 독일에서와 같이 행정질서벌에도 행정형벌에서 규정되고 있는 과벌 절차 등을 준용하도록 하여 통일적 체계를 구축하는 입법도 가능하고, ②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서로 그 기능과 목적이 다름을 전제로 행정형벌은 형벌적 성격으로 인하여 사법절차적 측면이 강조되지만, 행정질서벌에서는 행정실체적 성격을 강조하여 행정절차적 측면이나 행정능률적 사고가 강조된다는 인식하에 두 영역의 고유한 분류체제를 유지하여 두 제재가 달성하고자 하는 이념을 유지하도록 하는 입법도 가능하다. 또한, ③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의 유형을 본래의 의미로 정리하고, 행정

103) 이호용·박수희, 앞의 논문, 358면.

104) 헌법재판소 1995. 3. 23, 92헌가14; 이기세·신형석, 앞의 논문, 235면, 각주 30).

105) 이기세·신형석, 앞의 논문, 237면.

질서벌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그 처분성을 인정하여 행정절차를 강화하고 이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이 아니라 일반 행정쟁송에 의한 방법을 인정하도록 개편하는 입법도 가능하다. 즉 비송사건절차가 가지는 절차적 한계, 즉 부과요건을 정한 처분청이 당사자의 이의제기 시에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이의제기 시에도 소송절차에서 실체적 행정작용의 이해관계를 주장할 수 있도록 행정소송의 제기 가능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다.<sup>106)</sup>

##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성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에 관한 일반법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직접적인 法源은 전적으로 개별 행정법규에 있으며, 그러한 점에서 이 법은 과태료 부과와 성립요건과 절차 등을 정하는 “절차법”으로서의 성격과 기능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sup>107)</sup> 즉, 이 법은 ‘과태료의 부과절차 및 징수에 관한 법률’로서의 성격을 갖는데 그칠 뿐이어서 형사법의 과잉형벌화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과태료 제도를 구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sup>108)</sup> 즉, 현재와 같은 입법추세대로 과태료 관련 법제의 규율을 부과요건과 부과금액 만으로 공동화(空洞化)시키는 것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구체적으로 타당한 규율이나 개별 법률상 과태료의 특수성 등을 제도적으로 포섭하기 어렵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sup>109)</sup>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절차법적 성격 외에 과태료 부과에 관한 “실체적” 규정을 포함하도록 하여 과태료 제도에 관한 실질적인 근거법으로서의 체계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실체적 규정을 포함한다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는 개별 법령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과 부과금액 등 실질적인 사항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범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하여야

106) 류지태, 앞의 논문, 73-75면.

107) 이기세·신형석, 앞의 논문, 219면.

108) 정형근, “과태료의 실효성 제고수단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제21권제3호, 2009. 12, 874면.

109) 박종준, 앞의 논문, 298면.

한다는 의미이다. 다만, 개별 법령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 등은 각 법률이 추구하는 취지 내지 목적에 따라 매우 상이하게 구체화되기 때문에 그러한 개별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추상화·유형화하고,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리적 산정, 즉 추상화·유형화된 위반행위와 균형이 유지되는 적정한 금전적 제재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 작업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sup>110)</sup>

### (3) 입법 형식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행정질서법, 즉 과태료에 관한 법으로서 형사벌이나 행정벌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sup>111)</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총칙(제1장) 및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제2장)은 형법의 총칙과 흡사한 규정체계를 두고 있어서 일반국민으로서는 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성격이 형사벌이거나 그에 유사한 제도(예컨대, 범칙금)와 오인 또는 혼동되기 쉽다. 이러한 과태료에 대한 체계상의 혼동과 오해는 과태료 징수율에도 영향을 미치며 종국적으로 행정목적의 실현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기에 어렵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때문에 이 법을 일반적인 행정법적 체계에 따라 부과권자, 부과근거, 부과요건, 부과절차, 부과대상자, 수개의 위반행위의 처리, 과태료의 산정의 체계로 설명하기도 한다.<sup>112)</sup>

이 법의 형식적 체계와 관련하여, 제1편과 총칙과 제2편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을 살펴보면, 그것은 마치 형법 총칙과 비슷하며 규정의 내용도 유사하다. 고의 또는 과실(제7조), 위법성의 착오(제8조), 책임연령(제9조), 심신장애(제10조), 법인의 처리(제11조), 다

110) 최무현·이종한, 앞의 논문, 267면.

111) 이에 대하여는 행정질서법을 순수한 행정제재로 파악하는 입법례와 행정질서법에 형사적 성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입법례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문제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다만, 전자의 경우 행정질서법의 행정실체법적 성질을 강조하여 행정질서법의 부과에 있어서 책임요건을 완화하려고 하고, 후자의 경우 행정질서법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실질적인 불이익적 성격에 착안하여 형사벌 부과에서 요구되는 부과절차를 준용하려는 입장이다. 독일의 경우가 후자의 대표적인 예로서 행정질서법인 과태료를 과징금, 범칙금과 함께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독자적인 입법을 갖추고 있고, 과태료의 부과 시에도 형벌부과의 경우와 같은 책임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의 다수설과 판례는 행정질서법을 순수한 행정제재로서만 파악하고 행정질서법에 형사적 성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조태제, 앞의 논문, 534면.

112) 박균성, 앞의 책, 562면.

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제12조)등과 같은 규정은 과태료에 있어서 규율이 필요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이는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에 적용되기 위한 일반 원칙이 아닌 형법적 도그마가 녹아있는 형법 총칙의 입법기술적 형식의 규정을 차용한 것이다. 이러한 규정 중 일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기 전의 판례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 규정되었는데, 그에 대한 명확한 논거와 이유 없이 규정된 면이 없지 않다. 고의·과실 및 위법성의 착오 등이 특히 그러한데,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 경우 행위자에게 결과책임을 묻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라는 해설이 있지만, 행정법은 형사법에서 요구하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약화된 의무위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고의·과실이 없이도 성립이 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며 행정법을 형사법의 체계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고 본다. 더욱이 우리 형법은 원칙적으로 과실범은 예외적으로 처벌되지 아니하며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되는데(제14조), 행정범의 경우까지 과실을 요한다고 하면 개별 법령에 과실에 의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는 것이 오히려 체계적일 것이다. 또한 법인의 처리의 경우 개별 법령에서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의 관계가 모호하고, 마찬가지로 비신분자가 가담한 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에 있어서도 형법총칙의 규정을 행정질서벌의 처벌확대를 위한 방향으로 준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명문의 규정이 별도로 있지 않은 이상 행정질서벌에 있어서는 행정형벌과는 달리 비신분자에 대한 공범성립을 인정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sup>113)</sup>

요컨대, 과태료는 행정법 또는 법정범으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거나 적은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로서 그 특유의 성격이 존재한다. 이러한 특수성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인정되어야 할 것이기에, 위에서 언급한 각종의 책임요소 등의 규율에 대하여는 재평가될 필요가 있으며, 적어도 기존의 형법적 체계가 아닌 행정법적 체계 내에서 정비될 필요가 있다.

113) 박정훈, 앞의 논문, 294면.

## 2. 내용적 한계

### (1) 정의 규정의 미비 : “질서위반행위”, “당사자”, “과태료” 의 개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개념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며, 과태료에 대하여는 정의가 없다.

1.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私法)상·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2.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의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3. “당사자”란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우선, 제1호의 질서위반행위의 정의규정에 관한 법문은 전단에 해당하는 “법률 또는 조례상의 의무를 위반하여”라는 요건과, 후단의 “과태료를 부과하는”이라는 효과가 함께 표현되어 있는데, 술어 부분이 “...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로 기술이 되어 있어 질서위반행위가 결국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로 연결되는 어법상 맞지 않는 문장이 되었다. “법률 또는 조례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로 하거나 “법률 또는 조례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행위”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sup>114)</sup>

114) 지방자치법 제27조 및 제139조에 따라 조례에 의해 부과되는 과태료는 행정질서법 뿐만 아니라 - 행정목적은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라는 의미에서 - 행정형벌의 성격을 갖는 것도 있다고 설명되고 한다. 예컨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2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료 등의 면탈과 공공시설의 부정사용은 직접적으로 행정목적과 사회공익을 침해하는 것이고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해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는 것이다(박정훈, 앞의 논문, 291면 및 각주 27)). 이러한 경우는 행정질서법이 아니라 행정형벌이 부과되는 것이 올바른 제재수단이 된다고 본다. 류지태, 앞의 논문 59면.

또한 무엇보다도 이 법은 과태료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아니다. 「경범죄처벌법」의 경우 ‘범칙행위 - 범칙자 - 범칙금’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sup>115)</sup> 이를 참고하여 직접 과태료 개념을 정의하거나 아니면 질서위반행위와 과태료의 관계를 통하여, 즉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가 과태료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질서위반행위에서 가호와 나호의 질서위반행위에 있어서도 현재와 같이 동일한 과태료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이 법의 개념으로부터 배제하기 보다는 개념 및 명칭을 구별하여 달리 쓰는 것이 명확하리라고 본다. 한편, 제3호 “당사자”의 경우,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당사자는 사건에 직접 관여된 자 또는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상대방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법에서는 당사자 보다는 “질서위반행위자”로 개정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는 법 제명과 관련하여 사실 이 법은 질서위반행위를 규제하기 보다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에 관한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적 내용에 맞지 않는 면이 있다. 질서위반행위와 과태료에 대한 법적 인식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법률의 제명을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법률”로의 개정하여 대한 과태료 근거법으로서의 명칭과 성격을 분명히 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

## (2) 과태료의 부과기준의 산만성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 부과·징수의 절차 및 재판에 관한 법이며 그 질서위반행위 및 과태료 행정의 실체에 해당하는 주체(행정청), 객체(질서위반행위자), 행위(질

115) 경범죄처벌법 제6조(정의)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3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장에서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2. 죄를 지은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볼 때 구류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4. 18세 미만인 사람

③ 이 장에서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제7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납부하여야 할 금전을 말한다.

서위반행위) 및 제재(과태료금액) 등은 모두 개별 법령에 일임되어 있는 상황이다. 각 법령의 목적과 취지가 다르고, 분야별 제도적 배경에서 개별 질서위반행위의 제재적 평가와 가치가 책정이 되는 것이기에 그러한 사항을 개별 법령에 위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어도 과태료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는 기존 입법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한 보완책으로서 필요한 것은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보다 실효적인 통일적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여 그 원칙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두는 것이다. 아무리 질서위반행위의 내용이 다양하다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 과태료의 가중·감경사유와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 등은 최소한으로라도 유형화하고 추상화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예측가능성에 대한 행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위반행위에 대응하는 과태료 금액의 수준(특히 상한)을 제시하여 질서위반행위의 각 유형에 대한 비난 및 제재의 정도 등을 고지함으로써 결과회피가능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보면, 현재 각 개별 법령상의 과태료 부과대상인 위반행위 및 과태료 금액, 차수별 부과기준은 매우 산만하다(이에 대하여는 제4장에서 구체적으로 입증하기로 한다).<sup>116)</sup> 따라서 과태료 부과기준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핵심적인 원칙은 「질서위반행위법」에서 지도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 (3) 과태료 부과·징수의 실효성 부족

과태료는 매년 발간되는 「지방세외수입연감」의 징수실적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징수율이 그리 높지 않다. 이러한 저조한 징수율은 과태료 제도의 “집행실패”로서 근본적

116) 박종준, 앞의 논문, 299쪽 이하에서는 과태료 부과기준과 관련한 법적 문제로서 “첫째, 과태료의 부과기준으로 제시되는 규율내용들이 통일된 기준 없이 법령마다 제각각으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어 입법상 불균형이 존재한다. 둘째, 과태료 부과기준 중 개별기준을 제시하면서 위반행위 횟수별로 과태료 금액을 구체화시키는 입법례 중에서 1차 위반 과태료의 금액을 0원으로 명시하거나 경고와 같은 전혀 다른 성격의 조치를 명시하는 경우가 있다. 셋째, 과태료의 부과기준 중 위반행위 횟수별 과태료 금액 가중에 있어서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과 관련된 규율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으로 행정법규에 대한 정당성에 심각한 의문과 함께 국가공권력의 실효성을 크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sup>117)</sup>

〈표- 지방세외수입 통계(과태료 징수율)〉

	최종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징수액 (C)	불납결손액 (D)	미수납액 (E=B-C-D)	징수율	
						(C/A)	(C/B)
2012	(일반)118,881	325,386	135,938	2,835	186,613	114.3	41.8
	(특별)191,933	382,835	220,742	2,79	161,814	115.0	57.7
2013	(일반)122,035	327,349	135,918	4,708	186,723	111.4	41.5
	(특별)188,870	384,928	219,403	1,908	163,617	116.2	57.0
2014	329,289	738,319	392,227	3,879	342,213	119.1	53.1
2015	339,529	749,900	438,674	2,906	308,320	129.2	58.5
2016	354,972	742,412	449,973	1,695	290,744	126.8	60.6

자료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편집부, 「지방세외수입연감」, 2012~2016년의 지방세외수입 통계 발췌 및 편집.

저조한 징수율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납부자의 관점에서 보면 과태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는 의식이 부족하고, 특히 건당 부과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납부를 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이 없는 등 심리적 부담이 덜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이유로 제도적으로 국세 및 지방세에 비하여 체납징수에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이다.<sup>118)</sup> 이러한 현상은 보통 “범칙금”과 비교되는데, 교통과태료 제도에 관한 한 연구에 따르면, 무인단속으로 적발된 교통법규 위반자의 상당수는 범칙금 대신 과태료를 선택한다는 통계결과가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과태료가 범칙금에 비해서 오히려 교통법규 준수율을 높이는 효과가 낮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117) 최무현·강병준·조윤애, “과태료의 적정 수준 설정을 위한 실태조사와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정책개발연구」, 제13권제2호, 2013. 12, 86면.

118) 주운현,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한 부과·징수 제도 개선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16. 6, 71면.

1~3만원 정도의 상대적으로 경미한 추가 부담으로는 운전자에게 억제효과를 주지 못하고, 범칙금과는 달리 과태료에는 벌점부과와 보험료 할증과 같은 불이익도 수반되지 않으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형벌적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분석된다.<sup>119)</sup>

결국 집행율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대책이 필요한데, 입법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처벌 또는 규제의 강화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납부자의 인식전환을 위한 방안, 즉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존재하고 있는 자진납부에 대한 감면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자진납부 감면에 대하여는 의무이행 내지 국가적 제재를 금전적 거래(deal)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형벌의 집행이 아닌 행정질서벌에 있어서는 법과 규제집행에 있어서 순응적인 전략을 활용할 때 얻을 수 있는 장점, 즉 법과 규제 집행을 위한 행정적 자원을 크게 절약할 수 있고, 행정벌 중심의 의무이행 확보수단과는 달리 과잉범죄화 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며, 피규제자의 자발성이 전제되므로 문화적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법집행 실효성 확보수단에 있어 이 같은 접근 방안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좀 더 다양한 수단들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sup>120)</sup> 감면율을 기간별로 차이를 두는 방안 등이 제안되는 이유이기도 하다.<sup>121)</sup>

#### (4) 과태료 재판의 형식성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제4장에 질서위반행위의 재판 및 집행에 관하여 약 25개 조문에 걸쳐 비교적 상세한 절차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법률 제정 전 행정청에 의한 과태료 부과절차 및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법원의 재판절차를 고려한 것으로서 과태료 재판에 고유한 절차를 확립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 규정에 이의 신청(제45조) 말고는 국민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규정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이 강조되는 분야이기는 하지만, 엄연히 “재판”의 구

119) 정세종, “무인단속에 따른 경찰의 교통과태료 제도 합리화 방안”,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1권제1호, 2014, 128면.

120) 최무현, 이종한, 앞의 논문, 267면.

121) 주운현, 앞의 보고서, 57면 참조.

조 속에 진입을 하는 것이므로 기본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부여되는 기본적인 권리, 즉 소송을 대리할 수 있게 하거나, 재판에 있어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서류 및 증거물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권리는 보장될 필요가 있으며, 일정한 경우(예컨대, 과태료 금액이 매우 다액인 경우) 재심도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 (5) 체납절차에 있어서의 법치주의 침해 위험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제재로서 관허사업의 제한(제52조), 신용정보의 제공(제53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제54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등록판의 영치(제55조), 자동차 관련 과태료 납부증명서의 제출(제56조)<sup>122)</sup> 등을 도입하였다.

이들 제재는 형벌이 아니기에 형사소송법적 요건, 즉 영장주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때문에 형벌보다 가벼운 제재로서 여겨질 수 있으나, 오히려 행정목적 달성이라는 적극적 성격으로 영장이 없이도 집행이 가능한 막강한 사실적 효력이 부여된 제재로서, 남용되는 경우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제재에 대하여는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국민의 권익 보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즉, 이러한 침익적 성격을 가지는 수단들을 완전히 폐지하지 못하는 한, 이러한 제한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 내지 방어하기 위한 사전적·사후적 조치들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들 제재의 규정 속에 다양한 “역무제공”(민원) 절차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권익을 보장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이 법은 체납절차 자체에 대하여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단순히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고만 규정함으로써 일반국민으로서는 어떠한 절차가 적용되고 장래에 어떠한 수단들이 동원되는지 예측하기 어렵다. 설령 규정이 반복되

122)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같은 특정 과태료에 관한 특례규정을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박종준, 앞의 논문, 281면.

는 경우라 하더라도 독촉, 압류, 환가, 청산 등과 같은 일련의 체납처분 절차 체계를 두어,<sup>123)</sup>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의 투명성과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sup>124)</sup>

우선, 관허사업의 제한(제52조)와 관련하여, 국세체납자에 대한 제한은 사물적 관련성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경제활동 자체를 봉쇄함으로써 경제적 재기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비례원칙을 위반한 제도로 보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sup>125)</sup> 때문에 최후의 보충적 수단으로서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원칙은 존재하지만 가급적 그 한계가 법문에 명확하게 표시될 필요가 있다.

한편, 과태료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새로운 수단들을 도입하였는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제54조)가 그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감치와 「국세기본법」의 명단공개<sup>126)</sup> 간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한다.<sup>127)</sup> 즉, 감치와 명단공개 두 제재 모두 체납 집행에 대한 필요성 내지 적정성이 인정되는가에 대한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라도, 동일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감치”와 “명단공개” 양자 간의 요건의 타당성, 제재의 경중 및 양 법률간 형평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인정되지만 그러한 제재의 조건에 대한 평가는 일관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23) 박종수,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절차 마련을 위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방안」, 법무부 연구용역 보고서, 2013. 12, 28면.

124) 박종수, 앞의 보고서, 97면.

125) 김남진·김연태, 앞의 책, 538; 김동희, 앞의 책, 418; 박윤훈·정형근, 앞의 책, 652; 박정훈, 앞의 논문, 317면.

126) 명단공개는 아직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는 도입되지 않은 제재로서 위반사실의 공표로 인한 불명예의 손해는 사후에 이를 회복하기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당사자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법원의 확정판결 이후에 비로소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그 이전에 공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문 또는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준사법적인 행정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박정훈, 앞의 논문, 315면.

127)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는 전체 체납자의 일부이기 때문에 명단공개 대상금액을 500만 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 주운현, 앞의 보고서, 58면. 이에 따르면 국세징수법 제7조의4에 따른 출금금지요청의 경우를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도 도입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데(59면), 이는 매우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의 비교〉

질서위반행위규제법(감치)	국세기본법(명단공개)
<p>제54조(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①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b>1년이 경과</b>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b>1천만 원 이상</b>인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을 체납한 경우로서 ②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30일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감치에 처할 수 있다.</p>	<p>제85조의5(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13과 「국세조세조정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체납발생일부터 <b>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b>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li> <li>2. ~ 4. 생략</li> <li>② ~ ⑥ 생략</li> </ol>

## (6) 기타

과태료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됨으로써 행정목적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이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그 일환으로 과태료에 대한 심사가 가능하도록 일명 “과태료심의위원회”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현재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과태료 금액은 부처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들이 객관적으로 정확하고 타당한 것인지를 심사하는 전문조직이 필요하다. 물론 개별 부처에 흩어져 있는 부과권한과 각종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통합적·체계적 검토가 어려울 수는 있지만, 과태료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내지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에 와있다고 본다.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개혁위원회”를 참조하여 과태료 제도에 대한 기본방향과 과태료 제도에 관한 사항, 기존 과태료와 신설 과태료의 정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과태료 제도의 현황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는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위원회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한편, 과태료 징수율의 제고를 위하여 “과태료징수전담공무원”을 둘 필요가 있다. 지방세외수입을 부과하는 업무는 그 부과근거가 개별 법령에 있으므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맡을 수밖에 없지만, 징수업무는 지방세무직 공무원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통합세무부서의 지방세외수입 징수·관리 인력을 확충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sup>128)</sup> 또는 업무위탁도 가능할 것인데 「국세징수법」상 징수업무의 위탁규정을 참고할 수 있다.<sup>129)</sup> 이하 제3장에서 살펴 볼 외국의 제도로서 영국의 징수전담공무원(FEO)의 운영 또한 참고할 수 있는 적절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28) 주운현, 앞의 보고서, 63면.

129) 국세징수법 제23조의2(채납액 징수업무의 위탁) ① 세무서장은 제23조에 따른 독촉과 최고에도 불구하고 납부되지 아니한 채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1. 채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 확인
  2. 채납자의 재산 조사
  3. 채납액의 납부를 촉구하는 안내문 발송과 전화 또는 방문 상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탁 방법, 위탁 대상 채납액의 범위, 위탁 수수료 등 채납액 징수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장

# 주요 외국의 과태료 제도

제1절 개 설

제2절 미 국

제3절 독 일

제4절 영 국

제5절 프랑스

제6절 일 본

제7절 중 국

제8절 평가 및 시사점



## 제3장

# 주요 외국의 과태료 제도

### 제1절 개 설

형사벌로서의 벌금 이외에 행정상 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적 재제를 일반법으로 규율하는 것은 독일의 「질서위반법」이 처음이라 할 수 있다.<sup>130)</sup> 그 이후 중국의 「행정처벌법」이 제정되었고, 2005년 대만의 「행정처벌법」, 2007년 우리나라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었다.

2007년 제정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당시 드문 입법례이기는 하나 과태료에 관한 일반법을 규정한 독일 등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제정하였다. 동 법률에서는 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불복·집행 절차 및 귀책사유, 소멸시효, 과태료의 실효성 제고 수단(가산금, 증가산금)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과태료 부과체계를 확립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일반법의 제정은 종래 과태료와 관련된 부과와 징수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법적 흠결과 미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독일의 질서위반법을 모델로 하여 제정된 결과 형사처벌법인 형법적 요소를 도입한 것 같은 문제로 남는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며 근본적으로 형사벌과 다르다. 물론 과태료 부과절차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하여 과태료부과에 다른 납부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였다는 측면도 있지만 형사벌과의 이론적 경계를 모호하게 하였다는 비판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130) 법무부, 「과태료 제도 현황과 각국의 입법례 연구」, 2012, 36면.

과태료에 대한 부과는 종래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개별법에 따라 부과되어 왔으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동법을 기준으로 개별 법령이 이를 준용하여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다. 종전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었던 개별 법령들은 과태료 부과절차·징수에 관한 규정을 생략하고 부과요건과 부과권자 등에 관한 규정들만 두는 등 지속적인 법령 정비작업을 해오고 있다.

문제는 개별 법령상 각각의 입법목적·규율특성 등에 맞게 과태료가 규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해석에 의존하거나 내부지침을 통하여 규율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제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일반법으로서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자체에 대한 검토 분석과 개별 법령상의 과태료 규정에 대한 현황 분석,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개별 규정 상호간의 관계의 분석을 통하여, 현행 과태료 제도의 합리적 정비를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고 이를 개별 법령에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이미 현행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기존 문헌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서술하였다.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과 관련하여 주요 외국의 과태료 유사 제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주요 국가(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입법례 및 현황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우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관련 법령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제2절 미 국

### I. 행정상 금전적 제재수단의 입법 동향

#### 1. 행정적 제재수단으로서의 민사금전벌

미국은 행정질서법인 우리나라의 과태료라 할 수 있는 행정적 제재수단은 없고, 이와 유사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 금전적 제재수단으로 민사금전벌(civil money penalty)제도가

있다. 민사금전벌은 행정상 의무위반시 이에 대한 제재와 함께 이행확보수단으로 행정기관 또는 법원이 민사절차에 의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이다. 미국 법체계상 민사금전벌이 수행하는 역할과 운영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의 전통적 행정질서벌인 과태료(過怠料)와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인 과징금(過徵金) 양자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sup>131)</sup> 따라서 미국의 민사금전벌 제도는 행정관청이 과태료나 과징금 형태의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는 경우, 양자 모두에 해당할 수 있는 제도로 활용되고 있으며 행정의 실효성 확보와 행정상 의무위반의 저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법적 개념정의에 있어서도 ‘민사금전벌’이라는 용어는 확정된 단일한 법적 개념이 아니라 각각의 개별 법률에서 fine, penalty, forfeiture 등의 형태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하지만 개별 법률 예컨대, 연방선거운동법규(Federal Election Campaign Laws)상 민사금전벌의 정의규정을 보면 민사금전벌의 개념요소를 파악할 수 있어 우리나라의 과태료제도와 비교가 가능하다.

〈 연방선거운동법규상 민사금전벌 정의 규정 〉

**TITLE 28. JUDICIARY AND JUDICIAL PROCEDURE**

**Chapter 163—Fines, Penalties and Forfeitures**

- (2) ‘civil monetary penalty’ means any penalty, fine, or other sanction that—
- (A) (i) is for a specific monetary amount as provided by Federal law; or
  - (ii) has a maximum amount provided for by Federal law; and
  - (B) is assessed or enforced by an agency pursuant to Federal law; and
  - (C) is assessed or enforced pursuant to an administrative proceeding or a civil action in the Federal courts;

131) 우리나라는 과태료와 과징금을 개념적으로는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과태료는 금전벌의 일종으로 형벌이 아니며 질서유지를 위해 법령위반자에 대한 제재로서의 질서벌 및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집행벌을 포함하며 과징금은 일정한 행정상의 의무에 위반한데 대한 제재로서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을 뜻한다고 한다. 한국법제연구원 편, 법령용어사례집, 2016, 244면.

이처럼 민사금전벌의 개념이 통일적이지 않는 이유는 미국이 법적 개념을 중시하는 법체계가 아니라는 이유도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서 법적 개념의 구별이 큰 실익이 없다는 실용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과태료와 과징금, 범칙금 등 다양한 금전적 제재수단의 개념적 모호성과 징수를 저하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어느 하나로 통합하자는 논의도 있는 점을 볼 때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입법적 태도 중 어느 것이 좋다는 평가는 의미가 없어 보이고, 다만 입법 정책의 문제라 할 수 있다.

## 2. 민사금전벌 제도의 유래와 운영현황

미국에서 민사금전벌 제도의 도입과 내용에 대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부터이다.<sup>132)</sup> 이 후 1972년 연방행정심의회(administrative conference of the United States)에서 종래 행정적 제재수단으로 사용하던 형사벌, 인·허가 취소, 철회 및 영업 정지 수단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제기하며 민사금전벌 제도의 활용을 주장한 바 있고<sup>133)</sup>, 그 이후 행정적 제재로서 정착되었다.

연방국가인 미국은 연방 행정부처는 물론 각 주 등 지방정부에서도 민사금전벌 제도를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 연방정부만 보더라도 이미 1971년 기준으로 연방정부의 7개의 행정부처와 13개의 독립위원회에서 10,000,000 달러 규모의 민사금전벌을 15,000개 이상 사례에서 집행하였고<sup>134)</sup>, 1977년에는 연방정부가 360,000개 이상 사례에서 52,000,000 달러 규모의 민사금전벌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sup>135)</sup> 1979년도에는 연방정부의 27개 부처 및 독립행정기관에 의해 부과되는 약 384개의 법률에서 민사금전벌을 규정하고 있었다.<sup>136)</sup> 미국의 연방의회 웹 사이트에서 ‘civil money(또는 monetary)

132) 박윤훈, “미국의 민사금전벌제도”, 미국헌법연구, 제1호, 1990, 99면 각주 62) 참조.

133) 김영진, “우리의 과태료·과징금 유사 미국의 제도: 민사금전벌(civil money penalty)”, 한국법제연구원 자료집, 2017.4, 42-43면 참조.

134) John K. Villa, Bank directors', officers' and lawyers' civil liabilities, Chapter 3: Administrative Enforcement

135) Colin S. Diver, *The Assessment and Mitigation of civil money penalties by federal administrative agencies*, 79 Colum. L. Rev. 1435, 1445 (1979).

136) Colin S. Diver, *Ibid*, 1438

penalties’를 검색하면 총 4,274건의 관련 법률이 검색되고, 이 중 민사금전벌을 부과하는 행정기관들 및 관련 법령들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sup>137)</sup>

〈 민사금전벌 부과규정 근거법령과 부과기관 〉

영역	행정기관	관련 법령
도로	고속도로안전국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NHTSA)	The National Traffic and Motor Vehicle Safety Act of 1966
항공	연방항공국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	The Federal Aviation Act of 1958
통신	연방통신위원회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	The communications act of 1934
재정	통화감사원 (The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OCC)	The Federal Deposit Insurance Act of 1950
자본 시장	증권거래위원회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 The Securities Law Enforcement Remedies and Penny Stock Reform Act of 1990 - The Financial Institutions Reform, Recovery, and Enforcement Act of 1989
소비자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CPSC)	The Consumer Product Safety Act of 1972
식약	식품의약품안전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The Safe Medical Devices Act of 1990
노동	직업안전보건국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f 1970
선거	연방선거위원회 (Federal Election Commission: FEC)	The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of 1971

137) 김영진, 앞의 자료집, 44면 표.

[https://www.congress.gov/search?searchResultViewType=expanded&q={\"source\": \"legislation\", \"search\": \"civil+monetary+penalties\", \"bill-status\": \"law\"}](https://www.congress.gov/search?searchResultViewType=expanded&q={\) 참조(최종접속일 2017.9.30)

### 3. 민사금전벌의 분류<sup>138)</sup>

미국의 민사금전벌은 부과 형태가 다양한데, 이를 분석하면 몇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sup>139)</sup> 이러한 분류는 우리나라의 과태료 부과 규정에서 나타나는 분류 형태와 유사한 점이 있다.

① 민사금전벌 부과시 행정기관이 조사를 하여 일정한 금액을 위반자에게 부과하고, 당사자와 행정기관이 화해 및 타협(compromise)의 절차를 거치는 유형, ② 민사금전벌 부과시 행정기관이 청문절차를 거치는 유형, ③ 민사금전벌 부과 내용은 첫 번째 유형이나 금전벌 부과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유형<sup>140)</sup>, ④ 개별 법률이지만 해당 분야에 대해 민사금전벌 전반에 대해 규정하는 경우 등이다.<sup>141)</sup>

①과 관련하여 국가 교통 및 자동차안전법(The National Traffic and Motor Vehicle Safety Act)에서는 교통부장관이 규정에 따라 부과된 민사 금전벌의 액수를 화해와 상계(Compromise and setoff)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민사금전벌 금액산정기준으로 위반의 성질과 중대성, 전후사정,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연방항공법(The Federal Aviation Act)에서도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다. ②와 관련하여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이 있으며, 민사금전벌 금액산정 권한을 행정기관에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사업장의 규모, 위반의 경중, 고용주의 선의 여부, 위반 전력 등을 구체적 산정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④와 관련된 법률로 civil money penalty law of 1981가 있으며, 연방보건복지부가 연방헬스케어 프로그램의 위반자에게 민사금전벌부과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관련된 청문절차와 금전벌 산정 시 고려할 요소, 금전벌 징수를 담보하기 위한 민사소송절차로의 이행 등의 규정을 하고 있다.<sup>142)</sup>

138) 박윤훈, 앞의 논문, 71면-92면을 참조하여 분류함.

139) 박윤훈, 앞의 논문, 71면-92면 참조

140) 이에 해당하는 법률로 The Consumer Product Safety Act가 있음.

141) 김영진, 앞의 자료집, 46-51면 참조

142) 김영진, 앞의 자료집, 51면. 상세한 내용은 Richard P. Kusserow, *Civil Money Penalties Law of 1981: A New*

## II. 민사금전벌의 부과·징수

미국의 민사금전벌제도의 집행 절차는 하나의 통일된 절차가 아니라 각각의 근거법령마다 민사금전벌 부과처분 절차가 다양하다. 이러한 다양한 절차들 중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절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 1. 부과권자- 행정청의 부과

민사 금전벌은 행정기관이 부과한다. 행정기관이 민사금전벌을 부과할 경우 처분의 상대방에게 부과통지서(citation)를 교부하여야 하고, 부과금액은 각 행위 또는 일수를 기준으로 정액이거나 상한 또는 하한이 설정된 금액의 한도 범위 내에서 금전벌 액수가 산정된다.

민사금전벌을 법원 판사가 부과하는 경우는 법령에 의해 법원 판결에 의하여 이를 부과할 수 있고, 법원 판사는 법령에 의해 형사적 처벌인 징역형과 벌금(fine)을 부과함과 아울러 민사금전벌을 부과할 수 있다.<sup>143)</sup>

### 2. 부과기준 및 부과금액

민사금전벌의 부과는 행위위반자의 불법성과 과거 위반행위, 현재의 재정상태 등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몇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금전벌 액수 산정작업을 거쳐 결정된다. 미국에서도 민사금전벌의 액수와 관련하여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 되고 있어서 인지 「소비자 생상품 안전법(Consumer Product Safety Act)」, 「연방 민사벌 인플레이션 조정법(The Federal Civil Penalties Inflation Adjustment Act)」 등의 개별 법률에서는 민사금전벌의 산정시 물가상승률 및 생계비 등을 반영하여 적절성을 확보하려는 규정을 두고 있다.

*Effort to Confront Fraud and Abuse in Federal Health Care Programs*, 58 Notre Dame L. Rev. 985 (1983) 참조.  
143) 김원중, “해의 과태료 부과 검토를 통한 과태료 개선 방안”, 한국법제연구원 자료집, 2017.8, 68면. 연방세법상의 조세범(Criminal Provisions of the Internal Revenue Code)에 관한 규정 제7201조에서 조세포탈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서 일반 형사적 처벌인 징역형과 벌금(fine)을 부과함과 아울러 민사금전벌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금전벌의 부과 금액은 개별 법률마다 차이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에 해당하는 국가 교통·차량안전법(The National Traffic and Motor Vehicle Safety Act)을 보면 각각의 위반행위마다 5000달러를 상한액으로 규정하고 있다.<sup>144)</sup> 또한 연방 항공법(The Federal Aviation Act)에서는 일부 행위유형에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각각의 위반행위마다 10,000달러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up>145)</sup> 물론 법률의 내용에 따라 소비자제품안전법(The Consumer Product Safety Act)과 같이 위반사항이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미치는 경우에는 10만 달러 또는 20만 달러의 고액의 민사금전벌을 부과하기도 한다.<sup>146)</sup>

### 3. 부과대상 행위

민사금전벌은 각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하는 자에게 부과된다. 민사금전벌에 대한 일반법이 없으므로 각 개별법에서 부과대상 행위가 결정된다.

### 4. 부과절차

#### (1) 화해·타협(compromise)

금전벌 부과시 처분의 상대방은 부과 금액에 대한 조정절차를 거칠 수 있고, 조정절차를 거쳐 결과에 따라 감액 또는 적정액이 제시된다. 미국의 민사금전벌 제도의 실제 운용에 있어 법령상 규정의 상한에 육박하는 막대한 액수가 부과된 경우, 해당 금액의 산출이 적정한가에 대한 논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민사금전벌의 금액산정과정에서 당사자 간의 화해절차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 청문(hearing) 및 소제기

위반행위자에게 제시된 금전벌 금액 및 산정에 대해 법원에서의 청문의 기회를 부여한다. 청문을 통해 청문과정이 기록되고 변호사에 의한 대리, 증거 제시 및 증인 참여, 교호

144) The National Traffic and Motor Vehicle Safety Act, §30165. Civil penalty, (a)(1) 참조.

145) The Federal Aviation Act, Sec. 13.16 Civil penalties, (a)(4) 참조

146) The Consumer Product Safety Act, sec. 20. CIVIL PENALTIES(a)(1) 참조.

심문, 구두 및 서면 변론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판사의 청문결정에 대해 항소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인정된다.

### 5. 징수절차

민사금전벌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를 규정하는 일반법이 없는 관계로 징수방법이나 미납시 강제징수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조사하기가 쉽지 않고, 개별 법률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국제징수법에 근거한 강제징수절차가 진행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민사금전벌의 경우 위반행위자에게 부과된 금전벌 미납부시 1심법원(district court)에 민사소송(civil action)으로 이행된다는 점에서 민사소송절차상의 강제집행절차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개별 법률(civil money penalty law of 1981)에서 금전벌 징수를 담보하기 위한 민사소송절차로의 이행 등의 규정을 하고 있다.

## III. 소 결

미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에 관한 일반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금전적 제재수단으로 민사금전벌제도가 있지만 형사벌과 행정벌간의 구분 없이 활용되며 명칭도 단일한 법적 개념이 아니라 각각의 개별 법률에서 fine, penalty, forfeiture 등의 형태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그 이유는 미국의 법체계가 우리나라처럼 이미 존재하는 법률에 대한 해석이나 적용을 중시하는 소위 판례텐식 연역적 구조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판례들을 중심으로 하는 판례법 체계로 귀납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처럼 법적 개념상의 구별을 중시하여 과태료와 과징금, 벌금 등 금전적 제재수단을 모두 다른 용어를 사용하면서 개념상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비교적 경미한 행정규제 위반에 대해 부과된다는 점은 동일하나 엄밀히 보면 민사금전벌 제도는 행정적 제재라기보다는 형사 제재(criminal penalty)와 민사 제재(civil penalty)의 중간자적 역할을 하고 있다.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도 민사금전벌의 법적 개념의 해석과 분류보다는 실제 운영과정에서 부과절차상 적법절차(duo process)나

이중위험금지원칙의 준수여부나 통지나 청문 등 부과절차의 문제 등 제도운영의 실질을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은 연방국가로서 각 주, 카운티, 시 등 지방정부마다 세부적으로 미세하지만 서로 차이가 나는 법체계를 운용하고 있어서 통일적인 법제나 절차를 마련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우리의 과태료 입법모델 연구와 관련하여 미국 민사금전벌 제도에서 시사점을 도출하기가 용이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sup>147)</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연방정부 차원으로 범위를 국한하여 연방정부의 각 행정부처 및 위원회 등이 운용하고 있는 민사금전벌 제도의 법적 근거 및 그 세부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규범적 차원에서 그들이 운용하고 있는 제도의 장·단점을 검토하고자 하였고, 이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제3절 독 일

### I. 행정상 금전적 제재수단의 입법 동향

#### 1. 행정적 제재수단으로서의 과태료 입법 현황

독일에서도 행정적 제재수단으로 과태료(Geldbuße)라는 금전적 제재수단이 존재한다. 독일 행정법상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로는 경고금(Verwarnungsgeld), 과태료(Geldbuße = 법인 등에 대한 과징금, 범칙금, 공무원징계법상 징계금, 소년법상 기부금벌, 형사벌금), 몰수(Einziehung von Gegenständen), 인허가정지(Fahrverbot, 즉 운전면허정지) 및 인허가취소 등이 있고, 독일의 질서위반행위법(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en, OWiG)이 일반법으로서 가능하며 개별법에도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규정되어 있다.<sup>148)</sup> 다만, 독일의 행정질서

147)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독일의 입법례를 벤치마킹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었다. 현재 우리 과태료 법제의 개선방안과 관련하여서는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조항과 여전히 산재되어 있는 개별법령상 과태료 부과 조항과의 정합성 문제가 중요한 주제라 할 수 있다.

148) 서보국, “질서행위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인 과태료와 유사한 독일의 입법사례”, 한국법제연구원 자료집, 2017.8, 50면 참조.

별로서 과태료와 행정형벌로서 형사벌금간의 절차가 동일하여 우리나라의 과태료 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독일의 질서위반행위법은 규정 내용을 보면 형법적 요소가 많아 법체계상 형법과 행정법 사이에 존재하는 법률로 볼 수 있다. 동 법에서는 과태료가 부과 되는 질서위반행위 대상으로 다른 개별 법률에서 질서위반금을 규정하고 있는 행위(die mit Geldbuße bedrohte Handlung)와 질서위반행위법 제3편에서 독립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개별적인 질서위반행위들로 규정하고, 질서위반행위로 인정되면 과태료라 할 수 있는 질서위반금(Geldbuße)을 부과한다. 형법상 벌금형(Geldstrafe)과는 구별되는 금전적 제재수단으로서 우리나라의 도로교통위반시 부과되는 범칙금과 유사한 점이 있다.

## 2. 금전적 제재의 유형

독일에서도 금전적 제재수단으로 형사벌과 행정벌 영역에서 벌금, 몰수, 과태료, 추징 등이 있으며 각각의 개념과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 (1) 벌금

벌금형 제도는 주로 단기 자유형의 폐해를 막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 일수벌금형체계에 기초하고 있으며, 1975년 제정된 제2차 형법개혁법을 통하여 형법에 편입되었다. 벌금의 부과는 ① 형법 제46조에 의거하여, 법원이 벌금일수를 확정하는 단계, ② 동법 제40조 제2항에서 최저 1유로에서 최대 5,000 유로까지 규정하고 있어 일수정액을 확정하는 단계, ③ 납입부담경감에 관한 허가 즉, 벌금액의 연납과 분납의 허가 단계 등 세 단계를 거쳐서 결정된다.

### (2) 몰수

몰수는 관할 관청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며, 그 대상은 위반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을 제외한 모든 대상물에 한한다. 질서위반행위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해당 관청은 행위자에게 몰수와 같은 금전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 (3) 과태료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부과한다. 과실과 고의성을 확인하여 과실은 고의의 경우보다 절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심신미약, 회피 가능한 위법성의 착오, 방조에 대해서는 감경 규정이 없다. 과태료의 액수는 질서위반행위의 반가치성, 위반행위의 중요성, 유책성, 행위자의 경제적 관련성, 위반행위를 통한 경제적 수익의 박탈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4) 추징

질서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로 인해 취득된 경제적 이익을 위반자로부터 추징하는 것이다. 관할 관청이 재량사항으로 위반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해당 관청은 행위자에게 추징과 같은 금전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 3. 질서위반법의 주요 내용

동법은 체계상 크게 세부분으로 나누어 제1편에서는 총칙적 규정으로 질서위반행위 등 개념 정의, 법의 적용범위, 시효 및 몰수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제2편에서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절차를, 제3장에서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유형을 개별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2편에서는 과태료 부과절차로서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와 관련된 물건을 몰수할 수 있고, 질서위반금을 행정집행법(BGBL. I, S.157)상의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과태료를 징수하는 행정청은 세무당국 등에 금융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제90조). 질서위반행위와 관련된 물건을 행정청에서 몰수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특색이라 하겠다.

제3편에서는 개별 위반행위 유형으로, 국가명령에 대한 위반행위(행정기관 사칭, 자치법규 위반), 불법집회 해산 불응, 군사시설 출입, 선동, 소음 등 공공질서 침해, 매춘, 위험한 동물사

육 등이 규정되어 있다.<sup>149)</sup> 또한, 보칙 규정으로 질서위반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신체의 불가침, 신체의 자유, 주거의 불가침에 관한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32조).

독일의 경우 조세 이외의 금전적 행정벌과금은 재판 전 절차, 중간절차, 법원의 재판절차 및 집행절차 등으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독일의 질서위반법에 의하면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권한은 원칙적으로 해당 행정청에 있으며,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자에게 특정 행위에 대한 경고를 처분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경고에 같음하여 5유로에서 35유로 사이의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sup>150)</sup>

한편 독일은 법원의 결정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이를 거부하는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제구류를 허용하는 감치제도를 두고 있다.<sup>151)</sup>

## II. 과태료의 부과 · 징수

### 1. 부과권자

독일의 질서위반법에 따르면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이다. 다만, 판결 확정시에는 검찰이 집행한다. 절차상 OWiG §65 과태료는 행정청에서 과태료처분(Bußgeldbescheid)으로 부과되며 이에 대한 불복(Einspruch)은 OWiG §67 이하에서 지방법원(Amtgericht)에서 형사소송법(StPO)을 준용하여 과태료판결로 처리한다. OWiG §35 이하에서 관할 행정청에 대해서 규정하고, 개별법상 관할 행정청이 우선이며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관할중첩인 경우에 대한 사물관할, 지역관할, 다중 관할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 2. 부과대상 행위

다른 법률에서 질서위반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된 행위와 질서위반행위법 제3편에서 별도로 질서위반행위에 해당되는 개별적인 질서위반에 관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질서위반금

149) 법무부, 「과태료 제도 현황과 각국의 입법례 연구」, 동광문화사, 2012. 37면.

150) 박종수, “과태료 부과 · 징수 및 체납처분 절차 마련을 위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방안”, 법무부, 2013, 87면.

151) 박종수, 위의 보고서, 87면.

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기타 법률에서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행위가 위법하고 유책한 행위이면 질서위반행위법에 의한 행위로 인정된다(제1조제1항). 그러나 유책한 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질서위반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면, 그 행위는 질서위반행위로 간주된다(동조 제2항). 형법에 따른 형벌의 부과를 위해서는 행위자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유책한 행위일 것이 요구되지만, 질서위반행위법 제1에 의한 질서위반금 부과를 규정한 행위는 불법의 강도와 유책성에 대한 요구가 형법전의 범죄보다 낮은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의 예로서는 독일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제29조 제1항 제1호에 의해서 금지된 옥내집회에 참가한 자에게 1,000 마르크(현재 500유로)까지의 질서위반금이 부과되는 경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 <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 >

- ① 질서위반금부과를 규정하고 있는 행위(제1조)
- ② 질서위반법에 별도로 규정된 개별적인 질서위반행위
  - 개인신상에 대한 허위보고(제111조)
  - 입법기관의 질서유지를 위한 명령위반(제112조)
  - 허용되지 않은 군중예의 가담(제113조)
  - 군사시설에의 진입(제114조)
  - 죄수와의 교류(제115조)
  - 대중에게 질서위반을 부추기는 행위(제116조)
  - 금지된 소음(제117조)
  - 일반인에 대한 부담야기행위(제118조)
  - 성적표현물을 통한 심한 불쾌감을 유발하거나 부담을 야기하는 행위(제119조)
  - 금지된 성매매행위(제120조)
  - 위험한 동물의 간수(제121조)
  - 명정상태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 (제122조)
  - 문장(紋章) 또는 관청의 기의 무단사용(제124조)
  - 적십자 문양 또는 스위스의 국가문장의 무단사용(제125조)
  - 직업적 복장 또는 직업적 휘장의 남용(제126조)
  - 통화위조 또는 문서위조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의 생산 또는 사용(제127조)
  - 화폐 또는 그와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유가증권의 인쇄물 또는 복사본의 생성 및 유포(제128조)
  - 기업 내에서의 관리감독의무의 위반(제130조)

### 3. 부과기준 및 부과금액

통상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Geldbuße)는 OWiG §17에서 5~1,000유로의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경미한 질서위반행위에는 OWiG §56에서 경고금(Verwarnungsgeld)이 부과되며 5~55유로의 금전적 제재를 부과 한다.<sup>152)</sup>

#### < 과태료 부과금액 >

##### OWiG §17조 벌금의 규모

- ① 벌금은 최소한 5 유로이며, 만약 법에서 다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최고 1천 유로이다.
- ② 법에서 고의 행위와 과실에 의한 행위에 대하여 상한에서 구분하지 않고 벌금을 매기는 경우 과실에 의한 행위는 매겨진 벌금 최고액의 절반만으로 처벌할 수 있다.
- ③ 벌금 확정의 근거는 질서 위반 행위의 중요성과 행위자에게 해당하는 비난이다. 또한 행위자의 경제적 상황도 고려된다. 사소한 질서 위반 행위인 경우에는 그러나 일반적으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한다.
- ④ 벌금은 행위자가 질서 위반 행위로 인해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능가하여야 한다. 만약 법적인 상한이 이를 위하여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 상한을 초과할 수 있다.

OWiG §30에서 법인 및 사단에 대해서는 고의적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 유로, 과실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 유로이며, OWiG §130에서 질서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의무를 기업이 위반한 경우에는 최대 100만 유로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sup>153)</sup> 개별법인 공정거래법(§81 Abs. 4 Satz 1 GWB, Kartellrecht)에서는 최대 100만 유로의 과태료와 연방환경보호법(§69 Abs. 6 BNatSchG, Naturschutz)에서 최대 5만 유로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부과 금액을 보면 과태료라는 용어를 사용하나 액수의 크기는 우리의 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질서위반금 산정을 위해서는 질서위반행위의 중요도, 행위자의 책임 그리고 행위자의

152) 법무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각국의 입법례, 법무자료 제269호, 2005, 5면 이하 참조

153) 서보국, 위의 자료집, 52면 참고.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야만 하며, 특히 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로 인해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금은 그 이익을 초과해서 부과해야만 한다(제17조). 그리고 질서위반행위자의 경제적 관계를 고려할 때 질서위반금의 즉각적인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분할납부를 정해진 기간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분할납부를 취소할 수 있다(제18조).

#### 4. 부과절차

과태료 부과는 재판 전 절차, 중간절차, 법원의 재판절차 및 집행절차 등으로 나누어진다.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 위반자는 불복수단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제67조 이하), 행정청은 이를 검찰에 송부한다. 행정청으로부터 사건을 송부 받은 검찰은 사건을 송부한 행정청이 있는 소재지의 관할법원에 당해 사건을 기소할 수 있으며, 법원은 심리를 거쳐 이익을 기각하거나 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과태료를 판결로써 확정할 수 있다.<sup>154)</sup>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절차에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형소법 및 법원조직법을 준용한다(제46조).

##### (1) 재판 전 절차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권한은 원칙적으로 행정관청에 있으며 질서위반행위가 행사된 지역이나 발견된 지역 그리고 벌금이 부과될 당시 위반행위자가 거주한 지역 등과 같은 토지관할은 관할 행정관청에 있다. 행정관청은 질서위반행위자에게 특정행위에 대한 경고를 집행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경고 수단으로 최저 5유로에서 최고35유로의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질서위반에 대해 경고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행정관청은 과태료 재결통지를 할 수 있고 이를 받은 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행정관청은 그 신청 허용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만일 과태료 재결 절차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이 해당 내용을 검찰에 송부할 수 있다.

154) 박종수, 위의 보고서, 87면.

## (2) 중간절차

질서위반자의 이의신청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사건을 송부 받은 검찰은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위반행위의 상황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절차로 진행한다. ① 해당 사건이 검찰청에서 다루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이를 다시 행정관청으로 반송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행정관청은 반송 받은 사건을 재송부할 수 없다. ② 해당 사건에 대해 보다 자세한 조사를 관할 행정관청에 지시할 수 있다. ③ 송부한 행정관청이 있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해당 사건을 기소할 수 있다.

## (3) 법원의 재판

법원은 공판절차에 따라 이의를 기각할 수 있고 절차를 중지시킬 수도 있으며 판결 또는 결정으로 종료할 수 있다. 법원의 위의 세 가지 결정에 대한 상소수단으로 항고절차가 유일하며 항고가 받아들여지는 기준은 과태료가 최소 250유로가 넘거나 부수적인 제재가 부과된 경우 등이다. 확정된 과태료 결정은 집행력을 가지며 해당 집행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서는 항변할 수 있다.

## 4. 징수절차

과태료 부과결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제89조),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관청이 그 과태료부과에 대한 집행권을 가지고 그 해당 행정관청의 재산으로 기속한다(제90조). 그리고 법원의 판결에 의한 과태료부가 결정이 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을 원용한다(제91조).

과태료 징수는 행정관청에 의한 집행을 원칙으로 하며 질서위반자에게 부과된 징수액에 대해 당사자가 지정된 기일 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과태료가 확정되면 행정청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의 재판절차를 거쳐 확정된 과태료의 집행은 검찰청이 담당한다. 법원의 결정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이를 거부하게 되면 강제구류를 허용하는 감치제도를 두고 있다. 본 제도는 형벌 내지 벌금 대체 집행과 그 성격이 상이 하지만 납부 강제력을 가지고 있다.

## 5. 이의제기 등 불복 절차

행정청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Einspruch)은 OWiG §67 이하에서 지방법원(Amtgericht)에서 형사소송법(StPO)을 준용하여 과태료판결로 처리한다.<sup>155)</sup> 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가 허용되면, 그러한 사건은 재판으로 회부되어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에 따라서 재판을 진행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당사자는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관청의 서류가 도달된 후 2주 이내에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제67조), 해당 행정관청의 소재지에 있는 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제68조). 이의가 제기되면 행정관청은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유지나 취소 등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판단 결과 과태료 부과처분을 유지하기로 하였다면 결정서류를 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서류가 검찰에 도달하면 소추기관의 업무는 검찰로 이관되며, 검찰은 그 절차를 종결하거나 또는 수사 보완 없이 행정관청의 판단이 옳다고 인정되면 법원에 그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이 불충분한 경우 법원은 검찰의 동의하에 그 이유 설명과 함께 행정관청으로 그 사건을 환송할 수 있고, 사건을 환송받은 행정관청이 조사와 처벌에 대한 권한을 다시 가지게 된다. 그러나 법원이 사건에 대한 행정관청으로 환송시에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혐의를 부정하고 관할 행정관청에 환송하면, 그 결정이 그 사건에 대한 최종결정이 되어 행정관청은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제69조). OWiG §75 이하에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의 경우 검사(Staatsanwaltschaft)의 참여가 필수적이지는 않으나 법원은 검사에게 통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통지한다.

## III. 소 결

우리나라의 2008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사실상 독일의 입법례를 모범 입법사례로 보고 제정된 것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형법 총칙적 요소가 대거 신설된 것도 그러

155) 서보국, 위의 자료집, 51면.

한 이유에서이다. 그 후 과태료에 대한 동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2008년 이전과 2008년 이후 많은 변화가 있어 왔다. 현행 과태료 법제의 개선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조항과 개별 법령상 여전히 산재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 조항의 정합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과태료 징수절차와 징수율제고와 관련하여 외국의 관련 법제 내용의 검토 및 유사제도 도입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독일의 과태료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법에 근거한 과태료 제도를 통한 제도적 시사점은 의미가 있다. 다만, 이미 검토한 바와 같이 독일의 질서위반행위법은 규정 내용상 과태료가 행정상 제재수단임에도 형법적 요소를 많이 도입하여 형사벌과 행정벌의 경계를 모호하게 할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절차에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형소법 및 법원조직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행정상 금전적 제재로서 과태료가 가지는 특징과 역할, 독자적 영역확보의 측면에서는 시사점 도출에 어려움이 있다.

## 제4절 영 국

### I. 행정상 금전적 제재수단의 입법 동향

#### 1.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 입법 동향

영국에서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형사적 제재를 보다는 보다 완화된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소액의 경우 형사벌적 처벌로 형사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보다 과태료 부과 등과 같은 행정적 조치가 위반행위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더 효과적이라 생각된다. 영국에서 수질오염행위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대한 연구에서는 행정적 제재조치의 확대가 소액의 형사벌금처벌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조사된 바도 있다.<sup>156)</sup> 이러한 경향에 따라 영국에서는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다양

156) R. M. Brown, "Administrative and Criminal Penalties in the Enforcement of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Legislation", *Osgoode Hall Law Journal* Vol. 30, Number 3 (Fall 1992)(Impact of the Charter on the Public Policy Process A Symposium), p. 705.

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탄력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영국에서도 형사적 조치를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와 이에 대한 처벌간의 비례성을 요구하고, 행정적 제재를 부과할 경우에도 위반행위의 특징이나 법익침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해당 조치의 효과성(effectiveness)을 요구하고 있다.<sup>157)</sup>

## 2. 과태료 제도의 운영 현황

영국은 과태료 제도를 각 개별 분야별로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질서위반행위의 위법성이 심각하지 않는 경우에 형사적 기소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행정적 과태료(administrative penalty)를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유사하다. 다만, 기소제기가 가능한 사안인 경우 과태료 부과 기관이 소제기 여부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탄력적인 대응의 필요성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역시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산업 분야의 경우 규정위반 시 과태료 제도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산업 분야에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단계별로 훨씬 세부적인 절차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집행 수단 및 제재수단의 행사 역시 점점 더 높은 단계로 진행되고 있다.<sup>158)</sup> 산업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과태료 부과가 통보 및 기소 절차 등과 함께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령 위반의 정도에 상응하는 유연하고 다양한 대응이 가능하고 평가된다.<sup>159)</sup>

어업분야의 경우 모든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를 분류·설정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 금액과 관련하여 위반행위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등급을 두어 부과액을 달리한다. 이러한 제재는 일률적인 과태료부과보다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157) Richard B. Macrory, Regulatory Justice: Making Sanctions Effective, Better Regulation Executive Final Report(November 2006), p. 187. [www.cabinetoffice.gov.uk/regulation/penalties](http://www.cabinetoffice.gov.uk/regulation/penalties) (최종접속일 2017.9.30.)

158) 심재진, “산업안전보건법의 집행 체계와 방식 - 영국의 사례와 시사점 -”, 『법과 기업 연구』, 제6권제3호, 2016. 12, 60면.

159) 심재진, 위의 논문, 63면.

## II. 과태료의 부과·징수<sup>160)</sup>

### 1. 과태료의 부과권자

우리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마찬가지로 영국의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지역위원회 또는 행정기관과 같은 행정청이다. 다만 영국의 경우에는 과태료의 부과와 관련하여 각 개별적인 분야별로 부과권자를 특정하고 있다. 예컨대, 노동 분야에서는 감독관,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사회복지부 등 구체적인 부과권자를 특정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과태료 부과와 전문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영국의 경우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다양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차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슈퍼마켓의 주차장 관리인 같은 사인에게도 과태료 부과 절차에 관여하도록 하여 신속한 부과징수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sup>161)</sup> 과태료 부과 기관의 다양화는 보다 효율적인 과태료부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부과와 공공성측면이나 부과한 과태료 금액의 관리측면에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부과권한에 대한 위임에 대한 개별 규정을 두어 과태료 부과와 탄력성 및 신속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것은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각 분야에서 위임을 가능하도록 하여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의 탄력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2. 부과대상 행위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 부과는 중대하지 않은 범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영국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다만, 영국은 관련 법률에서 대상자를 특정하여

160) <https://www.gov.uk/parking-tickets/paying-a-ticket>(최종접속일 2017.9.30.)에서 제시된 사항 중 일부를 번역한 것임.

161) <https://www.gov.uk/parking-tickets/paying-a-ticket> (최종접속일 2017.9.30.)

규제의 강도를 달리하고 있다. 예컨대, 어업 분야의 경우 어업 산업의 특징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을 확대하고 부과 액수도 달리하고 있다. 부과 대상자를 어업경영인, 선박소유자, 용선주(Charterer), 대표자(representative), 선박 운전자(operator) 그리고 법적 책임(legally liable)을 부담하는 자 등으로 확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하여<sup>162)</sup> 어업분야가 가지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과태료의 제도적 취지를 살리고 있다.

### 3. 부가 기준 및 부과 금액

과태료 금액의 부과기준과 액수는 질서위반행위의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영국도 과태료 부과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법률의 근거에 따라서 범위의 정도 즉 위법성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반의 정도가 과태료 부과 수준을 넘어서는 중대한 범위의 경우에는 형사상 기소도 가능하다.

영국은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 범위의 정도 및 행위의 특징에 부합하는 적정하고 형평에 맞는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관련 분야 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명시하고, 규제의 필요성이 상당하고 범위의 피해가 큰 분야의 경우 상당히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 예로 어업 분야에서의 과태료 부과 기준, 범위의 정도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은 다음과 같다.

#### < 과태료 부과금액의 수준<sup>163)</sup> >

	첫 위반 시	재위반 시	그 이상의 위반 시
Level 1	£ 250	£ 500	기소 제기
Level 2	£ 500	£ 1,000	기소 제기
Level 3	£ 1,000	£ 2,000	기소 제기
Level 4	£ 2,000	£ 4,000	기소 제기

162) IFCA, Financial administrative penalties for fisheries offences, 2012, p. 2.

163) IFCA, Financial administrative penalties for fisheries offences, 2012, p. 4.

#### 4. 부과 징수 절차

우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는 과태료 제도와 관련한 일반법을 통하여 과태료 부과 절차의 일원화를 도모하고 있지만 영국의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분야별로 과태료 부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교통법규 위반의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부과절차를 보기로 한다.<sup>164)</sup>

##### (1) 과태료 부과 방식

영국에서는 교통법규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 하는데 우리와 유사하게 티켓을 발부하고, 티켓의 유형에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한 납부 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특정 지역의 거주자에게는 거주자 할인(resident's discount)제도가 있어서 우체국에 지역주민 할인(local resident discount)을 위한 계좌를 개설하고 당해 할인을 신청할 수도 있다.

통상적인 과태료 납부 방식도 다양하다. 납부자가 은행계좌를 개설한 후 납부하거나 납부 창구에서 현금으로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납부를 위한 자세한 사항, 즉 예를 들어 온라인상의 접속 방식, 전화 혹은 우체국을 통한 접속 방식 특히 전화번호 그리고 상담가능시간 등이 상세하게 제시 및 안내되고 있어서 납부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sup>165)</sup>

##### (2) 과태료 부과통지(Penalty charge notice, PCN)

교통법규 위반 시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통지(PCN)를 한다. 원칙상 PCN은 차량 소유자로 등록된 자에게 하고 경우에 따라 렌트 증명서(hire agreement)를 제출한 차량 임차인 혹은 리스 이용자에게도 부과된다. 당해 부과통지는 단순한 주차 규정위반은 물론 교통법규 위반(우회전 금지 위반, 버스 전용차선 위반), 시내 혼잡통행료 등의 미납시에도 발부된다.

164) <https://www.gov.uk/parking-tickets/paying-a-ticket> (최종 접속일 2017.9.30.)에서 제시된 사항을 번역 및 정리한 사항이다.(김용훈, “현행 과태료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영국에서의 관련 제도 운영을 참고하여”, 한국법제연구원 자료집, 2017.4, 72-79면 참조)

165) 김용훈, 위의 자료집, 74면 참조.

과태료 납부 기한은 과태료 부과 후 28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고, 기한 도과시 과태료 금액의 50%가 가산된 금액을 14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14일 이내에도 부과확인서 상의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은 부과 요구서를 발부한다.

### (3) 과태료 부과 불복 절차

영국에서는 PCN(과태료 부과 통지)의 경우에 런던교통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어 온라인과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sup>166)</sup>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위반 유형에 따라 이의제기 기한을 제시하고 있다. 버스전용차선, 우회전 및 좌회전 금지 법규 위반 및 주차위반(CCTV)의 경우에는 PCN 수령 후 28일 이내에 당사자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자의 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는 더 이상 과태료 납부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면(written confirmation)이 발송되며, 과태료 부가처분이 적법하면 이의제기에 대한 거부통지서(notice of rejection)가 당사자에게 송달되고, 위반자는 과태료를 납부하거나 송달 후 28일 이내에 런던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sup>167)</sup> 법원이 납부자의 소제기를 인용한 경우 과태료 부과 행정청(런던 교통청)은 즉시 PCN을 취소하여야 하고, 소제기가 기각되고 당사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거부시 법원의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된다.

## 5. 징수절차

영국에서는 행정 질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규율 단계별로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통지절차와 같은 중간단계를 두어 행위자의 자발적인 법 준수를 유도하고 있으며 과태료 통보 및 기소 절차 등 단계적인 부과 절차를 가지고 있으며 부과징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과태료 징수와 관련하여 징수를 전담하는 별도의 담당관(contractor) 또는 과태료 집행관(FEO) 제도를 운영하여 과태료 집행을 위한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sup>168)</sup>

166) <https://tfl.gov.uk/modes/driving/red-routes/penalty-charge-notices/make-a-representation> (최종접속일 2017.3.31.)

167) 김용훈, 위의 자료집, 76-77면 참조.

168) 김용훈, “영국에서의 과태료 집행 쟁점”, 한국법제연구원 자료집, 2017.8, 43면

과태료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의 절차를 통하여 당사자의 자발적인 과태료 납부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으며, 징수방법 역시 직접 납부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으로도 납부하도록 하는 등 방법을 다원화하여 납부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과태료 미납 시에는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III. 소 결

영국은 금전적 제재수단인 과태료의 부과에 있어서 우리나라나 독일 같은 일변법이 존재하지 않고, 각 분야의 개별 법률 차원에서 해당 분야의 고유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과태료 제도를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 각 분야 별로 과태료 부과 행위 유형을 구체화하여 질서위반을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행정 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규율 단계별로 세분적인 절차를 마련한 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과태료 부과와 독자적인 목적을 달성하도록 도모하고 있다.

영국의 과태료 정책과 관련하여 주목할 수 있는 것은 과태료 부과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과 특정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이다. 예컨대, 최저임금 지급을 위한 집행체제로서 자동적 과태료 제도(new penalties and fair arrears regime)가 도입되고 있다는 것인데<sup>169)</sup> 특히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영국에서는 최저임금 정책의 강제적인 집행을 위하여 과태료 부과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미지불된 과태료의 경우 ‘미지불금(underpayment)’ 총액의 50%로 부과되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지침 역시 마련되어 있다.<sup>170)</sup>

또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 실체를 보다 다양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차 위반 시 위반 딱지를 확인한 후 기한 및 납부 방법을 위하여 딱지 발급기관

169) LPC(Low Pay Commission), National Minimum Wage, 2012, p. 120; LPC(Low Pay Commission), National Minimum Wage, 2011, p. 108. 김삼수, “영국 전국최저임금제의 집행체제와 전개”, 『EU학 연구』, 제18권제1호, 2013, 131면에서 재인용.

170) 예를 들어 과태료로 100파운드 미만인 금액이 책정된 경우 최소 100파운드로 만일 5,000파운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5,000파운드의 과태료(arrears)가 부과되도록 하고 있다.

등에게 문의를 하여야 하는데 특히 슈퍼마켓의 차량 주차장 관리인과 같은 사기업으로부터 지방의회의 주차 관련 부서에 의하여 발급된 부과 기준 혹은 초과 납부경고장과 같은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영국의 경우에는 법익침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행정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의 부과 기관의 다양화를 피하여 보다 탄력적인 행정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sup>171)</sup>

## 제5절 프랑스

### I. 행정상 금전적 제재수단의 입법 동향

#### 1. 금전적 제재 수단 현황

과태료는 과거의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사후적 금전벌로 행정질서벌이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과해지는 행정벌인 형벌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sup>172)</sup> 하지만, 프랑스는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다르게 ‘형벌적 벌금’과 ‘행정적 금전벌’을 일괄적으로 벌금(amende)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다만 그 부과 근거에 따라 구별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우리나라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행정상의 금전벌을 지칭하는 공통적 명칭은 없으며 금전벌을 벌금(amande) 또는 행정적 벌금(amende administrative), 형사벌금(pénalités), 재정적 벌금(sanction financière) 등의 다양한 용어로 규정하고 있다.<sup>173)</sup> 또한 프랑스는 위의 다양한 용어사용과 함께 개별 법전(code)에 따라 상이한 과태료 부과액수, 부과권자 등이 규정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같은 통일적인 부과장수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프랑스 법제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과태료제도를 연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171) <https://www.gov.uk/parking-tickets/paying-a-ticket> (최종접속일 2017.9.30.)

172)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16, 402면.

173) Julien B'étaillé, Dalila Chouki, Coralie Courtaigne-Deslandes, Maryse Deguerge, Elise Langelier, et al.. “Les sanctions administratives dans les secteurs techniques”, [Rapport de recherche] Mission de recherche Droit & Justice. 2017. p.30. 이러한 점에서 본 보고서에서는 프랑스의 다양한 용어를 통일하여 과태료로 지칭하기로 한다.

프랑스는 우리나라의 행정질서벌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를 하나의 통일된 법률로 규율하고 있지는 않다. 개별법에서 벌금 및 과태료와 유사 제재들을 규율하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행정상 제재의 하나로서 금전적 제재(*sanctions patrimoniales* 또는 *sanctions pécuniaires*)라는 점에서 구분하지 않고 사용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행정상 제재를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 2. 금전적 제재의 원칙

행정상 금전적 제재로서 과태료(*amende administrative*)를 비롯한 기타의 행정적 제재는 형법상의 벌금의 부과와 같이 ① 적법성의 원칙, ② 죄형법정주의와 비례의 원칙, ③ 범죄행위자 처벌의 원칙, ④ 법률 불소급의 원칙, ⑤ 처벌병합금지의 원칙 등이 적용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이중처벌금지원칙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3. 금전적 제재금 부과·징수 현황

프랑스에서 과태료는 재정경제부(*Ministère de l'Économie et des Finances*, 이하 재경부) 산하의 국고원(*Trésor public*)에 납부하게 되며, 2016년 예산법 제57조에 따라 재경부가 공개한 2016년 국고 징수액(*Évaluation des recettes perçues par l'État en 2016*) 자료에서 ‘세금외 국고징수액’(Recette non fiscales)의 항목에서 벌금(과태료 포함) 징수액은 16억 6천만 유로이다.<sup>174)</sup>

## II. 행정상 금전적 제재의 부과·징수

프랑스에서도 행정법상의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일방적 행정행위인 행정상 제재(*sanction administrative*)가 있으며 행정상 제재는 벌금(*amende*)<sup>175)</sup> 또는 다른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처벌조치를 의미한다.<sup>176)</sup>

174) [https://www.performance-publique.budget.gouv.fr/sites/performance\\_publique/files/files/documents/ressources\\_documentaires/documentation\\_budgetaire/chiffres\\_cles/depliant\\_budget2016.pdf](https://www.performance-publique.budget.gouv.fr/sites/performance_publique/files/files/documents/ressources_documentaires/documentation_budgetaire/chiffres_cles/depliant_budget2016.pdf)(최종접속일 2017.3.22.)

175) 형사법원에 의해 선고되는 재산형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게 국가에 일정액을 납부할 것을 내용으로 한다.

176) Diane DÉOM, David RENDERS, *Les sanctions administratives*, Bruyant, 2007, p. 25.

행정상 제재는 크게 권리를 박탈하는 제재와 금전적 제재로 나뉜다. 권리를 박탈하는 대표적인 것으로 승인 또는 허가의 철회(retrait), 자격정지(interdiction d'exercer une profession)가 있으며, 금전적 제재로는 몰수(confiscation), 벌금(amende), 연체금(astrinte) 및 가산세(majoration de l'impôt) 등이 있다. 그 밖에도 경고(avertissement), 견책(blâme), 시설물 폐쇄(fermeture d'établissements ou d'installations) 등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행정상 제재가 존재한다.

### 1. 부과의 법적 근거 - 법률과 명령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행정청의 제재권을 인정하면서 ① 행정상의 제재가 자유를 박탈하지 않고, ② 헌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죄형법정주의)는 두 가지 요건을 요구하고 있고 있으므로<sup>177)</sup> 행정상 의무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수단도 법적 근거가 요구된다. 다만, 행정적 제재권에 대해 국사원은 법규명령권이 일정한 직업 수행 규칙을 정하고 있는 때에는 마찬가지로 그에 대한 행정상 제재권을 법규명령으로써 규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가 있어<sup>178)</sup> 법규명령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행정상 제재는 형벌과 같이 죄형법정주의를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 2. 부과권자

전통적으로 행정적 제재는 공무원이나 조세에 관한 징계에서만 적용이 되어왔으나<sup>179)</sup> 학설과 판례는 행정청이 제재권(pouvoir répressif)을 가질 수 있음을 인정하였고, 헌법재판소도 “권력분립의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 한 법률은 자유를 보장할 책임을 지는 독립행정기관에게 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제재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sup>180)</sup> 따라

177) Conseil Constitutionnel, n° 89-260 DC du 28 juillet 1989.

178) CE, Ass., 7 juillet 2004, *ministre de l'intérieur, de la sécurité intérieure et des libertés locales c/ M. Benkerrou*, n° 255136 ; CE, 2 juillet 2007, *Syndicat des médecins d'Aix et Région*, n° 285485;286271.

179) CE 5 mai 1922, Fontan, Recueil Lebon, p. 386 : : 행정청은 세금을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납세에 관한 벌금(amende fiscale)을 부과할 권리를 가진다.

180) CC, n° 88-248 DC du 17 janvier 1989.

서 과태료 등 행정상 제재권은 독립행정기관(*autorités administratives indépendants*), 행정청(일반적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이 행사한다.

### (1) 독립행정기관

공정거래위원회(*Autorité de la concurrence*)가 대표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법전(*code de commerce*) 제L.420-1조 및 제L.420-2조 위반한 기관 및 기업에 대하여 상법전 제L.464-2조에 근거하여 금전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sup>181)</sup> 부과금액은 기업 총수익의 10%, 개인의 경우에는 300만 유로까지 가능하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 분야에 미치는 손해, 사안의 중대성, 기업 상황, 잠재적인 반복 가능성 등에 따라 각 사안별로 적절하게 부과하고 있으며, 만약 기업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향후 개선의 의지를 보일 경우 부과된 금전적 제재를 감액할 수 있다.<sup>182)</sup>

### (2) 관할 행정기관

독립행정기관 외에도 관할 행정기관에서 범위만 시 행정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 환경법 위반에 대한 행정상 제재가 이에 해당한다.

환경법전 제L.171-8조에 따르면 형사소추와 별개로 환경법전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 시설 등에 대하여 관할 행정기관(*l'autorité administrative compétente*)은 정해진 기한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최고 할 수 있으며, 주어진 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은 다음의 하나 또는 다수의 행정상 제재를 결정(*arrêter*)할 수 있다.<sup>183)</sup>

181) 정관선, “프랑스 행정상 제재”, 한국법제연구원 자료집, 2017.4, 182면.

182) [http://www.autoritedelaconcurrence.fr/user/standard.php?lang=fr&id\\_rub=402&id\\_article=1595](http://www.autoritedelaconcurrence.fr/user/standard.php?lang=fr&id_rub=402&id_article=1595)(최종접속일 2017.9.30).

183) 환경법전 제L.171-8조. 이에 따르면 3° 시설물의 기능 정지, 의무자의 비용으로 부여된 조건을 보완할 때까지 공사 및 작업의 이행 그리고 필요한 보전조치; 4° 15000유로 이하의 벌금 및 결정이 통지된 때로부터 의무이행 시까지 1500유로(10%) 이하의 연체금의 지불을 명한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대하여 연체금이 적용된다.

벌금 및 연체금(가산금)은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정해진다. 벌금은 위반행위 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과될 수 없으며(3년의 제척기간) 규정된 조치는 정해진 기한 내에 당사자에게 소명 가능성을 통지한 후에 취해진다.

### 3. 부과·징수 절차

행정상 금전적 제재인 과태료(amende administrative)부과 절차도 기타의 행정적 제재와 동일하게 절차상 형법상의 벌금의 부과와 같이 ① 적법성의 원칙, ② 죄형법정주의와 비례의 원칙, ③ 범죄행위자 처벌의 원칙, ④ 법률 불소급의 원칙, ⑤ 처벌병합금지의 원칙 등이 적용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이중처벌금지원칙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밖에도 개별법에 따라 제재절차의 공표<sup>184)</sup> 등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sup>185)</sup>

행정상 제재 절차와 관련하여 1979년 7월 11일 법률을 통하여 행정상 제재에 이유를 부기하도록 하였고, 또한 행정상 제재 제도에 있어서 방어권 존중의 원칙이 적용된다.<sup>186)</sup> 또한 2000년 4월 12일 시민과 행정의 관계 속에서 시민의 권리에 관한 법률(*loi relative aux droits des citoyens dans leurs relations avec les administrations* du 12 avril 2000)을 통하여 방어권의 원칙(*principe du respect des droits de la défense*)을 인정하였다.<sup>187)</sup>

### 4. 위법한 행정상 제재에 대한 불복

금전적 제재 등 행정상 제재의 위법성은 소제기를 통하여 행정법원의 통제를 받는다. 당사자는 행정법원에 월권소송이나 완전심리소송을 제기하여 금전적 제재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

184) 행정청이 행정상 제재를 부과할 때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제재 절차를 공표할 의무는 없다. CE, 10 mai 2004, *Crédit du Nord*, n° 24158, T.

185) 통신 분야의 경우 “통신의 자유에 관한 법률”; 농업분야의 경우 농업법전 제L. 331-7조와 제L.331-8조.

186) CE, Sect., 5 mai 1944, *Dame veuve Trompier-Gravier*, n° 69751 ; CC, n° 97-389 DC du 22 avril 1997, n° 99-411 DC du 16 juin 1999 au sujet du retrait de points du permis de conduire, n° 2001-451 DC du 27 novembre 2001.

187) Jean-Marc Sauvé, “Les sanctions administratives en droit public français”, *AJDA*, 2001, p. 16.

월권소송은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이유로 행정법원 판사에게 일방적 행정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법원은 행정적 제재의 적법성 및 적합성을 판단한다.<sup>188)</sup> 월권소송에서는 심리를 통하여 판사가 다투어진 행정상 제재를 취소하거나 소송을 기각한다. 이와 달리 완전심리소송에서는 위법한 행정제재처분에 대한 취소뿐만 아니라 판사는 그 제재 금액 총액을 조정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과태료 등 금전적 제재수단의 권리구제에 있어서는 월권소송보다 효과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다.

### III. 소 결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구별되는 우리나라의 법제와 달리 프랑스의 경우 이 둘의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행정상 금전적 제재를 규율하는 일반법도 없다. 더구나 우리나라와 달리 ‘형벌적 벌금’과 ‘행정적 금전벌’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벌금(amende)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그 부과근거에 따라 구별하고 있다. 또한 행정상 금전벌을 지칭하는 공통적 명칭 없이 금전벌을 벌금(amende) 또는 행정적 벌금(amende administrative), 벌칙금(pénalités), 재정적 벌금(sanction financière) 등의 다양한 용어로 규정되어 있어 프랑스 법제 전반에 걸쳐 통일적이고 종합적인 과태료 체계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행정상 금전적 제재로서 과태료(amende administrative)를 비롯한 기타의 행정적 제재는 형법상의 벌금의 부과시 처벌병합금지의 원칙 등이 적용되어 과태료와 다른 행정적 제재수단의 부과를 할 수 없다. 다만,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은 다른 목적을 가지는 행정상 제재의 유형과 합치하지 않는 가치 및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서 형사상 제재와 행정상 제재의 병과를 금지하는 것도 아니고,<sup>189)</sup> 제재 목적이 다른 행정상 제재의 병과를 금지하는 것도 아니다.<sup>190)</sup>

188) 정관선, 앞의 자료집, 187면 참조.

189) CC, n° 89-260 DC du 28 juillet 1989 ; CC, n° 2012-266 QPC du 20 juillet 2012 ; CE, Sect. 9 mars 1951, Sieur Hay, p. 150 ; CE, 21 juin 2013, n° 345500.

190) CC, n° 2012-289 QPC du 17 janvier 2013 ; CE, 27 janvier 2006, n° 265600 ; CE, Sect., 12 juillet 1955, Sieur

## 제6절 일 본

### I. 행정상 금전적 제재수단의 입법 동향

#### 1. 금전적 제재수단으로서의 과료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행정 질서벌로 과료(過料)를 규정하고 있다. 과료(過料)는 우리나라처럼 행정상의 질서벌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비교적 경미한 의무위반에 행위에 대한 징계수단을 의미한다. 또한 과료는 행정상의 의무 이행 확보의 수단의 하나이며<sup>191)</sup> 금전적 납부라는 간접적인 강제수단이기도 하다.

#### 2. 과료의 종류

과료를 부과 규정은 다양하고 그 성질도 다르며 적용하는 법리와 절차도 다양하다. 과료는 ① 질서벌로서의 과료와 ② 집행벌로서의 과료, ③ 징계벌로서의 과료 등 3가지로 일반적으로 구분하고 있다.<sup>192)</sup>

질서벌로서의 과료는 지방세법 제73조의<sup>20193)</sup>의 규정 등과 같이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확한 사유 없이 신고 또는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부과하는 것을 의미하고, 집행벌로서의 과료는 행정상의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부과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징수는 지방자치법 제22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4조 제3항에서는 조례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료, 동법 제15조 제2항은 규칙을 위반한 자에

Conan, p. 423.

191) [https://m-repo.lib.meiji.ac.jp/dspace/bitstream/10291/17409/1/houkadaigakuinronshu\\_16\\_49.pdf](https://m-repo.lib.meiji.ac.jp/dspace/bitstream/10291/17409/1/houkadaigakuinronshu_16_49.pdf).

(최종접속일 2017.9.30).

192) 김원중,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에 관한 일반적 검토”, 한국법제연구원 자료집, 2017.4, 138면.

193) (부동산취득세에 관한 불신고 등에 관한 과태료) 지방세법 제73조의20. 도부현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제73조의18의 규정에 의해 신고하고, 또는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또는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자에 대해 당해 도부현의 조례로서 10만엔 이하의 과태료를 과하는 취지의 규정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대한 과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다.<sup>194)</sup>

### 3. 과료의 적용법규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과태료에 대한 일반법은 존재하지 않고, 개별 법률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일본에서 과료는 형벌이 아니며, 개별법령에 별도의 절차적 규정을 두고 있으며, 「비송사건수속법(非訟事件手続法)」과 「지방자치법」 제255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다. 과료에 대하여 「비송사건수속법」 제5편에서 ‘과료사건’으로 제119조(관할재판소), 제120조(과료에 대한 재판등), 제121조(과료의 재판의 집행), 제122조(약식수속)에서 과료의 재판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sup>195)</sup>

194) 지방자치법 제14조 제3항에서는 “보통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 특별하게 정한 것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그 조례 중에 조례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100만엔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혹은 몰수의 형 또는 5만엔 이하의 과료를 과하는 취지의 규정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95) 제119조(관할재판소)과료사건(과료에 대한 재판 절차에 관한 비송사건을 말한다.)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 당사자(과료의 재판은 그 재판을 받는 자)의 보통재판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재판소의 관할에 속한다.

제120조(과료에 관한 재판 등) ① 과료의 재판에는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② 재판소는 과료에 대한 재판을 함에 있어서 미리 검사의 의견을 들음과 함께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③ 과료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당사자와 검찰만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 항고가 과료 재판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집행 정지의 효력이 있다.

④ 과료에 관하여 재판 절차(항소 법원의 절차를 포함 한다.)에 소요 되는 수수료는 과료의 재판을 하는 경우에 당해 재판을 받는 자의 부담으로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과료의 재판에 대하여 당사자는 제③항의 즉시 항고가 있던 경우에, 항고 법원은 그 즉시 항고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재판을 취소 하고 추가로 과료에 대한 재판을 했을 때는 전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료에 대한 사법 절차에 소요 되는 수수료는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21조(과태료 재판의 집행) ① 과료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 한다. 이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② 과료 재판의 집행은 민사 집행 법 그 외 기타 강제 집행 절차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그러나 집행 전에 재판의 송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③ 형사 소송법 제507조는 과료 재판의 집행에 관하여 준용 한다.

④ 과료의 재판 집행이 있은 후 당해 재판에 대하여 전조 제3항의 즉시 항고가 있던 경우에, 항고 재판소가 그 즉시 항고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재판을 취소하고 추가로 과료의 재판을 할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해당 과료의 재판의 집행을 한다. 이 경우 재판의 집행에 의하여 취득한 금액을 당해 과료의 금액을 초과 하면 그 초과액은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 II. 과료의 부과·징수

### 1. 부과권자

일본에서도 과태료는 행정적 제재수단이므로 행정청이 부과한다. 다만, 행정상의 제재 수단이라고 하나 위반자에 대하여 처벌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부과권자가 행정청(국가와 지방자치단체)과 법원(裁判所)이 부과하고 있다.

#### (1) 행정기관 등

행정질서벌인 과료에 대하여는 부과권자로 행정기관이 부과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도 부과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地方自治法) 제255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은 조례 또는 규칙 등으로 과료를 부과할 수 있다.

#### (2) 법원

법원은 징계벌인 과료를 부과한다. 징계벌인 과료는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이며 이러한 징계벌에 대하여는 「재판관분한법(裁判官分限法)」 제2조, 「공증인법(公証人法)」 제80조2호에서 정하고 있다. 재판제도에서 재판원(재판후보자)이 허위기재를 하는 경우는 30만 엔 이하, 출석의무 위반의 경우엔 10만 엔 이하의 과료를 부과할 수 있다.<sup>196)</sup>

### 2. 과료의 법적 근거

일본도 과료에 대한 일반법은 없고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과료를 부과하는 법률로는 민사 소송상 의무 위반에 대한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192조 등, 행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한 것으로 「주민기본대장법」<sup>197)</sup> 제50조 등, 지방 공공단체의 조례 규칙 위반에

196) 김원중, 앞의 자료집, 140면.

197) 주민대장기본법 제50조.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한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기본대장의 일부 사본의 열람을 하거나 시킨 자 또는 동조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고 해당보고 사항을 이용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거나 해당 열람사항에 관련된 신청자, 열람자, 개인열람사항취급자 및 법인열람사항취급자 이외의 자에게 제공한 자는 **30만엔 이하의 과료에 처하다**. 다만,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형을 부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1조. 허위 기타 부정수단에 의한 제30조의3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를 받은 자는 **10만엔 이하의 과료에**

대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4조제3항 등이 있다. 이 외에 「지방세법」, 「아동복지법」 등이 있다. 과료에 대한 적용법규는 특별히 개별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는 재판과 관련하여 「비송사건수속법」 제119조<sup>198)</sup>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sup>199)</sup>

### 3. 부과대상 행위

일본의 경우 각 개별법령에서 위반행위를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료(過料)를 부과하고 있다. 각 개별법령에서 정한 과료 부과대상은 ① 민사상의 의무 위반에 대한 것, ② 민사소송상 의무 위반에 대한 것, ③ 행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한 것, ④ 지방공공단체의 조례 규칙 위반에 대한 것 등이 있다.

### 4. 과료의 액수

과료금액은 각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금액은 일반적으로 상한액을 100만 엔 이하로 하고 있다. 이는 벌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이다. 예컨대, 「주민기본대장법」의 경우 과료의 금액을 제50조에서 최고 30만 엔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sup>200)</sup>, 이는 제42조에서 정한 벌금이 최고 100만 엔 이하로 한다고 규정한 것에 비하면 과료는 벌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금액이 낮다. 징수된 과료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재판

#### 처한다.

제52조. ① 제22조에서 제24조까지, 제25조 또는 제30조46에서 제30조의48까지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대한 허위 신고를 한 사람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형을 부과할 경우를 제외하고 **5만엔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제22조에서 제24조까지 제25조 또는 제30조의46에서 제30조의48까지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5만엔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제53조. 전 3조의 규정에 의한 과료에 대한 재판은 간이재판소가 한다.

198) 第119条 過料事件(過料についての裁判の手續に係る非訟事件をいう)は、他の法令に特別の定めがある場合を除き、当事者(過料の裁判がされた場合において、その裁判を受ける者となる者をいう。以下この編において同じ)の普通裁判籍の所在地を管轄する地方裁判所の管轄に属する。

199) 과료사건은 원래 비송 사건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비송 사건과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비송사건수속법에 그 절차규정을 두고 있다.

200) 주민대장기본법 제50조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한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기본대장의 일부 사본의 열람을 하거나 시킨 자 또는 동조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고 해당보고 사항을 이용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거나 해당 열람사항에 관련된 신청자, 열람자, 개인열람사항취급자 및 법인열람사항취급자 이외의 자에게 제공한 자는 **30만엔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다만,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형을 부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소)에 귀속된다. 이는 우리나라도 동일하다.

## 5. 부과·징수절차

당사자는 기간 내에 과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그 기간을 도과한 경우 보통지방공공단체장은 과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에게 시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sup>201)</sup>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의 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처분할 수 있다.<sup>202)</sup>

## 6. 집행방법

### (1) 국가가 부과한 경우 법원 및 검찰에 의한 징수

일본에서 과태료 즉 과료는 경미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그 집행은 원칙적으로 비송사건수속법의 수속에 의해 법원에 의하고 집행된다. 과료의 징수는 지방법원 또는 간이재판소에서 과태료의 재판을 통하여 검찰관(검사)의 명령에 의해 집행된다.

과료는 국가기관이 부과하는 것과 지방공공단체장이 부과하는 것으로 구분되고 있다. 국가기관이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이 「비송사건수속법」에 의해 검찰관(검사)가 민사집행법에 의해 집행한다. 과료의 재판은 재판소의 행위이며 행정행위의 예로 본다.<sup>203)</sup>

### (2) 지방공공단체 부과 시 지방자치법에 의해 집행

지방공공단체도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하여 5만 엔 이하의 과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료를 부과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해 고지나 변명의 기회를 주어지고, 지정한 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을 경우 지방세의 체납처분과 동일하게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과료는 행정청에 의한 과료와 절차가 「비송사건수속법」에

201) 일본국 지방자치법 제213조의3제1항.

202) 일본국 지방자치법 제213조의3제3항.

203) <https://ja.wikipedia.org/wiki/>(최종접속일 2017.09.30.)

따라 법원에 의하지 않고 지방자치법에 의해 절차가 진행된다.

과료는 국가기관이 부과하는 것과 지방공공단체장이 부과하는 것으로 구분되고 있다. 지방공공단체장이 부과하는 과료의 경우는 「지방자치법」이 근거법이 되며, 「지방자치법」 제231조의3제3항<sup>204)</sup>에 따르면 “보통지방공공단체의 장은 과료를 부과한 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세입 및 해당 세입에 관련된 수수료 및 연체료에 대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처분”할 수 있다. 즉 체납처분의 예는 민사집행절차가 아니라 세금체납과 동일한 자력 집행권이 인정된다.

## 7. 과료의 재판관할

「비송사건수속법」 제119조 과료사건(과료에 대한 재판 절차와 관련한 비송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과료의 재판과 재판을 받는 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도록 하고 있다.

과료에 대한 재판은 재판소인 법원이 최종적으로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법원의 중국적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법률상 보호이익을 가지는 자는 즉시항고를 통하여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즉시항고의 기간은 중국결정이 있은 후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는 불변기간에 해당 한다(비송사건수속법 제66조, 제67조).

## 8. 과료의 시효

「지방자치법」 제236조는 금전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서 금전적 제재 수단인 과료도 이의 적용을 받는다. 동법 제1항에서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시효 원용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

204) 地方自治法231条の3第3項 “普通地方公共団体の長は、分担金、加入金、過料又は法律で定める使用料その他の普通地方公共団体の歳入につき第一項の規定による督促を受けた者が同項の規定により指定された期限までにその納付すべき金額を納付しないときは、当該歳入並びに当該歳入に係る前項の手数料及び延滞金について、地方税の滞納処分の例により処分することができる。”

며, 제3항은 시효중단과 정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sup>205)</sup>

### III. 소 결

우리나라의 행정상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질서벌인 과태료는 일본의 과료(過料)와 해당하고, 과료는 형법상의 벌금과 명확하게 구분된다.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과태료에 대한 일반법은 존재하지 않고, 개별 법률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비송사건수속법」과 「지방자치법」 제255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다.

과료의 부과·징수절차는 「비송사건수속법」에 따라 진행되며, 체납자의 징수절차도 종래 우리나라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기 전에 국세징수법의 체납절차에 따라 강제집행되던 절차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일본은 원칙적으로 조세는 물론 과료 등 금전적 납부 체납자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관허사업제한이나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과 같은 비금전적인 간접적 제재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태료 부과 징수율의 저하로 과태료 제도가 행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현행 질서위반행위법상의 제재를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일본에서는 과료의 징수율이 떨어져서 그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가 드물

205) 일본국 지방자치법 제236조.

- ①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보통지방공공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을 때는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보통지방공공단체에 대한 권리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 ②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보통지방공공단체의 권리의 시효에 의한 소멸에 대해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효의 원용을 요하지 않으며, 또 그 이익을 포기할 수 없다. 보통지방공공단체에 대한 권리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 ③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보통지방공공단체의 권리에 대해서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 기타 사항(전항에 규정하는 사항 제외)에 관하여 적용해야 할 법률의 규정이 없을 때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보통지방공공단체에 대한 권리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 ④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통지방공공단체가 한 납입통지 및 독촉은 민법 제153조(전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고 간접적인 행정적 제재수단의 도입에 아직은 소극적이다. 다만, 최근에 일부 자치단체에서 조세체납의 경우 인허가를 거부하거나 체납자 명단을 공표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행정서비스 제한에 대한 반대의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우와 대비가 된다.

또한 과료와 다른 제재수단과의 병과 문제에 있어서도 법률에서 과료이외에 벌금 등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등 기타 행정적 제재수단과 병과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과태료와 과징금의 이중처벌에 대한 논의도 드문 상황이다.

## 제7절 중 국

### I. 행정상 금전적 제재수단의 입법 동향

중국은 행정상 제재 등 행정상 의무위반자에 대한 처벌과 관련하여 일반법인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을 두고 있고, 여기에서 행정처벌의 일종으로 금전적 제재수단인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과태료 등 행정상 제재수단에 대한 법적 검토가 거의 없고, 일반법인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도 드물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주로 행정처벌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과태료제도에 대한 검토를 하고자 한다.

#### 1. 행정처벌의 종류

행정처벌의 종류에는 ① 경고, ② 과태료(罰款), ③ 위법소득 몰수, 불법재물 몰수, ④ 생산정지·사업정지 명령, ⑤ 허가증의 가압류 혹은 취소, 면허증의 가압류 혹은 취소, ⑥ 행정구류, ⑦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기타 행정처벌 등이 있다.<sup>206)</sup>

206)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8조.

## 2. 과태료의 법적 근거 -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중국은 과태료 등 행정상 제재와 관련하여 일반법인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을 두고 있다. 동법은 1996년 3월17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 통과하여 1996년 10월1일부터 시행되었고, 2009년 8월 27일 개정되었다. 동법은 행정처벌 법규의 모법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인민정부가 제정한 규정은 행정관리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경고 혹은 일정 액수의 벌금의 행정처벌을 설정하고 있다. 행정처벌을 부과할 경우에 본법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고, 동법에 의하면 행정처벌의 실시는 처벌과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동법은 총 8장 64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총칙규정으로 제1조에서 동법의 입법 목적을 규정하고, 제3조에서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에서는 행정처벌의 일반원칙, 제6조에서는 행정처벌을 받는 당사자(공민과 법인)의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행정처벌의 종류 및 제정을 규정하고 있다. 제8조에서 과태료 등 행정처벌의 종류를, 제10조 내지 제13조에서는 행정처벌을 위한 국무원과 가부 중앙정부의 규칙, 지방의 각 성 및 자치구등 지방 정부의 규정들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행정처벌의 집행기관을 규정하고 있다. 제16조에서 행정처벌의 집행기관으로 행정기관을 규정하고 제18조에서 행정처벌권의 위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행정처벌의 관할 및 적용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제20조 내지 제24조에서는 행정처벌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에서 지켜야할 내용을, 제24조에서는 이중처벌금지원칙을, 제25조 내지 제27조에서는 행정처벌의 배제 및 감경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행정처벌을 위한 각종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행정처벌사항에 대한 조사(제30조), 행정처벌을 위한 당사자에 대한 사전고지사항(제31조), 당사자의 권리(제32조) 등을 규정하고, 행정처벌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로 ① 간이절차(제33조 내지 35조), ② 일반절차(제36조 내지 제41조), ③ 청문절차(제42조 내지 제43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6장은 행정처벌의 강제집행의 장으로 과태료 납부기간(제46조), 과태료의 현

장징수(제47조-제48조), 과태료 미납시의 가산금 부과 등 강제집행(제51조, 제53조), 과태료의 연기 및 분할납부(제52)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7장에서는 벌칙규정으로(제55조 내지 제62조) 주로 행정처벌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이 준수하여야할 사항과 이를 위반시 책임자에게 징계처분과 형사책임을 부과한다는 내용(제56조 내지 제62조)을 규정하고 있다. 제8장은 부칙조항을 두고 있다.

### 3. 개별법상 과태료 처분 현황

#### (1) 「도로교통안전법」 상의 과태료 처분

「도로교통안전법」은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과 유사한 법률로 2003년 10월 제정되어 2007년 및 2011년에 개정되어 현행법 2011년 5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동법에서는 과태료 처분과 관련하여 ① 도로교통안전법 위반자에 대해 20원 이상 200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② 음주운전자에게 1,000원 이상 5,000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sup>207)</sup>

#### (2) 「생산안전사고 과태료 처벌규정」 상의 과태료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에서 2015년 4월 반포, 2015년 5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동규정은 과태료 처분과 관련하여 ① 사고발생 단위 주요책임자가 사고발생 후 즉시 사고대책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년 수입의 100%의 과태료 부과, ② 사고발생 단위 주요책임자가 사고발생 후 보고를 늦게 한 경우, 1년 수입의 60-80%의 과태료 부과, ③ 사고발생 단위 주요책임자가 사고처리 기간에 직무이탈을 한 경우, 1년 수입의 80-100%의 과태료 부과, ④ 사고발생 단위는 3인 이하의 사망 혹은 3인 이상 10인 이하의 중상 혹은 3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직접적인 경제손실을 야기한 일반사고의 책임자는 2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⑤ 50인 이상 사망 혹은 150인 이상 중상 혹은 1.5억 원 이상의 직접적인 경제손실을 야기한 경우, 책임자는 1,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sup>208)</sup>

207) 한상돈, “중국 과태료 관련규정의 주요내용 검토”, 한국법제연구원 자료집, 2017.4, 173-174면 참고

## II. 행정처벌의 부과 · 징수

### 1. 부과기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에 따르면 행정처벌의 부과기관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행정기관으로 행정기관의 행정처벌권 행사에 관해 결정할 수 있다. 행정처벌의 관할은 위법행위 발생지의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가 행정처벌권을 갖고 있는 행정기관에서 관할한다.<sup>209)</sup> 만약 관할에 대하여 논쟁이 발생한 경우 공동의 상급 행정기관에 보고하여 관할을 지정한다.

국무원 또는 국무원의 수권을 받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하나의 행정기관을 지정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행정처벌권을 행사하도록 할 수 있고(제16조), 행정기관은 법률 및 법규 또는 규장의 규정에 따라 그 법정 권한 내에서 규정에 부합하는 조직에게 행정처벌을 실시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위임한 행정기관은 위임을 받은 조직이 실시하는 행정처벌에 대하여 감독책임(법적책임까지)을 지며, 위임받은 조직은 그 밖의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에게 행정처벌의 실시를 재위임할 수 없다(제18조)

### 2. 행정처벌 감경사유 등

행정처벌의 부과와 관련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행정처벌을 부과할 수 없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sup>210)</sup> ① 당사자의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두 번 이상 과태료의 행정처벌을 부여할 수 없고, ② 만 14세 미만인 자가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정처벌을 부여하지 않으며 후견인이 교육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③ 정신질환자가 자신의 행위를 분별하지 못하거나 통제하지 못할 때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정처벌을 가하지 않는다.

208) 한상돈, 위의 자료집, 173-174면 참고

209)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20조.

210)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24조 내지 제27조.

하지만 그 후견인이 엄격하게 감시하고 치료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④ 위법행위가 경미하고 즉시 시정하여 위해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처벌을 가하지 않는다. ⑤ 만 14세 이상 만 18세 미만인 자가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정처벌을 경하게 처리하거나 감경해야 한다. 이밖에 행정처벌을 경하게 처리하거나 감경해야 할 경우는 자발적으로 위법행위의 위해결과를 제거하거나 감경한 경우, 타인의 협박으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 행정기관과 협력하여 위법행위 조사에 공을 세운 경우, 기타 법에 의해 행정처벌을 경하게 처리되거나 감경한 경우 등이다.<sup>211)</sup> ⑥ 위법행위가 2년 이내에 발견되지 않은 경우 행정처벌을 더 이상 부여하지 않는다.

### 3. 부과 대상 행위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관리질서를 위반한 행위(제3조)를 한 경우 부과된다. 법인이나 기타 조직도 부과 대상으로 하고 있다.

### 4. 부과기준 및 부과 금액

위법사실이 확실하고 법정 근거에 의해 공민에는 50위안 이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는 1,000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부과가능하다(제33조). 과태료의 한도액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규정에 따른다(제13조).

### 5. 부과·징수 절차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에 따르면 행정처벌 부과절차로는 간이절차와 일반절차가 있다.

#### (1) 간이절차(제33조 이하)

위법사실이 분명하고 법적 근거도 있는 경우, 공민에게는 50웬 이하, 법인 혹은 기타 조

211)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27조.

직에게는 1천원 이하의 벌금 혹은 경고의 행정처벌은 즉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sup>212)</sup> 법집행 관계자가 바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경우 당사자에게 법집행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예정된 격식, 번호가 편재되어 있는 행정처벌결정서를 기입해야 한다.<sup>213)</sup>

행정처벌결정서는 바로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하는데, 행정처벌결정서는 당사자의 위법행위, 행정처벌 근거, 벌금액수, 시간, 장소 및 행정기관 명칭을 명확하게 기입해야 하며, 법집행 관계자가 서명 혹은 날인을 해야 한다. 당사자가 즉시 내린 행정처벌결정에 불복한 경우, 법에 의해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 제기를 할 수 있다.

## (2) 일반절차(제36조 이하)

법에 의해 행정처벌을 부여할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전면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조사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행정기관이 조사 혹은 검사를 진행할 때, 법집행 관계자는 최저 2명으로 당사자 혹은 관계자에게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당사자 혹은 관계자는 응당 사실대로 답변을 하고 조사 혹은 검사에 협조해야 하며 방해할 수 없다.<sup>214)</sup>

행정기관이 증거수집 시 샘플로 증거를 채취할 수 있다. 증거가 소멸 될 수 있거나 이후에 취득하기 어려운 상황 하에서 행정기관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우선적으로 접수 보존할 수 있으며 7일 이내에 즉시 처리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기간에는 당사자 혹은 관계자는 증거를 훼손하거나 혹은 이동할 수 없다. 정황이 복잡하거나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비교적 중한 행정처벌을 부여하고 행정기관의 책임자가 집단 토론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조사결과 확실하게 행정처벌의 위법행위를 받아야 할 경우, 정황의 경중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다. 위법행위가 경미하여 법에 의해 행정처벌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벌을 부여하지 않는다. 위법행위가 이미 범죄를 구성할

212)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33조.

213)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33조.

214)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34조.

경우, 사법기관에 이송한다. 당사자가 인신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벌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치안관리처벌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 (3) 청문 절차(제42조 이하)

청문절차는 행정기관이 생산중지, 영업중지, 허가증 혹은 면허 취소, 비교적 액수가 큰 벌금 등 행정처벌결정 명령을 내리는 경우에 거친다. 처분청은 처분 당사자에게 청문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청문을 요구한 경우 행정기관은 청문회를 하여야 한다.

국가기밀, 상업비밀 혹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것 이외에 청문회는 공개하고, 당사자는 직접 청문에 참가할 수 있다. 청문회 절차는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상의 청문절차와 달리 사법절차와 유사하다. 청문과정에서 조사자가 당사자의 위법한 사실, 증거와 행정처벌의 건의를 하면 이에 대한 해명 대질을 한다. 청문의 내용은 문서로 기록되어 당사자에게 교부되고 착오 없음을 확인 한 후 심사한 후 서명한다.

## 6. 행정처벌의 집행

행정기관이 과태료 등 행정처벌을 부과할 때는 행정처벌결정서를 작성하여 선고 후에 즉시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sup>215)</sup> 행정처벌 결정을 받은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정된 은행에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sup>216)</sup> 은행은 과태료를 수령하고 과태료를 직접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과태료를 즉시 징수하는 경우도 있다.

중국의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기관이 직접 징수할 수 없다. 하지만 특수한 상황의 경우 즉시 과태료를 징수 할 수 있다. 20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와 즉시 징수하지 않으면 사후에 집행이 어려운 경우이다.<sup>217)</sup> 예컨대, 변두리, 수상(水上)의 교통이 불편한

215)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47-48조. 당사자 부재 시 행정기관은 7일 이내에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16)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46조.③

217)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47조.

지역과 같이 당사자가 지정된 은행에 과태료를 납부하는데 확실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원한다면 행정기관 및 그 법집행 관계자가 현장에서 과태료를 징수 할 수 있다.<sup>218)</sup> 현장에서 징수한 과태료는 과태료를 징수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행정기관에 납입하여야 하고 행정기관은 2일 이내에 과태료를 지정된 은행에 납입하여야 한다.<sup>219)</sup>

당사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신청을 하여 행정기관의 비준을 거쳐 과태료 납부를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다.<sup>220)</sup>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도록 행정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은 도과된 과태료에 대해 가산금을 부과한다. 매일 과태료액수의 3%를 가산하고 있어서<sup>221)</sup> 우리나라의 과태료 체납시의 가산금과 비교하여 상당히 높은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재산에 대한 압류와 압류된 물건에 대한 경매 혹은 금융자산을 동결하여 자금이체로 과태료를 저당한다. 그리고 인민법원의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당사자는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재심 신청 혹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처벌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는다.<sup>222)</sup>

### III. 소 결

중국은 행정처벌의 일종으로 금전적 제재수단인 과태료를 행정상 제재 등 행정처벌과 관련한 일반법인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법체계상 아직 형사적 처벌과 행정적 제재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의 내용을 보면 행정처벌의 종류로 과태료(罰款) 이외에 위법소득 몰수, 불법 재물 몰수, 행정구류 등 포함하고 있어 형사적 제재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또한 과태료

218)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48조.

219)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50조.

220)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52조.

221)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51조. 제1호

222)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44조.

등 행정처벌의 결정에 있어서도 일반절차(제36조 이하)로 행정처벌을 부과 시 당사자의 진술과 증거수집 등 형사소송절차와 유사한 엄격하고 공정한 증거조사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고 당사자가 인신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벌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치안관리처벌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과태료 부과·징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태료를 집행하는 기관에 대한 엄격한 권한행사를 확보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과태료 부과·징수기관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재산권보호를 강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도 특이한 점이다.

과태료의 강제징수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도록 행정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행정기관이 매일 과태료액수의 3%를 가산하도록 하고 있어 체납 가산금액이 상당한데, 이러한 고액의 가산금부과가 과태료 납부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이나 아직 이러한 연구는 없다.

## 제8절 평가 및 시사점

이상에서 각국의 과태료 유사제도들의 부과·징수 절차를 검토해 보았다. 검토 결과 행정적 제재수단인 과태료 제도를 운용하는 각국의 입법태도를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첫째, 드문 경우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과태료에 대한 일반법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독일과 중국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과태료에 대한 일반법이 존재하지 않고, 민사적 제재를 활용하는 경우로 미국과 영국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 과태료에 대한 일반법이 존재하지 않고,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경우로 프랑스와 일본이 이에 해당한다. 과태료 제도에 관한 일반법을 두고 있는 입법례는 드문 것으로 보이며, 그 이유는 형벌인 벌금이나 행정상 제재인 과태료, 기타 유사 제재들이 모두 금전적 제재라는 점에서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운용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은 과태료를 규율하는 일반법으로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제정하였고,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이 되는 각종의 금전적 제재를 규율하는 일반법으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현재 과태료의 운용과정에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개별 법률상의 과태료 규정과의 정합성과 과태료 부과금액 산정의 적절성, 징수율의 제고 등 의 기존에 존재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과 관련하여 이하에서는 민사금전벌이나 행정벌과금 등 해외 주요국의 과태료 유사 제도의 부과·징수 절차 등을 분석하여 향후 입법에 대한 시사점이나 제도적 개선 방향에 대해 서술한다.

## I. 과태료 금액 산정과 관련하여

첫째, 과태료 부과금액 산정의 객관성과 적절성이 많은 논란이 되고 있어서 이와 관련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민사금전벌의 부과 시에 전통적으로 위반행위자와 금전벌을 부과하는 행정기관 사이에 타협(또는 화해, *compromise*)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는 금전적 제재 이전에 당사자와 협의하여 사전적 조정을 거친다는 점과 국민의 행정절차에의 참여도 증대라는 측면에서 유사한 형태의 절차 도입이 가능한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sup>223)</sup> 이 제도는 법적으로 형사적 제재의 측면보다는 민사적 손해보전이란 측면이 강하여 행위자의 위반 행위에 대한 징벌보다는 향후 행위의 재발방지에 초점을 두어 금전벌의 액수에 대한 위반행위자와 행정기관간의 타협 및 화해를 통해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민사금전벌 액수의 산정에 있어서 개별 법률에 물가상승에 따른 변동이나 생계비(*cost-of-living*) 수준을 고려해서 특정 기간 동안 부과 금액의 상한을 적정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위반행위자에 대한 일방적 제재보다는 금전벌 부과에 있어서 상호 소통에 입각한 합리적 금액산정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등을 통해서 위반자와 행정기관과의 원활한 소통과 상호작용을 도모할 수 있고 행정의 실효성 확보에도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223) 물론 이러한 화해 방식의 절차적 도입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비판은 존재한다. 박윤훈, “미국의 민사금전벌 제도”, 미국헌법연구, 제1권, 1990, 75면~80면 참조.

## II. 과태료 부과 절차와 관련하여

둘째, 과태료 부과 절차와 관련한 제도 개선의 시사점도 필요하다. 영국은 과태료 부과 제도의 활용에 있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의 개별화 및 납부 절차의 다원화가 잘 되어있어 각 분야의 고유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과태료 부과가 개별 법률단위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개별 법률에서 각 분야 별로 과태료 부과 행위유형을 구체화하여 질서위반을 구체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질서위반규제법이라는 기본법을 두어 과태료부과와 관련한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규제를 하고 있지만 각 분야별 특수성을 고려한 과태료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뿐만 아니라 과태료 부과 및 이의 징수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보유가지고 이를 적극적으로 소개하여 징수대상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경우 과태료 부과 시 납부고지서를 통한 안내 및 징수가 유일하다시피 하다는 점에서 시사점도 있다.

과태료 징수방법에 있어서 중국의 경우 통상은 당사자가 행정처벌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정된 은행에 가서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해당 은행은 과태료를 수령하고 과태료를 직접 국고에 납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즉시 행정처벌 결정서 부과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법집행 관계자는 즉시 과태료를 징수가 가능하다. 법에 의해 20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와 즉시 징수하지 않으면 사후에 집행이 어려운 경우이다. 변두리, 수상(水上)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는 납부자가 지정된 은행에 과태료를 납부하는데 명백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원한다면 행정기관 및 그 법집행 관계자가 현장에서 과태료를 징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이 경우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징수 방법도 납부자의 편의를 위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 III. 과태료 징수율 제고와 관련하여

셋째, 과태료 부과 징수율 제고의 측면이다. 현재 우리의 과태료 금액을 보면 특정 분야의 경우 벌금액과 동일 수준으로까지 고액화하는 추세가 나타나서 국민의 법 감정과 상치되는 면이 있고, 부과금액이 소액일 경우라도 특별한 고려 없이 납부를 강제하는 측면

이 많아 납부자의 저항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어 과태료 징수율이 지속적으로 저하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제도개선을 통해 과태료 납부자의 납부저항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의 민사금전벌의 경우 「소비자 생상품 안전법(Consumer Product Safety Act)」, 「연방 민사벌 인플레이션 조정법(The Federal Civil Penalties Inflation Adjustment Act)」 등의 법률에서 물가상승률 및 생계비 등을 반영한 것에 대해 우리도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징수율 제고의 측면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에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위반 행위자의 소득 수준이나 물가상승 등의 경제적 요인 등 과학적 지표의 반영이 아직 부족하고 단순히 과태료 납부자의 성실성만을 기준으로 감경사유로 삼고 있어서 미흡하다. 미국의 「연방 민사벌 인플레이션 조정법」은 인플레이션조정(inflation adjustment)을 거쳐 민사금전벌의 상한을 증대시키거나 하한과 상한의 범위를 조정하고 생계비조정(cost-of-living adjustment)의 개념도 도입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법원의 명령을 예정하는 등 보다 강력한 수준의 강제집행방안을 확보하고 있다. 과태료 징수 절차에서의 사법적 수단을 원용한다면 보다 제고된 수준의 강제집행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서만 사법절차가 등장하는 우리에게 이는 시사하는 바가 있다. 나아가 영국의 경우 과태료 강제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압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자동차를 특히 그 대상으로 설정하고 이의 구체적인 집행을 위하여 압류→환가→청산 등의 절차를 예정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 역시 보다 엄밀한 수준의 강제집행절차에 대한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국은 과태료 징수를 위한 별도의 담당관 제도를 도입하여 과태료 징수의 효율화 및 실제화를 꾀하고 있다. 담당관(contrctor), 과태료 집행관(FEO) 등 전담 기관의 마련을 통하여 과태료 징수 업무의 집중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역시 과태료 징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고민이 상당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과태료 징수를 위한 전담자를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제4장 과태료 제도의 입법체계 정비방안

제1절 입법체계 정비의 필요성과 정비방향

제2절 현행 과태료 관련 법령상 명확성원칙의 정립

제3절 현행 과태료 관련 법령상 입법현황 검토

제4절 과태료 제도 운영현황을 위한 설문조사

제5절 정비방안 도출



## 제4장

# 과태료 제도의 입법체계 정비방안

## 제1절 입법체계 정비의 필요성과 정비방향

### I. 정비필요성의 배경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태료는 현행 우리나라의 행정질서위반행위에 대한 대표적인 금전적 제재수단으로서 관련 법제도상 일반화된 제도라 할 것이다. 이러한 과태료제도의 운용에 있어 나타나는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써 종래 수행된 연구 성과물 등의 경우 크게, 해당 개별 법률상 과태료제도와 관련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또는 과태료 운용 상(성립-산정-부과-징수) 일정 단계에 관한 개선방안 제시에 한정하여 수행되어져 온 것으로 사료된다.

생각건대 과태료제도는 여타 행정제재수단에 비하여 법리적으로는 다수의 형법적 요소가 가미된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일반법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점, 입법 체계적으로는 소위 ‘행정입법’ 분야에 있어 담당 실무자 등의 제도 운용에 관한 재량적 요소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제재 수단적 특성으로서 관계인의 입장에 있어 매우 민감할 수 있는 금전적 제재수단을 활용하고 있는 바 제도운용에 있어 부과 주체와 객체 간 매우 민감한 행정영역에 속하는 제도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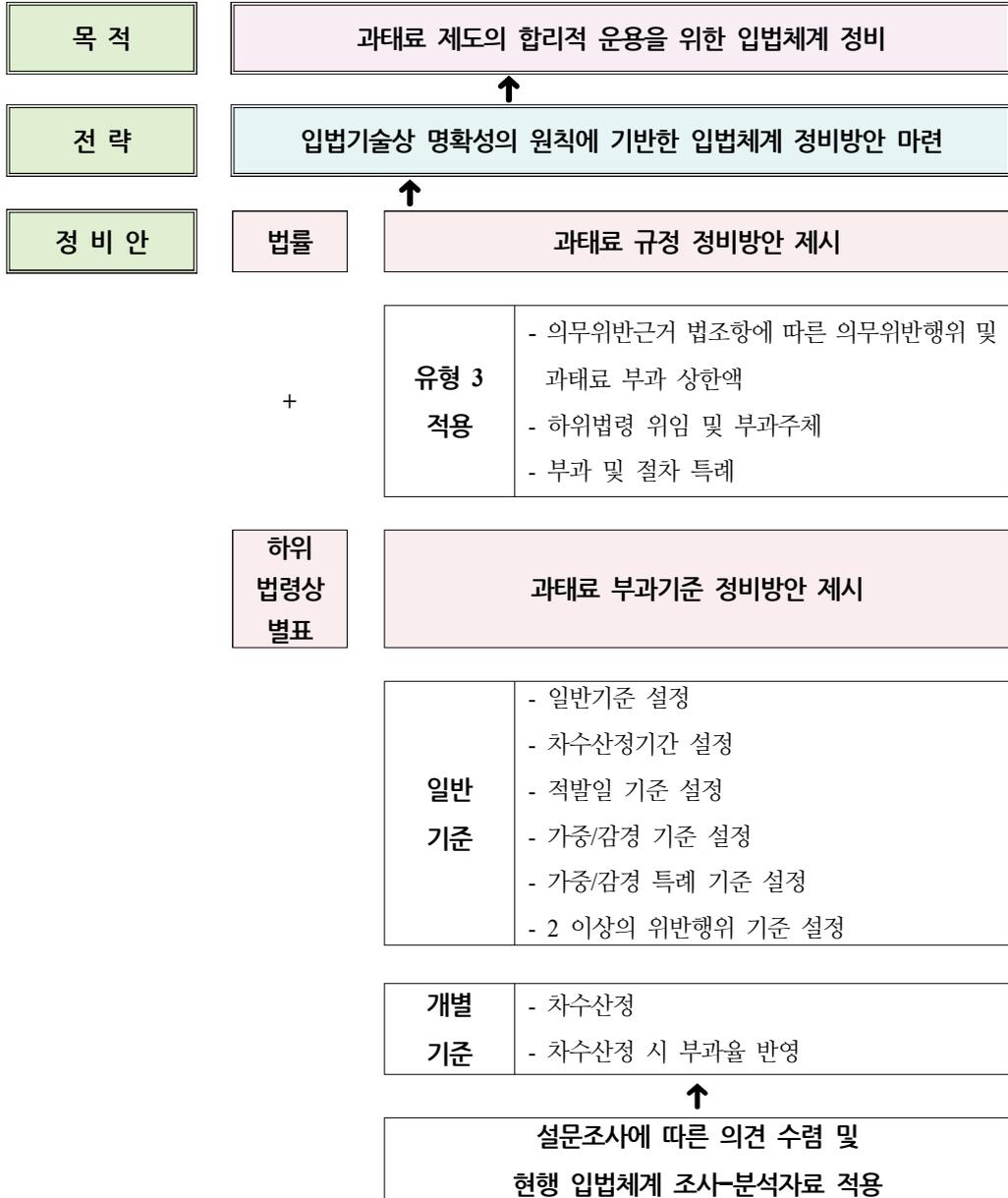
이러한 법제도 운용상 특징에 근거한 제도의 합리적 운용은 곧 행정주체와 객체 간 신뢰관계의 구축되어 짐을 의미한다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으로써 무엇보다 위에서 언급한 과태료 제도가 갖는 특징을 반영하여, 입법기술상 ‘명확성의 원칙’ 을 통

한 관계인의 예측가능성 제고에 주된 목적을 둔 관련 법제의 입법체계성 정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현행 관련 법제상 나타나고 있는 입법 규정내용의 불비, 상이, 미흡 등 관련 법령의 불명확성에 기인하여 실무에서 발생하는 관계인 등이 겪게 되는 제도 운영상의 전반적 이해부족에 따른 예측가능성의 저하라는 주요 문제점의 발생을 통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때문에 이하에서는 과태료제도 합리적 운용을 위한 현행 관련 법제의 규정내용분석과 실무상 운영담당자의 설문조사에 근거 그 정비방안의 도출을 전개하여 보고자 한다.

## II. 정비 방향

현행 과태료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정비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추진 전략 하에 우선적으로 본 연구에 있어 정비방안 제시의 입법 원칙으로 설정하고자 하는 “명확성의 원칙”과 이를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적용할 두 가지 정비 추진방향을 설정, - 전개하여 최종적인 정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연구 추진전략】



## 2. 법령상 입법체계 조사-분석을 위한 틀 설정

이하에서는 과태료 관련 법령상 입법체계 검토를 위하여 과태료 관련 5개 부처 소관 법률 및 하위법령 (국토교통부 소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 93개 법률, 행정안전부 소관 「개인정보보호법」 등 41개 법률, 환경부 소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9개 법률, 보건복지부 소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58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31개 법률 : 총 272개 법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분석 틀을 활용하여 전개하여 보고자 하였다.

### (1) 법률

#### 【과태료 관련 법률 분석 틀】

- ✓ 법률상 규정내용에 따른 입법유형별 분류
- ✓ 부과금액
- ✓ 부과·징수 주체
- ✓ 위임 하위법령 체계

### (2) 하위법령

#### 【과태료 관련 하위법령 분석 틀】

- ✓ 일반기준
  - 일반기준 설정
  - 차수산정기간 설정
  - 적발일 기준 설정
  - 가중/감경 기준 설정
  - 가중/감경 특례 기준 설정
  - 2 이상의 위반행위 기준 설정
  - 2인 이상의 위반행위 기준 설정
- ✓ 개별기준
  - 차수부과 기준 설정
  - 개별기준상 법정 상한금액 대비 1차 부과금액 및 차수산정 비율

### 3. 실무담당자 설문조사 활용을 통한 의견 수렴 및 반영

위에서의 연구필요성에 근거, 종래 문헌 연구적 연구방법론의 한계를 탈피하여 제도 운영상 실증적 자료 입수 및 실무운영 적 측면에 있어서의 과태료제도 현황 파악 및 관련 입법체계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을 인식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과태료 실무가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 전문기관(한국갤럽)에 조사를 위탁·진행 하였다. 문항 구성은 관련 법령 적용상 느끼는 문제점 인식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하위법령상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설계하고자 하였다.(첨부 참조)

## 제2절 현행 과태료 관련 법령상 명확성원칙의 정립

### I. 법률 상 명확성의 원칙

입법의 원칙으로서 명확성의 원칙은 법규범의 예측가능성의 실현의 법리로서 등장한 것이라 할 수 있다.<sup>224)</sup><sup>225)</sup>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이란 입법자가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포섭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내용을 명확히 하여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실정법이 규율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의적으로 해석·적용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헌법원칙을 말한다.<sup>226)</sup> 우리 헌법재판소는 명확성 원칙에 대하여, “법의 명확성은 법률이 규율하고자 하는 사항을 명확한 용어로 규정함으로써 법규범의 수범자에게는 법이 규율하는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하여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행동기준을 제공하고, 법 집행자에게는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주어 차별적이거나 자의적인 법의 해석·집행을 방지하게 한다. 법의 명확성은 법의 형식성을 확보하고 유지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법률

224) 박영도, 입법학 입문, 한국법제연구원, 2008., 473면.

225) 입법기술의 적용원리의 구분에 관하여 상세히는 박영도, 입법학 입문, 한국법제연구원, 2008., 450면 이하 - 박영도 박사는 입법기술의 적용원리로서 크게 내용적인 측면과 형식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433면 이하에서 입법기술의 내용적 적용원리를 합헌성의 원리, 소관사항의 원리, 실효성의 원리로 구분하고 있으며, 450면 이하에서 입법기술의 형식적 적용원리로서, 체계성의 원리, 후법우선의 원리, 특별법우선의 원리, 명확성의 원리, 이해가능성의 원리) 설명하고 있다.

226) 이상경, 명확성의 원칙과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서울법학 제22권제3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448면.

불소급원칙과 함께 법치주의의 내용을 이루어 법치국가원리가 지향하는 이념인 법적 안정성을 지키는 중대한 역할을 한다.<sup>227)</sup>”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명확성의 원칙의 실무적 적용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사항은 과연 어느 경우에 해당 법 규정의 내용이 명확 내지 불명확한가에 대한 일반적 판단기준에 대한 검토일 것이다. 그러나 개별 법률상 규정내용에 대한 이러한 명확, -불명확성에 대한 판단은 각 개별 법률의 입법목적과 규율하고자 하는 영역의 다양함에 따라 그 검토기준을 일률적으로 정립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이다. 다만 명확성의 판단기준으로서 일반적으로 독일에서는 “일반인이 특별한 어려움이나 의문 없이 판단할 수 있는 정도” 또는 “국민이 그의 행위가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이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보통의 지성을 가진 자가 그 의미를 추량하도록 용구하고 또한 그 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달리할 정고로” 불명확한 것은 적법절차위반으로 무효라는 형태로 판시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일반인이 금지된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를 식별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sup>228)</sup> 종래 이와 같은 명확성원칙의 판단 기준설정에 있어 선행 연구 등은 우리 헌법재판소의 관련되는 다수의 판례를 통하여 특히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원칙으로 이해, 명확성의 판단기준을 설명하고 있다.<sup>229)</sup>

227) 헌재 1990.4.2. 89헌가113, 헌재 1992.4.28. 90헌바 27 ; (재인용) 이상경, 명확성의 원칙과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서울법학 제22권제3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448면-449면.

228) 박영도, 입법학 입문, 한국법제연구원, 2008., 473면, 각주 141번.

229) 대표적으로 박영도, 입법학 입문, 한국법제연구원, 2008., 476면 ~477면, 각주 144번 ② -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게끔 구성요건이 명확히 규정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입법권자가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의미의 서술적 개념에 의하여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어떤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는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반드시 배치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정형적이 되어 부단히 변화하는 다양한 생활관계를 제대로 규율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자의를 허용하지 않는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더라도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그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어느 정도 명확하여야 하는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각 구성요건의 특수성과 그러한 법적 규제의 원인이 된 여건이나 처벌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990.1.15. 89헌가103).”

생각건대 위에서와 같은 개념과 특성을 가진 명확성의 원칙은 본 연구와 관련하여 입법 시,

- “① 입법자가 의도하는 법률상 규정내용은 당장 그 규정내용에 근거한 행정작용이 경우에 따라 해당 수범자의 기본권상 침익·수익 또는 이의 변경을 야기하게 되는 바, 이에 대한 법규 적용 주체로서의 담당자와 대상 객체로서의 해당 관계인의 입장에서 보다 명확하게 이러한 행정작용이 어떠한 요건과 어떠한 기준 등에 의하여 어떠한 절차를 통하여 법제도화로서 발현되는 지에 대한 인식과 그 제도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예측 가능성을 제고함에 목적이 있으며(법률 상 규정내용의 인지 및 이해의 명확화 범주),
- ② 이를 위하여 입법자는 제도 운영에 있어 관계자(실무담당자 및 관계 국민)의 입장에서 제도 운영 전반에 걸친 보다 가독성이 제고된 내용을 제공하여 법률에서 제도 운영 근간을 뚜렷이 파악할 수 있고 행정입법 절차에 따른 하위법령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정(규정내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하위법령 상 규율밀도 설정 내용의 명확화 범주),
- ③ 관계자가 해당 제도 운영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예견하고 적용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규범화하도록 하는 주요 적용원리로서” 작용한다 할 것이다.

이는 비단 법률상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행정입법의 형태로 발현되는 하위법령의 규정 내용에도 영향을 미쳐, 그 규율밀도 설정에 있어서도 명확성의 원칙은 견지되어야 할 것이다.

## II. 행정입법 시 명확성 원칙의 적용

행정입법은 법률하위의 입법형식이면서 행정활동의 준칙을 정하는 것으로 일반 추상적 규정이다. 이와 같은 행정입법은 광의로는 법규명령, 행정규칙 뿐만 아니라 조례와 규칙 등 자치법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sup>230)</sup> 그리고 입법절차상 특징으로

230) 김용섭, “행정입법에 대한 법원의 사법통제를 둘러싼 논의”, 『행정법연구』, 제39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4, 61면.

서는 일반적인 법률과 달리 행정부가 복잡한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법률에 따라 제정하며, 주무부서의 발의로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 심의 후 총리,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를 받아 대통령이 결재하여 공포한다.<sup>231)</sup> 또한 행정입법에 있어 행정의 성격과 입법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재량인 ‘행정입법재량’은 의회의 ‘입법재량’과 구별되며, 행정청의 ‘행정재량’과도 구별된다. 먼저, 행정입법재량과 (의회)입법재량은 구조적으로 유사한 면도 있지만, 전자는 일정한 법률을 통하여 주어진 내용·목적·범위의 틀에서의 자유이지만, 후자는 그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 지침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민주적 정당성(demokratische Legitimation)의 척도에서의 자유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또한 통상적인 행정재량은 개별·구체적인 사안에서 부여된 판단의 자유로서 개별·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도 행정입법재량과 구분된다. 즉 전자는 법률의 적용(Gesetzesanwendung)이며, 후자는 법 정립(Rechtsetzung)이라는 차이가 있다<sup>232)</sup>

이러한 개념과 절차적 특이성을 가진 “행정입법은 민주주의·법치주의, 그리고 권력분립의 원리에 따라 입법자는 공동체의 중요한 결정을 행하기 위한 일반적·추상적 규범을 정립하지만, 하위 법규범의 정립권한은 행정기관에 부여하여 의회가 기술적이고 세세한 문제로부터는 부담을 덜고, 법정립의 전문성, 효율성, 탄력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것이 오늘날의 헌법적 요청”<sup>233)</sup>으로써 그 효용성이 인정되며 현행 입법제도상 일반화된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행정입법이 갖는 법원으로서의 우리 헌법 제75조의 규정내용은 하위법령의 내용과 규율의 밀도 설정에 있어 중요한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즉 우리 헌법 제75조에서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위임입

231) 송지훈/최정민, “행정입법에 대한 재고: 세월호 사고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제11호, 한국콘텐츠학회, 2015, 85면.

232) Ossenbühl, Rechtsverordnung, in: Isensee/Kirchhof(Hrsg.), Handbuch des Staat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d. 3, C.F.Müller, 2007, §103 Rn. 41.; (재인용) 김현준, 행정입법절차의 쟁점과 과제 - 독일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제17권제1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16, 335면~336면.

233) Voßkuhle/Wischmeyer, “Die Rechtsverordnung”, JuS 2015, 311.; (재인용) 김현준, 행정입법절차의 쟁점과 과제 - 독일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제17권제1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16., 333면.

법의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입법위임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도록 함으로써 그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sup>234)</sup>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 함은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sup>235)</sup>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례에서도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은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위임입법의 구체성, 명확성의 요구정도는 그 규율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특히 처벌법규나 조세법규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서는 구체성, 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어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일반적인 급부행정법규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는 반면에,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일 때에는 위임의 구체성, 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결정하고 있다(헌재결 1995.11.30. 91 헌바 1-2-3-4, 92헌바 17-27, 94헌바 .34-44-45-46, 95헌바 12-17 병합)<sup>236)</sup>

때문에 본 연구목적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법률로부터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하위법령에서는 합리적 제도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세분화 및 제한적 규범화는 허용의 여지가 있으나, 그 범위를 벗어나는 규정을 설정하는 것은 마땅히 지양되어야 한다. 아울러 본 연구의 대상인 과태료의 경우, 그 제도 연원에 있어 일반적 처벌법규(행정형벌)의 성질과 깊은 관련성이 있는 바, 법률 상 명확성의 요구가 강하게 요구되어짐은 물론이며, 이를 구체화하는 하위법령의 규정내용에 있어서도 일반적 급부행정법령에 비하여 보다 그 규정밀도를 제고하여 설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234) 헌재 1995. 7. 21. 자 94헌바125 결정; (재인용) 조재현, 의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 간호조무사 등에 관한 규칙을 중심으로, 『한국의료법학회지』, 23(2), 한국의료법학회, 2015., 100면.

235) 헌재 2014. 4. 24. 자 2013헌바110 결정; (재인용) 조재현, “의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 간호조무사 등에 관한 규칙을 중심으로”, 『한국의료법학회지』, 23(2), 한국의료법학회, 2015, 101면.

236) 박영도, 『입법학 입문』, 한국법제연구원, 2008, 각주 145, 477면.

이러한 의견과 관련하여 박영도 박사는, “행정형벌보다 제재정도가 약한 과태료의 경우 위임의 구체성·명확성 원칙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적용될 수 있으나, 금전적 제재의 성격이 있으므로 가능한 한 위임입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함을 선행연구를 통하여 제시한바 있다.<sup>237)</sup> 생각건대 이는 현행 과태료제도의 경우 여타 처벌법규와 관련, 제도 연원에 (행정의무위반에 대한 비 범죄화) 근거한 제도의 지속적 확대라는 입법 현황 및 특히 부과기준(부과금액)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처벌법규와 구분되어 이에 비하여 완화의 대상으로 설정하여 구분하기보다는 입법규정 내용에 있어 처벌법규의 그것에 준하여 규정되어짐이 보다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제3절 현행 과태료 관련 법령상 입법현황 검토

#### I. 소관부처별 법령 분석 틀 마련

##### 1. 법률

###### (1) 법률 규정내용에 따른 유형별 분류

현행 법률상 과태료에 관한 법률상 규정내용은, “과태료부과사유, 과태료부과금액, 과태료 부과-징수”를 기본 주요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에 따라 상이하게 규정되고 있으며 이는 크게 아래와 같이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 • 유형 1

① 의무위반근거 법조항에 따른 의무위반행위 및 과태료 부과 상한액

② 하위법령 위임 및 부과주체

237) 박영도, 행정형벌법규, 조세, 준조세, 영업활동, 급부행정분야 등 행정관계 법령의 위임입법 심사기준 및 포괄 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반 법령 발굴과 정비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0., 224면.

## 【규정 예시】

제00조(과태료) ① 제00조에 따른 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000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 유형 2

- ① 의무위반근거 법조항에 따른 의무위반행위 및 과태료 부과 상한액
- ② 의무위반행위 규정 상 단서조항 (부과면제: 특례) 또는 별도의 항목 설정을 통한 제도 운영상 특례 규정
- ③ 하위법령 위임 및 부과주체

## 【규정 예시】

제00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00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제00조제0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 4. 생략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000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 • 유형 3

- ① 의무위반근거 법조항에 따른 의무위반행위 및 과태료 부과 상한액
- ② 하위법령 위임 및 부과주체
- ③ 부과 및 절차 특례

## 【규정 예시】

제00조(과태료) ① 제00조제0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를 한 자에게는 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 과태료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00조제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정명령”은 “과태료 부과·징수”로 본다.

④ 000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면 이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 • 유형 4

## ① 부과금액별, 부과·징수주체를 별도의 조문으로 설정

## 【규정 예시】

제00조의0(과태료) 제00조의0제0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0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00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제00조의0, 제00조 및 제00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000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2) 부과금액, 부과·징수 주체, 위임하위법령

법률상 부과금액에 대해서는 의무위반행위의 성격에 따라 “신고의무위반”, “보고의무위반”, “유사명칭 사용금지”, “표시의무위반”, “작위의무위반”, “부작위의무위반”, “검사를 방해·기피·회피”, “허위자료 및 자료미제출”, “보존-공고 또는 게시의무 위반” 등 크게 9가지로 분류하여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법정 상한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sup>238)</sup> 과태료

238) 이러한 과태료부과 대상으로서의 의무위반행위의 분류와 각각의 특성에 관하여 상세히는, 강문수, 과태료·과징금 부과기준 정비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9., 20면 이하 참조

부과-징수에 있어서는 중앙부처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함이 일반적 형태라 하겠다. 체계적으로는 하위법령(대통령령)을 통하여 이를 구체화 하고 있다.

## 2. 소관부처별 하위법령(별표) 분석 틀

### (1) 일반기준

과태료 관련 하위법령 부과기준 【별표】를 통한 규정내용 있어 일반기준이란, 해당 법률상 과태료 제도 운용에 있어 공통되게 적용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해당 과태료 제도 운용을 위한 기본적용방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매우 중요한 규범형태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일반기준이 갖는 규범으로서의 가치는 이를 통하여 과태료 제도 운용의 근거법률이라 할 수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주요내용이 구체화 되어 진다는 것이다. 즉 일반기준에서는, 개별기준에서 차수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기 위한 차수기준 산정기간, 처분기준 적용시점, 가중/감경기준, 다수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적용기준 및 다수인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내용으로 설정되어 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기준 분석에 있어 주요 분석 틀로 작용되어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다.

- ① 일반기준 설정 여부 : 하위법령상 일반기준 설정 여부를 파악한다.
- ② 차수산정기간 설정 : 동일 부과기준 【별표】의 개별기준에서 과태료부과에 대한 차수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차수의 산정에 대한 기간을 년 단위로 설정하고 있다.

### 【규정 예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③ 적발일 기준 설정 : 차수산정기간의 설정과 연동하여 규정되는 규정으로써 위반행위 횟수의 실질적인 산정방법을 설정하고 있다.

**【규정 예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④ 가중/감경 기준 설정 : 일반기준의 주요내용 가운데 과태료 제도 운용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시 되는 사항으로서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서는 실무 담당자는 원 부과금액에 대하여 일정율 (1/2의 범주가 일반적)의 범위 내에서 그 금액을 감경내지 가중하여 산정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과태료의 산정) 행정청 및 법원은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질서위반행위의 동기·목적·방법·결과
2.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당사자의 태도와 정황
3. 질서위반행위자의 연령·재산상태·환경
4. 그 밖에 과태료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규정 예시】**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 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⑤ 가중/감경 특례 기준 설정 : 가중/감경규정과 연동하여 규정됨이 일반적이며 해당 의무위반행위가 가중/감경 적용기준에 포함되더라도 일정 사유에 따라 가중/감경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례적 규정을 설정하고 있다.

#### 【규정 예시】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없으며,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감경의 범위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 ⑥ 2 이상의 위반행위 적용 기준 설정 : 동일 의무위반자의 의무위반행위가 2이상의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할 경우에 대한 과태료 산정기준을 설정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①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다른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규정 예시】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⑦ 2인 이상의 위반행위 기준 설정 : 다수인의 의무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부과 산정기준을 설정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 ①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  
 ③ 신분에 의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가중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분의 효과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 (2) 개별기준

과태료 관련 하위법령 부과기준 【별표】를 통한 규정내용 있어 개별기준의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차수부과 기준 설정 : 차수부과기준 설정 여부를 파악한다.

- ② 개별기준상 법정상한액 대비 1차 부과금액 및 차수산정 비율

종래 과태료 등의 금전적 제재수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꾸준히 논의된 사항은 과연 의무위반행위와 부과금액 간의 현실성(규정 이후 상당 시간이 경과하여 물가상승을 등을 반영하지 못하여 제재로서의 실효성이 저하된 경우)과 의무위반행위의 법리적 성격구분에 맞게 부과금액이 설정되고 있는가에 대한 적정성의 검토와 그 접근방법이라 할 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제도의 제정내지 개정된 시점에 비중을 두어 정비방향을 잡고 이에 대한 부과금액의 상향여부를 중심으로 그 정비방안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 연구수행형태로써 그 방법론의 적용 타당성은 인정될 수 있다. 문제는 후자의 경우로써 과거, 앞서 열거된 과태료 부과대상으로써의 9가지 유형별 분류에 따라 동일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개별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법정 상한액의 편차를 조사하여 그 적정성을 논함이 일반적이

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방법론의 적용은 비록 동일 의무위반행위의 유형에 속한다 할지라도 그 구성요건과 법적 효력을 전혀 달리하는 규정내용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에서 그 설득력을 충분히 인정받기에는 부족하였다. 즉 일례로 신고의 경우 규정상 신고라 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그 법리적 성격이 확연히 달라, 구성요건과 법적 효력에 있어서는 허가에 준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난다는 점은 그 일례일 것이다. 또한 각 개별 법률에서 규정되는 다양한 행정영역의 특성 등이 법정 상한액으로 반영되었다 할 경우 표면적인 법정 상한액의 편차 또는 과소에 대한 비교만으로 그 적정성을 판단함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들을 한 유형에 획일적으로 포섭하여 통일적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앞에서 언급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주된 의무위반행위로서 9가지 유형 가운데 그 유형에 대한 법리적 성격과 이에 따른 구성요건 및 법적효력이 일치하여 그 세부적인 구분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유사명칭 사용금지”, “표시의무위반”, “검사를 방해-기피-회피”, “허위자료 및 자료미제출”, “보존-공고 또는 게시의무 위반” 등 5가지의 의무위반행위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후 이러한 동일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각 개별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법정 상한액이 아닌 실무상 실질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1차 부과금액을 대상으로 법정상한액 대비 하위법령상 1차 부과금액 비율 및 차수산정 비율을 조사-분석하여 그 형평성- 적정성에 대한 검토와 적정 범주를 설정하여 보고자 하였다.

즉 A라는 법률에서 a라는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법정상한액이 500만원인 경우 하위법령상 차수기준 설정 시 1차 부과금액(차수기준 미 설정시 단일부과금액)이 50만원인 경우, 법정상한액 대비 하위법령상 부과금액 비율은 10%로 설정되고 이러한 부과비율은 동일한 의무위반행위로서 a 를 규정하고 있는 B, C, D 등 다른 법률상 부과비율 간 형평성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차수산정 시 부과비율에 관한 조사는 현재 다양한 비율로 설정되고 있는 차수산정비율에 대한 가능한 범주내로의 포섭을 통한 통일적 비율을 모색해 보자는 설정 하에 전개해 보고자 한다.

## II. 소관부처별 법령 분석 현황

### 1. 국토교통부

#### (1) 법 률

##### 【분석틀 종합】

번호	법률	유형	부과금액	부과·징수 주체	위임 하위법령
1	2015세계물포럼지원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2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유형1	1000 500 50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대통령령
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유형1	500	국토교통부장관	대통령령
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유형1	200	국토교통부장관	대통령령
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유형3	500	시장·군수·구청 장	대통령령
6	건설기계관리법	유형1	300 100 50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대통령령
7	건설기술진흥법	유형1	1000 300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대통령령
8	건설산업기본법	유형4	2000 500 50	국토교통부장관	대통령령
9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유형1	1억원	허가권자	대통령령
10	건축법	유형1	200 100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	대통령령

번호	법률	유형	부과금액	부과-징수 주체	위임 하위법령
11	건축사법	유형1	100 50	국토교통부장관	대통령령
1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유형1	500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대통령령
13	골재채취법	유형1	500	국토교통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대통령령
14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유형1	500	국토교통부장관	대통령령
1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유형1	300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대통령령
16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유형1	2000 500	시도지사	대통령령
17	공공주택특별법	유형1	300	국토교통부장관	
18	공공토지의비축에관한법률	유형1	500	국토교통부장관	대통령령
19	공동주택관리법	유형1	2000 1000 500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대통령령
20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유형1	300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대통령령
2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유형1	200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대통령령
22	공인중개사법	유형1	500 100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대통령령
23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유형1	500	국토교통부장관	대통령령
24	공항시설법	유형1	500 200	국토교통부장관	대통령령

번호	법률	유형	부과금액	부과-징수 주체	위임 하위법령
25	교통안전공단법	유형1	500	국토교통부장관	
26	교통안전법	유형1	1000 500	국토교통부장관, 교통행정기관	대통령령
2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유형1	200 20	교통행정기관	대통령령
28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유형1	500	국토교통부장관	대통령령
29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유형1	1000 500 300	국토교통부장관 , 시·도지사	대통령령
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유형1	1000 500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 군수 특별시장·광역시 장·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대통령령
31	궤도운송법	유형1	200	시장·군수·구청 장 , 특별시장·광역시 장	대통령령
32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유형1	1억 1000	국토교통부장관, 시장·군수	대통령령
3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유형1	2000	국토교통부장관, 허가권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 장	대통령령
34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유형1	2000 500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대통령령
35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유형1	300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대통령령

번호	법률	유형	부과금액	부과-징수 주체	위임 하위법령
36	도로법	유형3	500 300 50	도로관리청	대통령령
37	도시개발법	유형1	1000 500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대통령령
3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유형1	1000 10	특별시장·광역시 장·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대통령령
3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유형1	1000 500 10 5	국토교통부장관 · 시장, 승인관청	대통령령
4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유형1	1000 500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대통령령
41	도시철도법		500 100 50		
42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유형1	1000	시장·군수·구청 장, 시·도지사	시·군·구 시·도의 조례
4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유형1	300 200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대통령령
44	물류정책기본법	유형1	200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대통령령

번호	법률	유형	부과금액	부과-징수 주체	위임 하위법령
4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유형1	1000 500 100	국토교통부장관이 나 시장·군수·구청장	대통령령
46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유형1	3000 1000 500	국토교통부장관	대통령령
4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유형3	3000 500 300 100	신고관청	대통령령
48	부동산투자회사법	유형1	1000 500	국토교통부장관	대통령령
49	사도법	유형1	300	시장·군수·구청장	대통령령
50	새만금사업추진및지원에관한 특별법	유형1	2000 1000	새만금청장 미래창조과학부장 관	대통령령
5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유형1	1억 1000 300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대통령령
5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유형3	1000 500 50 10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대통령령
53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유형1	200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대통령령
54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유형1	1000 10	국토교통부장관	대통령령
55	유료도로법		1000		

번호	법률	유형	부과금액	부과-징수 주체	위임 하위법령
56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유형1	500	국토교통부장관	
57	자동차관리법	유형1	1000 100 50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대통령령
5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유형1	2000 300 500	시장·군수· 구청장 국토교통부장관	대통령령
59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유형1	500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대통령령
60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유형1	재건축부담금 의 100분의 1  재건축부담금 의 100분의 2  재건축부담금 의 100분의 4  재건축부담금 의 100분의 8	국토교통부장관	대통령령
6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유형3	2000 1000 500 300 200 100	도지사,도교육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도조례
62	조경진흥법	유형1	200	국토교통부장관	대통령령
63	주차장법	유형1	50	시장 군수 구청장	대통령령
64	주택도시시기금법	유형1	1000	국토교통부장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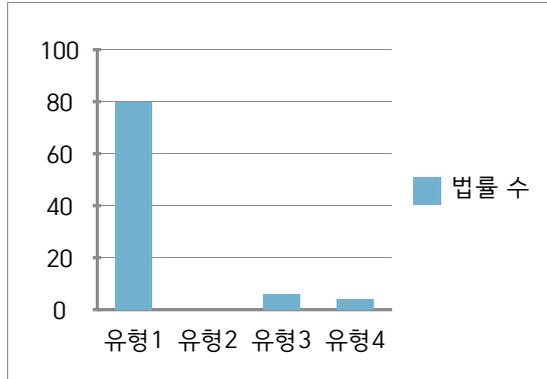
번호	법률	유형	부과금액	부과-징수 주체	위임 하위법령
65	주택법	유형1	2000 1000 500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대통령령
66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유형1	300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시장, 군수	대통령령
67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유형1	1000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대통령령
68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유형1	300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 지적소관청	대통령령
69	지하수법	유형4	500 300	시장 · 군수 · 구청장	대통령령
70	철도건설법	유형1	300	국토교통부장관	
71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유형1	1000	국토교통부장관	대통령령
72	철도사업법	유형1	1000 500 100 50	국토교통부장관	대통령령
7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유형1	1000	국토교통부장관	대통령령
74	철도안전법	유형1	1000 500 300 50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대통령령
75	친수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	유형1	300	국토교통부장관	
76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유형1	1000 100	국토교통부장관	대통령령

번호	법률	유형	부과금액	부과·징수 주체	위임 하위법령
77	택지개발촉진법	유형1	1000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대통령령
78	하천법	유형1	500 300 100	국토교통부장관 하천관리청 (제2항 중 제46조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관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대통령령
79	한국감정원법	유형1	500	국토교통부장관	
80	한국공항공사법	유형1	500	국토교통부장관	
81	한국도로공사법	유형1	500	국토교통부장관	
82	한국수자원공사법	유형1	100	국토교통부장관	
83	한국철도공사법	유형1	500	국토교통부장관	
84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유형1	500	국토교통부장관	
85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유형1	500	국토교통부장관	
86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유형1	500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대통령령
87	항공보안법	유형1	1000 500 100	국토교통부장관	대통령령
88	항공사업법	유형4	2000 500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 별자치도지사·시 장·군수·구청장	대통령령
89	항공안전기술원법	유형1	100	국토교통부장관	대통령령

번호	법률	유형	부과금액	부과-징수 주체	위임 하위법령
90	항공안전법	유형4	500 300 200 100 50 30	국토교통부장관	대통령령
91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유형1	1000	국토교통부장관	대통령령
92	해외건설 촉진법	유형1	300	국토교통부장관	대통령령
9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유형3	1000 500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대통령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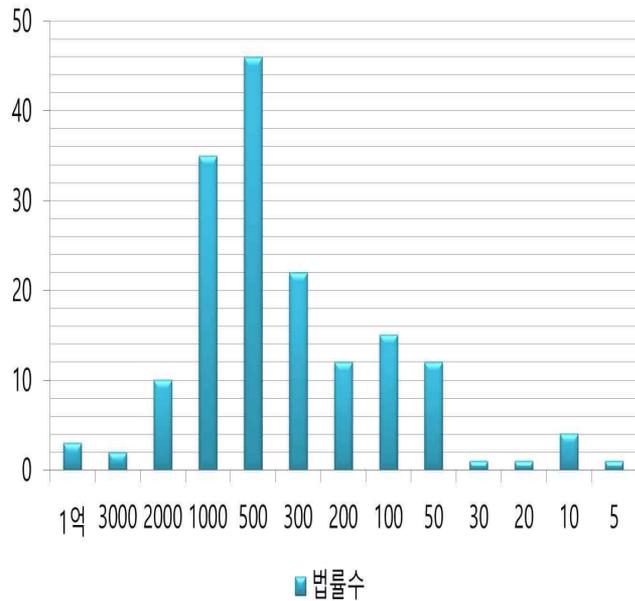
## 1) 입법유형별 분류

유형	법률 수
유형1	80
유형2	0
유형3	6
유형4	4



## 2) 금액별 분류

금액	법률 수
1억	3
3000	2
2000	10
1000	35
<b>500</b>	<b>46</b>
300	22
200	12
100	15
50	12
30	1
20	1
10	4
5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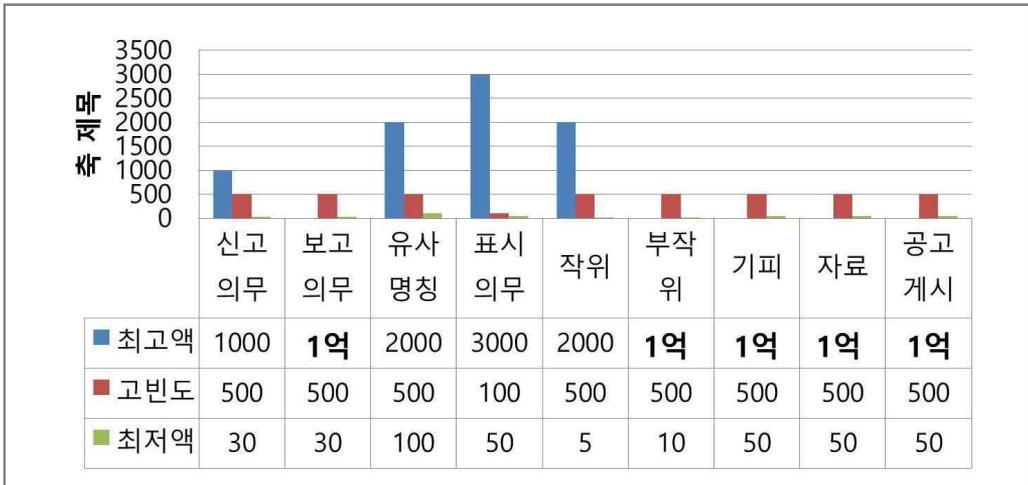


아울러 이를 세분화하여 그 의무위반행위별 분포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의무위반행위 유형	부과금액 (만원)	의무위반행위 개수
1. 신고의무위반	1000	17
	500	51
	300	21
	200	10
	100	17
	50	10
	30	1
2. 보고의무위반	1억	1
	1000	9
	500	30
	300	8
	200	1
	100	12
	50	4
	30	1
3. 유사명칭사용	2000	1
	1000	4
	<u>500</u>	5
	300	1
	100	2
4. 표시의무위반	3000	1
	2000	1
	500	5
	200	3
	100	7
	50	2
5. 작위의무위반	2000	8
	1000	44
	500	68
	300	18
	200	5

의무위반행위 유형	부과금액 (만원)	의무위반행위 개수
	100	7
	50	10
	10	1
	5	1
6. 부작위의무위반	1억	1
	3000	1
	2000	9
	1000	29
	500	33
	300	24
	200	13
	100	13
	50	7
	20	1
	10	3
7. 검사를 방해-기피-회피	1억	2
	1000	16
	500	23
	300	16
	200	4
	100	6
	50	1
8. 허위자료 및 자료미제출 또는 보존	1억	1
	3000	1
	2000	6
	1000	10
	500	41
	300	12
	200	4
	100	12
50	3	
9. 공고 또는 게시의무 위반	1억	1
	500	8

의무위반행위 유형	부과금액 (만원)	의무위반행위 개수
	200	2
	100	4
	50	1



### 3) 하위법령에로의 위임규정이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 소관 과태료관련 법률은 다수가 하위법령(대통령령)에 그 구체적 사항을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아래와 같은 법률 등은 별도의 위임규정을 두지 않고 법률상 규정에 한정하고 있다.

번호	법률	해당 조문 [각호 생략]
1	공공주택특별법	제60조(과태료) ①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2	교통안전공단법	제33조(과태료) ① 제29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번호	법률	해당 조문 [각호 생략]
3	도시철도법	제49조(과태료) ① 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철도사업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구분하여 경리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철도사업법」 제22조를 위반한 도시철도종사자 및 그가 소속된 도시철도운영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유료도로법	제28조(과태료)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합채산제를 시행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20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6	주택도시기금법	제36조(과태료) ① 제21조를 위반하여 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7	철도건설법	제2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8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9	한국감정원법	제21조(과태료) ① 제8조를 위반하여 한국감정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10	한국공항공사법	제21조(과태료) ① 제5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11	한국도로공사법	제21조(과태료) ① 제8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번호	법률	해당 조문 [각호 생략]
12	한국수자원 공사법	제41조(과태료) ① 제5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13	한국철도공사법	제20조(과태료) ① 제8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14	한국철도시설 공단법	제40조(과태료) ① 제36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15	한국토지주택 공사법	제29조(과태료) ① 제21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2) 하위법령

### 1) 일반기준

#### 【분석틀 종합】

번호	법령	구분						
		일반기준 유무	차수산 정기준	적발일 기준 유무	감경/가 중	감경/ 가중 특례	둘 이상의 위반 행위	2인 이상 참여
1	2015세계물포럼지원 특별법시행령	유	1년	유	유/유	유/유	무	무
2	간선급행버스체계의건설및 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	유	1년	유	유/유	유/유	유	무
3	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 관한법률시행령	유	1년	유	유/유	유/유	무	무
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 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유	1년	유	유/유	유/유	유	무

번호	법령	구분						
		일반기준 유무	차수산정기준	적발일 기준 유무	감경/가중	감경/가중 특례	둘 이상의 위반 행위	2인 이상 참여
5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유	1년	유	유/유	무/유	무	무
6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유	3년	유	유/유	유/유	무	무
7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유	1년	유	유/무	유/무	무	무
8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시행령	유	3년	유	유/유	무/무	유	무
9	건축법시행령	유	1년	유	유/유	유/유	유	무
10	건축사법시행령	유	1년	유	유/무	유/무	유	무
11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시행령	유	1년	유	유/유	유/유	무	무
12	골재채취법시행령	유	1년	유	유/유	무/유	무	무
13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유	5년	유	유/유	유/유	유	무
14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 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 관한특별법시행령	유	1년	유	유/유	유/유	무	무
15	공공토지의비축에관한 법률시행령	유	1년	유	유/유	유/유	유	무
16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유	1년	유	유/유	유/유	유	무
17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 법시행령	유	1년	유	유/유	유/유	무	무
18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 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유	무	무	유/유	유/유	무	무
19	공인중개사법시행령	유	무	무	유/유	무/유	무	무
20	공향소음방지및소음대책지 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유	1년	유	무/무	무/무	유	무
21	공항시설법시행령	유	1년	유	유/유	유/유	유	무
22	교통안전법시행령	무						
23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 법시행령	유	1년	유	유/유	무/유	무	무

번호	법령	구분						
		일반기준 유무	차수산정기준	적발일 기준 유무	감경/가중	감경/가중 특례	둘 이상의 위반 행위	2인 이상 참여
2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	유	1년	유	유/유	무/유	유	무
2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무						
26	궤도운송법시행령	무						
27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령	유	무	무	유/유	유/유	무	무
28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유	3년	유	유/유	유/유	무	무
29	택시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유	1년	유	유/유	유/유	무	무
30	도로법시행령	유	1년	유	유/무	무/무	무	무
31	도시개발법시행령	유	1년	유	유/유	유/유	유	무
32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무						
33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유	무	무	유/유	유/유	무	무
3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유	무	무	유/유	유/유	무	무
35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유	1년	유	유/유	유/유	무	무
36	물류정책기본법시행령	무						
37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시행령	유	1년	유	유/유	유/유	유	무
38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유	1년	유	유/무	무/무	무	무
39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령	유	무	무	유/유	무/유	무	무
40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	유	1년	유	유/무	무/무	무	무
41	사도법시행령	유	무	무	유/무	유/무	무	무

번호	법령	구분						
		일반기준 유무	차수산정기준	적발일 기준 유무	감경/가중	감경/가중 특례	둘 이상의 위반 행위	2인 이상 참여
42	수자원의조사계획및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	유	1년	유	유/무	유/무	유	무
43	스마트도시의조성및산업진흥등에관한법률시행령	유	1년	유	유/무	유/무	유	무
44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유	1년	유	유/유	유/유	유	무
4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유	1년	유	유/유	유/유	유	무
46	역세권의개발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무						
47	용산공원조성특별법시행령	무						
48	유료도로법시행령	유	3년	유	유/무	유/무	무	무
49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유	무	무	유/유	유/유	유	무
5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유	1년	유	유/유	유/유	무	무
51	장애인고령자등주거약자 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유	1년	유	유/유	유/유	무	무
52	조경진흥법시행령	유	1년	유	유/무	유/무	무	무
53	주차장법시행령	유	무	무	유/유	유/유	무	무
54	주택법시행령	유	1년	유	유/유	유/유	유	무
55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시행령	무						
56	지역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유	1년	유	유/유	유/유	유	무
57	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유	3년	유	유/유	유/유	무	무
58	지하수법시행령	유	1년	유	유/무	유/무	무	무
59	철도물류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유	무	무	유/무	유/무	무	무

번호	법령	구분						
		일반기준 유무	차수산정기준	적발일 기준 유무	감경/가중	감경/가중 특례	둘 이상의 위반 행위	2인 이상 참여
60	철도사업법시행령	유	무	무	유/유	유/유	무	무
61	철도안전법시행령	유	1년	유	유/유	유/유	유	무
62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시행령	유	2년/1년	유	유/유	유/유	유	무
63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유	1년	유	유/유	유/유	유	무
64	하천법시행령	유	1년	유	유/무	무/무	무	무
65	한옥등건축자산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유	2년	유	유/유	무/유	무	무
66	항공보안법시행령	유	1년	유	유/유	유/유	유	무
67	항공사업법시행령	유	1년	유	유/유	유/유	유	무
68	항공안전기술원법시행령	유	무	무	유/무	유/무	무	무
69	항공안전법시행령	유	1년	유	유/유	유/유	유	무
70	항공철도사고조사에관한법률시행령	유	1년	유	무/무	무/무	유	무
71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유	2년	유	유/유	유/유	유	무
7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유	1년	유	유/무	유/무	유	무

## ① 일반기준 설정

일반 기준	유	무
법률 수	64	8

## ② 차수산정기간 설정

차수 산정 기준	무	1년	2년	3년	5년
법률 수	12	44	3	5	0

## ③ 적발일 기준 설정

적발일 기준	유	무
법률 수	52	12

## ④ 가중/감경 기준 설정

감경/가중	유	무
(감경/가중) 법률 수	62/47	2/17

## ⑤ 가중/감경 특례 기준 설정

감경/가중 특례	유	무
(감경/가중 특례) 법률 수	50/46	14/18

## ⑥ 2 이상의 위반행위 적용 기준 설정

둘 이상의 위반 행위	
유	29
무	35

## ⑦ 2인 이상의 위반행위 기준 설정

설정 경우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2) 개별기준

## 【분석틀 종합】

번호	법령	구분				
		개별 기준 유무	차수 유무	과태료 부과금액(만원)	법정부과 금액 대비율(%) (차수있을 경우 1차)	차수별비율
1	2015세계물 포럼지원특 별법시행령	유	유	300 100 200 300		1:2:3
2	간선급행 버스체계의 건설및운영 에관한특별 법시행령	유	유	500 750 1000	50%	1:1.5:2
				10 15 20	1%	1:1.5:2
				50 50 50	10%	1:1:1
				25 50 50	5%	1:2:2
				50 75 100	10%	1:1.5:2
				20 20 20	40%	1:1:1
				10 10 10	20%	1:1:1
5 5 5	10%	1:1:1				
3	감정평가및 감정평가사 에관한법률 시행령	유	유	100 200 300	20%	1:2:3
				50 100 150	10%	1:2:3
				200 300 400	40%	1:1.5:2
			무	50	10%	
				100	20%	
				150	30%	
				200	40%	
300	60%					
500	100%					
4	개발제한 구역의지정 및관리에관 한특별조치 법시행령	유	유	100 200 400	20%	1:2:4
				50 100 200	10%	1:2:4
				30 60 120	6%	1:2:4

번호	법령	구분				
		개별 기준 유무	차수 유무	과태료 부과금액(만원)	법정부과 금액 대비율(% (차수있을 경우 1차)	차수별비율
5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	유	유	20 30 50	40%	1:1.5:2.5
				2 3 5	4%	1:1.5:2.5
				100 100 100	100%	1:1:1
				50 70 100	50%	1:1.4:2
				40 50 50	80%	1:1.25
				3 5 7	6%	1:1.6:2.3
				30 50 100	30%	1:1.6:3.3
				5 10 20	5%	1:2:4
				3 5 10	3%	1:1.6:3.3
				50 50 50	100%	1:1:1
				200 250 300	66%	1:1.25:1.5
				30 50 70	30%	1:1.6:2.3
				5 10 30	10%	1:2:6
300 300 300	100%	1:1:1				
6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유	유	50 50 50	16.6%	1:1:1
				150 225 300	50%	1:1.5:2
				10 10 10	3.3%	1:1:1
				30 30 30	10%	1:1:1
				200 200 200	66%	1:1:1
				100 100 100	33%	1:1:1
				300 300 300	100%	1:1:1
				100 150 200	33%	1:1.5:2
				200 250 300	66%	1:1.25:1.5
				250 375 500	25%	1:1.5:2
				500 500 500	50%	1:1:1
				750 750 750	75%	1:1:1
				1000 1000 1000	100%	1:1:1

번호	법령	구분				
		개별 기준 유무	차수 유무	과태료 부과금액(만원)	법정부과 금액 대비율(%) (차수있을 경우 1차)	차수별비율
7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유	유	30 50 50	60%	1:1.6:1.6
				100 100 100	20%	1:1:1
				300 500 500	60%	1:1.6:1.6
				150 150 150	30%	1:1:1
				50 50 50	10%	1:1:1
				100 200 400	20%	1:2:4
				300 300 300	60%	1:1:1
				30 30 30	60%	1:1:1
8	건축물의 분양에관한 법률시행령	유	유	2000 5000 10000	20%	1:2.5:5
				2000 5000 10000	20%	1:2.5:5
				1000 2000 5000	10%	1:2:5
9	건축법 시행령	유	유	50 100 200	25%	1:2:4
				10 20 50	10%	1:2:5
				30 60 100	30%	1:2:3.3
10	건축사법 시행령	유	유 -위반행위 나	50 70 100	50%	1:1.4:2
			무 -위반행위 가	10	20%	
				20	40%	
				30	60%	
				40	80%	
				50	100%	
			-위반행위 다	5	10%	
				10	2%	
				20	4%	
				30	6%	
			-위반행위 라	50	50%	
				100	100%	

번호	법령	구분				
		개별 기준 유무	차수 유무	과태료 부과금액(만원)	법정부과 금액 대비율(%) (차수있을 경우 1차)	차수별비율
11	건축서비스 산업진흥법 시행령	유	유	100 200 500	20%	1:2:5
12	골재채취법 시행령	유	유	50 150 500	10%	1:3:10
13	공간정보의 구축및관리 등에관한법 률시행령	유	유	25 50 100	8.3%	1:2:4
				37 75 150	12.3%	1:2.02:4
				75 150 300	25%	1:2:4
				50 100 200	16.6%	1:2:4
				6 12 25	2%	1:2:4.1
				7 15 30	2.3%	1:2.1:4.2
				10 20 40	3.3%	1:2:4
	무	50	16.6%			
		30	10%			
		25	8.3%			
14	공공기관지 방이전에따 른혁신도시 건설및지원 에관한특별 법시행령	유	유	100 200 300	20%	1:2:3
				200 500 1000	10%	1:2.5:5
15	공공토지의 비축에관한 법률시행령	유	유	100 300 500	20%	1:3:5
16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유	유 -위반행위 나/마/차/카/타/파/ 너/러	200 300 500	40%	1:1.5:2.5

번호	법령	구분				
		개별 기준 유무	차수 유무	과태료 부과금액(만원)	법정부과 금액 대비율(%) (차수있을 경우 1차)	차수별비율
			-위반행위 바 -위반행위 머 -위반행위 버/처/커/터/퍼 -위반행위 자/조 무 -위반행위 가 -위반행위 다/도 100 -위반행위 아/노 -위반행위 거 -위반행위 히 100 150 -위반행위 모/보 -위반행위 라/하/고/로/소 -위반행위 사	30 60 100 100 200 300 300 400 500 500 700 1000 200 50 100 300 200 50 100 150 150 1000 700	6% 20% 60% 50% 40% 10% 20% 60% 40% 10% 20% 30% 30% 100% 70%	1:2:3:3 1:2:3 1:1.3:1.6 1:1.4:2
17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유	유	100 200 300	33.3%	1:2:3
1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	무	100 200	50% 100%	
19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유	무	400 500	80% 100%	

번호	법령	구분				
		개별 기준 유무	차수 유무	과태료 부과금액(만원)	법정부과 금액 대비율(% (차수있을 경우 1차)	차수별비율
				20 30 50 300 200 30 50 20	4% 6% 10% 60% 40% 30% 50% 20%	
20	공항소음방 지및소음대 책지역지원 에관한법률 시행령	유	유	50 250 500 100 300 500	10% 20%	1:5:10 1:3:5
21	공항시설법 시행령	유	유	50 200 500 100 300 500 200 400 500 20 30 40 50 250 500 20 100 200	10% 20% 40% 10% 10% 10%	1:4:10 1:3:5 1:2:2.5 1:1.5:2 1:5:10 1:5:10
22	교통안전법 시행령	무	무	200 300 100 50 600 100	40% 60% 20% 10% 60% 10%	
2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 진법시행령	유	유	100 200	50%	1:2
			무	10	50%	

번호	법령	구분				
		개별 기준 유무	차수 유무	과태료 부과금액(만원)	법정부과 금액 대비율(% (차수있을 경우 1차)	차수별비율
24	국가통합교 통체계효율 화법시행령	유	유	500 700 1000	50%	1:1.4:2
				200 300 500	40%	1:1.5:2.5
				100 200 300	33%	1:2:3
				300 300 300	100%	1:1:1
25	국토의 계획및이용 에관한 법률시행령	무	무	800	80%	
				400	40%	
				300	30%	
				200	40%	
				300	60%	
26	궤도운송법 시행령	무	무	100	50%	
				150	75%	
27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유	무	50	2.5%	
				100	5%	
				200	10%	
				300	15%	
28	대중교통의 육성및이용 촉진에관한 법률시행령	유	유	400 800 1200	20%	1:2:3
				400 400 400	20%	1:1:1
				50 75 100	10%	1:1.5:2
				100 150 200	20%	1:1.5:2
29	댐건설및주 변지역지원 등에관한법 률시행령	유	유	100 150 200	33%	1:1.5:2
30	도로법 시행령	유	유	100 150 200	33%	1:1.5:2
				50 70 100	10%	
				80 120 160	16%	
				150 220 300	30%	
			무	50	100%	

번호	법령	구분				
		개별 기준 유무	차수 유무	과태료 부과금액(만원)	법정부과 금액 대비율(%) (차수있을 경우 1차)	차수별비율
				200 30 50 100	66% 10% 16.6% 33%	
31	도시개발법 시행령	유	유	200 400 600 100 200 300 300 600 1000 200 400 800 100 200 300 200 300 500 300 300 300 200 200 200 500 500 500	20% 10% 30% 20% 20% 40% 60% 40% 100%	1:2:3 1:2:3 1:2:3.3 1:2:4 1:2:3 1:1.5:2.5 1:1:1 1:1:1 1:1:1
32	도시공원및 녹지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무	무	800 5 7 3 10	80% 50% 70% 30% 100%	
33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시행령	유	무	500 1000 500 10	50% 100% 100% 100%	
34	도시및주거 환경정비법 시행령	유	무	50 100 150 200 300 400	10% 20% 30% 40% 60% 80%	

번호	법령	구분				
		개별 기준 유무	차수 유무	과태료 부과금액(만원)	법정부과 금액 대비율(%) (차수있을 경우 1차)	차수별비율
35	물류시설의 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	유	유	25 50 100	8.3%	1:2:4
				40 75 150	13.3%	1:1.87:3.7
				50 100 200	16.6%	1:2:4
				40 75 150	20%	1:1.87:3.7
				25 50 100	12.5%	1:2:4
				50 100 200	25%	1:2:4
36	물류정책기본법시행령	무	무	150	75%	
				200	100%	
37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시행령	유	유	500 700 1000	50%	1:1.4:2
				100 200 300	20%	1:2:3
				200 400 500	40%	1:2:2.5
				500 500 500	100%	1:1:1
				50 70 100	50%	1:1.4:2
38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유	유			
			-위반행위 나	500 1000 2000	16.6%	1:2:4
			-위반행위 사 1)	100 200 400	10%	1:2:4
			-위반행위 아 1)	1000 1500 2000	33%	1:1.5:2
			-위반행위 아 2)	500 700 1000	16.6%	1:1.4:2
			-위반행위 자/차	200 500 1000		1:2.5:5
			-위반행위 카 1)	100 250 500		1:2.5:5
			무			
			-위반행위 가	25	5%	
			-위반행위 다	700	70%	
			-위반행위 라	100	20%	
			-위반행위 마	50	10%	
			-위반행위 바	25	2.5%	
	100	10%				
	400	40%				
-위반행위 사2)3)	800	80%				

번호	법령	구분				
		개별 기준 유무	차수 유무	과태료 부과금액(만원)	법정부과 금액 대비율(% (차수있을 경우 1차)	차수별비율
39	부동산거래 신고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유	무	500	16.6%	
				700	23.3%	
				900	30%	
				1100	36.6%	
				1300	43.3%	
				1500	50%	
				1700	56.6%	
				1900	63.3%	
				2100	70%	
				2300	76.6%	
				2500	83.3%	
				2700	90%	
				3000	100%	
				10	2%	
				25	5%	
				50	10%	
				200	40%	
				300	60%	
				400	80%	
				500	100%	
				10	3.3%	
				25	8.3%	
				50	16.6%	
				200	66%	
300	100%					
5	5%					
10	10%					
15	15%					
30	30%					

번호	법령	구분				
		개별 기준 유무	차수 유무	과태료 부과금액(만원)	법정부과 금액 대비율(% (차수있을 경우 1차)	차수별비율
				45 50 70 40 60 80 100	45% 50% 70% 40% 60% 80% 100%	
40	부동산투자 회사법 시행령	유	유	600 800 1000 400 600 1000 300 400 500 200 300 500	60% 40% 60% 40%	
41	사도법 시행령	유	무	300 50	100% 16.6%	
42	수자원의조 사계획및관 리에관한법 률시행령	유	유	300 400 500 30 40 60 50 60 80 60 70 100		
43	스마트도시 의조성및산 업진흥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유	유	200 300 500		1:1.5:2.5
4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 시행령	유	유 -위반행위 하 -위반행위 거	500 700 1000 300 500 1000	50% 30%	
			무	2000 4000 100	20% 40% 33%	

번호	법령	구분				
		개별 기준 유무	차수 유무	과태료 부과금액(만원)	법정부과 금액 대비율(% (차수있을 경우 1차)	차수별비율
				200 300	66% 100%	
4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유	유	500 750 1000 500 1000 1000 5 10 10 10 15 20 50 75 100 20 30 50 50 50 50 100 150 200 200 300 500 500 500 500 20 30 50 20 20 20 10 15 20 10 10 10 50 50 50	50% 50% 1% 2% 10% 4% 10% 20% 40% 100% 40% 40% 20% 20% 100%	
46	역세권의개 발및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무	무	200 100 50	100% 50% 25%	
47	용산공원 조성특별법 시행령	무	무	600 1000 10 7 5	60% 100% 100% 70% 50%	
48	유료도로법 시행령	유	유	500 700 1000	50%	

번호	법령	구분				
		개별 기준 유무	차수 유무	과태료 부과금액(만원)	법정부과 금액 대비율(%) (차수있을 경우 1차)	차수별비율
49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유	무	500	50%	
				100	100%	
				70	70%	
				50	50%	
				35	35%	
				30	30%	
				10	10%	
				5	5%	
				3	3%	
				1	1%	
				50	100%	
				30	60%	
				20	40%	
				10	20%	
50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 시행령	유	유 -위반행위 하	90 120 150		
			무	6천원	0.2%	
				1	0.33%	
				3	1%	
				3천원	0.1%	
				5천원	0.16%	
				200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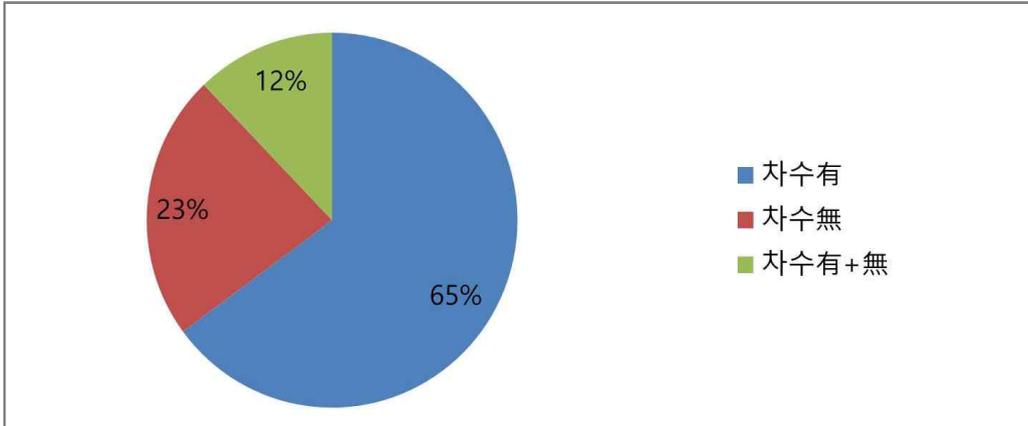
번호	법령	구분				
		개별 기준 유무	차수 유무	과태료 부과금액(만원)	법정부과 금액 대비율(% (차수있을 경우 1차)	차수별비율
51	장애인고령 자등주거약 차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유	유	100 200 300	20%	1:2:3
52	조경진흥법 시행령	유	유	30 70 150 50 100 200	15% 25%	
53	주차장법 시행령	유	무	50 20 10	100% 40% 20%	
54	주택법 시행령	유	유	1000 1500 2000 100 200 300	50% 20%	1:1.5:2 1:2:3
			무	1000 1000 200 400 500	100% 50% 40% 80% 100%	
55	지속가능교 통물류발전 법시행령	무	무	50	16.6%	
56	지역개발및 지원에관한 법률시행령	유	유	200 400 600	20%	1:2:3
				200 400 800	20%	1:2:4
57	지적재조사 에관한특별 법시행령	유	유	50 100 200	16.6%	
				100 200 300	33%	
				30 50 100	10%	
58	지하수법 시행령	유	유	200 300 400	40%	
				100 200 300	20%	

번호	법령	구분				
		개별 기준 유무	차수 유무	과태료 부과금액(만원)	법정부과 금액 대비율(%) (차수있을 경우 1차)	차수별비율
				50 100 150 30 50 70 100 200 300 50 100 200 200 300 400 10 20 30 100 200 400 500 500 500	10% 6% 33% 16.6% 66% 3.3% 33% 100%	
59	철도물류산 업의육성및 지원에관한 법률시행령	유	무	200	20%	
60	철도사업법 시행령	유	무	500 300 300 200 100 100 50 50	50% 30% 60% 40% 20% 100% 50% 100%	
61	철도안전법 시행령	유	유	125 250 500 75 150 300 25 50 100 2.5 5 10 5 5 5 50 100 200 62.5 125 250 30 70 150 100 200 300 12.5 25 50	12.5% 7.5% 2.5% 0.25% 0.5% 5% 12.5% 10% 33% 25%	

번호	법령	구분				
		개별 기준 유무	차수 유무	과태료 부과금액(만원)	법정부과 금액 대비율(% (차수있을 경우 1차)	차수별비율
62	택시운송 사업의발전 에관한 법률시행령	유	유	500 1000 1000	50%	
				20 40 60	20%	
				25 50 50	25%	
				50 75 100	50%	
63	택지개발 촉진법 시행령	유	유	100 200 300	10%	1:2:3
				200 400 800	20%	1:2:4
64	하천법 시행령	유	유	30 40 60	30%	
				30 40 50	30%	
				50 60 80	50%	
				300 400 500	60%	
				100 200 300	33%	
65	한옥등건축 자산의진흥 에관한법률 시행령	유	유	50 100 200	10%	
				100 300 500	20%	
				500 500 500	100%	
66	항공보안법 시행령	유	유	500 750 1000	50%	
				500 500 500	50%	
				1000 1000 1000	100%	
				50 250 500	10%	
				100 250 500	20%	
				50 75 100	50%	
67	항공사업법 시행령	유	유	50 250 500	10%	
				100 250 500	20%	
				200 350 500	40%	
				1000 1500 2000	50%	
				300 400 500	60%	
				20 50 100	4%	
				30 50 100	6%	

번호	법령	구분				
		개별 기준 유무	차수 유무	과태료 부과금액(만원)	법정부과 금액 대비율(% (차수있을 경우 1차)	차수별비율
				100 300 500 150 200 300	20% 30%	
68	항공안전 기술원법 시행령	유	무	100	100%	
69	항공안전법 시행령	유	유	50 250 500 250 400 500 100 250 500 30 150 300 20 100 200 30 50 100 50 100 200 20 100 200 10 50 100 5 25 50 5 15 30	10% 50% 20% 10% 10% 30% 50% 20% 10% 10% 16.6%	
70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법률 시행령	유	유	125 250 500 25 50 100 250 500 1000	12.5% 2.5% 25%	1:2:4 1:2:4 1:2;4
71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유	유	200 300 500 200 200 200 100 100 100 100 150 200	66% 66% 33% 33%	1:1.5:2.5 1:1:1 1:1:1 1:1.5:2
7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유	무	50	10%	

## ① 차수부과 기준 설정



※ 차수 유 + 무는 한 기준내에서 혼용되어 규정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 ② 개별기준상 법정상한금액 대비 1차 부과금액 및 차수산정 비율

## a. 유사명칭 사용금지

번호	법률명	부과금액		법정상한액 대비 별표 상 부과금액 비율(%)	차수 산정 시 부과 비율
		법률상 법정 상한액	하위법령 별표 상 1차 부과금액		
1	2015세계물포럼지원특별법	300	300 100	100% 33%	- 1:2:3
2	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	500	500	100%	
3	건축사법	100	50	50%	1:1.4:2
4	공공토지의비축에관한법률	500	100	20%	1:3:5
5	공동주택관리법	1000	1000	100%	
6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2000	100	5%	
7	부동산투자회사법	1000	600	60%	1:1.3:1.6
8	항공안전기술원법	100	100	100%	

## b. 표시의무위반

번호	법률명	부과금액		법정상한액 대비 별표 상 부과금액 비율(%)	차수산정 시 부과 비율
		법률상 법정 상한액	하위법령 별표 상 1차 부과금액		
1	간선급행버스체계의건설및운영에 관한특별법	500	10	2%	1:1.5:2
2	공인중개사법	100	50	50%	
3	공항시설법	500	50	10%	1:5:10
4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200	100	50%	1:2
5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2000	50 100	2.5% 5%	
6	물류정책기본법	200	200	100%	
7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 법률	3000	500	16.6%	1:2:4
8	스마트도시의조성및산업진흥등에 관한법률	500	200	40%	1:1.5:2.5
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500	10	2%	1:1.5:2
10	자동차관리법	100	30	30%	
		50	10	20%	
11	주차장법	50	50	100%	
			10	20%	
12	철도안전법	1000	125	12.5%	1:2:4
13	한옥등건축자산의진흥에관한법률	500	50	10%	1:2:4
14	항공안전법	100	10	10%	1:5:10

## c. 검사를 방해·기피·회피

번호	법률명	부과금액		법정상한액 대비 별표 상 부과금액 비율(%)	차수 산정 시 부과 비율
		법률상 법정 상한액	하위법령 별표 상 1차 부과금액		
1	간선급행버스체계의건설및운영에 관한특별법	500	50	10%	1:1.4:2

번호	법률명	부과금액		법정상한액 대비 별표 상 부과금액 비율(%)	차수 산정 시 부과 비율
		법률상 법정 상한액	하위법령 별표 상 1차 부과금액		
2	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	500	200	40%	1:1.5:2
3	건설기계관리법	300	300	100%	1:1:1
4	건설산업기본법	500	150	30%	1:2:3.3
5	건축법	200	50	25%	1:2:4
6	건축사법	100	50 100	50% 100%	
7	골재채취법	500	50	10%	1:3:10
8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300	25	8.3%	1:2:4
9	공동주택관리법	500	300	60%	1:1.3:1.6
10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300	100	33%	1:2:3
1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 상에관한법률	200	200	100%	
12	공인중개사법	500	200	40%	
13	공항소음방지및소음대책지역지원 에관한법률	500	100	20%	1:3:5
14	교통안전법	500	300	60%	
15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200	100	50%	1:2
1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300	300	100%	1:1:1
1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1000	300	30%	
18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 법률	500	100	20%	1:1.5:2
19	도시개발법	1000	200 200	20%	1:2:3 1:2:4
20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	300	50	16.6%	1:2:4
21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500	100	20%	1:2:3
22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 법률	1000	800 200	80% 20%	- 1:2.5:10
23	부동산투자회사법	1000	600	60%	1:1.3:1.6
24	수자원의조사계획및관리에관한법률	100	30	30%	1:1.3:2
25	스마트도시의조성및산업진흥등에 관한법률	500	200	40%	1:1.5:2.5

번호	법률명	부과금액		법정상한액 대비 별표 상 부과금액 비율(%)	차수 산정 시 부과 비율
		법률상 법정 상한액	하위법령 별표 상 1차 부과금액		
26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300	300	100%	
2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500	200	40%	1:1.5:2.5
28	자동차관리법	100	100	100%	
2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00	200	66%	
30	장애인고령자등주거약자지원에 관한법률	500	100	20%	1:2:3
31	조경진흥법	200	50	25%	1:2:4
32	주차장법	50	50	100%	
33	지역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1000	200	20%	1:2:3
			200	20%	1:2:4
34	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	300	30	10%	1:1.6:3.3
35	지하수법	500	200	40%	1:1.5:2
36	철도사업법	500	300	60%	
37	철도안전법	1000	125	12.5%	1:2:4
38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100	50	50%	1:1.5:2
39	택지개발촉진법	1000	200	20%	1:2:4
40	하천법	100	50	50%	1:1.2:1.6
41	항공철도사고조사에관한법률	1000	250	25%	1:2:4
4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500	100	20%	

#### d. 허위자료 및 자료미제출

번호	법률명	부과금액		법정상한액 대비 별표 상 부과금액 비율(%)	차수 산정 시 부과 비율
		법률상 법정 상한액	하위법령 별표 상 1차 부과금액		
1	간선급행버스체계의건설및운영에 관한특별법	500	25	5%	1:2:2
2	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	500	200	40%	1:1.5:2
3	건설기계관리법	100	100	100%	1:1:1

번호	법률명	부과금액		법정상한액 대비 별표 상 부과금액 비율(%)	차수 산정 시 부과 비율
		법률상 법정 상한액	하위법령 별표 상 1차 부과금액		
4	건설기술진흥법	1000	500	50%	-
			750	75%	-
			1000	100%	-
		300	150	50%	1:1.5:2
5	건축법	100	30	30%	1:2:3.3
6	골재채취법	500	50	10%	1:3:10
7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300	25	8.3%	1:2:4
8	공동주택관리법	1000	1000	100%	-
		500	200	40%	1:1.5:2.5
9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 상에관한법률	200	200	100%	
10	공인중개사법	500	200	40%	
		100	30	30%	
11	공항소음방지및소음대책지역지원 에관한법률	500	50	10%	1:5:10
12	교통안전법	1000	600	60%	
		500	100	20%	
13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200	100	50%	1:2
1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500	200	40%	1:1.5:2.5
		300	300	100%	1:1:1
1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500	300	60%	
16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2000	100	5%	
17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 법률	2000	400	20%	1:2:3
		500	50	10%	1:1.5:2
18	도로법	300	200	66%	
19	도시개발법	500	100	20%	1:2:3
20	도시교통정비촉진법	1000	500	50%	
		500	500	100%	
2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500	100	20%	
			200	40%	

번호	법률명	부과금액		법정상한액 대비 별표 상 부과금액 비율(%)	차수 산정 시 부과 비율
		법률상 법정 상한액	하위법령 별표 상 1차 부과금액		
			300	60%	
			400	80%	
22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	300	40	13.3%	1:1.875:3.75
23	물류정책기본법	200	200	100%	
24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500	100	20%	1:2:3
25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 법률	1000	100 1000	10% 100%	1:2.5:5 -
26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500	500	100%	
27	부동산투자회사법	1000 500	600 200	60% 40%	1:1.3:1.6 1:1.5:2.5
28	스마트도시의조성및산업진흥등에 관한법률	500	200	40%	1:1.5:2.5
29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300	300	100%	
3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500	200	40%	1:1.5:2.5
3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00	200	66%	
32	지하수법	300	50	16.6%	1:2:4
33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100	50	50%	1:1.5:2
34	택지개발촉진법	1000	100	10%	1:2:3
35	하천법	100	30	30%	1:1.3:1.6
36	항공보안법	500	100	20%	1:2.5:5
37	항공사업법	500	50 100	10% 20%	1:5:10 1:2.5:5
38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500	50	10%	

## e. 공고 또는 게시의무위반

번호	법률명	부과금액		법정상한액 대비 별표 상 부과금액 비율(%)	차수 산정 시 부과 비율
		법률상 법정 상한액	하위법령 별표 상 1차 부과금액		
1	건설기계관리법	50	20	40%	1:1.5:2.5

번호	법률명	부과금액		법정상한액 대비 별표 상 부과금액 비율(%)	차수 산정 시 부과 비율
		법률상 법정 상한액	하위법령 별표 상 1차 부과금액		
2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1억	2000 1000	20% 10%	1:2.5:5 1:2:5
3	건축법	200	50	25%	1:2:4
4	공동주택관리법	500	200	40%	1:1.5:2.5
5	공인중개사법	100	50	50%	
6	부동산투자회사법	500	200	40%	1:1.5:2.5
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50	10	20%	1:1.5:2
8	항공사업법	500	50 100	10% 20%	1:5:10 1:3:5

## 2. 행정안전부

### (1) 법률

【분석틀 종합】

번호	법률	유형	부과금액	부과-징수 주체	위임 하위법령
1	개인정보보호법	유형3	5000 3000 1000	행정안전부 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통령령
2	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유형1	500	행정안전부 장관	
3	급경사지재해예방에관한법률	유형1	200	시장·군수·구청장	대통령령
4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유형1	500	등록청	대통령령
5	민방위기본법	유형2	30	시장·군수·구청장	대통령령
6	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법률	유형1	10	특별시장 등	대통령령
7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유형4	(표준세율-20/1000)*5	시장 등	행정안전부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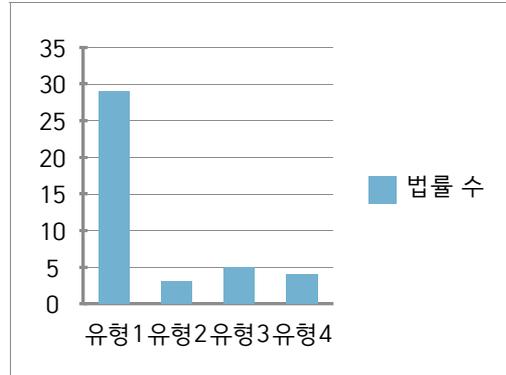
번호	법률	유형	부과금액	부과-징수 주체	위임 하위법령
8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유형2	500 300	행정안전부 장관, 시·도지사	대통령령
9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유형1	500	관리감독기관의 장	대통령령
10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 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유형2	500 100	시장 등 또는 시·도지사	대통령령
11	유선및도선사업법	유형1	300	관할관청	대통령령
12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유형1	200 300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2 행정기관의 장	대통령령
13	재해구호법	유형1	500	행정안전부 장관, 구호기관	대통령령
14	저수지댐의안전관리및재해 예방에관한법률	유형3	1000 300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대통령령
15	전자정부법	유형1	3000	행정안전부장관	
16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유형1	200	사업승인권자	
17	지방공기업법	유형1	200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령
18	지방세기본법	유형1	500	지방자치단체의 장	대통령령
19	행정사법	유형1	500 100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등	대통령령
20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유형1	200	소방청장 등 행정기관의 장	대통령령
21	경비업법	유형1	3000 500	지방경찰청장, 경찰관서장	대통령령
2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유형1	100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	
2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유형1	200 100 50	시장·군수·구청장	
2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유형1	300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대통령령

번호	법률	유형	부과금액	부과-징수 주체	위임 하위법령
25	도로명주소법	유형1	50	시장 등	
26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유형1	100	주무부장관	
27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유형1	100 50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대통령령
28	도로교통법	유형4	500 20 20	지방경찰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시장등, 교육감	대통령령
29	소방기본법	유형4	200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대통령령 조례
30	소방시설공사업법	유형1	200	관할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대통령령
3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유형1	500 200	경찰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대통령령
32	온천법	유형1	200	시장·군수	
33	위험물안전관리법	유형3	200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대통령령
34	자연재해대책법	유형1	500 300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대통령령
3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유형3	2000 1000 500 300 200 100	도지사, 도 교육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도 조례
36	주민등록법	유형1	1000 50 10 5	시장·군수, 구청장	

번호	법률	유형	부과금액	부과·징수 주체	위임 하위법령
37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유형3	300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대통령령
38	청원경찰법	유형1	500	지방경찰청장	대통령령
39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유형4	500 300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대통령령
40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유형1	300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대통령령
41	풍수해보험법	유형1	1000 500 500	행정안전부장관, 금융위원회	대통령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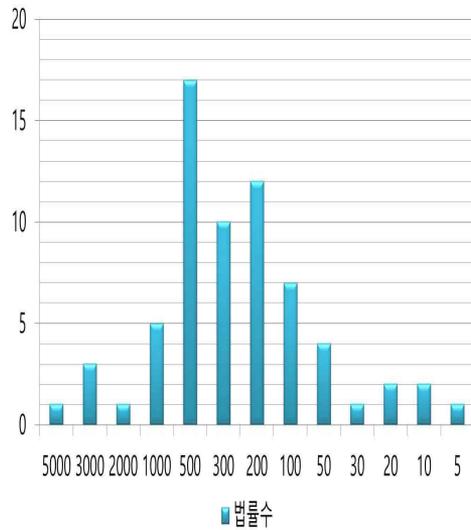
## 1) 입법유형별 분류

유형	법률 수
유형1	29
유형2	3
유형3	5
유형4	4



## 2) 금액별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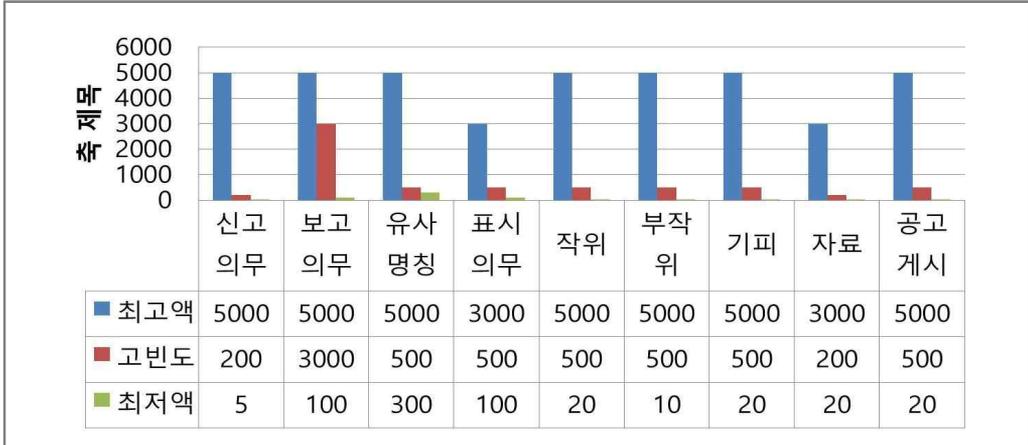
금액	법률 수
5000	1
3000	3
2000	1
1000	5
500	17
300	10
200	12
100	7
50	4
30	1
20	2
10	2
5	1



아울러 이를 세분화하여 그 의무위반행위별 분포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의무위반행위 유형	부과금액 (만원)	의무위반행위 개수
1. 신고의무위반	5000	3
	3000	2
	1000	1
	500	6
	300	6
	200	15
	100	3
	50	4
	30	1
	10	1
	5	1
2. 보고의무위반	5000	1
	3000	5
	1000	2
	500	3
	300	2
	200	2
	100	1
3. 유사명칭사용	500	4
	300	1
4. 표시의무위반	3000	1
	500	3
	100	1
5. 작위의무위반	5000	1
	3000	3
	2000	2
	1000	10
	500	25
	300	22
	200	18
	100	6
	30	2
	20	7
6. 부작위의무위반	5000	2

의무위반행위 유형	부과금액 (만원)	의무위반행위 개수
	3000	3
	2000	1
	1000	2
	500	10
	300	9
	200	7
	100	3
	50	1
	30	1
	10	1
7. 검사를 방해-기피-회피	5000	1
	1000	1
	500	9
	300	3
	200	2
	100	4
	50	1
	20	1
8. 허위자료 및 자료미제출 또는 보존	3000	7
	1000	3
	500	7
	300	4
	200	10
	100	1
	50	1
	20	1
9. 공고 또는 게시의무 위반	5000	2
	3000	2
	1000	1
	500	3
	300	2
	200	1
	20	1



### 3) 하위법령에로의 위임규정이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 소관 과태료관련 법률은 다수가 하위법령(대통령령)에 그 구체적 사항을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아래와 같은 법률 등은 별도의 위임규정을 두지 않고 법률상 규정에 한정하고 있다.

번호	법률	해당 조문 [각호 생략]
1	공공데이터의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0조(과태료) ①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2	전자정부법	제78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3	접경지역지원 특별법	제31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사업승인권자가 부과·징수한다.
4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번호	법률	해당 조문 [각호 생략]
5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과태료)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4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6	도로명주소법	제25조 (과태료) ① 제16조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재교부받고 부착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등이 부과·징수한다.
7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33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8	온천법	제37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한다.
9	주민등록법	제40조 (과태료) ① 제7조의4제1항의 입증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2항·제3항 및 제2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 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제1항 또는 제2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과태료는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2) 하위법령

## 1) 일반기준

## 【분석틀 종합】

번호	법령	구분						
		일반 기준 유무	차수산 정기준	적발일 기준 유무	감경/가중	감경/가중 특례	둘 이상의 위반 행위	2인 이상 참여
1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유	3년	유	유/유	유/유	무	무
2	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	유	3년	유	유/무	유/무	무	무
3	급경사지재해예방에관한법률시행령	유	1년	유	유/무	무/무	무	무
4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	무						
5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유	무	무	유/유	유/유	무	무
6	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법률시행령	무						
7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의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	무						
8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시행령	유	1년	유	유/유	유/유	무	무
9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시행령	유	2년	유	유/유	유/유	무	무
10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무						
11	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령	유	1년	유	유/유	유/유	무	무
12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유	3년	유	유/유	유/유	무	무
13	재해구호법시행령	유	1년	유	유/유	유/유	무	무
14	저수지댐의안전관리및재해예방에관한법률시행령	무						

번호	법령	구분						
		일반 기준 유무	차수산정기준	적발일 기준 유무	감경/가중	감경/가중 특례	둘 이상의 위반 행위	2인 이상 참여
15	전자정부법시행령	유	1년	유	유/유	무/유	무	무
16	접경지역지원특별법시행령	유	1년	유	유/유	유/유	무	무
17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유	1년	유	유/유	유/유	무	무
18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유	1년	유	유/유	유/유	유	무
19	행정사법시행령	유	1년	유	유/유	유/유	무	무

① 일반기준 설정

일반 기준	유	무
법률 수	14	5

② 차수산정기간 설정

차수 산정 기준	무	1년	2년	3년
법률 수	1	9	1	3

③ 적발일 기준 설정

적발일 기준	유	무
법률 수	13	1

④ 가중/감경 기준 설정

감경/가중	유	무
(감경/가중) 법률 수	14/12	0/2

## ⑤ 가중/감경 특례 기준 설정

감경/가중	유	무
(감경/가중 특례) 법률 수	12/12	2/2

## ⑥ 2 이상의 위반행위 적용 기준 설정

둘 이상의 위반 행위	
유	1
무	13

## ⑦ 2인 이상의 위반행위 기준 설정

설정되어 진 경우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2) 개별기준

## 【분석틀 종합】

번호	법령	구분				
		개별 기준 유무	차수 유무	과태료 부과금액(만원)	법정부과금액 대비율(%) (차수있을 경우 1차)	차수별 비율
1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유	유	100 200 400 200 400 800 600 1200 2400 1000 2000 4000	10% 20% 60% 100%	1:2:4
			무 - 위반행위 버.	500	50%	
2	공공데이터의제공 및이용활성화에관 한법률시행령	유	유	200 300 500	40%	1:1.5:2.5

번호	법령	구분					
		개별 기준 유무	차수 유무	과태료 부과금액(만원)	법정부과금액 대비율(%) (차수있을 경우 1차)	차수별 비율	
3	급경사지재해예방에관한법률시행령	유	무	50 100 200	25% 50% 100%		
4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	무	무	300 400 500	60% 80% 100%		
5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유	무	5 10 15 20 25 30	16% 33% 50% 66% 83% 100%		
6	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법률시행령	무	무	3 5	30% 50%		
7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의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	무	무		5% 15% 20% 25% 30%		
8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시행령	유	유	- 위반행위 가. - 위반행위 나. 200 200 200 400 400 400 - 위반행위 다. - 위반행위 라. - 위반행위 마. - 위반행위 바.	50 100 100 100 100 100 40% 80% 50 100 100 50 100 200 10 10 10 100 200 300	10% 20% 10% 10% 3% 33%	1:2:2 1:1:1 1:2:2 1:1:1 1:2:3 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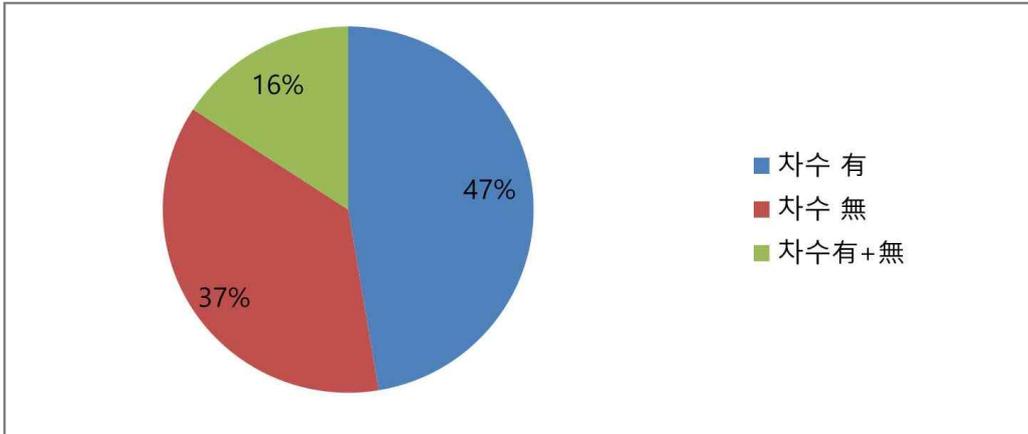
번호	법령	구분				
		개별 기준 유무	차수 유무	과태료 부과금액(만원)	법정부과금액 대비율(%) (차수있을 경우 1차)	차수별 비율
			- 위반행위 사. - 위반행위 아. - 위반행위 자. - 위반행위 차/카 - 위반행위 타.  - 위반행위 파. - 위반행위 하. - 위반행위 거. 1) - 위반행위 거. 2)  - 위반행위 너/더.	10 10 10 20 20 20 40 40 40 50 100 200 200 300 500 100 200 400 100 200 400 50 100 200 20 50 200 200 300 500 50 100 200 100 200 300 10 10 10 20 20 20 40 40 40 100 200 300	3% 6% 12% 16% 66% 33% 33% 16% 6% 66% 16% 33% 3% 6% 12% 33%	1:1:1   1:2:4 1:1.5:2.5 1:2:4 1:2:4  1:2.5:10 1:1.5:2.5 1:2:4 1:2:3 1:1:1  1:2:3
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시행령	유	유 - 위반행위 가/나. - 위반행위 다/라. - 위반행위 마. - 위반행위 바. - 위반행위 사/야자 - 위반행위 차	50 100 500 40 80 400 30 60 200 50 100 500 30 60 200 30 60 300	10% 8% 6% 10% 6% 6%	1:2:10 1:2:10 1:2:6.6 1:2:10 1:2:6.6 1:2:10
10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옥외광고 산업진흥에관한 법률시행령	무	무 - 위반행위 1. 가 1)   - 위반행위 1. 가 2)	8~35 35~65 65~130 130+연면적 3m <sup>2</sup> 초과하는 면적의 0.5m <sup>2</sup> 당 15만원을	1.6% 7% 13% 26%+α 1%	

번호	법령	구분				
		개별 기준 유무	차수 유무	과태료 부과금액(만원)	법정부과금액 대비율(%) (차수있을 경우 1차)	차수별 비율
			- 위반행위 1. 나 1)/2)	더한 금액 이하 5~15 15~50 50~80 80+연면적 3m <sup>2</sup> 초과하는 면적의 1m <sup>2</sup> 당 8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5~15 15~50 50~80 80+연면적 3m <sup>2</sup> 초과하는 면적의	3% 10% 16%+α 1% 3% 10% 16%+α	
			- 위반행위 1. 나 3) - 위반행위 1. 다. - 위반행위 1. 라. - 위반행위 2.	1m <sup>2</sup> 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0.16% 0.1% 3% 16% 30%	
			- 위반행위 3./4.	0.8~5 0.5~5 15~80 80~150 150~300 300~500	60% 4% 20% 50% 2%	
			- 위반행위 5.	20~100 100~250 250~500 10~30 30~50 50~100	30% 50%	

번호	법령	구분					
		개별 기준 유무	차수 유무	과태료 부과금액(만원)	법정부과금액 대비율(%) (차수있을 경우 1차)	차수별 비율	
11	유선및도선사업 법시행령	유	유				
			- 위반행위 가./라.	30 70 150	10%	1:2.3:5	
			- 위반행위 나/다/바/사.	100 200 300	33%	1:2:3	
			- 위반행위 마.	20 50 100	6.6%	1:2.5:5	
			- 위반행위 아./자.	50 100 200	16.6%	1:2:4	
			- 위반행위 카./타./파.	200 300	66%	1:1.5	
			- 위반행위 하/거/너/더/러	100 200 300	33%	1:2:3	
		- 위반행위 머	10 25 50	3.3%	1:2.5:5		
무	-위반행위 차	300	100%				
12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유	유				
			- 위반행위 가	30 50 100	15%	1:1.6:3.3	
			- 위반행위 나	20 30 50	10%	1:1.5:2.5	
			- 위반행위 다	50 100 200	25%	1:2:4	
			- 위반행위 라	30 50 100	15%	1:1.6:3.3	
				50 100 200	25%	1:2:4	
			- 위반행위 마	30 50 100	15%	1:1.6:3.3	
				50 100 150	25%	1:2:3	
			50 100 200	25%	1:2:4		
		무	- 위반행위 바	30 30+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만원 더한 금액 120+61일째부터	10% 10%+a 40%+a		

번호	법령	구분				
		개별 기준 유무	차수 유무	과태료 부과금액(만원)	법정부과금액 대비율(%) (차수있을 경우 1차)	차수별 비율
				계산하여 1일마다 6만원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300만원을 넘지 못한다.		
13	재해구호법시행령	유	유	50 100 200 75 150 300 100 200 400 125 250 500	10% 15% 20% 25%	1:2:4
14	저수지댐의안전관리및재해예방에관한법률시행령	무	무 -위반행위 1,2,3,5,6 -위반행위 4	300 1000	100% 100%	
15	전자정부법시행령	유	유	200 600 1000 400 1200 2000	6.6% 13.3%	1:3:5
16	접경지역지원특별법시행령	유	유	50 100 180 70 120 200	25% 35%	1:2:3.6 1:1.7:2.8
17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유	유	50 100 200 40 80 160 30 60 120 25 50 100		1:2:4
18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유	유	200 300 500	40%	1:1.5:2.5
19	행정사법시행령	유	유 -위반행위 가./다./바 -위반행위 나./라./마	150 250 500 25 50 100	25% 25%	1:1.6:3.3 1:2:4

## ① 차수부과 기준 설정



## ② 개별기준상 법정상한금액 대비 1차 부과금액 및 차수산정 비율

## a. 유사명칭 사용금지

번호	법률명	부과금액		법정상한액 대비 별표 상 부과금액 비율(%)	차수 산정 시 부과 비율
		법률상 법정 상한액	하위법령 별표 상 1차 부과금액		
1	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500	200	40%	1:1.5:2.5
2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300	100	33%	1:2:3
3	행정사법	500	125	25%	1:2:4

## b. 표시의무위반

번호	법률명	부과금액		법정상한액 대비 별표 상 부과금액 비율(%)	차수 산정 시 부과 비율
		법률상 법정 상한액	하위법령 별표 상 1차 부과금액		
1	개인정보보호법	3000	600	20%	1:2:4

번호	법률명	부과금액		법정상한액 대비 별표 상 부과금액 비율(%)	차수 산정 시 부과 비율
		법률상 법정 상한액	하위법령 별표 상 1차 부과금액		
2	급경사지재해예방에관한법률	200	50	25%	1:2:4
3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 법률	500	400	80%	
4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 산업진흥에관한법률	500	8~35 35~65 65~130 130~ 5~15 50~80 80~ 8~15 15~35 35~80 80~ 20~100 100~250 250~500 20~100	1.6% 7% 13% 26% 1% 10% 16% 1.6% 3% 7% 16% 4% 20% 50% 4%	
5	재해구호법	500	75	15%	1:2:4

### c. 검사를 방해-기피-회피

번호	법률명	부과금액		법정상한액 대비 별표 상 부과금액 비율(%)	차수 산정 시 부과 비율
		법률상 법정 상한액	하위법령 별표 상 1차 부과금액		
1	개인정보보호법	1000	200	20%	1:2:4
2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 법률	500	500	100%	
3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300	100	33%	1:2:3
4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500	30	6%	1:2:10
5	재해구호법	500	125	25%	1:2:4

번호	법률명	부과금액		법정상한액 대비 별표 상 부과금액 비율(%)	차수 산정 시 부과 비율
		법률상 법정 상한액	하위법령 별표 상 1차 부과금액		
6	저수지댐의안전관리및재해예방에관한법률	300	300	100%	
7	접경지역지원특별법	200	70	35%	1:1.7:2.8
8	지방공기업법	200	50	25%	1:2:4
			40	20%	1:2:4
			30	15%	1:2:4
			25	12.5%	1:2:4
9	지방세기본법	300	200	66%	1:1.5:2.5
10	행정사법	500	125	25%	1:2:4

#### d. 허위자료 및 자료미제출

번호	법률명	부과금액		법정상한액 대비 별표 상 부과금액 비율(%)	차수 산정 시 부과 비율
		법률상 법정 상한액	하위법령 별표 상 1차 부과금액		
1	개인정보보호법	1000	200	20%	1:2:4
2	급경사지재해예방에관한법률	200	50	25%	
3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500(1항)	50	10%	1:2:4
		300(2항)	100	33%	1:2:3
4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500	30	6%	1:2:6.6
5	유선및도선사업법	300	300	100%	
6	행정사법	500	125	25%	1:2:4

#### e. 공고 또는 게시의무위반

번호	법률명	부과금액		법정상한액 대비 별표 상 부과금액 비율(%)	차수 산정 시 부과 비율
		법률상 법정 상한액	하위법령 별표 상 1차 부과금액		
1	개인정보보호법	1000	200	20%	1:2:4

번호	법률명	부과금액		법정상한액 대비 별표 상 부과금액 비율(%)	차수 산정 시 부과 비율
		법률상 법정 상한액	하위법령 별표 상 1차 부과금액		
2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300	50	16.6%	1:2:4
3	유선및도선사업법	300	10	3.3%	1:2.5:5

### 3. 환경부

#### (1) 법 률

##### 【분석틀 종합】

번호	법률	유형	부과금액	부과-징수 주체	위임 하위법령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유형1	1000 500 100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대통령령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유형1	1000 300 100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대통령령
3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유형1	500	환경부장관	대통령령
4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유형1	500	환경부장관	대통령령
5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유형1	1000 500	환경부장관,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대통령령
6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유형1	1000 500	환경부장관,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대통령령
7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유형1	1000	외교부장관	대통령령

번호	법률	유형	부과금액	부과-징수 주체	위임 하위법령
8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유형1	300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대통령령
9	대기환경보전법	유형1	1000 500 300 200 100 50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대통령령
10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유형1	300	환경부장관	대통령령
11	먹는물관리법	유형1	300 100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대통령령
12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유형1	2000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	대통령령
1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유형1	1000 500 300 100	환경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대통령령
14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유형1	200	환경부장관	대통령령
15	석면안전관리법	유형1	2000 1000 500 200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대통령령
16	석면피해구제법	유형1	500	환경부장관	대통령령
17	소음·진동관리법	유형1	300 200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대통령령
18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유형1	500 300 200 100	환경부장관, 서울특별시장등	대통령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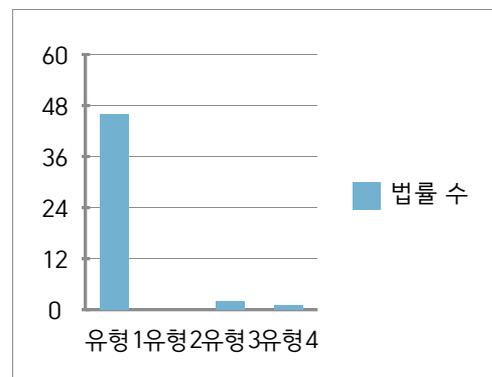
번호	법률	유형	부과금액	부과-징수 주체	위임 하위법령
19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유형1	100	환경부장관	
20	수도법	유형1	1000 500 300 100	환경부장관, 국도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대통령령
2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유형1	1000 300 100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대통령령
22	습지보전법	유형1	200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대통령령
23	실내공기질 관리법	유형1	2000 1000 500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대통령령
24	악취방지법	유형1	200 100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 시장·군수·구청장	대통령령
2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유형1	1000 200 100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대통령령
26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유형1	1000 500	환경부장관, 광역시장·시장·군 수	대통령령
27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유형1	1000 300 100	시·도지사	대통령령
28	자연공원법	유형1	200 50 10	군수	대통령령
29	자연환경보전법	유형3	1000 200	환경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대통령령

번호	법률	유형	부과금액	부과-징수 주체	위임 하위법령
3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유형1	300 100	환경부장관 · 주무부장관, 특별자치시장 · 특별 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대통령령
31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유형1	1000 300	환경부장관, 시 · 도지사	대통령령
32	전기 ·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유형4	3000 2000 1000 300 100	환경부장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대통령령
33	토양환경보전법	유형1	300 200	환경부장관, 시 · 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대통령령
34	폐기물관리법	유형1	1000 300 100	환경부장관, 시 · 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대통령령
35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유형1	300 100	환경부장관	대통령령
36	하수도법	유형1	500 300 100 50	환경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대통령령
37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유형1	1000 500	환경부장관,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 군수	대통령령
38	한국환경공단법	유형1	100	환경부장관	대통령령
39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유형1	500	환경부장관	대통령령
40	화학물질관리법	유형1	1000 300	환경부장관	대통령령
4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유형1	1000	환경부장관	대통령령

번호	법률	유형	부과금액	부과-징수 주체	위임 하위법령
42	환경교육진흥법	유형3	20	환경부장관	대통령령
4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유형1	300 100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대통령령
44	환경보전법	유형1	500	환경부장관	대통령령
45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유형1	300 100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대통령령
46	환경분쟁 조정법	유형1	100 50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대통령령
47	환경영향평가법	유형1	2000 1000 500	환경부장관	대통령령
48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유형1	1500 1000 700 500 300 200	환경부장관	대통령령
49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유형1	1000 500	환경부장관	대통령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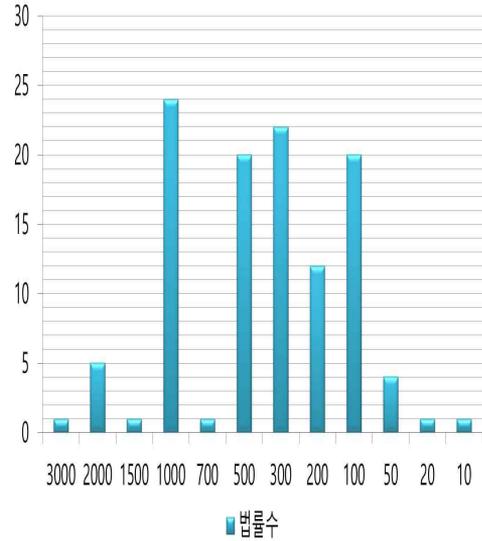
### 1) 입법유형별 분류

유형	법률 수
<b>유형1</b>	<b>46</b>
유형2	0
유형3	2
유형4	1



2) 금액별 분류

금액	법률 수
3000	1
2000	5
1500	1
<b>1000</b>	<b>24</b>
700	1
500	20
300	22
200	12
100	20
50	4
20	1
10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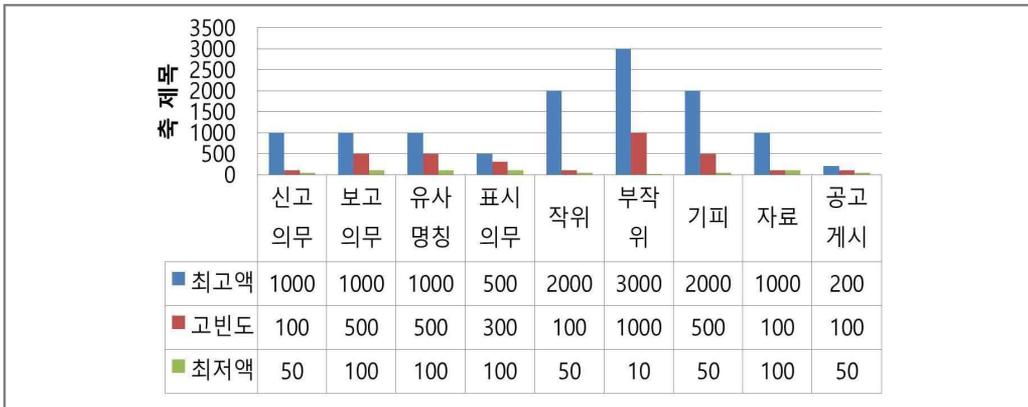


아울러 이를 세분화하여 그 의무위반행위별 분포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의무위반행위 유형	부과금액 (만원)	의무위반행위 개수
1. 신고의무위반	1000	13
	500	2
	300	15
	200	5
	<b>100</b>	<b>32</b>
	50	1
2. 보고의무위반	1000	6
	700	1
	<b>500</b>	<b>15</b>
	300	10
	200	3
	100	12

의무위반행위 유형	부과금액 (만원)	의무위반행위 개수
3. 유사명칭사용	1000	1
	500	2
	300	1
	200	1
	100	1
4. 표시의무위반	500	1
	<b>300</b>	<b>6</b>
	100	2
5. 작위의무위반	2000	13
	1500	2
	1000	38
	500	15
	300	38
	200	27
	<b>100</b>	<b>44</b>
	50	4
6. 부작위의무위반	3000	1
	2000	4
	<b>1000</b>	<b>33</b>
	500	10
	300	19
	200	16
	100	28
	50	4
	20	1
	10	2
7. 검사를 방해-기피-회피	2000	1
	1000	8
	<b>500</b>	<b>10</b>
	300	7

의무위반행위 유형	부과금액 (만원)	의무위반행위 개수
	200	9
	100	4
	50	1
8. 허위자료 및 자료미제출 또는 보존	1000	15
	700	2
	500	31
	300	5
	200	10
	<b>100</b>	<b>36</b>
9. 공고 또는 게시의무 위반	200	3
	<b>100</b>	<b>11</b>
	50	2



### 3) 하위법령에로의 위임규정이 없는 경우

환경부 소관 과태료관련 법률은 다수가 하위법령(대통령령)에 그 구체적 사항을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아래와 같은 법률 등은 별도의 위임규정을 두지 않고 법률상 규정에 한정하고 있다.

번호	법률	해당 조문
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법률	제30조(과태료) ① 제11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2) 하위법령

### 1) 일반기준

#### 【분석틀 종합】

번호	법령	구분						
		일반기준 유무	차수산정기준	적발일 기준 유무	감경/가중	감경/가중 특례	둘 이상의 위반 행위	2인 이상 참여
1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유	2년	유	유/유	유/유	무	무
2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유	1년	유	유/무	유/무	무	무
3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유	1년	유	유/유	유/유	무	무
4	국립생태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유	1년	유	유/유	유/유	무	무
5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유	1년	유	유/무	유/무	무	무
6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유	1년	유	유/무	유/무	무	무
7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	유	1년	무	유/무	무/무	유	무
8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유	1년	유	유/무	유/무	유	무

번호	법령	구분						
		일반기준 유무	차수산정기준	적발일 기준 유무	감경/가중	감경/가중 특례	둘 이상의 위반 행위	2인 이상 참여
9	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법률시행령	유	1년	유	유/무	유/무	무	무
10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유	1년	유	유/무	유/무	유	무
11	동물원및수족관의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	유	1년	유	유/유	유/유	유	무
12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유	1년	유	유/유	유/유	유	무
13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 관한법률시행령	유	1년	유	유/무	유/무	무	무
14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 관한법률시행령	유	1년	유	유/무	유/무	무	무
15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	유	1년	유	유/무	유/무	무	무
16	석면피해구제법시행령	유	1년	유	유/유	무/유	유	무
17	소음진동관리법시행령	유	1년	유	유/무	무/무	무	무
18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특별법시행령	유	1년	유	유/무	유/무	무	무
19	수도법시행령	유	1년	유	유/무	유/무	무	무
20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 관한법률시행령	유	1년	우	유/무	무/무	유	무
21	습지보전법시행령	유	1년	유	유/무	유/무	무	무
22	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령	유	1년	유	유/무	유/무	유	무
23	약취방지법시행령	유	1년	유	유/무	무/무	무	무
24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	유	1년	유	유/무	무/무	무	무
25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 법률시행령	유	1년	유	유/무	무/무	무	무
26	유전자원의접근이용및 이익공유에관한법률시행령	유	1년	유	유/유	유/유	유	무

번호	법령	구분						
		일반기준 유무	차수산정기준	적발일 기준 유무	감경/가중	감경/가중 특례	둘 이상의 위반 행위	2인 이상 참여
27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시행령	유	1년	유	유/무	유/무	무	무
28	자연공원법시행령	유	1년	유	유/유	유/유	유	무
29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유	1년	유	유/무	유/무	무	무
30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유	1년	유	유/무	유/무	무	무
31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시행령	유	1년	유	유/무	유/무	무	무
32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시행령	유	1년	유	유/무	유/무	무	무
33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유	1년	유	유/무	유/무	무	무
34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유	1년	유	유/무	유/무	무	무
35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유	1년	유	유/무	유/무	무	무
36	하수도법시행령	유	2년	유	유/무	유/무	유	무
37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유	1년	유	유/무	유/무	무	무
38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시행령	유	1년	유	유/유	유/유	무	무
39	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유	1년	유	유/유	유/유	무	무
40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유	2년	유	유/유	유/유	무	무
41	환경교육진흥법시행령	유	1년	유	유/무	무/무	무	무
42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령	유	1년	유	유/무	유/무	무	무
43	환경보건법시행령	유	2년	유	유/무	유/무	무	무
44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유	1년	유	유/무	유/무	무	무

번호	법령	구분						
		일반기준 유무	차수산정기준	적발일 기준 유무	감경/가중	감경/가중 특례	둘 이상의 위반 행위	2인 이상 참여
45	환경분쟁조정법시행령	유	1년	유	유/무	유/무	무	무
46	환경영양평가법시행령	유	1년	유	유/무	유/무	유	무
47	환경오염시설의통합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유	1년	유	유/유	유/유	유	무
48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및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	유	1년	유	유/무	유/무	무	무

## ① 일반기준 설정

일반 기준	유	무
일반 기준	유	무

## ② 차수산정기간 설정

차수 산정 기준	무	1년	2년	3년
법률 수	0	44	4	0

## ③ 적발일 기준 설정

적발일 기준	유	무
법률 수	47	1

## ④ 가중/감경 기준 설정

감경/가중	유	무
(감경/가중) 법률 수	48/12	0/36

⑤ 가중/감경 특례 기준 설정

감경/가중 특례	유	무
(감경/가중 특례) 법률 수	40/12	8/36

⑥ 2 이상의 위반행위 적용 기준 설정

둘 이상의 위반 행위	
유	13
무	35

⑦ 2인 이상의 위반행위 기준 설정

설정된 경우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개별기준

【분석틀 종합】

번호	법령	구분				
		개별기준 유무	차수 유무	과태료 부과금액(만원)	법정부과 금액 대비율(%) (차수있을 경우 1차)	차수별비율
1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유	유	100 150 200	10%	
				150 200 300	15%	
				200 300 400	20%	
				400 600 800	40%	
				600 800 1000	60%	
				50 70 100	10%	
				70 100 150	12%	
				100 150 200	20%	
				200 300 400	40%	

번호	법령	구분				
		개별기준 유무	차수 유무	과태료 부과금액(만원)	법정부과 금액 대비율(%) (차수있을 경우 1차)	차수별비율
				300 400 500 200 300 500 50 70 100 50 80 100 30 50 80 60 80 100	60% 40% 50% 50% 30% 60%	
2	건설폐기물의재활용 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유	유	100 300 500 300 500 700 200 300 500 500 700 1000 300 300 300 1000 1000 1000 100 200 300 50 70 100 100 100 100	10% 30% 20% 50% 30% 100% 33% 50% 100%	
3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유	유	100 300 500 50 150 250	20% 10%	1:3:5 1:3:5
4	국립생태원의설립 및 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유	유	100 300 500 50 150 250	20% 10%	1:3:5 1:3:5
5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 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유	유	200 500 1000 500 700 1000 300 400 500	20% 50% 60%	
6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 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유	유	200 500 1000 500 700 1000 300 400 500	20% 50% 60%	
7	남극활동및한경보호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유	유	500 700 1000 300 500 700 700 1000 1000	50% 30% 70%	

번호	법령	구분				
		개별기준 유무	차수 유무	과태료 부과금액(만원)	법정부과 금액 대비율(%) (차수있을 경우 1차)	차수별비율
8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 관한법률시행령	유	유	500 700 1000 300 500 700 700 1000 1000	50% 30% 70%	
9	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법률시행령	유	유	100 200 300 50 100 150	33% 16.6%	1:2:3 1:2:3
10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유	유	1000 1000 1000 200 300 400 500 100 200 300 300 300 300 200 200 200 100 150 200 120 160 200 60 80 100 100 100 100 60 80 100 5 5 5 2 1	100% 40% 33% 100% 100% 50% 60% 30% 100% 60% 5% 4% 2%	
11	동물원및수족관의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	유	유	300 400 500 100 300 500		1:1.3:1.6 1:3:5
12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유	유	150 230 300 50 70 100 80 90 100	50% 50% 80%	
13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 관한법률시행령	유	유	500 700 1000 250 350 500 150 200 300 50 70 100	50% 50% 50% 50%	
14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 관한법률시행령	유	유	100 150 200	50%	1:1.5:2

번호	법령	구분				
		개별기준 유무	차수 유무	과태료 부과금액(만원)	법정부과 금액 대비율(%) (차수있을 경우 1차)	차수별비율
15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	유	유	300 500 1000	30%	
				500 700 1500	50%	
				1000 1500 2000	100%	
				100 300 500	20%	
				200 500 700	40%	
				300 700 1000	60%	
				200 350 500	40%	
				100 150 200	20%	
				100 200 300	20%	
				100 200 300	50%	
				30 50 100	15%	
200 300 500	100%					
50 100 150	25%					
16	석면피해구제법시행령	유	유	250 350 500	50%	
				300 400 500	60%	
17	소음진동관리법시행령	유	유	200 250 300	66%	
				150 200 250	50%	
				75 150 300	15%	
				60 80 100	30%	
				100 140 200	50%	
				20 60 100	10%	
				60 120 200	30%	
				10 10 10	5%	
				20 20 20	10%	
				60 60 60	30%	
100 100 100	50%					
18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특별법시행령	유	유	300 400 500	60%	
				30 100 300	10%	
				100 150 200	50%	

번호	법령	구분				
		개별기준 유무	차수 유무	과태료 부과금액(만원)	법정부과 금액 대비율(%) (차수있을 경우 1차)	차수별비율
				60 80 100 50 75 100	60% 50%	
19	수도법시행령	유	유	500 700 1000 300 400 500 100 200 300 200 250 300 300 300 300 30 50 100 50 70 100 80 90 100 10 50 100 30 40 50	50% 60% 33% 66% 100% 30% 50% 80% 10% 30%	
20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 관한법률시행령	유	유	500 700 1000 200 600 1000 1000 1000 1000 300 300 300 100 200 300 200 200 200 100 150 200 50 50 50 60 80 100 100 100 100	50% 20% 100% 100% 33% 66% 33% 50% 60% 100%	
21	습지보전법시행령	유	유	50 100 200 100 150 200	25% 50%	
22	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령	유	유	500 1000 2000 50 60 80 80 100 130 130 160 200 200 250 300	25% 5% 8% 13% 20%	

번호	법령	구분				
		개별기준 유무	차수 유무	과태료 부과금액(만원)	법정부과 금액 대비율(%) (차수있을 경우 1차)	차수별비율
				200 300 400 100 150 200 250 370 500 50 70 100 300 300 300 500 500 500 100 150 200	20% 10% 25% 10% 60% 100% 20%	
23	악취방지법시행령	유	유	100 150 200 50 70 100	50% 50%	
24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	유	유	500 700 1000 100 150 200 50 100 100 100 100 100 30 50 100 20 30 50 50 50 50	50% 50% 50% 100% 30% 20% 50%	
25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 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 법률시행령	유	유	200 500 1000 500 700 1000 300 400 500	20% 50% 60%	
26	유전자원의접근이용및 이익공유에관한법률시행령	유	유	200 400 800 100 200 400		1:2:4 1:2:4
27	인공조명에의한빛공해 방지법시행령	유	유	250 500 1000 5 50 100 10 100 200 15 150 300 25 50 100	25% 1.6% 3.3% 5% 25%	
28	자연공원법시행령	유	유	100 150 200 50 75 100	50% 25%	

번호	법령	구분				
		개별기준 유무	차수 유무	과태료 부과금액(만원)	법정부과 금액 대비율(%) (차수있을 경우 1차)	차수별비율
				50 100 150 10 20 30 50 100 200 10 20 30 10 30 50 30 40 50 5 5 5 10 10 10 10 10 10	25% 5% 25% 20% 20% 60% 50% 100% 100%	
29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유	유	500 700 1000 100 150 200 50 70 100	50% 50% 25%	
30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유	유	100 200 300 50 100 200 30 50 100 10 30 50 5 10 30 50 150 300 200 250 300 150 200 300 50 70 100 50 70 100 30 50 100	33% 16.6% 10% 3.3% 1.6% 16.6% 66% 50% 16.6% 50% 30%	
31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시행령	유	유	500 700 1000 100 200 300 200 300 500 100 200 300 100 100 100 100 100 100	50% 10% 20% 33% 33% 100%	

번호	법령	구분				
		개별기준 유무	차수 유무	과태료 부과금액(만원)	법정부과 금액 대비율(%) (차수있을 경우 1차)	차수별비율
32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시행령	유	유	3000 3000 3000	100%	
				2000 2000 2000	100%	
				500 1000 2000	25%	
				1000 1000 1000	100%	
				100 200 300	33%	
				300 500 1000	100%	
				50 80 100	50%	
				30 50 80	30%	
33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유	유	20 30 50	20%	
				100 200 300	33%	
				100 150 200	50%	
				50 100 200	25%	
34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유	유	50 70 100	25%	
				300 500 700	30%	
				500 700 1000	50%	
				200 300 500	20%	
				50 70 100	5%	
				400 600 1000	40%	
				200 400 600	20%	
				400 600 800	40%	
				300 600 1000	30%	
				100 200 300	33%	
				300 300 300	100%	
				5 5 5	5%	
				20 20 20	20%	
50 50 50	50%					
100 100 100	100%					
70 70 7	70%					

번호	법령	구분				
		개별기준 유무	차수 유무	과태료 부과금액(만원)	법정부과 금액 대비율(%) (차수있을 경우 1차)	차수별비율
				30 70 100 10 20 30 50 70 100	30% 10% 50%	
35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 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유	유	300 500 700 500 700 1000 200 300 500 400 600 1000 1000 1000 1000 200 400 600 50 70 100 30 40 50 100 200 300 300 300 300	30% 50% 20% 40% 100% 66% 20% 50% 30% 100%	
36	하수도법시행령	유	유	100 200 300 200 300 400 300 400 500 10 20 40 20 40 80 30 60 100 50 100 200 40 80 150 70 120 220 100 150 250 20 30 40 30 40 50 40 50 60 50 60 80 70 80 100	20% 40% 60% 2% 4% 6% 10% 8% 12% 20% 4% 6% 8% 10% 12%	

번호	법령	구분				
		개별기준 유무	차수 유무	과태료 부과금액(만원)	법정부과 금액 대비율(%) (차수있을 경우 1차)	차수별비율
37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유	유	500 700 1000 300 400 500	50% 60%	
38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시행령	유	유	100 300 500 50 150 250	20% 10%	
39	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유	유	600 800 1000 180 240 300	60% 60%	
40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유	유	300 500 1000 600 800 1000	30% 60%	
41	환경교육진흥법시행령	유	유	10 10 20	50%	
42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령	유	유	200 250 300 60 80 100	66% 60%	
43	환경보건법시행령	유	유	250 350 500	50%	
44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유	유	50 70 100 300 300 300 100 100 100	50% 100% 100%	
45	환경분쟁조정법시행령	유	유	10 20 30 30 60 100	10% 30%	
46	환경영양평가법시행령	유	유	1000 1500 2000 300 300 300 500 500 500 500 700 1000 200 300 500 300 400 500	50% 30% 50% 50% 40% 60%	
47	환경오염시설의통합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유	유	300 600 900 500 1000 1500 500 700 1000 1000 1400 1500 100 300 500	30% 50% 50% 100% 14.2%	

번호	법령	구분				
		개별기준 유무	차수 유무	과태료 부과금액(만원)	법정부과 금액 대비율(%) (차수있을 경우 1차)	차수별비율
				300 650 1000 100 150 200 100 100 100 300 500 700 100 200 300 200 200 200 400 400 400 300 400 500 200 300 500	42.8% 14.2% 14.2% 60% 20% 66% 132% 100% 100%	
48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및 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	유	유	500 700 1000 250 350 500	50% 50%	

### ① 차수부과 기준 설정

대상법령 전체가 차수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② 개별기준상 법정상한금액 대비 1차 부과금액 및 차수산정 비율

#### a. 유사명칭 사용금지

번호	법률명	부과금액		법정상한액 대비 별표 상 부과금액 비율(%)	차수 산정 시 부과 비율
		법률상 법정 상한액	하위법령 별표 상 1차 부과금액		
1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설립 및 운영에관한법률	500	100 50	20% 10%	1:3:5 1:3:5

번호	법률명	부과금액		법정상한액 대비 별표 상 부과금액 비율(%)	차수 산정 시 부과 비율
		법률상 법정 상한액	하위법령 별표 상 1차 부과금액		
2	국립생태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500	100 50	20% 10%	1:3:5 1:3:5
3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500	100 50	20% 10%	1:3:5 1:3:5
4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	300	300	100%	1:1:1
5	환경영향평가법	1000	500	50%	1:1.4:2

## b. 표시의무위반

번호	법률명	부과금액		법정상한액 대비 별표 상 부과금액 비율(%)	차수 산정시 부과 비율
		법률상 법정 상한액	하위법령 별표 상 1차 부과금액		
1	대기환경보전법	500	200	40%	1:1.5:2:2.5
2	소음진동관리법	300	75	25%	1:2:4
3	수도법	300	200	66%	1:1.25:1.5
4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00	50	50%	1:2:2
5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00	50	16.6%	1:3:6
6	환경교육진흥법	20	10	50%	1:1:2
7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	100	50	50%	1:1.4:2

## c. 검사를 방해·기피·회피

번호	법률명	부과금액		법정상한액 대비 별표 상 부과금액 비율(%)	차수 산정 시 부과 비율
		법률상 법정 상한액	하위법령 별표 상 1차 부과금액		
1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00	100	100%	1:1:1
2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설립 및 운영에관한법률	500	100	20%	1:3:5

번호	법률명	부과금액		법정상한액 대비 별표 상 부과금액 비율(%)	차수 산정 시 부과 비율
		법률상 법정 상한액	하위법령 별표 상 1차 부과금액		
3	국립생태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500	100	20%	1:3:5
4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 한법률	500	300	60%	1:1.3:1.6
5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 관한법률	500	300	60%	1:1.3:1.6
6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	1000	300	30%	1:2.3:1.6
7	대기환경보전법	200	100	50%	1:1.5:2
8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	1000	500	50%	1:1.4:2
9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200	100	50%	1:1.5:2
10	석면안전관리법	500	200	40%	1:1.5:2.5
11	소음진동관리법	200	60	30%	1:1.5:2.5
12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200	100	50%	1:1.5:2
13	수도법	300	300	100%	1:1:1
		100	100	100%	1:1:1
14	습지보전법	200	50	25%	1:2:4
15	실내공기질관리법	500	250	50%	1:1.48:2
16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200	100	50%	1:1.5:2
17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 원등에관한법률	500	300	60%	1:1.3:1.6
18	인공조명에의한빛공해방지법	100	25	25%	1:2:4
19	자연공원법	200	100	50%	1:1.5:2
		50	30	60%	1:1.3:1.6
20	자연환경보전법	200	100	50%	1:1.5:2
21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100	100	100%	1:1:1
22	토양환경보전법	300	100	50%	1:1.5:2
		200			
23	폐기물관리법	100	100	100%	1:1:1
24	하수도법	100	100	100%	1:1:1
		50	30	60%	1:1.3:1.6
25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 원등에관한법률	1000	500	50%	1:1.4:2
		500	300	60%	1:1.3:1.6

번호	법률명	부과금액		법정상한액 대비 별표 상 부과금액 비율(%)	차수 산정 시 부과 비율
		법률상 법정 상한액	하위법령 별표 상 1차 부과금액		
26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500	100	20%	1:3:5
27	화학물질관리법	1000	600	60%	1:1.3:1.6
28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1000	600	60%	1:1.3:1.6
29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100	60	60%	1:1.3:1.6
30	환경보건법	500	250	50%	1:1.4:2
31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	100	50	50%	1:1.4:2
32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및구제에 관한법률	500	250	50%	1:1.4:2

#### d. 허위자료 및 자료미제출

번호	법률명	부과금액		법정상한액 대비 별표 상 부과금액 비율(%)	차수산정 시 부과 비율
		법률상 법정 상한액	하위법령 별표 상 1차 부과금액		
1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100	50	50%	1:1.4:2
2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00	50	50%	1:1.4:2
3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설립및운 영에관한법률	500	100	20%	1:3:5
4	국립생태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500	100	20%	1:3:5
5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 한법률	1000(1항)	500	50%	1:1.4:2
		500(2항)	300	60%	1:1.3:1.6
6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 관한법률	1000(1항)	500	50%	1:1.4:2
		500(2항)	300	60%	1:1.3:1.6
7	대기환경보전법	500(2항)	200	40%	1:1.5:2.5
		300(3항)	100	33%	1:2:3
		200(4항)	200	100%	1:1:1
		100(5항)	100	100%	1:1:1

번호	법률명	부과금액		법정상한액 대비 별표 상 부과금액 비율(%)	차수산정 시 부과 비율
		법률상 법정 상한액	하위법령 별표 상 1차 부과금액		
8	먹는물관리법	100	50	50%	1:1.4:2
9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	1000	500	50%	1:1.4:2
10	석면안전관리법	500	100	20%	1:2:3
		200	50	25%	1:2:4
11	소음진동관리법	200	60	30%	1:1.5:2.5
12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500	300	60%	1:1.3:1.6
		200	100	50%	1:1.5:2
13	수도법	100	80	80%	1:1.125:1.25
			50	50%	1:1.4:2
14	습지보전법	200	100	50%	1:1.5:2
15	실내공기질관리법	500	100	20%	1:1.5:2
16	약취방지법	100	50	50%	1:1.4:2
17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00	50	50%	1:2:2
18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 원등에관한법률	1000	500	50%	1:1.4:2
		500	300	60%	1:1.3:1.6
19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00	50	50%	1:1.4:2
20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1000	500	50%	1:1.4:2
21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 에관한법률	100	50	50%	1:1.6:2
			30	30%	1:1.6:2.6
			20	20%	1:1.5:2.5
22	토양환경보전법	300	100	33%	1:2:3
		200	100	50%	1:1.5:2
23	폐기물관리법	300	100	33%	1:2:3
		100	50	50%	1:1.4:2
24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 한법률	100	50	50%	1:1.4:2
25	하수도법	100	50	50%	1:1.4:2
26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 원등에관한법률	1000	500	50%	1:1.4:2
		500	300	60%	1:1.3:1.6
27	화학물질관리법	1000	600	60%	1:1.3:1.6

번호	법률명	부과금액		법정상한액 대비 별표 상 부과금액 비율(%)	차수산정 시 부과 비율
		법률상 법정 상한액	하위법령 별표 상 1차 부과금액		
28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1000	600	60%	1:1.3:1.6
29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300	200	66%	1:1.25:1.5
30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	100	100	100%	1:1:1
31	환경분쟁조정법	100	10	10%	1:2:3
			30	30%	1:2:3.3
32	환경오염시설의통합관리에관한법률	700	300	42%	1:1.6:2.3
		500	200	40%	1:1.5:2.5
33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및구제에관 한법률	500	250	50%	1:1.4:2

#### e. 공고 또는 게시의무위반

번호	법률명	부과금액		법정상한액 대비 별표 상 부과금액 비율(%)	차수산정 시 부과 비율
		법률상 법정 상한액	하위법령 별표 상 1차 부과금액		
1	수도법	100	80	80%	1:1.125:1.25
			50	50%	1:1.4:2
2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 에관한법률	100	50	50%	1:1.6:2
			30	30%	1:1.6:2.6
			20	20%	1:1.5:2.5
3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1000	600	60%	1:1.3:1.6
4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	100	50	50%	1:1.4:2
5	환경영향평가법	500	200	40%	1:1.5:2.5

#### 4. 보건복지부

##### (1) 법률

###### 【분석틀 종합】

번호	법률	유형	부과금액	부과-징수 주체	위임 하위법령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유형1	1000 100	보건복지부장관,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대통령령
2	검역법	유형1	1000 500	검역소장	대통령령
3	결핵예방법		200		
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유형1	300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대통령령
5	공중위생관리법	유형1	300 200 100	보건복지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대통령령
6	국민건강보험법	유형1	500 100	보건복지부장관	대통령령
7	국민건강증진법	유형4	500 300 10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대통령령
8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유형1	100	국방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9	국민연금법	유형1	50 10	보건복지부장관	대통령령
10	기초연금법	유형1	20 10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 청장	대통령령
1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유형1	500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대통령령

번호	법률	유형	부과금액	부과·징수 주체	위임 하위법령
12	노인복지법	유형1	500 200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대통령령
1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유형1	500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 청장	대통령령
14	노후준비지원법	유형1	500	보건복지부장관	대통령령
15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유형1	300	보건복지부장관	대통령령
1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유형1	500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대통령령
17	모자보건법	유형1	200 100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건복지부장관	대통령령
1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유형1	300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대통령령
19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유형1	1000 300	보건복지부장관	대통령령
20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유형1	300 200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 지사·특별자치도지사	대통령령
2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5000 3000		
2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유형1	500	보건복지부장관	
23	사회복지사업법	유형1	300 20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대통령령

번호	법률	유형	부과금액	부과·징수 주체	위임 하위법령
2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유형1	500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	대통령령
25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유형1	500 300 200	보건복지부장관	대통령령
26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유형1	50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 청장	대통령령
27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유형3	300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	대통령령
28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유형1	500 200	경찰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대통령령
29	아동복지법	유형1	1000 500 300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시·광역시·특별자 치도 및 도의 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대통령령
30	암관리법	유형1	200	보건복지부장관	대통령령
31	약사법	유형4	5000 100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대통령령
3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유형1	1000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대통령령
33	영유아보육법	유형1	500	보건복지부장관,	대통령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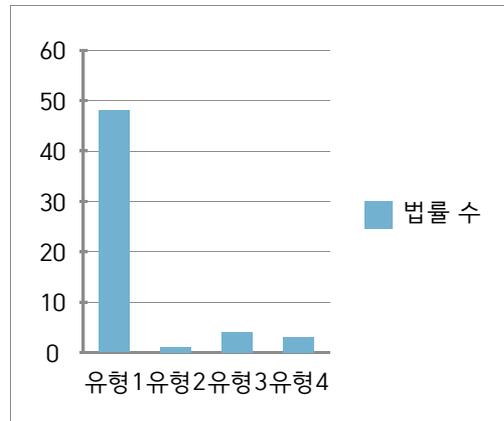
번호	법률	유형	부과금액	부과·징수 주체	위임 하위법령
			300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34	위생사에 관한 법률	유형3	100	보건복지부장관	대통령령
3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유형1	300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대통령령
36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유형1	500	보건복지부장관	대통령령
37	의료급여법	유형1	500 100	보건복지부장관	대통령령
38	의료기기법	유형1	100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대통령령
39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유형1	500 100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 청장	대통령령
40	의료법	유형1	300 200 100	보건복지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대통령령
4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유형1	1000 500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대통령령
42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유형1	500 300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그 소속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 별자치시장·도지사·특 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대통령령
4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유형4	500 300	보건복지부장관, 그 소속 기관의 장	대통령령

번호	법률	유형	부과금액	부과-징수 주체	위임 하위법령
			200 100		
4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유형1	300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대통령령
45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유형1	300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대통령령
4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유형1	200 100 20	시설주관기관	대통령령
47	장애인복지법	유형1	1000 500 300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대통령령
48	장애인연금법	유형1	20 10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 청장	대통령령
4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유형1	500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 청장	대통령령
50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유형2	500 300 200 100	보건복지부장관	대통령령
5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유형1	100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대통령령
52	체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유형1	1000 500 300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대통령령
53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유형1	300	보건복지부장관	대통령령

번호	법률	유형	부과금액	부과·징수 주체	위임 하위법령
54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유형3	300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건복지부장관	조례 대통령령
55	지역보건법	유형1	300	시장·군수·구청장	조례
56	혈액관리법	유형1	200	보건복지부장관	대통령령
57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유형1	500 300 200	보건복지부장관	대통령령
58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유형3	300	보건복지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대통령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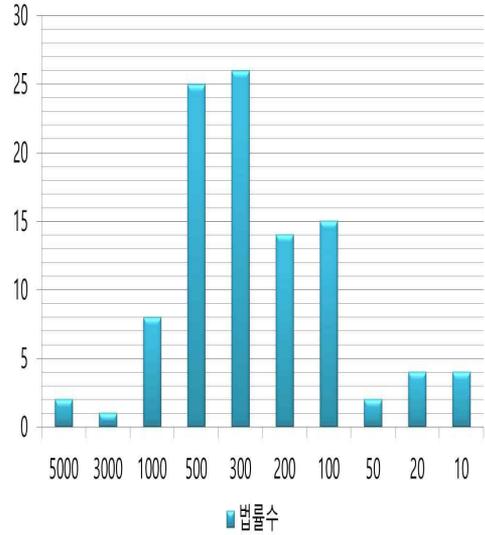
### 1) 입법유형별 분류

유형	법률 수
<b>유형1</b>	<b>48</b>
유형2	1
유형3	4
유형4	3



2) 금액별 분류

금액	법률 수
5000	2
3000	1
1000	8
500	25
<b>300</b>	<b>26</b>
200	14
100	15
50	2
20	4
10	4



아울러 이를 세분화하여 그 의무위반행위별 분포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의무위반행위 유형	부과금액 (만원)	의무위반행위 개수
1. 신고의무위반	3000	9
	1000	1
	500	15
	<b>300</b>	<b>19</b>
	200	9
	100	16
	50	1
	10	3
2. 보고의무위반	5000	1
	3000	2
	500	7
	300	8
	200	8
	<b>100</b>	<b>14</b>

의무위반행위 유형	부과금액 (만원)	의무위반행위 개수
	10	1
3. 유사명칭사용	1000	1
	500	3
	<b>300</b>	<b>8</b>
	200	4
	100	7
4. 표시의무위반	<b>1000</b>	<b>4</b>
	500	1
	300	1
	200	2
	100	2
	20	2
5. 작위의무위반	3000	5
	1000	8
	500	21
	<b>300</b>	<b>27</b>
	200	13
	100	16
6. 부작위의무위반	5000	1
	3000	5
	1000	7
	<b>500</b>	<b>13</b>
	300	6
	200	5
	100	4
	50	4
7. 검사를 방해-기피-회피	3000	1
	1000	1
	500	5
	<b>300</b>	<b>11</b>
	200	5
	100	3
	50	1
	20	3

의무위반행위 유형	부과금액 (만원)	의무위반행위 개수
8. 허위자료 및 자료미제출 또는 보존	10	1
	3000	2
	1000	4
	<b>500</b>	<b>27</b>
	300	14
	200	3
	100	11
	50	1
	20	3
9. 공고 또는 게시의무 위반	3000	2
	<b>500</b>	<b>3</b>
	300	1
	200	2
	100	1



### 3) 하위법령에로의 위임규정이 없는 경우

보건복지부 소관 과태료관련 법률은 다수가 하위법령(대통령령)에 그 구체적 사항을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아래와 같은 법률 등은 별도의 위임규정을 두지 않고 법률상 규정에 한정한다.

번호	법률	해당 조문 [각호 생략]
1	결핵예방법	제34조 (과태료)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국민연금과 지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30조 (과태료) ①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관련 공공단체 또는 사업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부과·징수한다. 1. 국방부장관이 제26조제1항에 따라 요청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국방부장관 2. 국방부장관을 제외한 연금관리기관이 제26조제1항에 따라 요청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연금관리기관의 업무를 관장하고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5조 (과태료)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범위를 초과하여 개인 정보를 수집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37조 (과태료) ①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2) 하위법령

1) 일반기준

【분석틀 종합】

번호	법령	구분						
		일반 기준 유무	차수 산정 기준	적발일 기준 유무	감경 /가중	감경 /가중 특례	둘 이상의 위반 행위	2인 이상 참여
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유	1년	유	유/유	유/유	무	무

번호	법령	구분						
		일반 기준 유무	차수 산정 기준	적발일 기준 유무	감경 /가중	감경 /가중 특례	둘 이상 의 위반 행위	2인 이상 참여
2	검역법시행령	유	무	무	유/유	유/유	무	무
3	고령친화산업진흥법시행령	무						
4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시행령	유	2년	유	유/유	유/유	무	무
5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유	무	무	유/유	유/유	무	무
6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유	1년	유	유/유	유/유	무	무
7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유	2년	무	유/유	유/유	무	무
8	국민연금법시행령	유	1년	유	유/유	유/유	무	무
9	기초연금법시행령	유	1년	유	유/유	유/유	무	무
10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 원에관한법률시행령	유	2년	유	유/유	유/유	유	무
11	노인복지법시행령	유	1년	유	유/유	유/유	무	무
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유	1년	유	유/유	유/유	유	무
13	노후준비지원법시행령	유	1년	유	유/무	유/무	무	무
14	대한노인회지원에관한법 률시행령	유	3년	유	유/무	무/무	무	무
15	모자보건법시행령	유	무	무	유/유	유/유	무	무
16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 원에관한법률시행령	유	1년	유	유/유	유/유	무	무
17	병원체자원의수집관리및활 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유	1년	유	유/유	유/유	유	무
18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유	1년	유	유/유	유/유	무	무
19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 위향상을위한법률시행령	유	무	무	유/무	무/무	무	무
20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유	무	무	유/유	유/유	유	무
21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 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유	1년	유	유/유	유/무	유	무
22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 률시행령	유	1년	유	유/유	유/유	무	무

번호	법령	구분						
		일반 기준 유무	차수 산정 기준	적발일 기준 유무	감경 /가중	감경 /가중 특례	둘 이상의 위반 행위	2인 이상 참여
23	식품등기부활성화에관한 법률시행령	유	3년	유	유/무	유/무	무	무
24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 에관한법률시행령	유	1년	유	유/유	유/유	유	무
25	아동복지법시행령	유	1년	유	유/유	유/유	무	무
26	암관리법시행령	유	무	무	유/유	유/무	무	무
27	약사법시행령(제39조1항)	유	5년	유	유/무	유/무	무	무
28	약사법시행령(제39조2항)	유	1년	유	유/유	유/유	유	무
29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유	2년	유	유/유	유/유	무	무
30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유	무	무	유/유	유/유	유	무
31	의료급여법시행령	유	1년	유	유/유	유/유	무	무
32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 행령	유	1년	유	유/무	유/무	무	무
33	의료법시행령	유	1년	유	유/유	유/유	무	무
34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 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시 행령	유	1년	유	유/유	유/유	유	무
35	의료해외진출및외국인환 자유치지원에관한법률시 행령	유	1년	유	유/유	유/유	무	무
36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 관한법률시행령	유	2년	유	유/유	유/유	무	무
37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시 행령	유	1년	유	유/유	유/유	유	무
38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유	5년	유	유/유	유/유	무	무
39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령	유	1년	유	유/유	유/유	유	무
40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 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 행령	유	무	무	유/유	무/유	무	무
41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유	무	무	유/유	유/유	무	무

번호	법령	구분						
		일반 기준 유무	차수 산정 기준	적발일 기준 유무	감경 /가중	감경 /가중 특례	둘 이상 의 위반 행위	2인 이상 참여
42	장애인연금법시행령	유	1년	유	유/유	유/유	무	무
43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 률시행령	유	1년	유	유/유	유/무	유	무
44	전공의의수련환경개선및지 위향상을위한법률시행령	유	1년	유	유/유	유/유	유	무
45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 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 법률시행령	유	2년	유	유/유	유/유	유	무
46	제대혈관리및연구에관한 법률시행령	유	무	무	유/유	유/유	유	무
47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 매특별법시행령	유	1년	유	유/유	유/유	무	무
48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 에관한법률시행령	유	2년	유	유/유	유/유	무	무
49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유	무	무	유/유	무/유	무	무
50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법시행령	유	무	무	유/유	유/유	무	무
51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 원법시행령	유	무	무	유/유	유/유	무	무
52	혈액관리법시행령	무						
53	호스피스완화의료및임종 과정에있는환자의연명의 료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유	2년	유	유/유	유/유	유	무

## ① 일반기준 설정

일반 기준	유	무
법률 수	51	2

## ② 차수산정기간 설정

차수 산정 기준	무	1년	2년	3년
법률 수	13	26	8	2

## ③ 적발일 기준 설정

적발일 기준	유	무
법률 수	37	14

## ④ 가중/감경 기준 설정

감경/가중	유	무
(감경/가중) 법률 수	51/45	0/6

## ⑤ 가중/감경 특례 기준 설정

감경/가중 특례	유	무
(감경/가중 특례) 법률 수	47/42	4/9

## ⑥ 2 이상의 위반행위 적용 기준 설정

둘 이상의 위반 행위	
유	16
무	35

## ⑦ 2인 이상의 위반행위 기준 설정

설정된 경우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2) 개별기준

## 【분석들 종합】

번호	법령	구분				
		개별 기준 유무	차수 유무	과태료 부과금액 (만원)	법정부과금 액대비율 (차수있을 경우 1차)	차수별비율
1	감염병의예방및관 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유	유	15 30 25 50 50 100 500 1000	15% 25% 50% 50%	1:2
2	검역법시행령	유	무	100 200 700	20% 40% 70%	
3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무	무	300 500	60% 100%	
4	공공보건의료에관 한법률시행령	유	유	75 150 300	25%	1:2:4
5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유	무 -위반행위 가 -위반행위 나./타 -위반행위 다./라. -위반행위 마./바. -위반행위 사./아. -위반행위 자 -위반행위 차./카. -위반행위 파. -위반행위 하.	100 70 50 30 50 70 100 20 50	33% 23.3% 25% 15% 16.6% 35% 33% 10% 50%	
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유	유 - 위반행위 나/라/아/자 - 위반행위	30 60 150 150 300 500 500 500 500	30% 30% 100%	1:2:5 1:2:3:3 1:1:1

번호	법령	구분				
		개별 기준 유무	차수 유무	과태료 부과금액 (만원)	법정부과금 액대비율 (차수있을 경우 1차)	차수별비율
			가/다/마/사 - 위반행위 바.			
7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유	유 - 위반행위 다. 1) - 위반행위 나/사 - 위반행위 가/라/마/바	10 10 10 75 150 300 170 330 500	100% 25% 34%	1:1:1 1:2:4 1:1.9:2.9
			무 - 위반행위 다.2)	10만원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금액		
8	국민연금법시행령	유	유 - 위반행위 나/다/바 - 위반행위 가./마.	3 6 10 17 33 50	30% 34%	1:2:3.3 1:1.9:2.9
			무 - 위반행위 라.	3 6 10	30% 60% 100%	
9	기초연금법시행령	유	유	3 6 10 6 12 20	30% 30%	1:2:3.3
10	노숙인등의복지및 자립지원에관한법 률시행령	유	유	50 70 100 50 100 200	10% 10%	1:1.4:2 1:2:4
11	노인복지법시행령	유	유 - 위반행위 가 - 위반행위 다 - 위반행위 라 - 위반행위 마 - 위반행위 사	150 300 500 25 50 75 100 200 300 150 300 450 100 150 200	30% 12.5% 20% 30% 50%	1:2:3.3 1:2:3 1:2:3 1:2:3 1:1.5:2

번호	법령	구분				
		개별 기준 유무	차수 유무	과태료 부과금액 (만원)	법정부과금 액대비율 (차수있을 경우 1차)	차수별비율
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유	유 - 위반행위 가/나/다/라/마/아1) - 위반행위 바 - 위반행위 사 - 위반행위 아.2)/자	50 100 200 500 500 500 25 50 100 100 200 300	10% 100% 5% 20%	1:2:4 1:1:1 1:2:4 1:2:3
13	노후준비지원법 시행령	유	유	100 200 500	20%	1:2:5
14	대한노인회지원에 관한법률시행령	유	유	100 200 300 300 300 300	33% 100%	1:2:3 1:1:1
15	모자보건법시행령	유	무 - 위반행위 가./다./자. - 위반행위 나./차. - 위반행위 라. - 위반행위 마. - 위반행위 바. - 위반행위 사. - 위반행위 아./카.	100 200 170 150 200 70 50	100% 100% 85% 75% 100% 70% 50%	
16	발달장애인권리보 장및지원에관한법 률시행령	유	유	50 100 200 150 250 300	16.6% 50%	1:2:4 1:1.6:2
17	병원체자원의수집관 리및활용촉진에관한 법률시행령	유	유	100 200 300 300 600 900	33% 30%	1:2:3
18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유	유 -위반행위 가. -위반행위 나./라 -위반행위 다. -위반행위 마.	100 150 300 50 100 150 30 60 100 30 60 100	50% 25% 15% 10%	1:1.5:3 1:2:3 1:2:3.3 1:2:3.3

번호	법령	구분				
		개별 기준 유무	차수 유무	과태료 부과금액 (만원)	법정부과금 액대비율 (차수있을 경우 1차)	차수별비율
19	사회복지사등의처 우및지위향상을위 한법률시행령	유	무	100 200	33% 66%	
20	사회복지사업법시 행령	유	무 -위반행위 가. -위반행위 나. -위반행위 다./라./마./카./타.1) -위반행위 바./타.2) -위반행위 사. -위반행위 아./자./파 -위반행위 차.	150 20 100 200 20 300 50	50% 6.6% 33% 66% 100% 100% 16.6%	
21	사회서비스이용및 이용권관리에관한 법률시행령	유	유	50 100 200 100 200 300	10% 20%	1:2:4 1:2:3
22	생명윤리및안전에 관한법률시행령	유	유 -위반행위 가/타/하/거/너/러 -위반행위 나./카. -위반행위 다/사/차/터1) -위반행위 라1)4)/마 -위반행위 라2) -위반행위 라3)5) -위반행위 바/아/자 -위반행위 파1)/터2) -위반행위 파2)/터3)	100 150 300 30 70 150 50 100 200 70 150 300 20 40 70 30 70 150 50 100 200 10 20 50 20 50 100	20% 15% 25% 23.3% 6.6% 10% 10% 5% 10%	
23	식품등기부활성화 에관한법률시행령	유	유	50 100 150 50 100 200 300 300 300	16.6% 16.6% 100%	1:2:3 1:2:4 1:1:1

번호	법령	구분				
		개별 기준 유무	차수 유무	과태료 부과금액 (만원)	법정부과금 액대비율 (차수있을 경우 1차)	차수별비율
24	실종아동등의보호 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유	유	50 100 200	16.6%	1:2:4
				100 150 200	33%	1:1.5:2
				150 200 300	50%	1:1.3:2
				200 300 400	66%	1:1.5:2
25	아동복지법시행령	유	유	150 300	50%	1:2
				250 500	50%	
				500 1000	50%	
26	압관리법시행령	유	무	100	50%	
27	약사법시행령(제39 조1항)	유	무	과태료 기본금액 +보고기한 경과일수에 따른 가산금액 +위반횟수에 따른 가산금액		
28	약사법시행령(제39 조2항)	유	유	30 45 70	30%	1:1.5:2.3
				50 75 100	50%	1:1.5:2
				100 100 100	100%	1:1:1
29	영유아보육법시행 령	유	유	25 50 75	5%	1:2:3
				50 100 150	10%	1:2:3
				100 200 300	20%	1:2:3
				200 300 500	40%	1:1.5:2.5
				500 500 500	100%	1:1:1
30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행령	유	무	100	33%	
				150	50%	
				200	66%	
31	의료급여법시행령	유	유	30 60 100	30%	1:2:3.3
				500 500 500	100%	1:1:1
32	의료기사등에관한 법률시행령	유	유	20 30 40	20%	1:1.5:2
				80 90 100	80%	1:1.125: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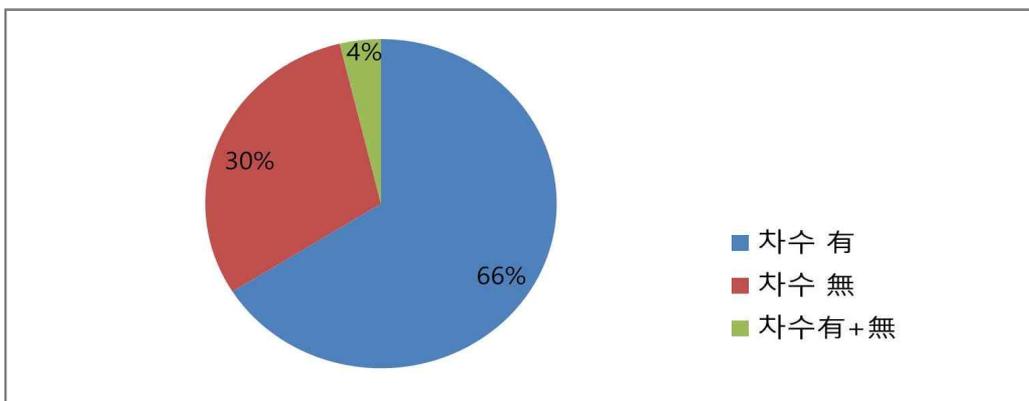
번호	법령	구분				
		개별 기준 유무	차수 유무	과태료 부과금액 (만원)	법정부과금 액대비율 (차수있을 경우 1차)	차수별비율
				300 400 500 500 500 500	60% 100%	1:1.3:1.6 1:1:1
33	의료법시행령	유	유 -위반행위 가)다2)/사)아2)/자1) 6)/거 -위반행위 나 -위반행위 다1) -위반행위 라1)/더1) -위반행위 라2)/파/더2) -위반행위 마/바/아1) -위반행위 자2)3)5) -위반행위 자4) -위반행위 차1) -위반행위 차2)3)/카/타/너/너 -위반행위 하 -위반행위 러.	50 75 100 15 30 60 30 40 50 100 150 200 200 200 200 300 300 300 100 150 200 30 45 60 50 75 100 80 90 100 150 225 300 30 45 70	16.6% 15% 30% 50% 100% 100% 33% 10% 50% 80% 50% 30%	1:1.5:2 1:2:4 1:1.3:1.6 1:1.5:2 1:1:1 1:1:1 1:1.5:2 1:1.5:2 1:1.5:2 1:1.125:1.25 1:1.5:2 1:1.5:2.3
34	의료사고피해구제 및의료분쟁조정등 에관한법률시행령	유	유	100 200 500 300 400 500 300 500 1000 500 500 500	20% 60% 30% 100%	1:2:5 1:1.125:1.25 1:1.25:3.3 1:1:1
35	의료해외진출및외 국인환자유치지원 에관한법률시행령	유	유	50 75 100	10%	1:1.5:2
36	인체조직안전및관 리등에관한법률시 행령	유	유	20 30 50 20 50 100 30 70 150	4% 4% 6%	1:1.5:2.5 1:2.5:5 1:2.3:5

번호	법령	구분				
		개별 기준 유무	차수 유무	과태료 부과금액 (만원)	법정부과금 액대비율 (차수있을 경우 1차)	차수별비율
				50 70 100 70 100 150 100 150 200 150 250 300 150 250 350	10% 12% 30% 50% 50%	1:1.4:2 1:1.4:2.14 1:1.5:2 1:1.6:2 1:1.6:2.3
37	장기등이식에관한 법률시행령	유	유	20 30 50 20 50 100 100 150 200 150 250 300 200 300 500 250 350 500	20% 20% 50% 50% 40% 50%	1:1.5:2.5 1:2.5:5 1:1.5:2 1:1.6:2 1:1.6:2 1:1.4:2
38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유	유	100 150 200 100 200 300 150 200 250 200 250 300	33% 33% 50% 66%	1:1.5:2 1:2:3 1:1.3:1.6 1:1.25:1.5
39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유	유	50 100 200 150 250 300	16.6% 50%	1:2:4 1:1.6:2
4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편의증진보장 에관한법률시행령	유	무	10 50 100 200	5% 25% 50% 100%	
41	장애인복지법시행 령	유	무	150 200 350 700	50% 66% 70% 70%	
42	장애인연금법시행 령	유	유	3 6 10 6 12 20	30% 30%	1:2:3.3
43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법률시행령	유	유	50 100 200 150 250 300		1:2:4 1:1.6:2
44	전공의의수련환경개	유	유	50 75 100	10%	1:1.5:2

번호	법령	구분				
		개별 기준 유무	차수 유무	과태료 부과금액 (만원)	법정부과금 액대비율 (차수있을 경우 1차)	차수별비율
	선및지위향상을위한 법률시행령			100 150 200 100 200 300 100 250 400 200 200 200 200 350 500	20% 20% 20% 40% 40%	1:1.5:2 1:2:3 1:2.5:4 1:1:1 1:1.75:2.5
45	정신건강증진및정 신질환자복지서비 스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유	유	50 70 100 80 90 100 100 100 100	50% 80% 100%	1:1.5:2 1:1.125:1.25 1:1:1
46	제대혈관리및연구 에관한법률시행령	유	무 -위반행위 가.나2)바/사/자/차/타 -위반행위 나.1)3)타 -위반행위 다.1) -위반행위 다.2)아/파/하 -위반행위 라. -위반행위 마.1) -위반행위 마.2)거 -위반행위 너. -위반행위 더./러.	300 600 300 200 150 300 200 500 150	60% 120% 100% 66% 30% 150% 100% 160% 30%	
47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시 행령	유	유	100 200 300		1:2:3
48	지방의료원의설립 및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	유	유	75 150 300	25%	1:2:4
49	한국국제보건의료 재단법시행령	유	무	200 400	40% 80%	

번호	법령	구분				
		개별 기준 유무	차수 유무	과태료 부과금액 (만원)	법정부과금 액대비율 (차수있을 경우 1차)	차수별비율
50	한국보건복지인력 개발원법시행령	유	무	100 200 400	20% 40% 80%	
51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시행령	유	무	200 400	40% 80%	
52	혈액관리법시행령	유	무	100 150 200	50% 75% 100%	
53	호스피스완화의료 및임종과정에있는 환자의연명의료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유	유 -위반행위 가1) -위반행위 가2) -위반행위 나./다./라/사./자. -위반행위 마./바 -위반행위 아.	100 200 300 50 100 200 50 100 200 200 350 500 75 150 250	33% 16.6% 25% 40% 25%	1:2:3 1:2:4 1:2:4 1:1.75:2.5 1:2:3.3

## ① 차수부과 기준 설정



## ② 개별기준상 법정상한금액 대비 1차 부과금액 및 차수산정 비율

## a. 유사명칭 사용금지

번호	법률명	부과금액		법정상한액 대비 별표 상 부과금액 비율(%)	차수 산정 시 부과 비율
		법률상 법정 상한액	하위법령 별표 상 1차 부과금액		
1	공중위생관리법	100	50	50%	
2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 한법률	500	50	10%	1:2:4
3	대한노인회지원에관한법률	300	300	100%	1:1:1
4	모자보건법시행령	100	50	50%	
5	보건의료기술진흥법	300	30	10%	1:2:3.3
6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 을위한법률	300	200 100	66% 33%	
7	사회복지사업법	300	200	66%	
8	아동복지법	300	150	50%	1:2
9	암관리법	200	100	50%	
10	약사법	100	30	33%	1:1.5:2.3
11	응급의료에관한법률	300	150	50%	
12	의료법	100	80	80%	1:1.125:1.25
13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 정등에관한법률	500	500 300	100% 60%	1:1:1 1:1.3:1.6
14	의료해외진출및외국인환자유치 지원에관한법률	500	50	10%	1:1.5:2
15	장애인복지법	300	200	66%	
16	제대혈관리및연구에관한법률	1000	150	15%	
17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500	400 200	80% 40%	
18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500	400 200	80% 40%	
19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500	400 200	80% 40%	

번호	법률명	부과금액		법정상한액 대비 별표 상 부과금액 비율(%)	차수 산정 시 부과 비율
		법률상 법정 상한액	하위법령 별표 상 1차 부과금액		
20	혈액관리법	200	150	75%	
21	호스피스완화의료및임종과정에 있는환자의연명의료결정에관한 법률	200	50	25%	1:2:4

### b. 표시의무위반

번호	법률명	부과금액		법정상한액 대비 별표 상 부과금액 비율(%)	차수 산정 시 부과 비율
		법률상 법정 상한액	하위법령 별표 상 1차 부과금액		
1	고령친화산업진흥법	500	300	60%	
2	공중위생관리법	300	70	23.3%	
3	국민건강증진법	500	170	34%	1:1.9:2.9
4	보건의료기술진흥법	200	50	25%	1:2:3
5	약사법	100	50	50%	1:1.5:2
6	의료법	100	80	80%	1:1.125:1.25
7	장애인노인임상부동의편의증진 보장에관한법률	200	200	100%	

### c. 검사를 방해-기피-회피

번호	법률명	부과금액		법정상한액 대비 별표 상 부과금액 비율(%)	차수 산정 시 부과 비율
		법률상 법정 상한액	하위법령 별표 상 1차 부과금액		
1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300	75	25%	1:2:4
2	공중위생관리법	300	100	33%	
3	국민건강증진법	300	75	25%	1:2:4
4	국민연금법	50(1항)	17	34%	1:1.9:2.9

번호	법률명	부과금액		법정상한액 대비 별표 상 부과금액 비율(%)	차수 산정 시 부과 비율
		법률상 법정 상한액	하위법령 별표 상 1차 부과금액		
		10(2항)	3	30%	1:2:3.3
5	기초연금법	20	6	30%	1:2:3.3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00	100	20%	1:2:3
7	노후준비지원법	500	100	20%	1:2:5
8	모자보건법시행령	200	200	100%	
9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	300	150	50%	1:1.6:2
10	사회복지사업법	20	20	100%	
11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500	100	20%	1:2:3
12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500	100	20%	1:2:5
13	식품등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	300	300	100%	1:1:1
14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500	150	30%	1:1.3:2
15	의료급여법	100	30	30%	1:2:3.3
16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100	80	80%	1:1.125:1.25
17	의료법	200	100 200	50% 100%	1:1.5:2 1:1:1
18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	1000	300	30%	1:1.6:3.3
19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200	100	50%	1:1.5:2
20	장사등에관한법률	300	200	66%	1:1.25:1.5
21	장애아동복지지원법	300	150	50%	1:1.66:2
22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200	200	100%	
23	장애인연금법	20	6	30%	1:2:3.3
24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500	150	30%	1:1.6:2
25	전공의의수련환경개선및지원향상을위한법률	200	200	100%	1:1:1
26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	100	100	100%	1:1:1

번호	법률명	부과금액		법정상한액 대비 별표 상 부과금액 비율(%)	차수 산정 시 부과 비율
		법률상 법정 상한액	하위법령 별표 상 1차 부과금액		
	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27	제대혈관리및연구에관한법률	300	200	66%	
28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 법률	300	75	25%	1:2:4
29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500	200	40%	
30	혈액관리법	200	150	75%	

#### d. 허위자료 및 자료미제출

번호	법률명	부과금액		법정상한액 대비 별표 상 부과금액 비율(%)	차수 산정 시 부과 비율
		법률상 법정 상한액	하위법령 별표 상 1차 부과금액		
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1000(1항) 100(2항)	500 15	50% 15%	1:2 1:2
2	검역법	1000	700	70%	
3	국민건강보험법	500	150	30%	1:2:3.3
4	국민건강증진법	500	170	34%	1:2:4
5	기초연금법	20	6	30%	1:2:3.3
6	노인복지법	500	100	20%	1:2:3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00	50	10%	1:2:4
8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	300	50	16.6%	1:2:4
9	사회복지사업법	20	20	100%	
10	식품등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	300	300	100%	1:1:1
1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 법률	500	150	30%	1:1.3:2
12	약사법	100	50	50%	1:1.5:2
13	의료급여법	100	30	30%	1:2:3.3
14	의료법	200	200	100%	1:1:1

번호	법률명	부과금액		법정상한액 대비 별표 상 부과금액 비율(%)	차수 산정 시 부과 비율
		법률상 법정 상한액	하위법령 별표 상 1차 부과금액		
15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 정등에관한법률	500	100	20%	1:2:5
16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300	30	10%	1:2.3:5
17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500	250	50%	1:1.4:2
18	장사등에관한법률	300	150	50%	1:1.33:1.66
19	장애아동복지지원법	300	50	16.6%	1:2:4
20	장애인연금법	20	6	30%	1:2:3.3
21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500	50	10%	1:2:4
22	전공의의수련환경개선및지위향 상을위한법률	500	200	40%	1:1.75:2.5
		300	100	33%	1:2:3
23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 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100	100	100%	1:1:1
24	제대혈관리및연구에관한법률	500	200	66%	
25	중증장애인생산물우수권매특별	300	100	33%	1:2:3
26	호스피스완화의료및임종과정에 있는환자의연명의료결정에관한 법률	300	50	16.6%	1:2:4

#### e. 공고 또는 게시의무위반

번호	법률명	부과금액		법정상한액 대비 별표 상 부과금액 비율(%)	차수산정 시 부과 비율
		법률상 법정 상한액	하위법령 별표 상 1차 부과금액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00	50	10%	1:2:4
2	모자보건법시행령	200	200	100%	
3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300	70	23.3%	1:1.42:2.1
4	장사등에관한법률	300	150	50%	1:1.33:1.66

## 5. 문화체육관광부

## (1) 법률

## 【분석틀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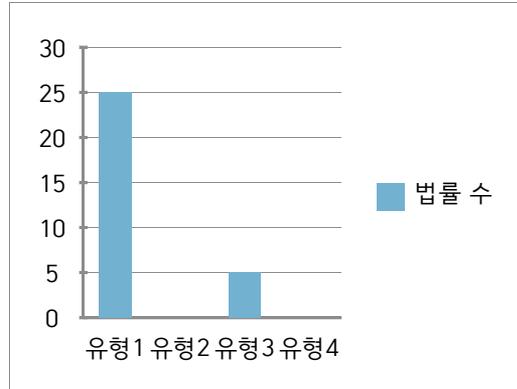
번호	법률	유형	부과금액	부과-징수 주체	위임 하위법령
1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유형1	500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통령령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유형3	1000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대통령령
3	경륜·경정법	유형1	100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통령령
4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유형1	300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대통령령
5	공연법	유형1	2000 1000 300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대통령령
6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유형1	500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통령령
7	관광진흥법	유형1	500 100	관할등록기관	대통령령
8	국민체육진흥법	유형1	500 200 100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장	대통령령
9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유형1	500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통령령
10		유형1	2000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통령령
1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유형1	1000 500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통령령

번호	법률	유형	부과금액	부과·징수 주체	위임 하위법령
12	도서관법	유형1	해당 발행 도서관자 료의 원가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3	문화기본법	유형1	100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유형1	1000 500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대통령령
15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유형1	500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통령령
16	생활체육진흥법	유형1	100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통령령
17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유형1	2000 1000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대통령령
1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에 관한 특별법	유형1	1000 100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광주광역시·군수·구청장	대통령령
19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유형1	3000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통령령
2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유형4	5000 1000 300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대통령령
21	예술인 복지법	유형1	500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통령령
2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유형3	1000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대통령령
23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유형3	1000 300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대통령령
24	저작권법	유형1	3000 1000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통령령
25	지방문화원진흥법	유형1	500	특별자치도지사·시장·	

번호	법률	유형	부과금액	부과-징수 주체	위임 하위법령
				군수·구청장	
26	지역문화진흥법	유형1	1000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대통령령
2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유형1	100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대통령령
28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유형3	300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대통령령
29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유형3	1000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통령령
30	포물리원국제자동차경주대 회지원법	유형1	300	지방자치단체의 장	대통령령
31	한국관광공사법	유형1	300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통령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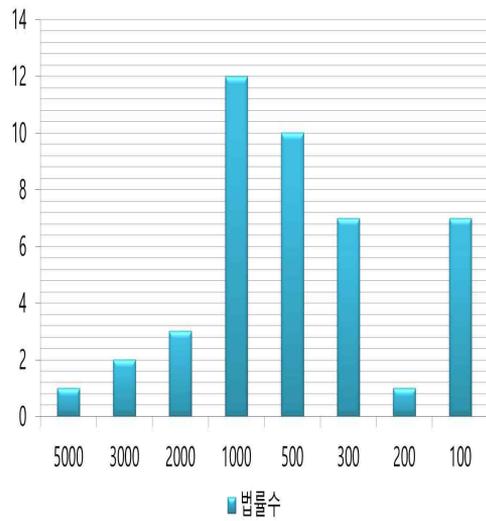
1) 입법유형별 분류

유형	법률 수
<b>유형1</b>	<b>25</b>
유형2	0
유형3	5
유형4	0



2) 금액별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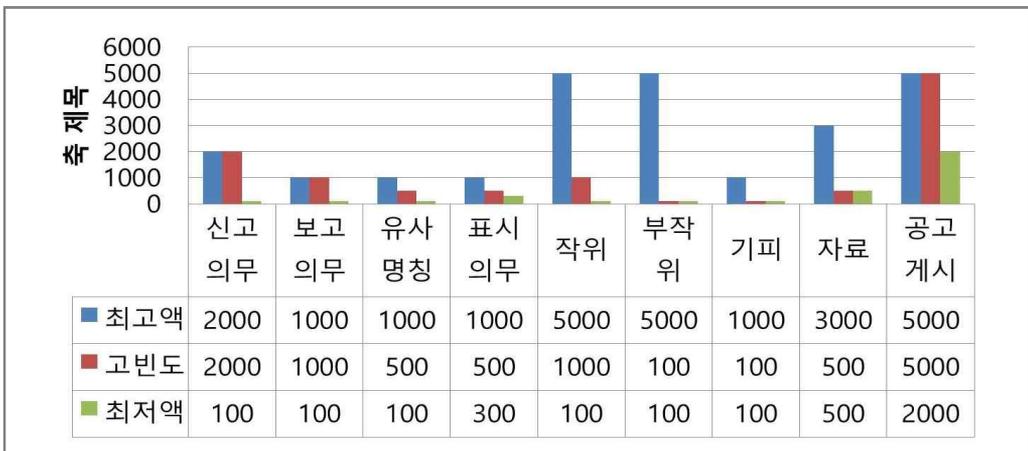
금액	법률 수
5000	1
3000	2
2000	3
<b>1000</b>	<b>12</b>
500	10
300	7
200	1
100	7



아울러 이를 세분화하여 그 의무위반행위별 분포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의무위반행위 유형	부과금액 (만원)	의무위반행위 개수
1. 신고의무위반	<u>2000</u>	<u>9</u>
	1000	8
	500	4
	300	7
	100	3
2. 보고의무위반	<u>1000</u>	<u>4</u>
	500	2
	100	2
3. 유사명칭사용	1000	3
	<u>500</u>	<u>4</u>
	300	1
	100	2
4. 표시의무위반	1000	3
	500	3
	300	2
5. 작위의무위반	5000	2
	3000	2
	2000	3
	<u>1000</u>	<u>18</u>
	500	9
	300	4
	200	1
	100	11
6. 부작위의무위반	5000	1
	2000	2
	1000	5
	500	5
	300	1
	<u>100</u>	<u>8</u>

의무위반행위 유형	부과금액 (만원)	의무위반행위 개수
7. 검사를 방해-기피-회피	1000	1
	500	3
	300	2
	<b>100</b>	<b>4</b>
8. 허위자료 및 자료미제출 또는 보존	3000	2
	1000	2
	<b>500</b>	<b>3</b>
9. 공고 또는 게시의무 위반	<b>5000</b>	<b>3</b>
	3000	1
	2000	2



### 3) 하위법령에로의 위임규정이 없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과태료관련 법률은 다수가 하위법령(대통령령)에 그 구체적 사항을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아래와 같은 법률 등은 별도의 위임규정을 두지 않고 법률상 규정에 한정하고 있다.

번호	법률	해당 조문 [각호 생략]
1	도서관법	제47조(과태료) ①제20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해당 도서관자료 정가(그 도서관자료가 비매자료인 경우에는 해당 발행 도서관자료의 원가)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2	문화기본법	제13조의2(과태료) ①제11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3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20조(과태료) ①제4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2) 하위법령

### 1) 일반기준

#### 【분석틀 종합】

번호	법령	구분						
		일반기준 유무	차수산 정기준	적발일 기준 유무	감경 /가중	감경 /가중 특례	둘 이상의 위반 행위	2인 이상 참여
1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 회지원등에관한특별법	유	1년	유	유/무	무/무	무	무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시행령	무						
3	경륜경정법시행령	무						
4	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 특별법시행령	유	2년	유	유/유	유/유	무	무
5	공연법시행령	유	3년	유	유/유	유/유	무	무

번호	법령	구분						
		일반기준 유무	차수산정기준	적발일 기준 유무	감경/가중	감경/가중 특례	둘 이상의 위반 행위	2인 이상 참여
6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유	1년	유	유/유	유/유	무	무
7	관광진흥법시행령	유	2년	유	유/무	유/무	무	무
8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무						
9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시행령	유	1년	유	유/유	유/유	무	무
10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	유	1년	유	유/유	유/유	무	무
11	문화예술후원활성화에 관한법률시행령	유	1년	유	유/무	유/유	무	무
12	생활체육진흥법시행령	유	1년	유	유/유	무/유	무	무
13	신문등의진흥에관한 법률시행령	유	무	무	유/유	무/유	유	무
14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시행령	유	1년	유	유/유	유/유	무	무
15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시행령	무						
16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무						
17	예술인복지법시행령	유	3년	유	유/유	유/유	무	무
1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유	1년	유	유/유	유/유	무	무
19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유	무	무	유/유	유/유	무	무
20	저작권법시행령 (제77조1항)	유	무	무	유/유	유/유	무	무
21	저작권법시행령 (제77조2항)	유	1년	유	무/유	무/유	유	무
22	지역문화진흥법시행령	유	1년	유	유/유	유/유	무	무

번호	법령	구분						
		일반기준 유무	차수산정기준	적발일 기준 유무	감경/가중	감경/가중 특례	둘 이상의 위반 행위	2인 이상 참여
23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법률시행령	유	1년	유	유/무	유/무	무	무
24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유	무	무	유/유	유/유	무	무
25	태권도진흥및태권도공 원조성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무						

## ① 일반기준 설정

일반 기준	유	무
법률 수	18	6

## ② 차수산정기간 설정

차수 산정 기준	무	1년	2년	3년
법률 수	4	10	2	2

## ③ 적발일 기준 설정

적발일 기준	유	무
법률 수	14	4

## ④ 가중/감경 기준 설정

감경/가중	유	무
(감경/가중) 법률 수	17/15	1/3

## ⑤ 가중/감경 특례 기준 설정

감경/가중 특례	유	무
(감경/가중 특례) 법률 수	15/16	3/2

## ⑥ 2 이상의 위반행위 적용 기준 설정

둘 이상의 위반 행위	
유	2
무	16

## ⑦ 2인 이상의 위반행위 기준 설정

설정된 경우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2) 개별기준

## 【분석틀 종합】

번호	법령	구분				
		개별 기준 유무	차수 유무	과태료 부과금액 (만원)	법정부과금 액대비율 (차수있을 경우 1차)	차수별비율
1	감염병의예방및관리 에관한법률시행령	유	유	15 30 25 50 50 100 500 1000	15% 25% 50% 50%	1:2
2	검역법시행령	유	무	100 200 700	20% 40% 70%	
3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무	무	300 500	60% 100%	

번호	법령	구분				
		개별 기준 유무	차수 유무	과태료 부과금액 (만원)	법정부과금액 대비율 (차수있을 경우 1차)	차수별비율
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시행령	유	유	75 150 300	25%	1:2:4
5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유	무 -위반행위 가 -위반행위 나./타 -위반행위 다./라. -위반행위 마./바. -위반행위 사./아. -위반행위 자 -위반행위 차./카. -위반행위 파. -위반행위 하.	100 70 50 30 50 70 100 20 50	33% 23.3% 25% 15% 16.6% 35% 33% 10% 50%	
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유	유 - 위반행위 나라/야자 - 위반행위 가다/마사 - 위반행위 바.	30 60 150 150 300 500 500 500 500	30% 30% 100%	1:2:5 1:2:3.3 1:1:1
7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유	유 - 위반행위 다. 1) - 위반행위 나사 - 위반행위 가라/마바  무 - 위반행위 다.2)	10 10 10 75 150 300 170 330 500	100% 25% 34%	1:1:1 1:2:4 1:1.9:2.9
8	국민연금법시행령	유	유 - 위반행위 나/다/바 - 위반행위 가./마.  무 - 위반행위 라.	3 6 10 17 33 50  3 6	30% 34%  30%	1:2:3.3 1:1.9:2.9

번호	법령	구분				
		개별 기준 유무	차수 유무	과태료 부과금액 (만원)	법정부과금액 대비율 (차수있을 경우 1차)	차수별비율
				10	60% 100%	
9	기초연금법시행령	유	유	3 6 10 6 12 20	30% 30%	1:2:3:3
10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유	유	50 70 100 50 100 200	10% 10%	1:1.4:2 1:2:4
11	노인복지법시행령	유	유 - 위반행위 가 - 위반행위 다 - 위반행위 라 - 위반행위 마 - 위반행위 사	150 300 500 25 50 75 100 200 300 150 300 450 100 150 200	30% 12.5% 20% 30% 50%	1:2:3:3 1:2:3 1:2:3 1:2:3 1:1.5:2
12	노안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유	유 - 위반행위 가/나/다/라/마/아1) - 위반행위 바 - 위반행위 사 - 위반행위 아.2)/자	50 100 200 500 500 500 25 50 100 100 200 300	10% 100% 5% 20%	1:2:4 1:1:1 1:2:4 1:2:3
13	노후준비지원법시행령	유	유	100 200 500	20%	1:2:5
14	대한노인회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유	유	100 200 300 300 300 300	33% 100%	1:2:3 1:1:1
15	모자보건법시행령	유	무 - 위반행위 가./다./자. - 위반행위 나./차. - 위반행위 라. - 위반행위 마.	100 200 170 150 200	100% 100% 85% 75% 100%	

번호	법령	구분				
		개별 기준 유무	차수 유무	과태료 부과금액 (만원)	법정부과금 액대비율 (차수있을 경우 1차)	차수별비율
			- 위반행위 바. - 위반행위 사. - 위반행위 아./카.	70 50	70% 50%	
16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유	유	50 100 200 150 250 300	16.6% 50%	1:2:4 1:1.6:2
17	병원체자원의수집관리 및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유	유	100 200 300 300 600 900	33% 30%	1:2:3
18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유	유 -위반행위 가. -위반행위 나./라 -위반행위 다. -위반행위 마.	100 150 300 50 100 150 30 60 100 30 60 100	50% 25% 15% 10%	1:1.5:3 1:2:3 1:2:3.3 1:2:3.3
19	사회복지사등의처우 및지위향상을위한 법률시행령	유	무	100 200	33% 66%	
20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유	무 -위반행위 가. -위반행위 나. -위반행위 다./라./마./카./타.1) -위반행위 바./타.2) -위반행위 사. -위반행위 아./자./파 -위반행위 차.	150 20 100 200 20 300 50	50% 6.6% 33% 66% 100% 100% 16.6%	
21	사회서비스이용및이 용권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유	유	50 100 200 100 200 300	10% 20%	1:2:4 1:2:3

번호	법령	구분				
		개별 기준 유무	차수 유무	과태료 부과금액 (만원)	법정부과금액 대비율 (차수있을 경우 1차)	차수별비율
22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시행령	유	유 -위반행위 가/타/하/거/너/러 -위반행위 나./카. -위반행위 다/사/차/더1) -위반행위 라1)4)/마 -위반행위 라2) -위반행위 라3)5) -위반행위 바/아/자 -위반행위 파1)/더2) -위반행위 파2)/더3)	100 150 300 30 70 150 50 100 200 70 150 300 20 40 70 30 70 150 50 100 200 10 20 50 20 50 100	20% 15% 25% 23.3% 6.6% 10% 10% 5% 10%	
23	식품등기부활성화에 관한법률시행령	유	유	50 100 150 50 100 200 300 300 300	16.6% 16.6% 100%	1:2:3 1:2:4 1:1:1
24	실종아동등의보호및 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유	유	50 100 200 100 150 200 150 200 300 200 300 400	16.6% 33% 50% 66%	1:2:4 1:1.5:2 1:1.3:2 1:1.5:2
25	아동복지법시행령	유	유	150 300 250 500 500 1000	50% 50% 50%	1:2
26	암관리법시행령	유	무	100	50%	
27	약사법시행령(제39조 1항)	유	무	과태료 기본금액 +보고기한 경과일수에 따른 가산금액 +위반횟수에 따른 가산금액		

번호	법령	구분				
		개별 기준 유무	차수 유무	과태료 부과금액 (만원)	법정부과금 액대비율 (차수있을 경우 1차)	차수별비율
28	약사법시행령(제39조 2항)	유	유	30 45 70	30%	1:1.5:2.3
				50 75 100	50%	1:1.5:2
				100 100 100	100%	1:1:1
29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유	유	25 50 75	5%	1:2:3
				50 100 150	10%	1:2:3
				100 200 300	20%	1:2:3
				200 300 500	40%	1:1.5:2.5
				500 500 500	100%	1:1:1
30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행령	유	무	100	33%	
				150	50%	
				200	66%	
31	의료급여법시행령	유	유	30 60 100	30%	1:2:3.3
				500 500 500	100%	1:1:1
32	의료기사등에관한 법률시행령	유	유	20 30 40	20%	1:1.5:2
				80 90 100	80%	1:1.125:1.25
				300 400 500	60%	1:1.3:1.6
				500 500 500	100%	1:1:1
33	의료법시행령	유	유			
			-위반행위 가/다2)/사/아2)/자1) 6)/거	50 75 100	16.6%	1:1.5:2
			-위반행위 나	15 30 60	15%	1:2:4
			-위반행위 다1)	30 40 50	30%	1:1.3:1.6
			-위반행위 라1)/더1)	100 150 200	50%	1:1.5:2
			-위반행위 라2)/파/더2)	200 200 200	100%	1:1:1
			-위반행위 마/바/아1)	300 300 300	100%	1:1:1
			-위반행위 자2)3)5) -위반행위 자4)	100 150 200 30 45 60	33% 10%	1:1.5:2 1: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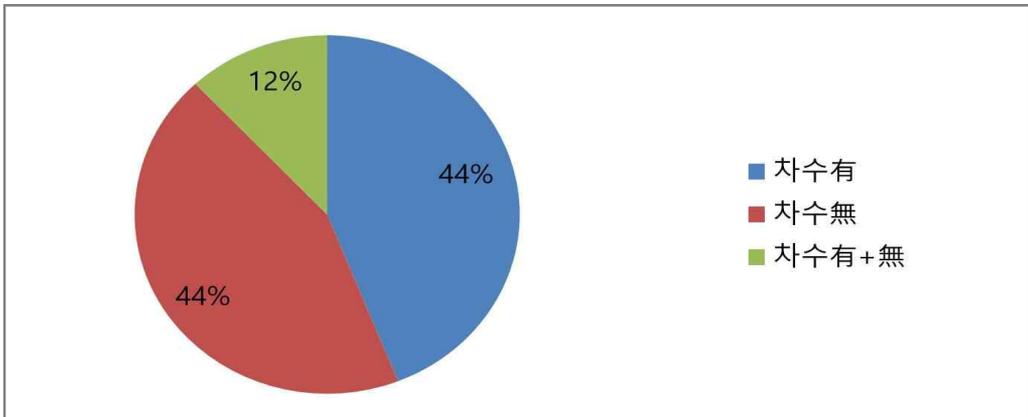
번호	법령	구분				
		개별 기준 유무	차수 유무	과태료 부과금액 (만원)	법정부과금액 대비율 (차수있을 경우 1차)	차수별비율
			-위반행위 차1) -위반행위 차2)3)/카/타/너/너 -위반행위 하 -위반행위 리.	50 75 100 80 90 100 150 225 300 30 45 70	50% 80% 50% 30%	1:1.5:2 1:1.125:1.25 1:1.5:2 1:1.5:2.3
34	의료사고피해구제및 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유	유	100 200 500 300 400 500 300 500 1000 500 500 500	20% 60% 30% 100%	1:2:5 1:1.125:1.25 1:1.25:3.3 1:1:1
35	의료해외진출및외국인환자유치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유	유	50 75 100	10%	1:1.5:2
36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유	유	20 30 50 20 50 100 30 70 150 50 70 100 70 100 150 100 150 200 150 250 300 150 250 350	4% 4% 6% 10% 12% 30% 50% 50%	1:1.5:2.5 1:2.5:5 1:2.3:5 1:1.4:2 1:1.4:2.14 1:1.5:2 1:1.6:2 1:1.6:2.3
37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시행령	유	유	20 30 50 20 50 100 100 150 200 150 250 300 200 300 500 250 350 500	20% 20% 50% 50% 40% 50%	1:1.5:2.5 1:2.5:5 1:1.5:2 1:1.6:2 1:1.6:2 1:1.4:2
38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유	유	100 150 200 100 200 300 150 200 250 200 250 300	33% 33% 50% 66%	1:1.5:2 1:2:3 1:1.3:1.6 1:1.25:1.5

번호	법령	구분				
		개별 기준 유무	차수 유무	과태료 부과금액 (만원)	법정부과금 액대비율 (차수있을 경우 1차)	차수별비율
39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유	유	50 100 200 150 250 300	16.6% 50%	1:2:4 1:1.6:2
40	장애인노인임산부등 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시행령	유	무	10 50 100 200	5% 25% 50% 100%	
41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유	무	150 200 350 700	50% 66% 70% 70%	
42	장애인연금법시행령	유	유	3 6 10 6 12 20	30% 30%	1:2:3.3
43	장애인활동지원에관 한법률시행령	유	유	50 100 200 150 250 300		1:2:4 1:1.6:2
44	전공의의수련환경개선 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 시행령	유	유	50 75 100 100 150 200 100 200 300 100 250 400 200 200 200 200 350 500	10% 20% 20% 20% 40% 40%	1:1.5:2 1:1.5:2 1:2:3 1:2.5:4 1:1:1 1:1.75:2.5
45	정신건강증진및정신 질환자복지서비스지 원에관한법률시행령	유	유	50 70 100 80 90 100 100 100 100	50% 80% 100%	1:1.5:2 1:1.125:1.25 1:1:1
46	제대혈관리및연구에 관한법률시행령	유	무 -위반행위 가/나2)/바/사/자/차/ 타 -위반행위 나.1)3)/타	300 600	60% 120%	

번호	법령	구분				
		개별 기준 유무	차수 유무	과태료 부과금액 (만원)	법정부과금액 대비율 (차수있을 경우 1차)	차수별비율
			-위반행위 다.1) -위반행위 다.2)아/파/하 -위반행위 라. -위반행위 마.1) -위반행위 마.2)/거 -위반행위 너. -위반행위 더./러.	300 200 150 300 200 500 150	100% 66% 30% 150% 100% 160% 30%	
47	중증장애인생산품우 선구매특별법시행령	유	유	100 200 300		1:2:3
48	지방의료원의설립및 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	유	유	75 150 300	25%	1:2:4
49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시행령	유	무	200 400	40% 80%	
50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시행령	유	무	100 200 400	20% 40% 80%	
51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시행령	유	무	200 400	40% 80%	
52	혈액관리법시행령	유	무	100 150 200	50% 75% 100%	
53	호스피스완화의료및 임종과정에있는환자의연명의료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유	유 -위반행위 가1) -위반행위 가2) -위반행위 나./다./라/사./자.	100 200 300 50 100 200 50 100 200	33% 16.6% 25%	1:2:3 1:2:4 1:2:4

번호	법령	구분				
		개별 기준 유무	차수 유무	과태료 부과금액 (만원)	법정부과금액 대비율 (차수있을 경우 1차)	차수별비율
			-위반행위 마./바 -위반행위 아.	200 350 500 75 150 250	40% 25%	1:1.75:2.5 1:2:3.3

① 차수부과 기준 설정



② 개별기준상 법정상한금액 대비 1차 부과금액 및 차수산정 비율

a. 유사명칭 사용금지

번호	법률명	부과금액		법정상한액 대비 별표 상 부과금액 비율(%)	차수 산정 시 부과 비율
		법률상 법정 상한액	하위법령 별표 상 1차 부과금액		
1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지원등에관한특별법	500	300 100	60% 20%	
2	문화산업진흥기본법	1000	700	70%	

번호	법률명	부과금액		법정상한액 대비 별표 상 부과금액 비율(%)	차수 산정 시 부과 비율
		법률상 법정 상한액	하위법령 별표 상 1차 부과금액		
		500	300	60%	
3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	100	25	25%	1:1.4:2
4	예술인복지법	500	100	20%	1:2:3
5	저작권법	1000	100	10%	1:3:5
6	태권도진흥및태권도공원조성등에관한 법률	1000	500	50%	
			300	30%	

**b. 표시의무위반**

번호	법률명	부과금액		법정상한액 대비 별표 상 부과금액 비율(%)	차수산정 시 부과 비율
		법률상 법정 상한액	하위법령 별표 상 1차 부과금액		
1	공예문화산업진흥법	500	100	20%	1:2:3
2	관광진흥법	100	30	30%	1:2:3.3
3	문화산업진흥기본법	500	100	20%	1:2:3
4	문화예술후원활성화에관한법률	500	200	40%	1:1.5:2.5
5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1000	150	15%	1:1.3:2
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1000	100	10%	1:2:3
7	출판문화산업진흥법	300	100	33%	

**c. 검사를 방해-기피-회피**

번호	법률명	부과금액		법정상한액 대비 별표 상 부과금액 비율(%)	차수 산정 시 부과 비율
		법률상 법정 상한액	하위법령 별표 상 1차 부과금액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1000	1000	100%	
2	경륜경정법	100	50	50%	

번호	법률명	부과금액		법정상한액 대비 별표 상 부과금액 비율(%)	차수 산정 시 부과 비율
		법률상 법정 상한액	하위법령 별표 상 1차 부과금액		
3	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	300	100	33%	1:2:3
4	공연법	1000	100	10%	1:1.5:2
5	국민체육진흥법	100	100	100%	
6	문화산업진흥기본법	500	50	10%	1:2:4
7	생활체육진흥법	100	25	25%	1:2:4
8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	1000	150	15%	1:1.3:1.6

#### d. 허위자료 및 자료미제출

번호	법률명	부과금액		법정상한액 대비 별표 상 부과금액 비율(%)	차수 산정 시 부과 비율
		법률상 법정 상한액	하위법령 별표 상 1차 부과금액		
1	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	300	100	33%	1:2:3
2	국민체육진흥법	500	200	40%	
3	문화산업진흥기본법	500	50	10%	1:2:4
4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2000	700	35%	
5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3000	3000	100%	
6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1000	30	3%	
			60	6%	
7	예술인복지법	500	100	20%	1:2:3
			200	40%	1:1.5:2
8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300	200	66%	

## e. 공고 또는 게시의무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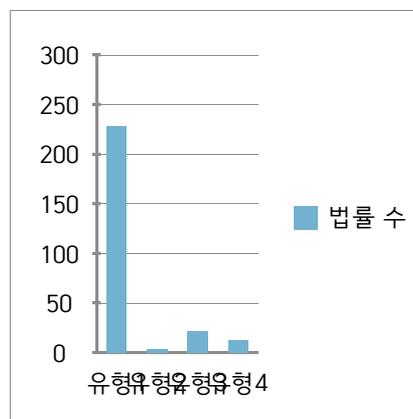
번호	법률명	부과금액		법정상한액 대비 별표 상 부과금액 비율(%)	차수산정 시 부과 비율
		법률상 법정 상한액	하위법령 별표 상 1차 부과금액		
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500	100	20%	1:2:3
2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2000	700	35%	
3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3000	3000	100%	
4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5000	150 500	3% 10%	1:2:3.3 1:1.6:2
5	저작권법	1000	100	10%	1:2:3

## Ⅲ. 소관 부처별 법령 분석 현황 종합

## 1. 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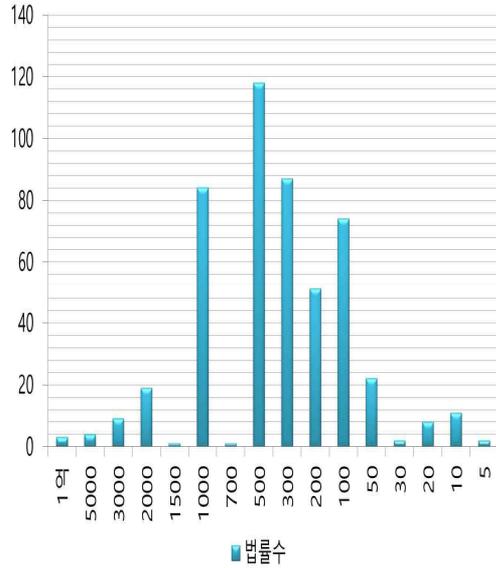
## a. 유형별분류

유형	법률 수
유형1	228
유형2	4
유형3	22
유형4	13



**b. 금액별 분류**

금액	법률 수
1억	3
5000	4
3000	9
2000	19
1500	1
1000	84
700	1
<b>500</b>	<b>118</b>
300	87
200	51
100	74
50	22
30	2
20	8
10	11
5	2



**2. 하위법령**

**a. 개별기준**

① 일반기준 설정

일반 기준	유	무
법률 수	195	21

② 차수산정기간 설정

차수 산정 기준	무	1년	2년	3년
법률 수	30	133	18	12

③ 적발일 기준 설정

적발일 기준	유	무
법률 수	163	32

## ④ 가중/감경 기준 설정

감경/가중	유	무
(감경/가중) 법률 수	192/131	3/64

## ⑤ 가중/감경 특례 기준 설정

감경/가중 특례	유	무
(감경/가중 특례) 법률 수	164/128	31/67

## ⑥ 2 이상의 위반행위 적용 기준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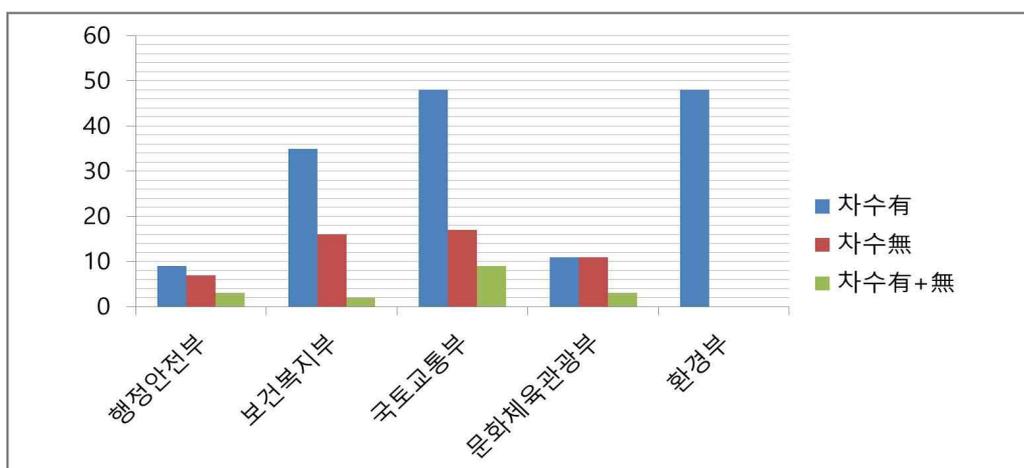
둘 이상의 위반 행위	
유	61
무	134

## ⑦ 2인 이상의 위반행위 기준 설정

조사대상 5개 부처에서는 설정된 경우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b. 개별기준

## ① 차수부과 기준 설정



② 개별기준상 법정상한금액 대비 1차 부과금액 비율 (5개부처 종합)

1. 유사명칭 사용금지

번호	법률명	부과금액		법정상한액 대비 별표 상 부과금액 비율(%)	차수 산정 시 부과 비율
		법률상 법정 상한액	하위법령 별표 상 1차 부과금액		
1	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500	200	40%	1:1.5:2.5
2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300	100	33%	1:2:3
3	행정사법	500	125	25%	1:2:4
4	공중위생관리법	100	50	50%	
5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500	50	10%	1:2:4
6	대한노인회지원에관한법률	300	300	100%	1:1:1
7	모자보건법시행령	100	50	50%	
8	보건의료기술진흥법	300	30	10%	1:2:3.3
9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	300	200 100	66% 33%	
10	사회복지사업법	300	200	66%	
11	아동복지법	300	150	50%	1:2
12	암관리법	200	100	50%	
13	약사법	100	30	33%	1:1.5:2.3
14	응급의료에관한법률	300	150	50%	
15	의료법	100	80	80%	1:1.125:1.25
16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	500	500 300	100% 60%	1:1:1 1:1.3:1.6
17	의료해외진출및외국인환자유치지원에관한법률	500	50	10%	1:1.5:2
18	장애인복지법	300	200	66%	
19	제대혈관리및연구에관한법률	1000	150	15%	

번호	법률명	부과금액		법정상한액 대비 별표 상 부과금액 비율(%)	차수 산정 시 부과 비율
		법률상 법정 상한액	하위법령 별표 상 1차 부과금액		
20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500	400 200	80% 40%	
21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500	400 200	80% 40%	
22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500	400 200	80% 40%	
23	혈액관리법	200	150	75%	
24	호스피스완화의료및임종과정에 있는환자의연명의료결정에관한 법률	200	50	25%	1:2:4
25	2015세계물포럼지원특별법	300	300 100	100% 33%	- 1:2:3
26	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	500	500	100%	
27	건축사법	100	50	50%	1:1.4:2
28	공공토지의비축에관한법률	500	100	20%	1:3:5
29	공동주택관리법	1000	1000	100%	
30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2000	100	5%	
31	부동산투자회사법	1000	600	60%	1:1.3:1.6
32	항공안전기술원법	100	100	100%	
33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 럴림픽대회지원등에관한특별법	500	300 100	60% 20%	
34	문화산업진흥기본법	1000 500	700 300	70% 60%	
35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관한 특별법	100	25	25%	1:1.4:2
36	예술인복지법	500	100	20%	1:2:3
37	저작권법	1000	100	10%	1:3:5
38	태권도진흥및태권도공원조성등 에관한법률	1000	500 300	50% 30%	

번호	법률명	부과금액		법정상한액 대비 별표 상 부과금액 비율(%)	차수 산정 시 부과 비율
		법률상 법정 상한액	하위법령 별표 상 1차 부과금액		
39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설립및 운영에관한법률	500	100 50	20% 10%	1:3:5 1:3:5
40	국립생태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 법률	500	100 50	20% 10%	1:3:5 1:3:5
41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500	100 50	20% 10%	1:3:5 1:3:5
42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	300	300	100%	1:1:1
43	환경영향평가법	1000	500	50%	1:1.4:2

## 2. 표시의무위반

번호	법률명	부과금액		법정상한액 대비 별표 상 부과금액 비율(%)	차수 산정 시 부과 비율
		법률상 법정 상한액	하위법령 별표 상 1차 부과금액		
1	개인정보보호법	3000	600	20%	1:2:4
2	급경사지재해예방에관한법률	200	50	25%	1:2:4
3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500	400	80%	
4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 산업진흥에관한법률	500	8~35 35~65 65~130 130~ 5~15 50~80 80~ 8~15 15~35 35~80 80~	1.6% 7% 13% 26% 1% 10% 16% 1.6% 3% 7% 16%	

번호	법률명	부과금액		법정상한액 대비 별표 상 부과금액 비율(%)	차수 산정 시 부과 비율
		법률상 법정 상한액	하위법령 별표 상 1차 부과금액		
			20~100 100~250 250~500 20~100	4% 20% 50% 4%	
5	재해구호법	500	75	15%	1:2:4
6	고령친화산업진흥법	500	300	60%	
7	공중위생관리법	300	70	23.3%	
8	국민건강증진법	500	170	34%	1:1.9:2.9
9	보건의료기술진흥법	200	50	25%	1:2:3
10	약사법	100	50	50%	1:1.5:2
11	의료법	100	80	80%	1:1.125:1.25
12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200	200	100%	
13	간선급행버스체계의건설및운영에관한특별법	500	10	2%	1:1.5:2
14	공인중개사법	100	50	50%	
15	공항시설법	500	50	10%	1:5:10
16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200	100	50%	1:2
17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2000	50 100	2.5% 5%	
18	물류정책기본법	200	200	100%	
19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	3000	500	16.6%	1:2:4
20	스마트도시의조성및산업진흥등에관한법률	500	200	40%	1:1.5:2.5
2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500	10	2%	1:1.5:2
22	자동차관리법	100 50	30 10	30% 20%	
23	주차장법	50	50 10	100% 20%	

번호	법률명	부과금액		법정상한액 대비 별표 상 부과금액 비율(%)	차수 산정 시 부과 비율
		법률상 법정 상한액	하위법령 별표 상 1차 부과금액		
24	철도안전법	1000	125	12.5%	1:2:4
25	한옥등건축자산의진흥에관한법률	500	50	10%	1:2:4
26	항공안전법	100	10	10%	1:5:10
27	공예문화산업진흥법	500	100	20%	1:2:3
28	관광진흥법	100	30	30%	1:2:3.3
29	문화산업진흥기본법	500	100	20%	1:2:3
30	문화예술후원활성화에관한법률	500	200	40%	1:1.5:2.5
31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1000	150	15%	1:1.3:2
3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1000	100	10%	1:2:3
33	출판문화산업진흥법	300	100	33%	
34	대기환경보전법	500	200	40%	1:1.5:2:2.5
35	소음진동관리법	300	75	25%	1:2:4
36	수도법	300	200	66%	1:1.25:1.5
37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00	50	50%	1:2:2
38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00	50	16.6%	1:3:6
39	환경교육진흥법	20	10	50%	1:1:2
40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	100	50	50%	1:1.4:2

### 3. 검사를 방해·기피·회피

번호	법률명	부과금액		법정상한액 대비 별표 상 부과금액 비율(%)	차수 산정 시 부과 비율
		법률상 법정 상한액	하위법령 별표 상 1차 부과금액		
1	개인정보보호법	1000	200	20%	1:2:4
2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 법률	500	500	100%	

번호	법률명	부과금액		법정상한액 대비 별표 상 부과금액 비율(%)	차수 산정 시 부과 비율
		법률상 법정 상한액	하위법령 별표 상 1차 부과금액		
3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300	100	33%	1:2:3
4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500	30	6%	1:2:10
5	재해구호법	500	125	25%	1:2:4
6	저수지댐의안전관리및재해예방에관한법률	300	300	100%	
7	접경지역지원특별법	200	70	35%	1:1.7:2.8
8	지방공기업법	200	50	25%	1:2:4
			40	20%	1:2:4
			30	15%	1:2:4
			25	12.5%	1:2:4
9	지방세기본법	300	200	66%	1:1.5:2.5
10	행정사법	500	125	25%	1:2:4
11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300	75	25%	1:2:4
12	공중위생관리법	300	100	33%	
13	국민건강증진법	300	75	25%	1:2:4
14	국민연금법	50(1항)	17	34%	1:1.9:2.9
		10(2항)	3	30%	1:2:3.3
15	기초연금법	20	6	30%	1:2:3.3
1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00	100	20%	1:2:3
17	노후준비지원법	500	100	20%	1:2:5
18	모자보건법시행령	200	200	100%	
19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	300	150	50%	1:1.6:2
20	사회복지사업법	20	20	100%	
21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500	100	20%	1:2:3
22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500	100	20%	1:2:5
23	식품등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	300	300	100%	1:1:1
24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500	150	30%	1:1.3:2

번호	법률명	부과금액		법정상한액 대비 별표 상 부과금액 비율(%)	차수 산정 시 부과 비율
		법률상 법정 상한액	하위법령 별표 상 1차 부과금액		
25	의료급여법	100	30	30%	1:2:3.3
26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100	80	80%	1:1.125:1.25
27	의료법	200	100 200	50% 100%	1:1.5:2 1:1:1
28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 조정등에관한법률	1000	300	30%	1:1.6:3.3
29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200	100	50%	1:1.5:2
30	장사등에관한법률	300	200	66%	1:1.25:1.5
31	장애아동복지지원법	300	150	50%	1:1.66:2
32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200	200	100%	
33	장애인연금법	20	6	30%	1:2:3.3
34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500	150	30%	1:1.6:2
35	전공의의수련환경개선및지원향상을위한법률	200	200	100%	1:1:1
36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100	100	100%	1:1:1
37	제대혈관리및연구에관한법률	300	200	66%	
38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300	75	25%	1:2:4
39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500	200	40%	
40	혈액관리법	200	150	75%	
41	간선급행버스체계의건설및운영에관한특별법	500	50	10%	1:1.4:2
42	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	500	200	40%	1:1.5:2
43	건설기계관리법	300	300	100%	1:1:1
44	건설산업기본법	500	150	30%	1:2:3.3
45	건축법	200	50	25%	1:2:4

번호	법률명	부과금액		법정상한액 대비 별표 상 부과금액 비율(%)	차수 산정 시 부과 비율
		법률상 법정 상한액	하위법령 별표 상 1차 부과금액		
46	건축사법	100	50 100	50% 100%	
47	골재채취법	500	50	10%	1:3:10
48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 한법률	300	25	8.3%	1:2:4
49	공동주택관리법	500	300	60%	1:1.3:1.6
50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별법	300	100	33%	1:2:3
5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200	200	100%	
52	공인중개사법	500	200	40%	
53	공항소음방지및소음대책지역 지원에관한법률	500	100	20%	1:3:5
54	교통안전법	500	300	60%	
55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200	100	50%	1:2
5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300	300	100%	1:1:1
5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1000	300	30%	
58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 관한법률	500	100	20%	1:1.5:2
59	도시개발법	1000	200 200	20%	1:2:3 1:2:4
60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 법률	300	50	16.6%	1:2:4
61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500	100	20%	1:2:3
62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 관한법률	1000	800 200	80% 20%	- 1:2.5:10
63	부동산투자회사법	1000	600	60%	1:1.3:1.6
64	수자원의조사계획및관리에관 한법률	100	30	30%	1:1.3:2
65	스마트도시의조성및산업진흥 등에관한법률	500	200	40%	1:1.5:2.5

번호	법률명	부과금액		법정상한액 대비 별표 상 부과금액 비율(%)	차수 산정 시 부과 비율
		법률상 법정 상한액	하위법령 별표 상 1차 부과금액		
66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300	300	100%	
6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500	200	40%	1:1.5:2.5
68	자동차관리법	100	100	100%	
6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00	200	66%	
70	장애인고령자등주거약자지원 에관한법률	500	100	20%	1:2:3
71	조경진흥법	200	50	25%	1:2:4
72	주차장법	50	50	100%	
73	지역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1000	200 200	20% 20%	1:2:3 1:2:4
74	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	300	30	10%	1:1.6:3.3
75	지하수법	500	200	40%	1:1.5:2
76	철도사업법	500	300	60%	
77	철도안전법	1000	125	12.5%	1:2:4
78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100	50	50%	1:1.5:2
79	택지개발촉진법	1000	200	20%	1:2:4
80	하천법	100	50	50%	1:1.2:1.6
81	항공철도사고조사에관한법률	1000	250	25%	1:2:4
8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500	100	20%	
8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1000	1000	100%	
84	경륜경정법	100	50	50%	
85	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	300	100	33%	1:2:3
86	공연법	1000	100	10%	1:1.5:2
87	국민체육진흥법	100	100	100%	
88	문화산업진흥기본법	500	50	10%	1:2:4
89	생활체육진흥법	100	25	25%	1:2:4
90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관 한특별법	1000	150	15%	1:1.3:1.6
100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 한법률	100	100	100%	1:1:1

번호	법률명	부과금액		법정상한액 대비 별표 상 부과금액 비율(%)	차수 산정 시 부과 비율
		법률상 법정 상한액	하위법령 별표 상 1차 부과금액		
101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설립 및운영에관한법률	500	100	20%	1:3:5
102	국립생태원의설립및운영에관 한법률	500	100	20%	1:3:5
103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 에관한법률	500	300	60%	1:1.3:1.6
104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 등에관한법률	500	300	60%	1:1.3:1.6
105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	1000	300	30%	1:2.3:1.6
106	대기환경보전법	200	100	50%	1:1.5:2
107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 법률	1000	500	50%	1:1.4:2
108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 법률	200	100	50%	1:1.5:2
109	석면안전관리법	500	200	40%	1:1.5:2.5
110	소음진동관리법	200	60	30%	1:1.5:2.5
111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 별법	200	100	50%	1:1.5:2
112	수도법	300 100	300 100	100% 100%	1:1:1 1:1:1
113	습지보전법	200	50	25%	1:2:4
114	실내공기질관리법	500	250	50%	1:1.48:2
115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200	100	50%	1:1.5:2
116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 민지원등에관한법률	500	300	60%	1:1.3:1.6
117	인공조명에의한빛공해방지법	100	25	25%	1:2:4
118	자연공원법	200 50	100 30	50% 60%	1:1.5:2 1:1.3:1.6
119	자연환경보전법	200	100	50%	1:1.5:2
120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100	100	100%	1:1:1

번호	법률명	부과금액		법정상한액 대비 별표 상 부과금액 비율(%)	차수 산정 시 부과 비율
		법률상 법정 상한액	하위법령 별표 상 1차 부과금액		
121	토양환경보전법	300 200	100	50%	1:1.5:2
122	폐기물관리법	100	100	100%	1:1:1
123	하수도법	100 50	100 30	100% 60%	1:1:1 1:1.3:1.6
124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1000 500	500 300	50% 60%	1:1.4:2 1:1.3:1.6
125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500	100	20%	1:3:5
126	화학물질관리법	1000	600	60%	1:1.3:1.6
127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1000	600	60%	1:1.3:1.6
128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100	60	60%	1:1.3:1.6
129	환경보전법	500	250	50%	1:1.4:2
130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	100	50	50%	1:1.4:2
131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및구제에관한법률	500	250	50%	1:1.4:2

#### 4. 허위자료 및 자료미제출

번호	법률명	부과금액		법정상한액 대비 별표 상 부과금액 비율(%)	차수산정 시 부과 비율
		법률상 법정 상한액	하위법령 별표 상 1차 부과금액		
1	개인정보보호법	1000	200	20%	1:2:4
2	급경사지재해예방에관한법률	200	50	25%	
3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500(1항) 300(2항)	50 100	10% 33%	1:2:4 1:2:3

번호	법률명	부과금액		법정상한액 대비 별표 상 부과금액 비율(%)	차수산정 시 부과 비율
		법률상 법정 상한액	하위법령 별표 상 1차 부과금액		
4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500	30	6%	1:2:6.6
5	유선및도선사업법	300	300	100%	
6	행정사법	500	125	25%	1:2:4
7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1000(1항)	500	50%	1:2
		100(2항)	15	15%	1:2
8	검역법	1000	700	70%	
9	국민건강보험법	500	150	30%	1:2:3.3
10	국민건강증진법	500	170	34%	1:2:4
11	기초연금법	20	6	30%	1:2:3.3
12	노인복지법	500	100	20%	1:2:3
1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00	50	10%	1:2:4
14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 관한법률	300	50	16.6%	1:2:4
15	사회복지사업법	20	20	100%	
16	식품등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	300	300	100%	1:1:1
17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 관한법률	500	150	30%	1:1.3:2
18	약사법	100	50	50%	1:1.5:2
19	의료급여법	100	30	30%	1:2:3.3
20	의료법	200	200	100%	1:1:1
21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 조정등에관한법률	500	100	20%	1:2:5
22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 법률	300	30	10%	1:2.3:5
23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500	250	50%	1:1.4:2
24	장사등에관한법률	300	150	50%	1:1.33:1.66

번호	법률명	부과금액		법정상한액 대비 별표 상 부과금액 비율(%)	차수산정 시 부과 비율
		법률상 법정 상한액	하위법령 별표 상 1차 부과금액		
25	장애아동복지지원법	300	50	16.6%	1:2:4
26	장애인연금법	20	6	30%	1:2:3.3
27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500	50	10%	1:2:4
28	전공의의수련환경개선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	500	200	40%	1:1.75:2.5
		300	100	33%	1:2:3
29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100	100	100%	1:1:1
30	체대혈관리및연구에관한법률	500	200	66%	
31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	300	100	33%	1:2:3
32	호스피스완화의료및임종과정에있는환자의연명의료결정에관한법률	300	50	16.6%	1:2:4
33	간선급행버스체계의건설및운영에관한특별법	500	25	5%	1:2:2
34	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	500	200	40%	1:1.5:2
35	건설기계관리법	100	100	100%	1:1:1
36	건설기술진흥법	1000	500	50%	-
			750	75%	-
			1000	100%	-
		300	150	50%	1:1.5:2
37	건축법	100	30	30%	1:2:3.3
38	골재채취법	500	50	10%	1:3:10
39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300	25	8.3%	1:2:4
40	공동주택관리법	1000	1000	100%	-
		500	200	40%	1:1.5:2.5
4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200	200	100%	

번호	법률명	부과금액		법정상한액 대비 별표 상 부과금액 비율(%)	차수산정 시 부과 비율
		법률상 법정 상한액	하위법령 별표 상 1차 부과금액		
42	공인증개사법	500	200	40%	
		100	30	30%	
43	공항소음방지및소음대책지역 지원에관한법률	500	50	10%	1:5:10
44	교통안전법	1000	600	60%	
		500	100	20%	
45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200	100	50%	1:2
4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500	200	40%	1:1.5:2.5
		300	300	100%	1:1:1
4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500	300	60%	
48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2000	100	5%	
49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 관한법률	2000	400	20%	1:2:3
		500	50	10%	1:1.5:2
50	도로법	300	200	66%	
51	도시개발법	500	100	20%	1:2:3
52	도시교통정비촉진법	1000	500	50%	
		500	500	100%	
5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500	100	20%	
			200	40%	
			300	60%	
			400	80%	
54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 법률	300	40	13.3%	1:1.875:3.75
55	물류정책기본법	200	200	100%	
56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500	100	20%	1:2:3
57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 관한법률	1000	100	10%	1:2.5:5
			1000	100%	-
58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500	500	100%	
59	부동산투자회사법	1000	600	60%	1:1.3:1.6
		500	200	40%	1:1.5:2.5

번호	법률명	부과금액		법정상한액 대비 별표 상 부과금액 비율(%)	차수산정 시 부과 비율
		법률상 법정 상한액	하위법령 별표 상 1차 부과금액		
60	스마트도시의조성및산업진흥 등에관한법률	500	200	40%	1:1.5:2.5
61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300	300	100%	
6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500	200	40%	1:1.5:2.5
6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00	200	66%	
64	지하수법	300	50	16.6%	1:2:4
65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100	50	50%	1:1.5:2
66	택지개발촉진법	1000	100	10%	1:2:3
67	하천법	100	30	30%	1:1.3:1.6
68	항공보안법	500	100	20%	1:2.5:5
69	항공사업법	500	50 100	10% 20%	1:5:10 1:2.5:5
7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500	50	10%	
71	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	300	100	33%	1:2:3
72	국민체육진흥법	500	200	40%	
73	문화산업진흥기본법	500	50	10%	1:2:4
74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2000	700	35%	
75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 법률	3000	3000	100%	
76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 법률	1000	30 60 100	3% 6% 10%	
77	예술인복지법	500	100 200	20% 40%	1:2:3 1:1.5:2
78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 한법률	300	200	66%	
79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 법률	100	50	50%	1:1.4:2
80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 한법률	100	50	50%	1:1.4:2

번호	법률명	부과금액		법정상한액 대비 별표 상 부과금액 비율(%)	차수산정 시 부과 비율
		법률상 법정 상한액	하위법령 별표 상 1차 부과금액		
81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설립 및운영에관한법률	500	100	20%	1:3:5
82	국립생태원의설립및운영에관 한법률	500	100	20%	1:3:5
83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 에관한법률	1000(1항) 500(2항)	500 300	50% 60%	1:1.4:2 1:1.3:1.6
84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 등에관한법률	1000(1항) 500(2항)	500 300	50% 60%	1:1.4:2 1:1.3:1.6
85	대기환경보전법	500(2항) 300(3항) 200(4항) 100(5항)	200 100 200 100	40% 33% 100% 100%	1:1.5:2.5 1:2:3 1:1:1 1:1:1
86	먹는물관리법	100	50	50%	1:1.4:2
87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 법률	1000	500	50%	1:1.4:2
88	석면안전관리법	500 200	100 50	20% 25%	1:2:3 1:2:4
89	소음진동관리법	200	60	30%	1:1.5:2.5
90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 별법	500 200	300 100	60% 50%	1:1.3:1.6 1:1.5:2
91	수도법	100	80 50	80% 50%	1:1.125:1.25 1:1.4:2
92	습지보전법	200	100	50%	1:1.5:2
93	실내공기질관리법	500	100	20%	1:1.5:2
94	악취방지법	100	50	50%	1:1.4:2
95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00	50	50%	1:2:2
96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 민지원등에관한법률	1000 500	500 300	50% 60%	1:1.4:2 1:1.3:1.6
97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 한법률	100	50	50%	1:1.4:2

번호	법률명	부과금액		법정상한액 대비 별표 상 부과금액 비율(%)	차수산정 시 부과 비율
		법률상 법정 상한액	하위법령 별표 상 1차 부과금액		
98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1000	500	50%	1:1.4:2
99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 순환에관한법률	100	50	50%	1:1.6:2
			30	30%	1:1.6:2.6
			20	20%	1:1.5:2.5
100	토양환경보전법	300	100	33%	1:2:3
		200	100	50%	1:1.5:2
101	폐기물관리법	300	100	33%	1:2:3
		100	50	50%	1:1.4:2
102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 에관한법률	100	50	50%	1:1.4:2
103	하수도법	100	50	50%	1:1.4:2
104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 민지원등에관한법률	1000	500	50%	1:1.4:2
		500	300	60%	1:1.3:1.6
105	화학물질관리법	1000	600	60%	1:1.3:1.6
106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 한법률	1000	600	60%	1:1.3:1.6
107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300	200	66%	1:1.25:1.5
108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	100	100	100%	1:1:1
109	환경분쟁조정법	100	10	10%	1:2:3
			30	30%	1:2:3.3
110	환경오염시설의통합관리에관 한법률	700	300	42%	1:1.6:2.3
		500	200	40%	1:1.5:2.5
111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및구제 에관한법률	500	250	50%	1:1.4:2

## 5. 공고 또는 게시의무위반

번호	법률명	부과금액		법정상한액 대비 별표 상 부과금액 비율(%)	차수산정 시 부과 비율
		법률상 법정 상한액	하위법령 별표 상 1차 부과금액		
1	개인정보보호법	1000	200	20%	1:2:4
2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300	50	16.6%	1:2:4
3	유선및도선사업법	300	10	3.3%	1:2.5:5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00	50	10%	1:2:4
5	모자보건법시행령	200	200	100%	
6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300	70	23.3%	1:1.42:2.1
7	장사등에관한법률	300	150	50%	1:1.33:1.66
8	건설기계관리법	50	20	40%	1:1.5:2.5
9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1억	2000 1000	20% 10%	1:2.5:5 1:2:5
10	건축법	200	50	25%	1:2:4
11	공동주택관리법	500	200	40%	1:1.5:2.5
12	공인중개사법	100	50	50%	
13	부동산투자회사법	500	200	40%	1:1.5:2.5
1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50	10	20%	1:1.5:2
15	항공사업법	500	50 100	10% 20%	1:5:10 1:3:5
1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500	100	20%	1:2:3
17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2000	700	35%	
18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3000	3000	100%	
19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5000	150 500	3% 10%	1:2:3.3 1:1.6:2
20	저작권법	1000	100	10%	1:2:3
21	수도법	100	80 50	80% 50%	1:1.125:1.25 1:1.4:2
22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100	50 30 20	50% 30% 20%	1:1.6:2 1:1.6:2.6 1:1.5:2.5

번호	법률명	부과금액		법정상한액 대비 별표 상 부과금액 비율(%)	차수산정 시 부과 비율
		법률상 법정 상한액	하위법령 별표 상 1차 부과금액		
23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 법률	1000	600	60%	1:1.3:1.6
24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	100	50	50%	1:1.4:2
25	환경영향평가법	500	200	40%	1:1.5:2.5

**【조사대상 의무위반행위별 비율평균】**

구분	법정상한액 대비 별표 상 부과금액 비율(%)의 평균
유사명칭 사용금지 (43개 법률)	47%
표시의무위반 (40개 법률)	29%
검사를 방해-기피-회피 (131개 법률)	48%
허위자료 및 자료미제출 (111개 법률)	44%
공고또는 게시의무 위반 (25개 법률)	34%

## 제4절 과태료 제도 운영현황을 위한 설문조사

### I. 개 관

#### 1. 조사설계

본 조사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국토·교통, 행정·안전, 문화·관광·체육, 환경, 보건·복지- 5개 부처관련) 150명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 되었다.

구 분	내 용
조 사 대 상	과태료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표 본 크 기	150명 (유효표본)
자료수집도구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조 사 방 법	온라인 조사 (사전 안내 전화 및 협조 전화, SMS 병행조사)
조 사 기 간	2017년 8월 28일 ~ 9월 22일

#### 2. 설문 문항 설계

구 분	세 부 항 목
본 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태료 분야</li> <li>• 최근 1년 동안 과태료 부과 건수</li> <li>• 과태료 업무 절차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li> <li>• 실무에서 가장 활용하기 편한 법률 유형</li> <li>• 실무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주요규정을 참조하여 업무를 진행하는지 여부</li> <li>•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참조하는 규정</li> <li>• 법령 체계를 적용할 때 경험한 어려운 사항</li> <li>• 상위법령, 하위법령, [별표]로 구분되는 법령 체계를 업무에 적용하기 어려운 정도</li> <li>• 법령 체계를 적용할 때 어렵다고 생각한 사항</li> <li>• 가중 내지 감경 활용 정도</li> <li>• 가중 내지 감경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li> <li>• 과태료 부과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li> <li>• 과태료 부과금액 조정에 대한 의견</li> <li>• 최근 1년 동안 의견제출 건수</li> <li>• 과태료 납부의무자의 의견제출 내용</li> </ul>

구 분	세 부 항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1년 동안 과태료 관련 이의제기 건수</li> <li>• 미납 과태료 징수에 도움이 되는 제도</li> <li>• 과태료 제도 관련 건의사항 및 개선의견</li> </ul>
응답자 특성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역/기초자치단체 소속, 업무 경력, 근무지 권역, 성별, 연령대</li> </ul>

### 3. 응답자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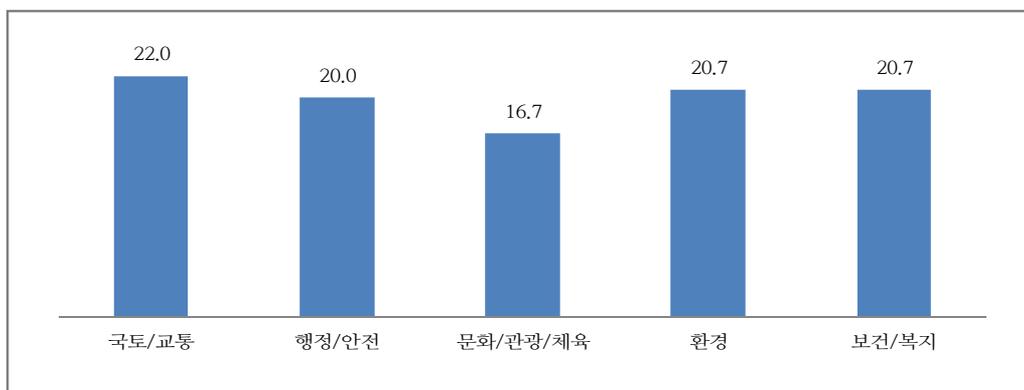
(단위 : 명, %)

구 분	사 례 수	%	
전 체	150	100.0	
과태료 분야	국 토 / 교 통	33	22.0
	행 정 / 안 전	30	20.0
	문 화/관 광/체 육	25	16.7
	환 경	31	20.7
	보 건 / 복 지	31	20.7
소속별	광 역 자 치 단 체	42	28.0
	기 초 자 치 단 체	92	61.3
	기 타	16	10.7
업무 경력별	1년 미만	63	42.0
	1년이상~2년미만	46	30.7
	2년 이상	41	27.3
권역별	서 울	23	15.3
	인 천 / 경 기	38	25.3
	부 산/울 산/경 남	26	17.3
	대 구 / 경 북	16	10.7
	광 주 / 전 라	19	12.7
	대 전/충 청/세 중	17	11.3
	강 원 / 제 주	11	7.3
성별	남 성	97	64.7
	여 성	53	35.3
연령별	20 대	23	15.3
	30 대	58	38.7
	40 대	46	30.7
	50대 이상	23	15.3

#### 4. 과태료 분야

이하 8. 까지의 항목은 과태료제도 운영 전반에 걸친 내용으로서 본 연구에 있어 제도에 관한 기초 인식적 내용을 제공한다.

응답자로서 과태료 업무를 많이 하는 분야로는 ‘국토/교통’(22.0%)이 가장 높았고, ‘환경’(20.7%)과 ‘보건/복지’(20.7%)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과태료 업무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된 ‘국토/교통’은 광역자치단체 (38.1%), 대전/충청/세종(47.1%) 등에서 전체 평균(22.0%)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응답자 특성별 과태료 분야】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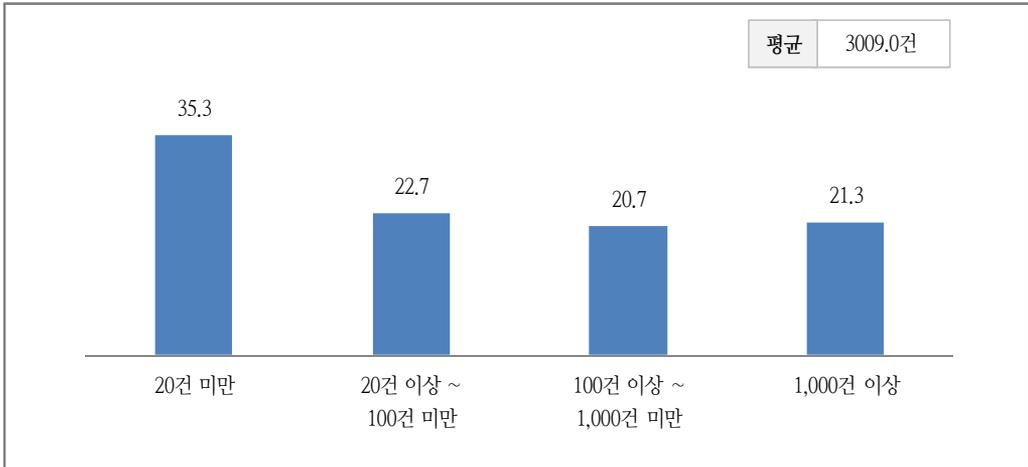
구분	사례수	국토/교통	행정/안전	문화/관광/체육	환경	보건/복지	계
전체	150	22.0	20.0	16.7	20.7	20.7	100.0
과태료 분야	국토 / 교통	33	100.0	0.0	0.0	0.0	100.0
	행정 / 안전	30	0.0	100.0	0.0	0.0	100.0
	문화/관광/체육	25	0.0	0.0	100.0	0.0	100.0
	환경	31	0.0	0.0	0.0	100.0	100.0

구 분		사례수	국토 /교통	행정 /안전	문화/관 광/체육	환경	보건 /복지	계
	보건 / 복지	31	0.0	0.0	0.0	0.0	100.0	100.0
소속별	광역자치단체	42	38.1	45.2	2.4	9.5	4.8	100.0
	기초자치단체	92	16.3	6.5	26.1	29.3	21.7	100.0
	기 타	16	12.5	31.3	0.0	0.0	56.3	100.0
업무 경력별	1년 미만	63	22.2	20.6	19.0	19.0	19.0	100.0
	1년이상~2년미만	46	21.7	17.4	19.6	21.7	19.6	100.0
	2년 이상	41	22.0	22.0	9.8	22.0	24.4	100.0
권역별	서울	23	17.4	17.4	4.3	34.8	26.1	100.0
	인천 / 경기	38	28.9	39.5	7.9	10.5	13.2	100.0
	부산/울산/경남	26	19.2	15.4	26.9	11.5	26.9	100.0
	대구 / 경북	16	6.3	6.3	25.0	43.8	18.8	100.0
	광주 / 전라	19	15.8	10.5	36.8	15.8	21.1	100.0
	대전/충청/세종	17	47.1	17.6	5.9	11.8	17.6	100.0
	강원 / 제주	11	9.1	9.1	18.2	36.4	27.3	100.0
성별	남성	97	19.6	25.8	19.6	21.6	13.4	100.0
	여성	53	26.4	9.4	11.3	18.9	34.0	100.0
연령별	20 대	23	8.7	8.7	30.4	30.4	21.7	100.0
	30 대	58	19.0	17.2	17.2	24.1	22.4	100.0
	40 대	46	28.3	26.1	10.9	17.4	17.4	100.0
	50대 이상	23	30.4	26.1	13.0	8.7	21.7	100.0

## 5. 최근 1년 동안 과태료 부과건수

최근 1년 간 과태료 부과 건수를 묻는 질문에서 ‘20건 미만’이 35.3%로 가장 높았고, ‘20건 이상 100건 미만’(22.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1,000건 이상’은 21.3%였음. 최근 1년 간 평균적인 과태료 부과 건수는 3,009건으로 조사되었으며, ‘20건 미만’은 문화/관광/체육 분야(96.0%) 등에서, ‘1,000건 이상’은 국토/교통 분야(45.5%)와 서울(60.9%) 등에서 전체 평균(각각 35.3%, 21.3%)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응답자 특별 최근 1년 동안 과태료 부과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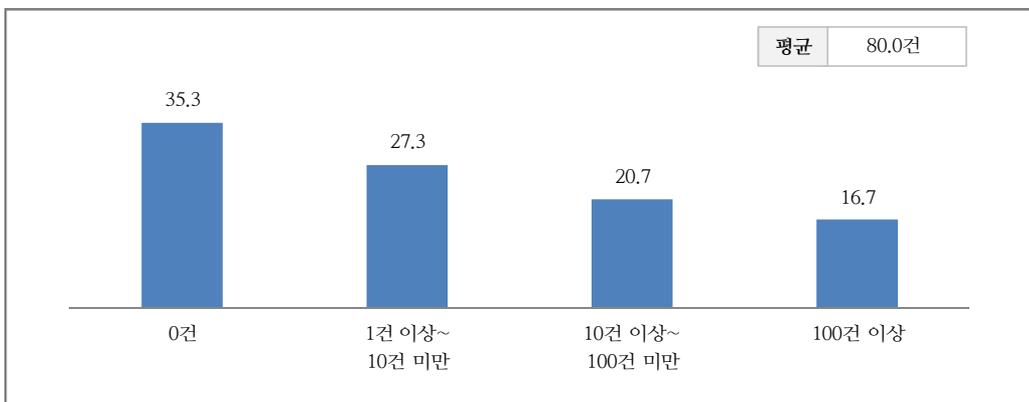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20건 미만	20건 이상 ~100건 미만	100건 이상 ~1,000건 미만	1,000건 이상	계	평균 (건)	
전체	150	35.3	22.7	20.7	21.3	100.0	3009.0	
과태료 분야	국토 / 교통	33	9.1	18.2	27.3	45.5	100.0	11789.0
	행정 / 안전	30	40.0	43.3	13.3	3.3	100.0	104.0
	문화/관광/체육	25	96.0	4.0	0.0	0.0	100.0	4.0
	환경	31	29.0	19.4	32.3	19.4	100.0	687.0
	보건 / 복지	31	16.1	25.8	25.8	32.3	100.0	1221.0
소속별	광역자치단체	42	28.6	35.7	16.7	19.0	100.0	3651.0
	기초자치단체	92	41.3	15.2	18.5	25.0	100.0	3202.0
	기타	16	18.8	31.3	43.8	6.3	100.0	219.0
업무 경력별	1년 미만	63	38.1	20.6	19.0	22.2	100.0	2015.0
	1년이상~2년미만	46	30.4	26.1	21.7	21.7	100.0	5029.0
	2년 이상	41	36.6	22.0	22.0	19.5	100.0	2270.0
권역별	서울	23	13.0	4.3	21.7	60.9	100.0	2727.0
	인천 / 경기	38	28.9	36.8	21.1	13.2	100.0	3896.0

구 분		사례수	20건 미만	20건 이상 ~100건 미만	100건 이상 ~1,000 건 미만	1,000건 이상	계	평균 (건)
	부산/울산/경남	26	46.2	15.4	30.8	7.7	100.0	2064.0
	대구 / 경북	16	43.8	18.8	25.0	12.5	100.0	4682.0
	광주 / 전라	19	47.4	15.8	21.1	15.8	100.0	610.0
	대전/충청/세종	17	29.4	29.4	11.8	29.4	100.0	5813.0
	강원 / 제주	11	54.5	36.4	0.0	9.1	100.0	146.0
성별	남성	97	39.2	20.6	20.6	19.6	100.0	1532.0
	여성	53	28.3	26.4	20.8	24.5	100.0	5714.0
연령별	20 대	23	47.8	39.1	4.3	8.7	100.0	125.0
	30 대	58	41.4	19.0	17.2	22.4	100.0	3252.0
	40 대	46	26.1	21.7	26.1	26.1	100.0	4144.0
	50대 이상	23	26.1	17.4	34.8	21.7	100.0	3013.0

## 6. 최근 1년 동안 의견제출 건수

최근 1년 간 담당 분야에서 과태료 관련 의견제출 건수를 묻은 결과, ‘0건’이 35.3%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1건 이상 10건 미만’(27.3%), ‘10건 이상 100건 미만’(20.7%) 등의 순이었으며, ‘100건 이상’은 16.7%로 집계 되었으며 이에 따른 평균건수는 80.0건이다.



최근 1년 간 의견제출 건수가 ‘0건’이라는 응답은 문화/관광/체육 분야(64.0%)와 20대 (60.9%)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100건 이상’이라는 응답은 국토/교통(30.3%) 및 보건/복지(25.8%) 분야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응답자 특성별 최근 1년 동안 의견제출 건수】

(단위 : 명, %)

구 분		사례수	0건	1건 이상~10 건 미만	10건 이상~10 0건 미만	100건 이상	계	평균 (건)
전체		150	35.3	27.3	20.7	16.7	100.0	80.0
과태료 분야	국토 / 교통	33	15.2	30.3	24.2	30.3	100.0	241.0
	행정 / 안전	30	43.3	33.3	20.0	3.3	100.0	12.0
	문화/관광/체육	25	64.0	32.0	4.0	0.0	100.0	3.0
	환경	31	25.8	32.3	22.6	19.4	100.0	52.0
	보건 / 복지	31	35.5	9.7	29.0	25.8	100.0	67.0
소속별	광역자치단체	42	40.5	28.6	14.3	16.7	100.0	48.0
	기초자치단체	92	32.6	25.0	22.8	19.6	100.0	108.0
	기 타	16	37.5	37.5	25.0	0.0	100.0	7.0
업무 경력별	1년 미만	63	46.0	22.2	17.5	14.3	100.0	52.0
	1년이상~2년미만	46	30.4	34.8	19.6	15.2	100.0	145.0
	2년 이상	41	24.4	26.8	26.8	22.0	100.0	52.0
권역별	서울	23	13.0	13.0	47.8	26.1	100.0	180.0
	인천 / 경기	38	39.5	28.9	21.1	10.5	100.0	77.0
	부산/울산/경남	26	46.2	23.1	15.4	15.4	100.0	40.0
	대구 / 경북	16	56.3	18.8	6.3	18.8	100.0	84.0
	광주 / 전라	19	36.8	26.3	15.8	21.1	100.0	68.0
	대전/충청/세종	17	17.6	41.2	23.5	17.6	100.0	72.0
	강원 / 제주	11	36.4	54.5	0.0	9.1	100.0	11.0
성별	남성	97	29.9	29.9	25.8	14.4	100.0	75.0
	여성	53	45.3	22.6	11.3	20.8	100.0	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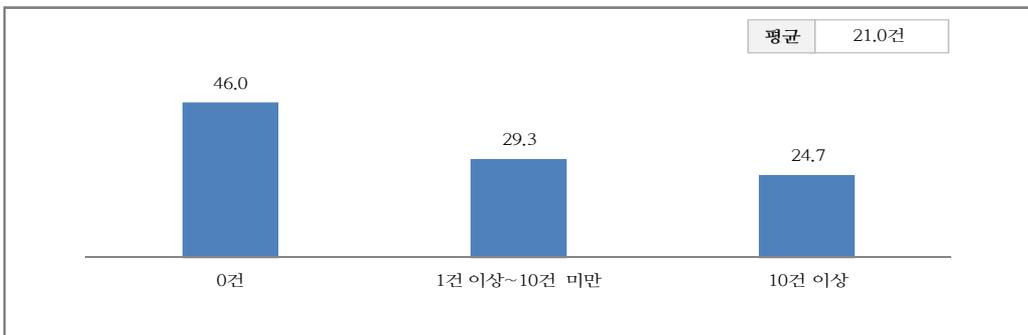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0건	1건 이상~10 건 미만	10건 이상~10 0건 미만	100건 이상	계	평균 (건)
연령별	20 대	23	60.9	26.1	4.3	8.7	100.0	22.0
	30 대	58	39.7	27.6	19.0	13.8	100.0	92.0
	40 대	46	26.1	30.4	21.7	21.7	100.0	109.0
	50대 이상	23	17.4	21.7	39.1	21.7	100.0	55.0

관련하여 의견제출사유로서는 최근 1년 간 1건 이상 의견제출을 경험한 97명을 대상으로 의견 제출의 내용을 물은 결과, ‘과태료 부과 사유’가 73.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과태료 부과 금액’과 ‘과태료 부과 절차’는 각각 17.5%와 9.3%로 나타났다.

### 7. 최근 1년 동안 과태료 관련 이의제기 건수

최근 1년 간 과태료 관련 이의제기 건수를 묻는 질문에서는 ‘0건’이 46.0%로 가장 높았고, ‘1건 이상 10건 미만’이 29.3%, ‘10건 이상’은 24.7% 였으며, 최근 1년 간 이의제기 건수의 평균은 21.0건으로 집계되었다.

최근 1년 간 과태료 관련 이의제기 건수가 ‘0건’이라는 응답은 문화/관광/체육 분야(80.0%)와 20대(73.9%)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10건 이상’이라는 응답은 국토/교통 분야(42.4%)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응답자 특성별 최근 1년 동안 과태료 관련 이의제기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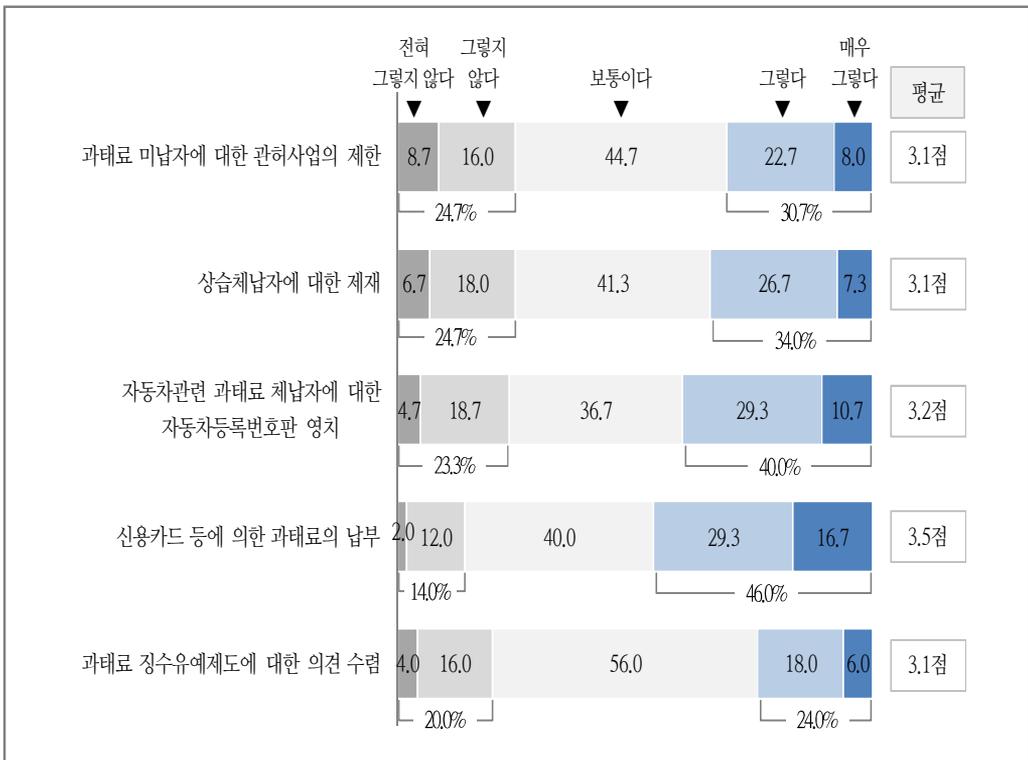
(단위 : 명, %)

구 분		사례수	0건	1건 이상~10 건 미만	10건 이상	계	평균 (건)
전체		150	46.0	29.3	24.7	100.0	21.0
과태료 분야	국도 / 교통	33	12.1	45.5	42.4	100.0	50.0
	행정 / 안전	30	63.3	26.7	10.0	100.0	3.0
	문화/관광/체육	25	80.0	16.0	4.0	100.0	1.0
	환경	31	48.4	29.0	22.6	100.0	11.0
	보건 / 복지	31	35.5	25.8	38.7	100.0	35.0
소속별	광역자치단체	42	52.4	28.6	19.0	100.0	11.0
	기초자치단체	92	45.7	25.0	29.3	100.0	29.0
	기 타	16	31.3	56.3	12.5	100.0	5.0
업무 경력별	1년 미만	63	52.4	28.6	19.0	100.0	25.0
	1년이상~2년미만	46	47.8	23.9	28.3	100.0	25.0
	2년 이상	41	34.1	36.6	29.3	100.0	12.0
권역별	서울	23	21.7	21.7	56.5	100.0	30.0
	인천 / 경기	38	47.4	36.8	15.8	100.0	26.0
	부산/울산/경남	26	61.5	15.4	23.1	100.0	22.0
	대구 / 경북	16	75.0	18.8	6.3	100.0	7.0
	광주 / 전라	19	36.8	42.1	21.1	100.0	30.0
	대전/충청/세종	17	17.6	41.2	41.2	100.0	18.0
	강원 / 제주	11	72.7	27.3	0.0	100.0	1.0
성별	남성	97	45.4	28.9	25.8	100.0	22.0
	여성	53	47.2	30.2	22.6	100.0	20.0
연령별	20 대	23	73.9	8.7	17.4	100.0	12.0
	30 대	58	50.0	27.6	22.4	100.0	12.0
	40 대	46	41.3	30.4	28.3	100.0	42.0
	50대 이상	23	17.4	52.2	30.4	100.0	14.0

### 8. 징수에 도움이 되는 최근 제도의 효율성

제도별로 미납 과태료 징수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묻은 결과,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의 납부’(긍정 응답 46.0%),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긍정 응답 40.0%) 등의 순으로 긍정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질문한 모든 제도에서 긍정 응답률이 부정 응답률보다 높았는데,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의 납부’는 긍/부정 응답률 격차가 32.0%p로 비교적 컸지만, ‘과태료 징수 유예제도에 대한 의견 수렴’의 격차는 4.0%p로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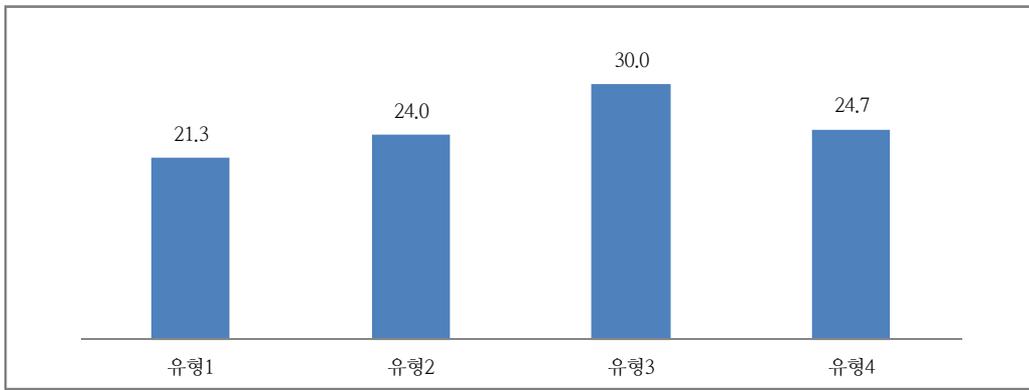


## II. 과태료 입법체계 정비관련 설문주요내용

### 1. 실무에서 가장 활용하기 편한 법률 유형

실무에서 활용하기 편리한 과태료 법률 유형을 묻은 결과, ‘유형 3’이 30.0%로 가장 높았고, ‘유형 4’(24.7%)와 ‘유형 2’(24.0%)가 비슷한 비율로 뒤를 이어 응답되고 있다.

(단위 : %, n=150)



### 【응답자 특성별 실무에서 가장 활용하기 편한 법률 유형】

(단위 : 명, %)

구 분	사례수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계	
전체	150	21.3	24.0	30.0	24.7	100.0	
과태료 분야	국토 / 교통	33	24.2	21.2	27.3	27.3	100.0
	행정 / 안전	30	23.3	23.3	33.3	20.0	100.0
	문화/관광/체육	25	16.0	24.0	32.0	28.0	100.0
	환경	31	19.4	32.3	25.8	22.6	100.0
	보건 / 복지	31	22.6	19.4	32.3	25.8	100.0
소속별	광역자치단체	42	21.4	21.4	31.0	26.2	100.0
	기초자치단체	92	20.7	28.3	28.3	22.8	100.0
	기 타	16	25.0	6.3	37.5	31.3	100.0

구 분		사례수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계
업무 경력별	1년 미만	63	19.0	28.6	28.6	23.8	100.0
	1년이상~ 2년미만	46	23.9	26.1	30.4	19.6	100.0
	2년 이상	41	22.0	14.6	31.7	31.7	100.0
권역별	서울	23	21.7	39.1	13.0	26.1	100.0
	인천 / 경기	38	31.6	13.2	21.1	34.2	100.0
	부산/울산/경남	26	7.7	15.4	50.0	26.9	100.0
	대구 / 경북	16	18.8	12.5	43.8	25.0	100.0
	광주 / 전라	19	31.6	42.1	15.8	10.5	100.0
	대전/충청/세종	17	17.6	29.4	41.2	11.8	100.0
	강원 / 제주	11	9.1	27.3	36.4	27.3	100.0
성별	남성	97	22.7	25.8	27.8	23.7	100.0
	여성	53	18.9	20.8	34.0	26.4	100.0
연령별	20 대	23	17.4	26.1	30.4	26.1	100.0
	30 대	58	29.3	15.5	25.9	29.3	100.0
	40 대	46	15.2	34.8	32.6	17.4	100.0
	50대 이상	23	17.4	21.7	34.8	26.1	100.0

## 2. 실무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주요규정을 참조하여 업무를 진행하는지 여부

실무 처리 시 준거 법률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참고하는지를 묻은 결과,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는 2가지 응답을 포함한 ‘긍정’ 비율이 87.3%로 높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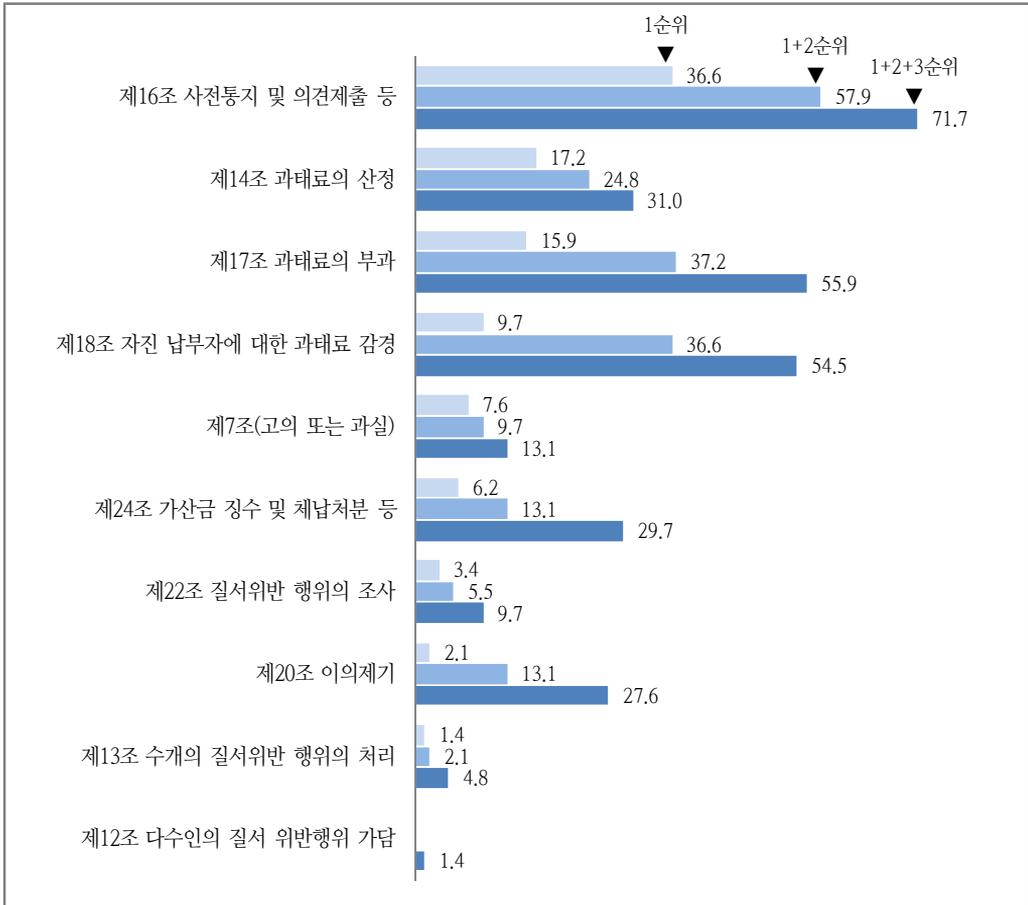
**[응답자 특성별 실무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주요규정을 참조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여부]**

(단위 : 명, %)

구 분	사 례 수	① 전혀 그렇 지 않다 1점	② 그렇 지 않다 2점	①+ ②	③ 보통 이다 3점	④ 그렇 다 4점	⑤ 매우 그렇 다 5점	④+ ⑤	계	평균 (점)	
전체	150	0.7	2.7	3.3	9.3	46.7	40.7	87.3	100.0	4.2	
과태료 분야	국토 / 교통	33	0.0	0.0	0.0	3.0	39.4	57.6	97.0	100.0	4.6
	행정 / 안전	30	0.0	3.3	3.3	3.3	46.7	46.7	93.3	100.0	4.4
	문화/관광/체육	25	0.0	8.0	8.0	16.0	48.0	28.0	76.0	100.0	4.0
	환경	31	3.2	3.2	6.5	9.7	48.4	35.5	83.9	100.0	4.1
	보건 / 복지	31	0.0	0.0	0.0	16.1	51.6	32.3	83.9	100.0	4.2
소속별	광역자치단체	42	0.0	2.4	2.4	9.5	42.9	45.2	88.1	100.0	4.3
	기초자치단체	92	1.1	3.3	4.3	10.9	48.9	35.9	84.8	100.0	4.2
	기 타	16	0.0	0.0	0.0	0.0	43.8	56.3	100.0	100.0	4.6
업무 경력별	1년 미만	63	1.6	6.3	7.9	14.3	36.5	41.3	77.8	100.0	4.1
	1년이상~2년미만	46	0.0	0.0	0.0	4.3	56.5	39.1	95.7	100.0	4.4
	2년 이상	41	0.0	0.0	0.0	7.3	51.2	41.5	92.7	100.0	4.3
권역별	서울	23	0.0	0.0	0.0	4.3	65.2	30.4	95.7	100.0	4.3
	인천 / 경기	38	0.0	0.0	0.0	7.9	47.4	44.7	92.1	100.0	4.4
	부산/울산/경남	26	0.0	0.0	0.0	11.5	46.2	42.3	88.5	100.0	4.3
	대구 / 경북	16	6.3	6.3	12.5	6.3	37.5	43.8	81.3	100.0	4.1
	광주 / 전라	19	0.0	10.5	10.5	15.8	52.6	21.1	73.7	100.0	3.8
	대전/충청/세종	17	0.0	0.0	0.0	5.9	35.3	58.8	94.1	100.0	4.5
	강원 / 제주	11	0.0	9.1	9.1	18.2	27.3	45.5	72.7	100.0	4.1
성별	남성	97	1.0	2.1	3.1	9.3	45.4	42.3	87.6	100.0	4.3
	여성	53	0.0	3.8	3.8	9.4	49.1	37.7	86.8	100.0	4.2
연령별	20 대	23	4.3	4.3	8.7	13.0	52.2	26.1	78.3	100.0	3.9
	30 대	58	0.0	3.4	3.4	13.8	43.1	39.7	82.8	100.0	4.2
	40 대	46	0.0	0.0	0.0	4.3	43.5	52.2	95.7	100.0	4.5
	50대 이상	23	0.0	4.3	4.3	4.3	56.5	34.8	91.3	100.0	4.2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많이 가장 참조하는 규정으로는 ‘제16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36.6%)으로 조사되었고, 뒤를 이어서 ‘제14조 과태료의 산정’(17.2%), ‘제17조 과태료의 부과’(15.9%) 등으로 나타났다.(※ 괄호 안 비율은 1순위 응답 기준임)

(단위 : %, n=145)



### 3. 법령 체계를 적용할 때 경험한 어려운 사항

법령 체계의 업무 적용 시 어려웠던 사항을 묻은 결과, ‘관련 법령을 모두 찾아서 확인하는 것’(13.5%), ‘세부적인 업무지침의 미흡’(12.5%) 등의 답변이 많이 조사되었다.

## 【법령 체계를 적용할 때 경험한 어려운 사항】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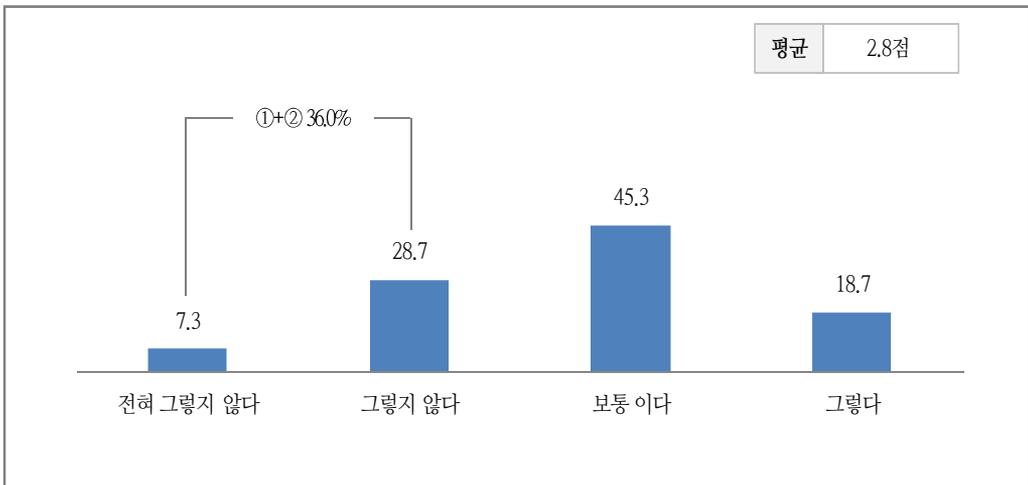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
전체	96	100.0
관련 법령을 모두 찾아서 확인하는 것이 어려움	13	13.5
세부적인 업무지침 미흡	12	12.5
법령자체가 모호함	7	7.3
감정기준의 모호	3	3.1
상위법령과 하위법령 사이의 괴리	3	3.1
법령 용어의 어려움	2	2.1
일반인에게 법령을 설명하기 어려움	2	2.1
감정기준과 감정주체의 모호	1	1.0
개별사업지침서와 질서행위규제법에서의 의견제출기한이 달라 업무 적용 시 적용이 어려움	1	1.0
검사연장 관련 세부기준 미흡	1	1.0
과태료 부과 절차에 적응하기 힘들	1	1.0
과태료 부과 후 징수 및 체납정리가 어려움	1	1.0
과태료를 안내려는 부과자에 대한 징수	1	1.0
기산일 등 기간 산정	1	1.0
법령 적용보다는 거친 민원인이 힘들	1	1.0
법령해석에 따라 규정이 다르게 보여짐	1	1.0
복수로 적용되는 규정 적용의 어려움	1	1.0
부동산등기신청해태 과태료 부과 시, 납기일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는 이의신청기간과 괴리가 있어 업무 흐름상 비효율이 발생	1	1.0
쓰레기무단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시, 부과대상자가 쓰레기배출사실을 인정해야만함	1	1.0
업무의 흐름을 알기 어려움	1	1.0
옥외광고물관리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상충하거나 양 법에 모두 미비한 규정이 있어 적용 등이 어려움	1	1.0
일반기준 적용에 대한 기준사항	1	1.0
재량권의 명확한 권한의 불명	1	1.0
적용의 어려움	1	1.0

구 분	사례수	%
적용의 어려움, 구체적인 기준 미흡	1	1.0
중한 과태료 부과 규정	1	1.0
폐기물관리법 제 8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8)과태료부과기준과 최근의 해석례(일반 봉투를 이용한 무단투기 기준 관련)가 상충함	1	1.0
없음	34	35.4

#### 4. 상위법령, 하위법령, [별표]로 구분되는 법령 체계를 업무에 적용하기 어려운 정도

상위법령과 하위법령, [별표]로 구분되는 법령 체계의 업무 적용 시 어려운 정도를 질문한 결과, ‘보통’이라는 답변이 45.3%로 가장 높았고,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다의 2개 보기를 포함한 ‘어렵지 않다’는 답변이 36.0%, ‘어렵다(그렇다)’는 답변은 18.7%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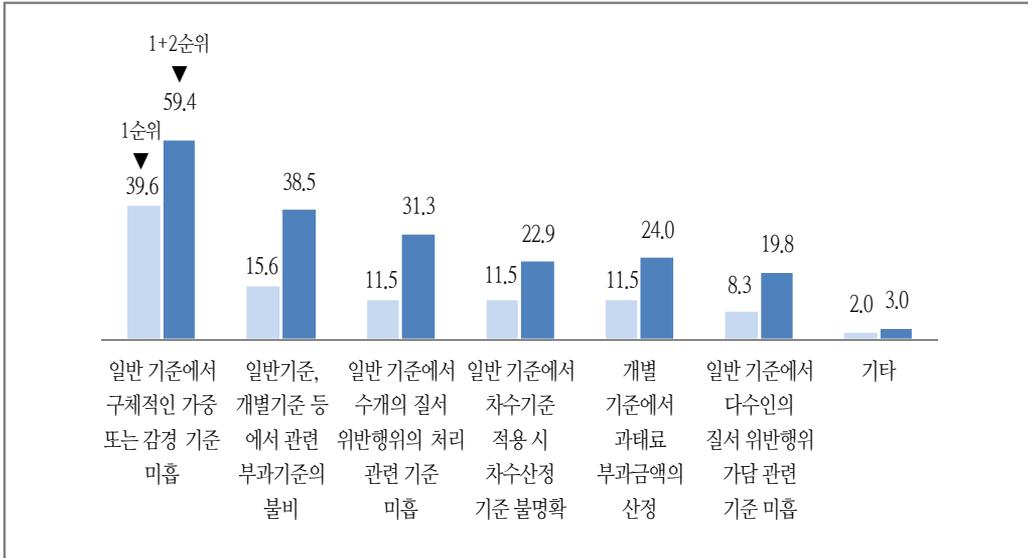
(단위 : %, n=150)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법령 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응답자를 제외하고, 96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항을 물은 결과, ‘일반기준에서 구체적

인 가중 또는 감경 기준의 미흡'이 39.6%로 가장 높았고, '일반기준, 개별기준 등에서 관련 부과기준의 불비'가 15.6%로 두 번째로 높게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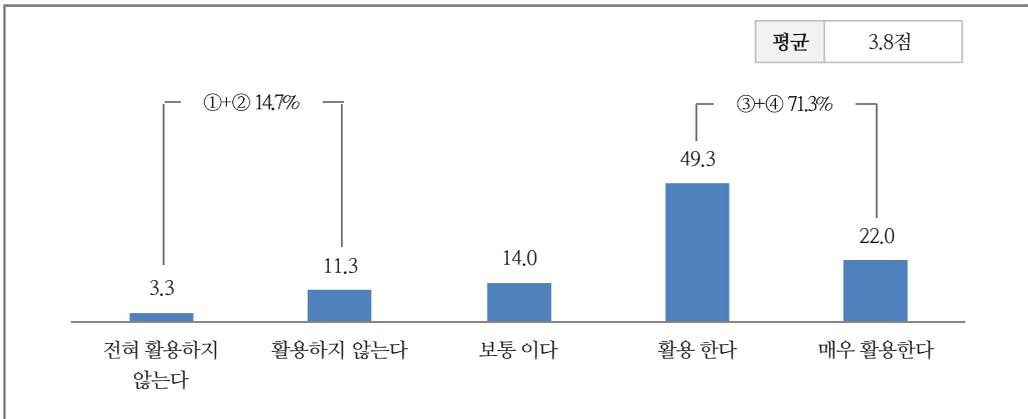
(단위 : %, n=96)



### 5. 가중 내지 감경 활용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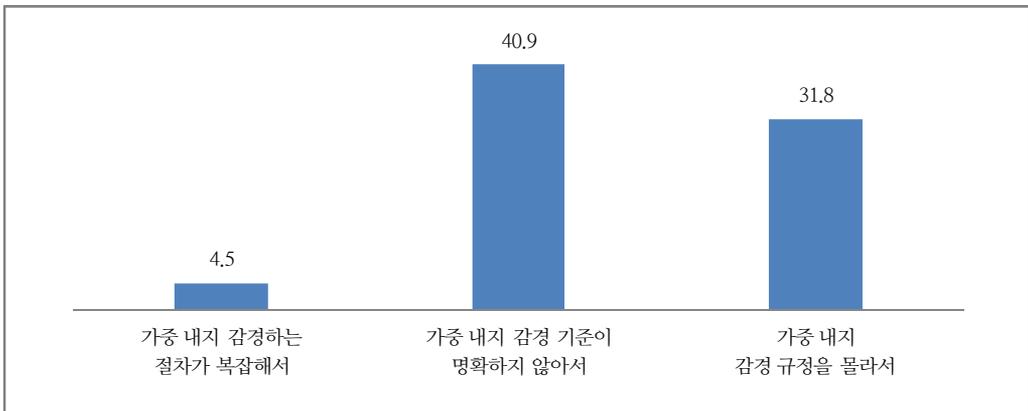
현행 과태료 규정의 가중 또는 감경 조항을 업무에서 활용하는지 묻는 질문에서 매우 활용한다와 활용한다를 포함한 '활용' 응답이 71.3%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단위 : %, n=150)



이러한 조사결과에 있어 가중 또는 감경 규정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자 22명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가중 내지 감경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40.9%), ‘가중 내지 감경 규정을 몰라서’(31.8%) 등의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기타로는 ‘법적용에 사견이 들어갈 수 있어 일관적이지 못하기 때문’, ‘감경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었음’, ‘가중대 상임을 인식시키지만 미안한 마음에 가중을 하지 않음’ 등의 의견이 조사되었다.

(단위 : %, n=22)



## 6. 과태료 부과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

현행의 과태료 부과금액이 의무위반행위의 성격에 따라 적정한지 묻는 질문에서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를 포함한 ‘적정하다’는 의견이 40.0%,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를 포함한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은 24.7%로 조사되었다. 한편 ‘보통’은 35.3%로 조사되었다. 관련하여 현행 과태료 부과금액이 적정하지 않다는 37명에게 어떻게 해야 적정하게 될지 묻는 질문에서 ‘과태료 부과금액을 전반적으로 내려야 한다’가 59.5%, ‘과태료 부과금액을 전반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40.5%로, 부과금액 감액 의견이 증액 의견보다 19.0% p 높게 조사되었다.

## 제5절 정비방안 도출

### I. 법률상 명확성원칙 적용목적에 충실한 규정체계 마련

앞서 제3절을 통하여 5개 부처 소관법률 총 272개 법률을 대상으로 입법유형별 분류, 부과금액, 부과·징수 주체, 행정입법(하위법령에로의 위임) 등을 조사한 바에 따라 법률상 과태료 규정내용에 대한 입법모델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사항은 현행 규정의 유형과 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입법 유형별로는 4가지의 유형 가운데 아래와 같은 규정내용을 가진 제1유형이 228개로써 대다수를 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법률상 과태료 규정은, ① 의무위반근거 법조항에 따른 의무위반행위 및 과태료 부과 상한액, ② 하위법령 위임 및 부과주체를 중심으로 설정하는 아래와 같은 유형이 대다수인 것이다.

제29조(과태료) ① 제00조에 따른 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000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이러한 입법유형은 법률상 그 제도운영을 위한 본질적 내지 중요사항에 대한 규정을 설정하고 있고 입법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도 문제시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제도운영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입장에 있어서는 설문 조사의 결과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제2유형(24.0 %) 내지 제3유형(30 %), 즉 제1유형(21.3 %)과 같은 제도의 본질적 내용과 아울러 “의무위반행위 규정 상 단서조항(경우에 따른 과징금 등과의 병과 시 또는 별도 처분에 따른 과태료 부과면제 등의 특례)을 통하거나 또는 이를 별도의 항목 설정으로 규정” 그리고 “000부장관이 제0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면 이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등의 부과절차적인 특례내지 세부사항에 관한 내용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입법유형을 실무에서 가장 활용하기 편한 법률 유형이라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정비방안의 적용원리로서 설정하고 있는 앞에서 살펴 본 명확성 원칙의 정립의 목적 즉 “입법자가 의도하는 법률상 규정내용은 당장 그 규정내용에 근거한 행정작용이 경우에 따라 해당 수범자의 기본권상 침익·수익 또는 이익의 변경을 야기하게 되는 바, 이에 대한 법규 적용 주체로서의 담당자와 대상 객체로서의 해당 관계인의 입장에서 보다 명확하게 이러한 행정작용이 어떠한 요건과 어떠한 기준 등에 의하여 어떠한 절차를 통하여 법제도화로서 발현되는 지에 대한 인식과 그 제도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에 목적(법률 상 규정내용의 인지 및 이해의 명확화 범주)”을 염두에 둔 규정내용을 실무자 등에게 제공함이 보다 바람직 한 입법태도라 생각되어 지는 것이다.

때문에 향후 입법 시에는 이러한 제도운영에 있어 특례적 내용은 한 개의 조문에서 규정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이러한 별도의 규정내용이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위임입법을 통한 하위법령에로의 위임에 있어 현재와 같이 단순히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와 같은 규정방식이 아닌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감경 등 과태료 산정 시 고려사항과 부과금액 등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와 같이 법률에서 제도 운영에 있어 관계자(실무담당자 및 관계 국민)의 입장에서 그 전반에 걸친 보다 가독성이 제고된 내용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 근간을 뚜렷이 파악할 수 있고 하위법령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정(규정내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하위법령 상 규율밀도 설정내용의 명확화 범주)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제도 운영에 있어 실무상 중요시 되는 사항 (과태료산정, 다수의 과태료부과대상 등)에 관하여서는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지 않고 직접 법률에서 규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러한 하위법령에로의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법률 등에 대하여서는 과태료 관련 해당 관계자 등이 제도 운영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예견하고 적용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규정을 두도록 함이 보다 바람직 할 것으로 고려된다.

## II. 행정입법에 있어 “구체적으로 범위설정에 충실한” 규정체계 마련

행정입법상 구체적으로 범위설정에 충실하다는 의미는 앞서 제2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률에서 제도 운영에 있어 관계자(실무담당자 및 관계 국민)의 입장으로 제도 운영 전반에 걸친 보다 가독성이 제고된 내용을 제공하여야 하고 이렇게 제공된 내용은 행정입법 절차에 따른 하위법령에서 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야 함을 말한다. 즉 현행과 같이 상위 법률에서 과태료 부과 의무위반행위와 부과 상한액 및 부과·징수주체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 이에 대한 과태료의 산정, 과태료 부과대상의 범주, 의무위반 행위별 과태료부과금액 등에 관한 세부적 내용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체계는 현행 과태료 관련 법령상 【별표】를 통하여 일반적으로 취하고 있는 입법형식이나 제3절과 제4절을 통한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그 정비방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아울러 과태료제도 운영 실무적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 설문조사에 있어 약 63% 해당하는 응답자가 상위법률, 하위법령, [별표]로 구분되는 법령 체계를 업무에 적용하기 어려운 정도에 관한 질문에서 보통 또는 어렵다는 답변을 하였으며, 그 세부적 원인으로서는 ‘일반기준에서 구체적인 가중 또는 감경 기준의 미흡’이 59.4%로 가장 높았고, ‘일반기준, 개별기준 등에서 관련 부과기준의 불비’가 38.56%로 두 번째로, 일반기준에서 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관련 기준 미흡이 31.3%, 일반기준에서 차수기준적용 시 차수산정 기준 불명확이 22.9%, 개별기준에서 과태료부과금액의 산정이 24%, 일반 기준에서 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관련 기준 미흡이 19.8%로 조사된 바 있다(1, 2순위 종합 기준). 이러한 결과는 조사대상 법령에 있어 과태료부과기준상 규정체계의 문제점을 실무에서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기초자료에 근거, 해당 기준 별 정비방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 1. 일반기준의 설정

과태료 관련 하위법령상 【별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규정내용은 소위 ‘일반기준’이라 할 것이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당 법률상 과태료 제도 운용에 있어 공통되게 적용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해당 과태료 제도 운용을 위한 기본적용방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매우 중요한 규범형태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일반기준이 갖는 규범으로서의 가치는 이를 통하여 과태료 제도 운용의 일반 법률이라 할 수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주요내용이 구체화 되어 진다는 것이다. 즉 일반기준에서는, 개별기준에서 차수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기 위한 차수기준 산정기간, 처분기준 적용시점, 가중/감경기준, 다수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적용기준 및 다수인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내용으로 설정되어 지는 것이기 때문임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때문에 이를 설정하고 있지 않은 조사대상 중 21개 법령에 있어서는 이를 설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 2. 차수산정기간 및 적발일 기준설정

과태료부과와 관련하여 하위법령에서 법정상한액을 고려한 일회적 부과금액을 설정하지 않고 【별표】 상 소위 “차수기준”을 두는 이유는 2008년 이후 본격화된 과태료규정 정비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된 과태료체납문제에 대한 개선과 일회적 부과가 아닌 단계적(차수)부과를 통한 해당 수범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이를 통한 과태료 체납문제에 대한 개선안으로 사료된다. 또한 법률에서 “~ 000만원 이내”로 규정하여 세부적인 부과금액은 행정입법재량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입법자가 이러한 차수규정을 두지 않고 획일적 일정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비록 가중·감경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실무 담당자의 행정재량을 사실상 기속화하는 문제점도 아울러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차수기준 설정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은 1차, 2차, 3차 의무위반 행위, 즉 반복적 동일의무위반행위에 대한 횡수 산정이 인정되는 기간에 관한 기준이다. 이는

당연히 개별기준에서 차수기준을 설정하고 있을 경우, 적발일 기준설정과 함께 고려되는 사항으로서 조사된 바에 따르면,

일반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195개 법령 가운데 차수산정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법령은 165개로서 그 산정기간은 1년이 133개, 2년이 18개, 3년이 12개 그리고 5년이 2개로 조사 되었으며 차수산정기준을 개별기준에서 적용하고 있으면서도 그 산정기간을 설정하고 있지 않은 법령은 32개에 해당하고 있다. 차수산정기간의 구체적 년 수는 해당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행정영역의 특성에 맞추어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설정되는 것으로 어떠한 년 수를 취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대상으로서의 처분이 행해진 날 이후 반복적 동일의무위반의 발생에 따른 산정에 있어 처분으로 진행되기까지는 일정기간이 소요되고 만일 이러한 경우 법령에서 규정한 산정기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바, 반복적 의무위반행위로서 횡수산정을 위한 기준으로써의 적발일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32개의 해당 법령에 대하여서는 산정기간과 관련하여 규정토록 함이 바람직 할 것이다.

### 3. 가중·감경 기준 설정

생각건대 과태료부과기준에 있어 가중·감경기준은 제도운영에 있어 핵심적 사항이라 사료된다. 이는 일반적인 규정내용상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서는 실무 담당자는 원 부과금액에 대하여 일정율 (1/2의 범주가 일반적)의 범위 내에서 그 금액을 감경내지 가중하여 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인 과태료와 같이 제재처분적 성격을 가지는 제도에 있어 해당 법률과 하위법령 상 명확성 원칙의 적용이 갖는 엄격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획일적인, 때문에 수범자의 입장에 있어서는 다수의 경우 자신의 의무위반행위 사유 성립에서 나타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이고 엄격한 부과금액 부과로부터 발생하는 제도 거부감에 대한 완충적 기능을 하여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함에 그 이유가 있다. 또한 실무자의 입장에 있어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부과기준의 산정에 있어 일정 행정재량의 범주를 제공, 보다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조사에 의하면, 일반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195개 법령 가운데 가중·감경기준을 동시에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131개 법령으로 그리고 감경만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192개로 조사되었다. 이는 설문조사에서 나타내고 있는 바와 같이 실무에서 담당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주로 고려하는 규정으로서 동법 제14조(과태료의 산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의 감경)을 꼽고 있으며, 기준 활용면에 있어서도 71.3%의 응답자가 잘 활용하고 있음을 답하고 있음과 함께 긍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동 기준의 적용에 있어 ‘가중 내지 감경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40.9%), ‘가중 내지 감경 규정을 몰라서’(31.8%)와 같은 부정적 답변은 현행 기준내용과 관련하여 주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즉 현행 하위법령상 다수의 경우, 가중·감경 기준 적용사유의 내용은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의 규정내용을 그대로 받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과태료의 산정) 행정청 및 법원은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질서위반행위의 동기·목적·방법·결과
2.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당사자의 태도와 정황
3. 질서위반행위자의 연령·재산상태·환경
4. 그 밖에 과태료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물론 과태료제도 운영에 있어 일반법적 지위를 가지는 동법의 산정고려사유를 적용하는 것은 일응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이나, 더불어 본 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명확성의 원칙적용의 목적에 상응하게 규정체계를 갖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때문에 해당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행정영역의 실무 특성에 상응하는 가중·감경사유를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등과 같이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경우에 따라 가중·감경기준 적용에 있어 적용제외에 관한 특례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없으며,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감경의 범위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등의 규정내용을 통하여 제도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대상 법령의 경우, 이러한 특례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감경의 경우 164개, 가중의 경우 128개의 법령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가중·감경기준의 규정형식에 있어서는 가중과 감경은 그 효과가 상이한 성격을 가지는 바, 이를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구분하여 규정토록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가중 시 산정된 부과금액이 법정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실제 부과금액은 법정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어 다수의 과태료 합산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법정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여 실무 운용상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 4. 2 이상의 위반행위 적용 기준과 다수인의 의무위반행위 기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 과태료제도는 여타 행정제재수단에 비하여 법리적으로는 다수의 형법적 요소가 가미된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일반법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점, 입법 체계적으로는 소위 ‘행정입법’ 분야에 있어 담당 실무자 등의 제도 운용에 관한 재량적 요소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제재 수단적 특성으로서 관계인의 입장에 있어 매우 민감할 수 있는 금전적 제재수단을 활용하고 있는 점 등을 그 특색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과 ‘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에 관한 내용은 형법적 성격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 할 것이다. 특히 2이상의 위반행위 적용기준과 관련하여 조사대상 중 61개의 개별법령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2인 이상의 위반행위 가담에 있어서는 그 적용이 조사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다수인의 위반행위 가담에 대한 정비내지 개선을 통한 적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요청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는, “①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 ③ 신분에 의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가중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분의 효과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실무적 적용방향을 설명하고 있는 법무부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에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도 단일정범 개념을 도입하였는데, 형법에 비하여 제재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으나, 단일정범 개념은 법적용을 쉽고 간단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고 실제 사안에서 가담자들의 가담형태의 정도 및 중요도가 다른 경우에는 처벌의 개별화를 피하면 되기 때문에 제재범위를 확대한 것이라 볼 수 없다.”<sup>239)</sup>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신분범(구성요건적·가감적·소극적)과 비신분범이 가담하여 질서위반행위를 행하는 경우에 대하여 명문규정을 두었다. 구성요건적 신분(진정신분)과 관련한 신분자와 비신분자의 가담은 위법연대를 인정하여 동일하게 처벌하고, 가감적·소극적 신분과 관련한 신분자와 비신분자의 가담은 책임개별화 원칙에 따라 비신분자에게는 신분의 효과가 미치지 않도록 즉 통상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였다.”<sup>240)</sup>

라고 하여 그 적용대상과 적용 법리를 설명하고 있다. 생각건대 다수의 의무위반행위 가담자에 대한 ‘가담형태의 정도 및 중요도가 다른 경우에는 처벌의 개별화’는 행정청의 입장에 있어 우선 부과대상 범주의 확정을 위하여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조사는 그 한계성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경우에 따라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사안일 수 있다

239) 법무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 2015., 33면.

240) 법무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 2015., 34면.

는 어려움도 있다. 그럼에도 과태료 부과 주체로서 행정청이 하위법령상 일반기준 또는 필요한 경우 별도의 운용지침을 통하여 그 부과대상 범주의 확정 및 이에 따른 차등적인 부과기준을 작성-운용하는 방안의 검토는 필요한 것이다.

### 5. 과태료 부과금액의 적정성 확보

본 연구는 과거 유사 선행연구에서 취한 일반적 방법론과는 달리 ①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주된 의무위반행위로서 9가지 유형 가운데 그 유형에 대한 법리적 성격과 이에 따른 구성요건 및 법적효력이 일치하여 그 세부적인 구분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유사 명칭 사용금지”, “표시의무위반”, “검사를 방해-기피-회피”, “허위자료 및 자료미제출”, “보존-공고 또는 게시의무 위반” 등 5가지의 의무위반행위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② 이후 이러한 동일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각 개별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법정 상한액이 아닌 실무상 실질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1차 부과금액을 대상으로 법정상한액 대비 하위 법령상 1차 부과금액 비율 및 차수산정 비율을 조사-분석하여 그 형평성-적정성에 대한 실증적 검토와 적정 범주를 도출하여 보고자 하였음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 성과물과의 연구 방법론적 차별성을 통하여 제시하고자 하는 개별기준에 있어 의무위반행위와 부과금액 간 합리적인 부과기준 마련을 위한 정비안은, 의무위반행위에 따른 차수산정의 틀 내에서 제1차 부과금액을 어떻게 정할 것이며, 위반 차수별로 어떠한 비율로 이를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핵심적 사항이다.

곧 하위법령에서 차수를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의 제도도입 취지에 상응하는 형태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즉 제1차 부과금액은 법정 부과금액의 20 ~ 30% 범주 내에서 설정하고 이를 차수산정 비율을 통하여 실무상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1: 1.5: 2(또는3)의 비율로 그리고 의무위반행위가 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 2: 4의 비율을 설정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이라 할 것이다. 이때 3차에 해당하는 부과금액의 경우, 가중 기준을 고려하여 법정 상한액의 70%수준으로 설정되도록 조정할 필요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무상 3차 위반에까지 반복되는 의무위반자의 경우, 이는 사실상 상습적 내

지 악의적 의무위반행위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바, 3차에서는 가중 규정을 고려하지 않고 법정 상한액에 근접하거나 초과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이때 만일 차수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70% 수준에 맞추고 그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반사정을 고려 가중기준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러한 과태료 차수산정기준 활용에 따른 하위법령상의 개별기준의 통일적 정비안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얻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제3절에서와 같은 조사를 통하여 일차적으로 동일의무위반행위별 법정상한액 대비 제1차 부과금액 비율 및 차수산정비율을 조사한 바 있으며 이 가운데 법정상한액 대비 제1차 부과금액 비율 평균을 적시하여 본다면 아래와 같다.

구분	법정상한액
	대비 별표 상 부과금액 비율(%)의 평균
유사명칭 사용금지 (43개 법률)	47%
표시의무위반 (40개 법률)	29%
검사를 방해-기피-회피 (131개 법률)	48%
허위자료 및 자료미제출 (111개 법률)	44%
공고 또는 게시의무 위반 (25개 법률)	34%

각 동일의무위반행위에 있어 법정상한액 대비 별표 상 부과금액 비율 및 차수산정 비율은 통일적인 모습을 찾을 수 없었으며 그 간극역시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전체적으로 볼 때 29% ~ 48%의 범주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를 차수 산정화 하는 차수산정 비율은 너무도 다양하게 산정되어 있어 그 평균 내지 공통적 사항을 발견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에서 먼저 연구자가 제시한 정비방안을 고려할 때 표시의무위반과 공고 또는 게시의무 위반에 대하여서는 그 적용이 용이하다 하겠다. 이외의 유사명칭사용금지, 검사를 방해-기피-회피, 허위자료 및 자료 미제출의 경우에 있어서는 입법자가 이들 유형에 대한 제1차 단계에서의 제재를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1차 규정에서의 40% 상회하는 부과금액의 설정은 의무위반행위의 일반적 성격에 비하여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며, 차수산정기준의 도입 취지

에 상응하도록 제1차 에서는 35% ~ 40% 선을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그 차수산정 비율을 1: 2: 4로 하여 제2차 의무위반 시에 가중기준을 활용하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향후 개별기준에 있어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설정할 경우에는 위에서와 같은 준거점을 기준으로 활용토록 한다면 보다 합리적인 제도운영으로써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제5장

# 결론: 과태료 제도의 합리적 정비를 위한 개선방안



## 제5장

# 결론: 과태료 제도의 합리적 정비를 위한 개선방안

### I. 과태료의 법적 지위 확립

과태료는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금전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행정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함과 동시에, 이를 통해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의무자의 행정법상의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는,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의 성격과 함께 장래 행정상의 의무이행의 확보라는 2중적 성격을 가진다. 다만, 지금까지 과태료는 현실과는 다르게 징벌적 의미를 가지는 ‘재재’ 보다는 상대적으로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이라는 측면으로서만 강조되어 왔으며,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있어 엄격한 법치주의 적용보다는 행정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관점에서 강조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sup>241)</sup> 이러한 상황에서 과태료의 고유한 역할과 기능 보다는 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의 행정형벌이 선호되어 왔으며, 과태료는 그러한 행정형벌에 부수하거나 형식적으로 납부가 강제되는 금전 정도로 인식이 되면서 위반자로 하여금 납부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의문을 가지게 하고 결국 이는 징수율 저하에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행정형벌 제도는 원칙적으로 행정명령에 대한 의무확보수단으로서 “최후적”이고 “보충적”인 것이어야 하며, 행정목적의 이행에 관한 한 형벌을 과함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오늘날 미확정인 행정명령위반의 경우에 있어서까지 형벌이 다른 의무확보수단과 중복 내지 병렬적 수단으로 되어 있고, 현행 각 행정법규에 있어 행정명령위반의 제재방법으로 거의 모두가 형벌을 채택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비판적 시각으

241) 조태제, 앞의 논문, 527면 및 553-554면.

로 검토되어야 한다.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라면 행정목적 실현을 위한 것이므로 그 제재 수단도 가능하다면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 등의 수단이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sup>242)</sup> 따라서 현행 행정법규상의 형사처벌규정의 정비 및 개선의 방향으로 행정형벌로서의 단기 자유형과 과태료에 상응하는 (소액의) 벌금을 원칙적으로 행정질서벌로 전환하는 것이 실제 및 절차적인 면에서도 합리적일 것이다.

다만, 행정법과 형사법과의 개념과 이에 대한 차이점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은 채 이를 단순히 유동적인 개념으로 파악하고 입법재량의 문제로만 이해하려는 경우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간 체계 정립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남게 될 것이다. 중국적으로 입법자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목적과 기능에 따른 영역을 체계적으로 구분하기 위한 실천적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행정목적의 실효성 확보와 규율의 편의만을 위한 ‘행정상 의무위반행위’ = ‘범죄행위’라는 곡해된 시각을 가급적 지양하고, ‘행정상 의무위반행위’ = ‘질서위반행위’라는 정확한 이해에 근거해서<sup>243)</sup> 과태료 제도가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II.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개선방향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의 법적 체계에 관하여는 다양한 입법적 설계가 가능할 것이다. 즉, 독일에서와 같이 행정질서벌에도 행정형벌에서 규정되고 있는 과벌절차 등을 준용하도록 하여 통일적 체계를 구축하는 입법도 가능하고,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서로 그 기능과 목적이 다름을 전제로 행정형벌은 형벌적 성격으로 인하여 사법(司法) 절차적 측면이 강조되지만, 행정질서벌에서는 행정실체적 성격을 강조하여 행정절차적 측면이나 행정능률적 사고가 강조된다는 인식하에 두 영역의 고유한 분류체제를 유지하여 두 제재가 달성하고자 하는 이념을 유지하도록 하는 입법도 가능하다. 또한, 행정질서벌인 과태

242) 헌법재판소 1995. 3. 23, 92헌가14; 이기세·신형석, 앞의 논문, 235면, 각주 30).

243) 이기세·신형석, 앞의 논문, 237면.

료의 유형을 본래의 의미로 정리하고, 행정질서벌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그 처분성을 인정하여 행정절차를 강화하고 이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이 아니라 일반 행정쟁송에 의한 방법을 인정하도록 개편하는 입법도 가능하다. 즉, 비송사건절차가 가지는 절차적 한계, 즉 부과요건을 정한 처분청이 당사자의 이의제기 시에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이의제기 시에도 소송절차에서 실제적 행정작용의 이해관계를 주장할 수 있도록 행정소송의 제기가능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는 것이다.<sup>244)</sup>

이러한 다양한 체제적 설계는 결국 과태료에 대하여 법령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에 대한 현실적 반영에 기반하여 이루어질 문제이다. 다만, 우리의 법제도와 현실은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을 구분하되 행정형벌에 대한 원칙적 우월성을 부여하는 체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과태료에 관한 근거법으로서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한 의의와 한계가 동시에 문제되는 것이다.

판례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산만하게 운영되어 오던 과태료 제도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으로 어느 정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다는 데에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지만, 여전히 과태료 제도의 실질은 개별 법령에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를 위한 절차법 정도에 그치는 한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법제도의 운영상 당연한 현실이기에 그러한 체계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과태료 제도를 일반법으로서 설계함에 있어서 그에 대한 고유한 개념과 성격, 법적 지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부과기준에 대한 통일적 원칙, 과태료 금액의 합리적 산정, 감경 및 가중사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부과·징수에 있어서의 부과주체인 행정청, 재판절차에 있어서의 사법부, 체납절차에 있어서의 행정청과의 관계에서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충분히 논의되고 검토되었어야 했던 것이다.

244) 류지태, 앞의 논문, 73-75면.

이에 본 연구는 과태료 제도의 근거법으로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하여 보완 또는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① 입법 형식에 있어서 형법총칙적 체계의 탈피, ② 과태료, 질서위반행위, 당사자 등 개념의 재정비(명확화), ③ 부과기준의 체계적 유형화 및 차수 제도, 과태료 금액(상한 내지 구간)에 대한 원칙 규정 설치, ④ 가중 및 감경의 원칙과 기준의 설정, ⑤ 과태료 재판에 있어서의 방어권 보완, ⑥ 체납절차에 있어서 비례원칙 등 명문화를 통한 법치주의 보장, ⑦ 소위 ‘과태료심의위원회’ 및 소위 ‘과태료징수전문공무원’의 양성을 통한 과태료 제도의 실효성 정비 등을 제안하였다.

### Ⅲ. 과태료 제도의 입법체계 정비방안

본 연구에서는 입법 상 명확성의 원칙을 과태료 관련 법령체계에 엄격히 적용하고 이때 명확성의 원칙은, “① 입법자가 의도하는 법률상 규정내용은 당장 그 규정내용에 근거한 행정작용이 경우에 따라 해당 수범자의 기본권상 침익·수익 또는 이의 변경을 야기하게 되는 바, 이에 대한 법규 적용 주체로서의 담당자와 대상 객체로서의 해당 관계인의 입장에서 보다 명확하게 이러한 행정작용이 어떠한 요건과 어떠한 기준 등에 의하여 어떠한 절차를 통하여 법제도화로서 발현되는 지에 대한 인식과 그 제도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에 목적이 있으며(법률 상 규정내용의 인지 및 이해의 명확화 범주), ② 이를 위하여 입법자는 제도 운영에 있어 관계자(실무담당자 및 관계 국민)의 입장에서 제도 운영 전반에 걸친 보다 가독성이 제고된 내용을 제공하여 법률에서 제도 운영 근간을 뚜렷이 파악할 수 있고 행정입법 절차에 따른 하위법령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정(규정내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하위법령 상 규율밀도 설정내용의 명확화 범주), ③ 관계자가 해당 제도 운영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예견하고 적용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규범화하도록 하는 주요 적용원리로서” 작용함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는 5개부처 272개 소관법령에 대한 법률상 그리고 하위법령에 있어 【별표】의 규정내용에 관한 세밀한 조사·분석작업은 물론 과태료제도 운영적 측면에 있어 운영현황 및 문제점 파악을 위한 실증적 자료를 얻기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150명의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과태료 규정체계의 정비를 위한 개선안으로서, 법률상 명확성원칙 적용 목적에 충실한 규정체계 마련을 위한 정비안으로서 현행 과태료 규정 유형 가운데 2유형과 3유형을 접목한 형태의 입법 정비안을 제시하였으며, 행정입법에 있어 “구체적으로 범위설정에 충실한” 규정체계 마련을 위한 정비안으로서 ① 일반기준의 설정, ② 차수산정기간 및 적발일 기준설정, ③ 가중·감경 기준설정, ④ 2 이상의 위반행위 적용 기준과 다수인의 의무위반행위 기준설정, ⑤ 과태료 부과금액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세부 정비방안 등을 제4장 제5절에서 제시하여 보았다.

특히 과태료 부과금액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써, “하위법령에서 차수를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의 제도도입 취지에 상응하는 형태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즉 제1차 부과금액은 법정 부과금액의 20 ~ 30% 범주 내에서 설정하고 이를 차수산정 비율을 통하여 실무상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1: 1.5: 2(또는3)의 비율로 그리고 의무위반행위가 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 2: 4의 비율을 설정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이라 할 것이다. 이때 3차에 해당하는 부과금액의 경우, 가중 기준을 고려하여 법정 상한액의 70%수준으로 설정되도록 조정할 필요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무상 3차 위반에까지 반복되는 의무위반자의 경우, 이는 사실상 상습적 내지 악의적 의무위반행위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바, 3차에서는 가중 규정을 고려하지 않고 법정 상한액에 근접하거나 초과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이때 만일 차수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70% 수준에 맞추고 그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반사정을 고려 가중기준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리고 입법자가 의무위반행위의 성격에 비추어 제1차 단계에서의 제재를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1차에서는 35% ~ 40% 선을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그 차수산정 비율을 1: 2: 4로 하여 제2차 의무위반 시에 가중기준을 활용토록 한다.” 라는 정비안을 제시하였다.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참고문헌**



## 참고문헌

### 국내문헌

#### I. 단행본

- 김남진·김연태, 「행정법 I」, 상원서적, 2014.
- 김남철, 「행정법강론」, 박영사, 2015.
- 김동희, 「행정법 I」, 박영사, 2015.
- 김유환, 「현대 행정법강의」, 법문사, 2016.
- 김일수·서보학, 「형법총론」, 박영사, 2005.
- 김중권, 「행정법」, 법문사, 2016.
- 김철용, 「행정법」, 고시계사, 2017.
- 류지태·박종수, 「행정법신론」, 박영사, 2016.
-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16.
- \_\_\_\_\_, 「행정법론(상)」, 박영사, 2015.
- 박영도, 입법학 입문, 한국법제연구원, 2008.
- 박윤훈·정형근, 「최신행정법강의(상)」, 박영사, 2009.
- 석종현, 「도로교통법상의 범칙금론」, 삼영사, 1994.

鹽野 宏(서원우 · 오세탁 공역), 「일본행정법론」, 법문사, 1996.

정형근, 「행정법」(제2판), 피앤씨미디어, 2014.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15.

## II. 학술논문

길준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의 필요성과 주요내용”,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2017. 10. 27.

김삼수, “영국 전국최저임금제의 집행체제와 전개”, 「EU학연구」, 제18권제1호, 2013.

김용재, “미국금융법상 민사금전벌 제도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2008. 4.

\_\_\_\_\_, “미국판례법상 민사금전벌과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관한 연구”, 「고려법학」, 제51권, 2008.

김영진, “우리의 과태료 · 과징금 유사 미국의 제도: 민사금전벌(civil money penalty)”, 한국법제연구원 전문가회의 자료집, 2017. 4.

김용섭, “행정입법에 대한 법원의 사법통제를 둘러싼 논의”, 「행정법연구」, 제39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4

김용훈, “현행 과태료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영국에서의 관련 제도 운영을 참고 하여”, 한국법제연구원 전문가회의 자료집, 2017. 4.

\_\_\_\_\_, “영국에서의 과태료 집행 쟁점”, 한국법제연구원 자료집, 2017. 8.

김원중,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에 관한 일반적 검토”, 한국법제연구원 전문가회의 자료집, 2017. 4.

- \_\_\_\_\_, “해외 과태료 부과 검토를 통한 과태료 개선 방안”, 한국법제연구원 전문가회의 자료집, 2017. 8.
- 김재광, “과태료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조』, 제577호, 2004.
- \_\_\_\_\_, “우리나라 과태료 제도의 연혁과 현황,” 한국법제연구원 전문가회의 자료집, 2017. 4. 7.
- 김현준, “행정입법절차의 쟁점과 과제 - 독일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제17권제1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16
- 류지태, “행정질서벌의 체계”, 『법조』, vol. 555, 2002, 12.
- 박윤훈, “미국의 민사금전벌제도”, 『미국헌법연구』, 제1호, 1990.
- 박정훈, “협회의 행정벌과 광의의 행정벌 - 행정상 제재수단과 법치주의적 안전장치-”, 『법학』,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제41권제4호, 2001.
- 박종준, “과태료 관련 법제의 법적 문제에 관한 법적 고찰”, 『법조』, 제720호, 2016.
- 서보국, “질서행위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인 과태료와 유사한 독일의 입법사례”, 한국법제연구원 전문가회의 자료집, 2017. 8.
- 송지훈/최정민, “행정입법에 대한 재고: 세월호 사고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제11호, 한국콘텐츠학회, 2015.
- 심재진, “산업안전보건법의 집행 체계와 방식 - 영국의 사례와 시사점 -”, 『법과 기업연구』, 제6권제3호, 2016. 12.
- 이기세 · 신형석, “행정형벌의 행정질서벌화 경향에 대한 소고 - 행정형벌의 비범죄화 · 비형벌화를 중심으로”, 『한국범죄심리연구』, 제11권제3호, 2015.

- 이상경, “명확성의 원칙과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서울법학』, 제22권제3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 이호용·박수희,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의 이유와 기준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 제19권제3집(통권 제24집), 2008. 10.
- 정관선, “프랑스 행정상 제재”, 한국법제연구원 전문가회의 자료집, 2017. 4.
- 정세종, “무인단속에 따른 경찰의 교통과태료 제도 합리화 방안”,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1권제1호, 2014.
- 정형근, “과태료의 실효성 제고수단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제21권제3호, 2009. 12.
- 조정찬, “과태료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법제개선자료 법제연구총서』, 법제처, 1993.
- 조태제, “행정질서벌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토지공법연구』, 2005.
- 조재현, “의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 간호조무사 등에 관한 규칙을 중심으로”, 『한국의료법학회지』, 23(2), 한국의료법학회, 2015.
- 최무현·강병준·조운애, “과태료의 적정 수준 설정을 위한 실태조사와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정책개발연구』, 제13권제2호, 2013. 12.
- 최무현·이종한, “과태료 제도의 집행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2005.
- 한상돈, “중국 과태료 관련규정의 주요내용 검토”, 한국법제연구원 전문가회의 자료집, 2017. 4.

### Ⅲ. 연구보고서 등

- 강문수, 「과태료·과징금 부과기준 정비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9.
- 김수현, 「행정법규 처벌규정의 법정형 합리화 방안」, 정책보고서 Vol. 18, 국회입법조사처, 2012. 10. 17.
- 박상희·김명연, 「과태료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1994.
- 박종수,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절차 마련을 위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 방안」, 법무부 연구용역보고서, 2013. 12.
- 박영도, 「행정형벌법규, 조세, 준조세, 영업활동, 급부행정분야 등 행정관계 법령의 위 입법 심사기준 및 포괄위입법금지원칙 위반 법령 발굴과 정비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0
- 법무부, 「과태료 제도 현황과 각국의 입법례 연구」, 동광문화사, 2012.
- 법무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 동광문화사, 2015. 1.
- 법무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각국의 입법례」, 법무자료, 제269호, 2005.
- 오영근·진희권, 「벌금형의 과태료 전환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12.
- 조병선, 「질서위반법」, 형사정책연구원, 1991.
- 주운현,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한 부과·징수 제도 개선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16. 6.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편집부, 「지방세외수입연감」, 2012 ~ 2016.

## 참고판례

헌재 1995.7.21. 94헌마125.

헌재 2014.4.24. 2013헌바110.

헌재 1990.4.2. 89헌가113.

헌재 1992.4.28. 90헌바 27.

Bundesrepublik Deutschland, Bd. 3, C.F.Müller, 2007, §103 Rn. 41.

Voßkuhle/Wischmeyer, “Die Rechtsverordnung”, JuS 2015, 311.

## 외국문헌

Colin S. Diver, The Assessment and Mitigation of civil money penalties by federal administrative agencies, 79 Colum. L. Rev. 1435, 1445, 1979.

Diane DÉOM, David RENDERS, Les sanctions administratives, Bruyant, 2007.

Göhler, Ordnungswidrigkeitengesetz, 10 Aufl., 1992.

IFCA, Financial administrative penalties for fisheries offences, 2012.

J.M.Chen, INFLATION-BASED ADJUSTMENTS IN FEDERAL CIVIL MONETARY PENALTIES, 34 Yale L. & Pol’y Rev. 1, 2015.

Jean-Marc Sauvé, “Les sanctions administratives en droit public français”, AJDA, 2001.

- John K. Villa, Bank directors', officers' and lawyers' civil liabilities, Chapter 3: Administrative Enforcement.
- Julien B'etaille, Dalila Chouki, Coralie Courtaigne-Deslandes, Maryse Deguergue, Elise Langelier, et al.. "Les sanctions administratives dans les secteurs techniques", [Rapport de recherche] Mission de recherche Droit & Justice. 2017.
- LPC(Low Pay Commission), National Minimum Wage, 2012, 2011.
- M. Minzner, WHY AGENCIES PUNISH, 53 Wm. & Mary L. Rev. 853, 865, 2012.
- Ministère de l'Écologie du Développement durable et de l'Énergie - Conseil général de l'Environnement et du Développement durable, Responsabilité élargie des producteurs et amende administrative (Rapport), 2012.
- Ossenbühl, Rechtsverordnung, in: Isensee/Kirchhof(Hrsg.), Handbuch des Staatsrechts der
- R. M. Brown, "Administrative and Criminal Penalties in the Enforcement of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Legislation", Osgoode Hall Law Journal Vol. 30, Number 3 (Fall 1992)(Impact of the Charter on the Public Policy Process A Symposium).
- Richard B. Macrory, Regulatory Justice: Making Sanctions Effective, Better Regulation Executive Final Report, November, 2006.
- Richard P. Kusserow, Civil Money Penalties Law of 1981: A New Effort to Confront Fraud and Abuse in Federal Health Care Programs, 58 Notre Dame L. Rev. 985, 1983.
- W. Funk, CLOSE ENOUGH FOR GOVERNMENT WORK?—USING INFORMAL PROCEDURES FOR IMPOSING ADMINISTRATIVE PENALTIES, 24 Seton Hall L. Rev. 1, 1993.

## 웹사이트

<https://www.congress.gov/search?searchResultViewType=expanded&q={“source”:“legislation”,“search”:“civil+monetary+penalties”,“bill-status”:“law”}>(최종접속일 2017.9.30)

<https://www.gov.uk/parking-tickets/paying-a-ticket>(최종접속일 2017.4.2)

<https://tfl.gov.uk/modes/driving/red-routes/penalty-charge-notice/make-a-representation>  
(최종접속일 2017.9.30)

<http://www.londontribunals.gov.uk/>(최종접속일 2017.4.1)

<https://www.gov.uk/parking-tickets/paying-a-ticket>(최종접속일 2017.4.2)

[https://www.performance-publique.budget.gouv.fr/sites/performance\\_publicue/files/files/documents/ressources\\_documentaires/documentation\\_budgetaire/chiffres\\_cles/depliant\\_budget2016.pdf](https://www.performance-publique.budget.gouv.fr/sites/performance_publicue/files/files/documents/ressources_documentaires/documentation_budgetaire/chiffres_cles/depliant_budget2016.pdf)(최종접속일 2017.9.30)

<https://www.legifrance.gouv.fr/Droit-francais/Guide-de-legistique/V.-Schemas-logiques-et-cas-pratiques/5.2.-Cas-pratiques/5.2.6.-Prevoir-des-sanctions-administratives-ou-penales>(최종접속일 2017.3.22)

[http://www.autoritedelaconurrence.fr/user/standard.php?lang=fr&id\\_rub=402&id\\_article=1595](http://www.autoritedelaconurrence.fr/user/standard.php?lang=fr&id_rub=402&id_article=1595)(최종접속일 2017.9.30)

[http://www.conseil-etat.fr/content/download/82259/773806/version/1/file/dossier%20thematique%20sanctions\\_09012017.pdf](http://www.conseil-etat.fr/content/download/82259/773806/version/1/file/dossier%20thematique%20sanctions_09012017.pdf)(최종접속일 2017.3.30.)

[https://m-repo.lib.meiji.ac.jp/dspace/bitstream/10291/17409/1/houkadaigakuinronshu\\_16\\_49.pdf](https://m-repo.lib.meiji.ac.jp/dspace/bitstream/10291/17409/1/houkadaigakuinronshu_16_49.pdf)(최종접속일 2017.9.30)

<https://ja.wikipedia.org/wiki/>(최종접속일 2017.9.30)

[www.cabinetoffice.gov.uk/regulation/penalties](http://www.cabinetoffice.gov.uk/regulation/penalties)(최종접속일 2017.4.1.)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부  
록



## 부 록

### 과태료 제도 운영모습 파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조사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저희 한국갤럽은 한국법제연구원의 의뢰로 『과태료 제도 운영모습 파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는 과태료 실무담당자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과태료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귀하의 답변은 전체 응답자 중 몇 퍼센트(%)가 이런 의견을 갖고 있다는 식으로 통계를 내는 데에만 사용되며, 그 외의 목적에는 절대로 사용되는 일이 없으니 귀하가 평소 느끼셨던 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시더라도 조금만 시간을 내어 협조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 9월

조사주관 : 한국법제연구원

조사수행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

주소 : 서울 종로구 사직동 208번지

SQ1) 귀하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1. 광역자치단체 → SQ1-1번으로
2. 기초자치단체 → SQ1-2번으로
3. 기타 → SQ1-2번으로

SQ1-1) 귀하가 속한 광역자치단체는 어디입니까?

1. 서울특별시청
  2. 부산광역시청
  3. 대구광역시청
  4. 인천광역시청
  5. 광주광역시청
  6. 대전광역시청
  7. 울산광역시청
  8. 경기도청
  9. 강원도청
  10. 충청북도청
  11. 충청남도청
  12. 전라북도청
  13. 전라남도청
  14. 경상북도청
  15. 경상남도청
  16. 제주특별자치도청
  17. 세종특별자치시청
- SQ2번으로

SQ1-2) 귀하가 근무하는 관공서가 속한 시/도는 어디입니까?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
9. 강원
10. 충청북도
11. 충청남도
12. 전라북도
13. 전라남도
14. 경상북도
15. 경상남도
16. 제주
17. 세종

SQ1-3) 귀하가 근무하는 관공서는 어디입니까?

예) 종로구청, 고성군청, 남부소방서 등

→ SQ2번으로

SQ2) 귀하가 담당하는 과태료 업무는 행정영역 가운데 **주로** 어떤 분야입니까? 여러 분야를 담당하시면 **가장** 많은 업무를 진행하는 **한 분야만**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1. 국토 · 교통      | 2. 행정 · 안전 |
| 3. 문화 · 관광 · 체육 |            |
| 4. 환경           | 5. 보건 · 복지 |

SQ3) 귀하께서 과태료 관련 업무를 담당한 기간은 얼마입니까?

\_\_\_\_\_년 \_\_\_\_\_개월 → **3개월 미만 조사종료**

SQ4) 실례지만,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 |                      |        |        |        |
|----------------------|--------|--------|--------|
| 1. 10대 → <b>조사종료</b> | 2. 20대 | 3. 30대 | 4. 40대 |
| 5. 50대 이상            |        |        |        |

SQ5)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       |       |
|-------|-------|
| 1. 남성 | 2. 여성 |
|-------|-------|

◆ **지금부터 귀하께서 담당한 [SQ2의 응답값 구현] 분야의 과태료 업무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1) 귀하가 [SQ2의 응답값 구현] 분야에서 **최근 1년** 동안 부과한 과태료 건수 몇 건입니까?

\_\_\_\_\_건

문2) 일반적으로 과태료 업무 절차는 크게 '①과태료부과사유 성립, ②과태료의 산정, ③과태료의 부과, ④과태료의 징수'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귀하가 수행하는 과태료 업무절차 중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는 무엇입니까?

- |               |            |
|---------------|------------|
| 1. 과태료부과사유 성립 | 2. 과태료의 산정 |
| 3. 과태료의 부과    | 4. 과태료의 징수 |

문3) 현행 과태료 제도의 개별 법률은 주로 '①과태료부과 의무위반행위, ②과태료부과금액'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4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실무에서 가장 활용하기 편리한 유형은 무엇입니까? 아래의 표를 보고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1. 유형1 | 2. 유형2 |
| 3. 유형3 | 4. 유형4 |

구분	내용
유형1	제29조(과태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무위반근거 법조항에 따른 의무위반행위 및 과태료 부과 과상한액</li> </ul>	① 제24조에 따른 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위법령 위임 및 부과주체</li> </ul>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구분	내용
유형2	제42조(과태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무위반근거 법조항에 따른 의무위반행위 및 과태료 부과 상한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생략</li> <li>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무위반행위 규정 상 단서 조항(부과면 제:특례) 또는 별도의 항목 설정을 통한 특례 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28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u>다만, 제35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u></li> <li>2. ~ 4. 생략</li> <li>③ 생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위법령 위임 및 부과주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li> </ul>
유형3	제34조(과태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무위반근거 법조항에 따른 의무위반행위 및 과태료 부과 상한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제12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위법령 위임 및 부과주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li> </ul>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과 및 절차 특례</li> </ul>	<p>③ 과태료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정명령”은“과태료 부과·징수”로 본다.</p> <p>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면 이를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p>
<p>유형4 : 별도 개별규정으로 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과금액</li> </ul>	<p>제98조의2(과태료)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과징수주체를[별도]의 조문으로 설정</li> </ul>	<p>제101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제98조의2,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p>

문4) 현행 과태료 제도의 준거법률로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있습니다. 귀하는 실무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주요규정을 참조하여 업무를 진행하십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ㄱ
2. 그렇지 않다            ㄴ → **문5번으로**
3. 보통이다                ㄷ
4. 그렇다                  ㄹ → **문4-1번으로**
5. 매우 그렇다            ㄺ

문4-1) 귀하가 업무를 진행할 때, 참조하는 규정은 무엇입니까? 3순위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_\_\_\_\_, 2순위\_\_\_\_\_, 3순위\_\_\_\_\_

1. 제7조(고의 또는 과실)
2. 제12조(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
3. 제13조(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4. 제14조(과태료의 산정)
5.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6. 제17조(과태료의 부과)
7.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8. 제20조(이의제기)
9. 제22조(질서위반행위의 조사)
10.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11. 기타 \_\_\_\_\_

문5) 현행 과태료 관련 법률의 하위법령에서는 법령상 [별표]를 통하여 과태료 적용에 대한 세부 부과기준 등을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상위법령, 하위법령, [별표]로 구분되는 법령 체계를 업무에 적용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ㄱ
2. 그렇지 않다         ㄴ → **문6번으로**
3. 보통이다            ㄷ
4. 그렇다              ㄹ → **문5-1번으로**
5. 매우 그렇다        ㅁ

문5-1) 귀하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2순위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1. 일반기준, 개별기준 등에서 관련 부과기준의 불비
2. 일반기준에서 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 관련 기준 미흡
3. 일반기준에서 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관련 기준 미흡
4. 일반기준에서 구체적인 가중 또는 감경 기준 미흡
5. 일반기준에서 차수기준 적용 시 차수산정 기준 불명확
6. 개별기준에서 과태료 부과금액의 산정
7. 기타 \_\_\_\_\_

문5-2) 귀하가 상위법령, 하위법령, [별표]로 구분되는 법령 체계를 업무에 적용하실 때 경험하신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

문6) 현행 과태료 규정(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개별법률 등)은 일반적으로 부과금액의 1/2 범위 내에서 가중 내지 감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규정에 따른 가중 내지 감경을 활용하십니까, 아니면 활용하지 않습니까?

1.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    ㄱ
2. 활용하지 않는다        ㄴ → **문6-1번으로**
3. 보통이다                ㄷ
4. 활용한다                ㄹ → **문7번으로**
5. 매우 활용한다        ㄺ

문6-1) 귀하가 가중 내지 감경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가중 내지 감경하는 절차가 복잡해서
2. 가중 내지 감경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3. 가중 내지 감경 규정을 몰라서
4. 기타 \_\_\_\_\_

문7) 귀하는 [SQ2의 응답값 구현] 분야의 현행 과태료 부과금액이 의무위반행위의 성격에 따라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ㄱ
2. 그렇지 않다        ㄴ → **문7-1번으로**
3. 보통이다            ㄷ
4. 그렇다              ㄹ → **문8번으로**
5. 매우 그렇다        ㄺ

문7-1) 현행 과태료 부과금액이 적정하지 않다면, 귀하는 앞으로 과태료 부과금액을 전반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과태료 부과금액을 전반적으로 올려야 한다
2. 과태료 부과금액을 전반적으로 내려야 한다

문8) 귀하가 담당하는 [SQ2의 응답값 구현] 분야에서 **최근 1년** 동안 과태료 관련 **의견제출** 건수는 몇 건입니까?

\_\_\_\_\_건

→ '0' 응답자는 문10번으로, 그 외 응답자는 문9번으로

문9) 귀하가 담당하는 [SQ2의 응답값 구현] 분야에서 과태료 납부의무자의 **의견제출** 내용은 **주로** 무엇입니까?

- |              |              |
|--------------|--------------|
| 1. 과태료 부과 사유 | 2. 과태료 부과 금액 |
| 3. 과태료 부과 절차 | 4. 기타 _____  |

문10) 귀하가 담당하는 [SQ2의 응답값 구현] 분야에서 **최근 1년** 동안 과태료 관련 **이의제기** 건수는 몇 건입니까?

\_\_\_\_\_건

문11) 최근 과태료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의 제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등의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귀하는 이런 제도를 통해 미납 과태료 징수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의 제한	1	2	3	4	5
2)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1	2	3	4	5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 렇지 않다	보 통이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3)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1	2	3	4	5
4)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의 납부	1	2	3	4	5
5) 과태료 징수유예제도에 대한 의견 수렴	1	2	3	4	5

문12) 귀하께서 현행 과태료 제도와 관련하여 건의사항이나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연구보고 2017-12

**과태료 제도의 합리적인 정비를 위한 입법모델  
연구**

---

---

2017년 10월 29일 印刷

2017년 10월 31일 發行

發行人 이 익 현

發行處 한국법제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

(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전화 : (044)861-0300

등록번호 : 1981.8.11. 제2014-000009호

<http://www.klri.re.kr>

---

---

값 12,000원

1. 本院의 承認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
2.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ISBN 978-89-6684-791-4 93360

**KLRI**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